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981년 3월 31일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가 2011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공정한 조정중재를 통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덜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설립 첫 해인 1981년 44건을 접수 처리한 것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그 50배가 넘는 2,237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30년 동안 총 18,552건의 언론조정·중재신청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정성공률도 설립 첫째 42.9%였던 것이 2011년에는 70.9%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에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도 낮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언론계의 노력이 어우러져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ADR)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언론중재제도가 탄생한 이후 법적인 토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조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으로 확대되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도입되어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중재절차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도 조정·중재 대상이 되었고, 손해배상도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일회적,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기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언론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3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와 위치의 상향, 중재제도의 활성화,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 운용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털사건 전담 중재부를 지정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로 포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언론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국민과 같이 해온 그동안의 역사를 정리한 30년사를 만들어 지난 날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길을 열어가는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30년간의 성과를 남에게 보이거나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위원회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과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지 못함에 대해 널리 양해바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오신 역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사무처 직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01

언론중재위원회 30년

제1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15
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15
Ⅱ.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배경	17
Ⅲ. 반론권 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20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와 발전	25
Ⅰ. 위원회의 출범과 운영의 근간 형성(1981년)	25
Ⅱ. 언론중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1982년~1987년)	29
Ⅲ. 언론중재제도의 재탄생과 기반의 확충(1988년~1995년)	32
Ⅳ. 언론중재제도의 강화와 발전(1996년~2004년)	44
Ⅴ. 대표적 ADR 기관으로서 위상 정립(2005년~2011년)	55
제3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현황	84
Ⅰ.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84
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	90
Ⅲ. 사무처 조직과 업무	94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상징	118

02

언론중재제도의 법률적 변천

제1장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탄생	123
Ⅰ.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123
Ⅱ.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125
Ⅲ. 언론중재위원회	131
Ⅳ. 개선점	132
제2장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정착	134
Ⅰ.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34
Ⅱ. 「정간물법」에 의한 언론중재제도의 변화	136
Ⅲ.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변화	141
Ⅳ. 개선점	142
제3장 「정간물법」의 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강화	144
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44
Ⅱ. 개정 「정간물법」의 주요내용	146
Ⅲ. 개선점	153



제4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실질화	155
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5
Ⅱ. 「언론중재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156
Ⅲ.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	166
Ⅳ. 개선점	169
제5장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언론조정제도의 확대	171
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71
Ⅱ. 개정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73
Ⅲ. 개선점	177

03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사업 실적

제1장 언론조정·중재 사건 처리현황	183
Ⅰ. 30년간 언론조정·중재 처리현황 개괄	183
Ⅱ. 신청인 유형별 처리현황	192
Ⅲ. 중재부별 처리현황	195
Ⅳ. 청구유형별 처리현황	198
Ⅴ. 접수유형별 처리현황	202
Ⅵ.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203
Ⅶ. 침해유형별 처리현황	209
Ⅷ. 조정성공률 변동 추이	212
Ⅸ.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215
Ⅹ. 평가와 전망	230
제2장 시정권고	232
Ⅰ. 시정권고 제도의 의의	232
Ⅱ. 시정권고 처리현황 개괄	235
Ⅲ.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제도변화	239
Ⅳ.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	242
Ⅴ.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	245
Ⅵ. 주요 사례	248
Ⅶ. 평가와 전망	256



제3장 선거기사심의	258
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58
Ⅱ. 구성 및 운영	259
Ⅲ.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273
Ⅳ. 평가와 전망	292
제4장 조사연구사업	294
Ⅰ. 개요	294
Ⅱ. 학술행사 개최	296
Ⅲ. 조사연구 및 발간	306
Ⅳ.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331
Ⅴ. 평가와 전망	332
제5장 언론피해상담과 교육	334
Ⅰ.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출범과 의미	334
Ⅱ. 언론피해상담	336
Ⅲ. 언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353
제6장 홍보	362
Ⅰ. 위원회 설립 초기의 홍보	362
Ⅱ. 광고를 통한 위원회 홍보	366
Ⅲ. 인터넷 홍보	379
Ⅳ. 소식지	387
Ⅴ. 기타 홍보활동	391
Ⅵ. 평가와 전망	397

04

부록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발자취	403
역대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413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 연혁	439
언론중재위원회 연표	499

표목차

[표 1] 법규자문위원회 구성현황	76
[표 2] 법규자문위원회 활동현황	77
[표 3]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 구성현황	78
[표 4]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 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80
[표 5]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 구성현황	81
[표 6] 중재위원수 및 중재부 현황 변화	91
[표 7] 사무처 직급별 정원표	95
[표 8]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현황	111



[표 9] 역대 노조 위원장 명단	117
[표 10] 언론중재제도의 전개과정	179
[표 11] 연도별 조정신청 처리현황	189
[표 12] 연도별 중재신청 처리현황	191
[표 13] 신청인 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193
[표 14] 신청인 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194
[표 15] 중재부별 조정 처리현황	195
[표 16] 중재부별 중재 처리현황	197
[표 17] 청구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199
[표 18]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처리현황	200
[표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 현황	200
[표 20] 청구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201
[표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재액 현황	201
[표 22] 접수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202
[표 23]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현황	204
[표 24] 인터넷신문 조정 처리현황	206
[표 25] 포털 조정 처리현황	207
[표 26] 매체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207
[표 27] 포털 중재 처리현황	208
[표 28] 침해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210
[표 29] 침해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211
[표 30] 연도별 조정성공률 (%)	213
[표 31] 2008년 이후 성공률 현황 (%)	214
[표 32] 신청심의 의결 현황	238
[표 33]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44

[표 34]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46
[표 35]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275
[표 36] 자체심의 결정내용별 현황	283
[표 37]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현황	285
[표 38]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286
[표 39] 연도별 세미나 개최현황	297
[표 40] 연도별 토론회 개최현황	300
[표 41]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 개최현황	305
[표 42] 연도별 계간지 「언론중재」의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307
[표 43] 연도별 이용만족도조사 현황	324
[표 44] 2010년도 해외언론법제 연구용역 현황	328
[표 45] 자료실 도서 보유 현황	331
[표 46] 상담신청 유형	338
[표 47] 상담 처리결과	339
[표 48] 상담피해 유형	341
[표 49] 상담매체 유형	344
[표 50] 상담 신청인 유형	346
[표 51] 상담내용 유형	348
[표 52] 연도별 교육 현황	356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0th Anniversary

01

언론중재위원회 30년

제1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와 발전

제3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현황



제1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I.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위원회 창립 헌판식(1981년)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거, 1981년 3월 31일 설립됐다.

「언론기본법」은 제50조 제1항에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동법 제49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통신·방송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갖게 됐다. 법에서 규정한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대법원은 법문의 표현과는 달리 반론보도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¹⁾ 중재위원회는 또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직권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법 제50조 제8항).

새로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해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²⁾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중재부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기일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타협에 의해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중재결과 당사자 쌍방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론중재라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언론과 개인간 법익의 충돌을 적절히 중재하여,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균형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법정 투쟁을 통하지 않고도 언론 관련 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분쟁 당사자는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expense), 수개월에서 몇 년이라는 기간의 지연(delay), '전부 아니면 전부' 식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stress)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2) 「언론기본법」에 의한 '중재'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유 의미의 '중재'가 도입되기까지 언론중재라고 표현된 용어는 실제 언론조정을 뜻한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배경

근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천부적인 기본권으로서 여타 모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권리로 보호받게 됐다. 반면, 개인의 인권도 기본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언론은 감시와 비판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도사항에 관련된 인격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언론은 광범위한 전파성을 지니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의 경우 당사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고 언론 자유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은 주로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를 내세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언론 옴부즈맨 제도나, 언론윤리위원회 또는 신문평의회 등과 같은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침해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언론자율규제기구는 1957년 전국의 일간신문과 통신사의 편집인들로 구성되었던 한국신문편집인협회였으나 상징적 윤리강령만 있었을 뿐 현실적 통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1961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언론 침해에 의한 피해자가 신문윤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개념이 진일보하게 됐다. 특히 1964년 신문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강화했을 때에는 일반의 기대도 커져 1965년에는 36건의 진정이 있었으나 해가 갈수록 제소건수가 줄어들다가 1978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진정도 없었다. 이는 윤리위

원회의 설립 취지가 매우 이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규제가 되지 않는 자율규제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³⁾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침해에 대한 신속·적절한 구제책의 강구는 언론계의 큰 과제로 대두됐다.

언론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언론환경 하에서 1980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에는 언론의 책임과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강조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제5공화국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 또는 프랑스의 응답권(droit de réponse)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양자간의 마찰을 조정하여 언론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은 언론중재제도 도입 이전에도 민·형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고, 따라서 소송에 의한 법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3심을 거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보통 2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고, 승소하여 정정보도가 게재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실정법에 의한 구제나 언론의 자율에 의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미흡한 자율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면서 ① 언론사에 대해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③ 중

3) 정진석(1991).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11권 1호, 11면.

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중재 불성립 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⑥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법원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구제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했다.⁴⁾

4) 한동원(1996). 중재제도 운영 15년, 회고와 과제. 『언론중재』, 제16권 1호, 6~7면.

Ⅲ. 반론권 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⁵⁾

언론보도에 의한 잘못을 시정하고 언론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의 오류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은 프랑스가 최초다.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후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의해 언론에 대한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은 무절제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도구로 남용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의회는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1799년에 베를리에(Berlier)는 비방적인 기사에 대한 형사상 처벌규정 및 민사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이던 뉘로르(Dulaure)가 신문에 의해 자신의 명성을 침해받은 자에게 개인적 권리로서 ‘반론권’(droit de réponse)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뉘로르는 그 제안의 이론적 근거로 첫째, 언론에 대한 개인의 보호, 둘째,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로부터의 독자의 보호, 셋째,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과 관계된 개인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그리고 끝으로 형사상 소추에 의한 해결의 불충분성을 들고 있었다. 이 제안은 당시 부결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이같은 시도가 오늘날 반론권 제도의 시초가 됐다.

그 후 1811년의 프랑스 형법은 언어 또는 서면에 의한 비방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1819년의 언론법은 관청에 한하여 정정강제의 규정을 두게 됐다. 이렇게 되자 언론의 횡포가 심하게 되어 1822년에 국회의원인 메스타디에(Mestadier)가 신문이 개인의 가정이나 사적인 사항에 대해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

5) 양삼승(1982). 정정보도청구권,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제2권 4호, 11~12면, 성낙인(2002).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제23권 2호, 5~8면, 한국언론재단(2003). 세계의 언론법제 중 ‘주요국의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제도’ 참고 인용

역시 통과되지 못하자 메스타디에는 뢰로르가 제안했던 반론권 제도를 다시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1822년의 언론법 제11조에 반론권이 처음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 언론법에 규정된 반론권 제도는 당초 뢰로르가 제안했던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져 명예훼손적인 기사뿐만 아니라 신문에 언급된 누구나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비평에 대하여도 인정했다. 이 반론권은 1881년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계수됐고, 동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보완과 개정을 거쳤으며, 1993년 1월 4일에 개정된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시청각(audiovisuel) 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규정이 없었으나, 1959년~1960년 국민의 회의 특별회기에 에르상(Hersant)의원 법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1972년 7월 3일 법률에서 「라디오-텔레비전의 개혁법률」을 통하여 최초로 반론권이 도입됐다. 시청각통신(communication audiovisuel) 전체에 관한 반론권은 1982년 7월 29일 「시청각통신에 관한 법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정됐고, 1986년 개정된 법률은 1989년 1월 17일, 1992년 1월 18일, 1994년 2월 1일 재개정됐다.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은 이와 같이 정기간 행물에서 출발하여 라디오·텔레비전을 거쳐 오늘날 시청각통신매체 전체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은 1822년 프랑스에서 처음 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오늘날 유럽은 물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입법화됐다.

독일의 반론권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州)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1931년 12월 28일 독일 바덴(Baden)주는 언론법 제10조에 의해 정정강제제도를 도입했다. 1949년 바이에른(Bayern)주에서 출판법에 반론권제도를 도입한 이래, 1958년 헤센(Hessen)주 자유법과 출판법, 1964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제정된 각 주의 출판법에서 반론권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독일의 16개 주 언론법들은 언론의 오보·왜곡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론권 제도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법원이 피해자의 반론보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언론은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줄 의무

를 지게 된다.

프랑스가 처음 도입한 반론권 제도는 다른 나라에 전파되면서 조금씩 변형되었는데,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형은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논평·비판 등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나라들로는 벨기에(1831년의 언론법 제13조), 이탈리아(1948년의 언론법 제8조), 스페인(1879년의 언론법), 멕시코(1917년의 언론법 제27조), 콜롬비아 및 스위스의 테신(Tessin) 및 와트(Waadt)주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형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나라로는 오스트리아(1952년 5월 7일의 언론법 제23조), 노르웨이(1902년의 형법 제40조), 스위스의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및 그라우뷘덴(Graubünden)주, 그리고 그리스를 들 수 있다.

개인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적 법익침해에 대하여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반론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자율규제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두어 최소한의 언론규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만 1911년에 프랑스형의 반론권(right of reply)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는, 프랑스 법을 모범으로 하여 메이지(明治) 6년(1873)의 신문지발행조목 제16조에서 반론권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2차 대전 후의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출판통제법제의 철폐와 함께 일괄 폐지됐다. 일본은 신문 편집면에 있어 서구 신문들과는 그 뉴스량이나 길이·제작과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프랑스처럼 원문보다 2배나 되는 반론의 게재를 허용할 경우 신문

지면이 언제나 반론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신문에 대한 반론권의 법제화에 많은 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의 경우 현행 「방송법」에 반론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방송사업자가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이 있는 지 2주일 이내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방송을 한 사항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을 때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시설과 동등한 방송시설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의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형의 반론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출판법 제11조에 규정된 반론권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기본법」이 채택한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 때문에 법률 시행 초기에는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를 정정권 또는 정오권과 혼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은 1986년 1월 28일 대법원 판결(85다카1973)에 따라 해소됐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원보도의 오보나 허보 여부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권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요지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와 발전

I. 위원회의 출범과 운영의 근간 형성(1981년)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서 중재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문화공보부 이광표 장관은 문화공보부 회의실에서 39명의 중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1981년 창립총회, 한국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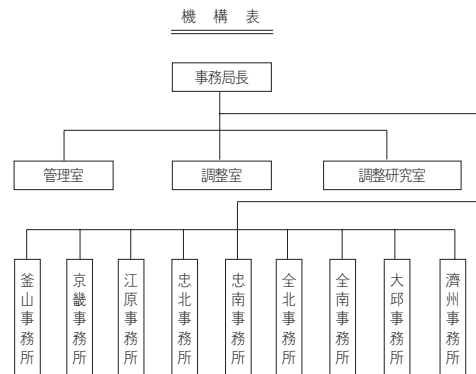
이날 열린 중재위원 총회에서 안우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강주진 방송심의위원장, 고창현 조선대 법대학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사무국장에 한동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을 임명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규정 제정을 서울 중재위원 12명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1981년 4월 29일 위원회는 서울 중구 의주로1가 백초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 문태갑 한국신문협회장, 이원홍 한국방송협회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어 7월 8일 부산중재부를 시작으로 7월 10일 전남, 7월 13일 강원, 7월 14일 충남, 7월 15일 충북, 7월 18일 경기, 7월 20일 대구, 7월 21일 전북, 8월 1일 제주까지 각 지역중재부의 현판식이 거행됐으며, 이로써 서울 4개 중재부와 지방법원 관할 구역단위로 각 도에 1개 중재부씩 9개 지역중재부로 이루어진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과 전국 9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된 사무국의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을 중재부장으로 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설립 당시의 중재부별 관할구역을 보면, 서울중재부에서 한강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하도록 하여 신청인, 피신청인이 중재제도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名 称	所在地	數	官 轄 區 域
서울 仲裁部	서울 特別市	4	서울 特別市, 議政府市, 楊州郡, 南陽州郡, 坡州郡, 漣川郡, 抱川郡, 加平郡, 高陽郡, 鐵原郡
釜山 仲裁部	釜山 市	1	釜山直轄市, 慶尙南道
京畿 仲裁部	水原 市	1	議政府市, 楊州郡, 南陽州郡, 坡州郡, 漣川郡, 抱川郡, 加平郡, 高陽郡을 제외한 京畿道
江原 仲裁部	春川 市	1	鐵原郡을 제외한 江原道
忠北 仲裁部	清州 市	1	忠清北道
忠南 仲裁部	大田 市	1	忠清南道
全北 仲裁部	全州 市	1	全羅北道
全南 仲裁部	光州 市	1	全羅南道
慶北 仲裁部	大邱 市	1	慶尙北道
濟州 仲裁部	濟州 市	1	濟州道

중재부의 명칭 및 관할구역(1981)



사무처 기구표(1981)

한편, 경남중재부는 1984년 3월 2일에 신설되었고, 경남 마산시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부산중재부 관할인 부산직할시, 김해시, 김해군,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나머지 지역을 관할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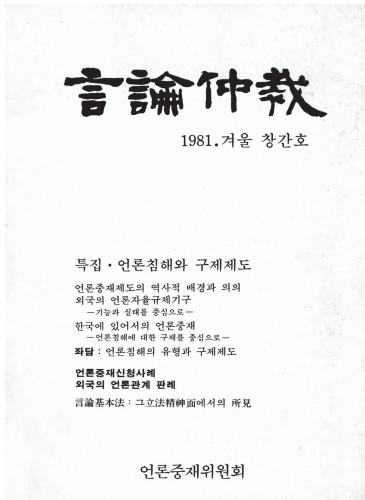
위원회는 1981년 4월 8일 신문회관에서 서울중재부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박영준 공인회계사와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직제 및 보수규칙 등은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함에 따라 4월 20일에 소위원회를 열어 사무국 직제세칙과 보수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6월 21일에는 문화공보부와 협의를 마치고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6월 29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중재위원 수당지급규칙과 인사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운영규칙·언론중재규칙·인사사무규칙 등을 개정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규칙의 준비를 마쳤다.



동아일보 1981. 5. 9.자 11면

5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이후 첫 언론중재 신청이 이루어졌다. ○○역사학회 대표 황○○ 씨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사건이었다. 위 3개 신문은 1981년 4월에 고려대학교 영토문제 연구실 발족기념 학술기념회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강연내용을 발췌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 중 서양인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연도 및 발견자가 잘못 기재되었으며, 발표논문의 내용 상당 부분이 자신의 저작을 인용한 것으로 그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2일 열린 중재심리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전부 취하함으로써 사상 첫 언론중재 사건은 취하로 종결됐다.

9월 21일에는 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침해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을 제정하여, 언론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회지 언론중재 창간호(1981)

위원회의 첫 발간물인 회지 「언론중재」 창간호가 11월 15일 발간됐다. 위원회 현판식 화보와 출범 첫 해의 주요 일정 및 ‘언론침해와 구제제도’라는 주제의 특집 기사가 실렸다. 언론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란다’는 기고를 통해 처음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지향점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바람 등을 밝힌 글도 실렸다.

이후 「언론중재」는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적 정신을 살리고 좀 더 나은 중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언론침해 구제제도, 초상권, 피의사실 공표죄, 언론의 법적 책임과 면책 등에 관한 특집을 기획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을 소개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민·형사상의 국내외 판례, 외국 신문평의회 결정 사례 및 언론법제와 관련된 해외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정착과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출범한 첫 해, 4월 29일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접수처리한 사건은 총 44건이었으며, 그 중 9건에 대해 조정이 성공됐다. 이는 출범 첫 해 언론중재제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불출석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거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것이다.

Ⅱ. 언론중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1982년~1987년)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언론기본법」 체제가 이어진 1987년 말까지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매년 40~70여 건의 중재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중재건수	44	50	71	54	59	49	47

언론중재제도의 이용이 이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와 신청절차를 몰라 언론사에 피해회복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이라는 배경 때문에 언론과 피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언론중재제도를 관권이 개입된 언론통제기구 또는 언론규제기구로 생각하여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 시기동안 처리된 사건이 374건으로 연평균 53건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언론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는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인 것까지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제도가 사후구제는 물론 권리 침해의 사전예방적 효과까지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언론이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의 조화점을 찾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2년 창립 1주년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가 1982년 3월 30일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이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렸으며, 1983년 5월 12일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주제로 대전 지역에서 지방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후 위원회는 지방토론회와 정기세미나 그리고 언론학회, 변호사협회 등과의 연합심포지엄 등을 연례행사로 꾸준히 개최하여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키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당시까지 언론과 국민의 권익 사이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자 1982년 12월 30일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과 1990년 12월 30일 「외국신문평의회사례집」을 발간했다. 1983년 12월 30일에는 1981년 업무개시 이후 1982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사례를 모아 「언론중재사례집」 제1집을 발간했다. 이후 매년 「언론관계판결집」,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등을 발행함으로써 언론과 수용자 간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선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언론 현장의 지침서로서, 또한 언론법제와 관련된 학문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전문 자료의 축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큰 성과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겠다.



프레스센터 전경

이렇듯 위원회는 출범 초기에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강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권의 보호에 매진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중재제도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폭넓게 알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5년 4월 6일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에 지상 20층의 프레스센터가 개관됐다. 모든 언론단체가 프레스센터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4월 21일 위원회는 서대문 의주로에 있던 사무국을 프레스센터 15층으로 이전했다. 위원회가 서울의 중심인 태평로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국민들이 보다 위원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Ⅲ. 언론중재제도의 재탄생과 기반의 확충(1988년~1995년)

1. 「언론기본법」의 폐지

1980년대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권과 명예를 중요시하게 되는 언론환경의 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즉, 권리 침해를 당한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권리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신장함과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서로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역할을 했다. 중재제도는 언론자유와 책임간의 조화를 구현하는 구체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근거법률인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에 비해서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1987년 폐지됐다. 언론중재제도는 근거법률인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으로써 제도의 근간이 위태로워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은 중재위원회가 순수한 자율기구가 아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기구이고, 위원들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언론통제 의도가 작용할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언론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겨 두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신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와 일방적 보도 등에 대해 당사자의 반론을 보도하게 하는 제도로 언론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언론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언론자유 신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된 사건들을 어떠한 외부압력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긴 소송기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직·간접적 압력 등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도 했다.

위원회는 언론계 일부의 언론중재제도 불용론에 대응해 언론으로부터 권리 침해 받은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언론사가 사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것을 각종 연구와 실제 중재사례 등을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다.

- ① 사전심사나 규제제도가 아니며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피해자 구제장치이다.
- ② 사법적 해결에 앞선 전치제도로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쌍방 간에 유익하다.
- ③ 사법적 해결에 의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역시 쌍방 간에 유익하다.
- ④ 사법적인 구제는 3심 제도를 감안할 때 1년 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하므로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없다.
- 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언론중재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언론침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 ⑥ 앞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자유화되면 매체수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 ⑦ 공식·비공식석상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⑧ 지난 수년 동안 지방의 10개 중재부에서 20회에 가까운 토론회를 가진 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된 기능을 요구하고 있었다.

- ⑨ 선진 외국에서도 민·형사상 구제 외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⁶⁾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언론중재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발전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존립가치가 크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언론기본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 존속하게 됐다.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제정



법률 제3979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신문 등 활자매체와 전파매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언론기본법」 체제에서 매체별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으로 나누어 제정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에 관한 것은 정간물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송법」에서는 정간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게 됐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과 예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변화 없이 채택됐다.

6) 언론중재위원회(1987). 사례를 통해 본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언론중재』, 제7권 3호, 15면.

정간물법은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추후보도청구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됐으나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여 당사자의 출석의무 조항을 두었다.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언론기본법」 시행령에 있던 증거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언론중재 절차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중재부는 종전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5인으로 늘려 중재부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고 신중한 절차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8년 9월 1일 증원된 중재위원과 결원된 위원에 대한 위원 위촉이 이루어져 기존 42인의 중재위원 규모가 총 70인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했다.

한편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어 1992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제45조에서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했다. 정정보도청구 분쟁의 중재와 절차,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은 정간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으로 분산 규정되게 되어,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데도 불편을 겪는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단일 법률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3. 정정보도청구권의 반론권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언론기본법」에 이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채택한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1986년 1월 28일 대법원 85다카1973 판결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1989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일보는 1989년 7월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보도기관의 귀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당해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헌법체계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요내용인 보도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평등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한편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정정보도의 본질 및 내용은 이른바 피해자의 ‘반론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원의 실무관행도 ‘정정보도문’이라는 표제 아래 반박문의 게재를 명하여 마치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례성 및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으로 족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며, 불복수단마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1년 9월 16일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

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이 ‘반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언론보장의 기능을 하는 제도로 명확히 규정되게 됐다.

4. 언론중재 기능의 활성화

정간물법 제정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이 대폭 완화되자 1988년에 접어들면서 각종 매체가 급증하는 등 언론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체급증은 매체간의 과당경쟁과 자질이 부족한 기자의 양산까지 수반하여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선정적인 보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언론중재제도 시행 이후 1988년까지 연평균 53.6건으로 저조하던 중재신청이 1989년부터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했다. 1988년까지 중재신청이 적었던 것은 1980년의 언론통폐합에 의해 전국적으로 매체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언론중재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부족했던 데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1989년부터 중재신청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1989년도 121건을 기록하여 연간 신청처리건수 100건을 돌파하였고, 1991년도 220건, 1992년도 381건, 1993년도 423건,

1994년도 541건을 기록하는 등 신청건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중재건수	55	121	159	220	381	423	541	528

이러한 증가세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987년 6·29선언 이후 신문과 잡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매체의 수적 증가는 일부 언론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 침해사례도 비례해서 늘어났다. 둘째, 언론중재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 홍보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경우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으려는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언론중재신청사건의 증가와 함께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198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0건 미만이던 정정보도심판 청구가 1990년도 12건, 1992년도 33건, 1993년도 20건, 1994년도 30건, 1995년도에 50건을 기록하는 등 언론보도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5. 시정권고 본격화

「언론기본법」 하에서도 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이 규정되어 있었고 1981년 11월 30일 언론의 법익침해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이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정권고 건수는 1983년도 3건, 1986년도 3건, 1987년도 6건으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 제정된 정간물법에 시정권고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령에 시정권고소위원회 구성요건이 명문화되면서 198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기사에 대해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그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현저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침해」 12개항, 「사회질서 침해」 4개항,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6개항 등 3개의 큰 항목에 22개항으로 세분화한 새로운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시정권고는 1987년도 6건에서 1988년도에는 6배에 이르는 37건, 1989년도에는 전년 대비 5배에 가까운 180건, 1990년도 311건, 1991년도 264건, 1992년도 390건을 기록하였으나 1993년도부터는 344건, 204건(1994년도), 282건(1995년도)으로 1992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이 무심코 실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던 침해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시정권고를 받는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6.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언론중재제도 시행 이후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를 이유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1988년까지는 연 평균 55건 내외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언론중재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재위원회와 중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중재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문제는 제도이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 서정우 교수)에 의뢰하여 실시한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결과, 신청인 중 중재신청 전 중재위원회를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61.8%,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는 36.7%, 추후보도청구권의 경우는 더욱 낮아 16.9%에 불과하여 대국민 홍보의 강화 방안이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들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원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88년 8월 31일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 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을 통해 배포하고, 1989년부터는 일간신문에 언론중재절차를 안내하는 돌출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위원회와 중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연합광고주식회사가 1991년 상반기에 신청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위원회의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는 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8.2%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1991년도 위원회 최초 TV광고

이에 1991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연합광고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실시했다. 이 광고에는 이혜복 전 부위원장이 심리실을 배경으로 등장해 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신뢰감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광고 이후 이듬해

인 1992년 2월 실시한 인지도조사에서는 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8%까지 급상승하는 결과⁷⁾가 나왔다. 1992년에는 중재위원들이 참여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은 1989년도 언론중재신청이 연간 100건을 넘어 121건을 기록한 이후, 1991년도에는 220건, 1994년도에는 연간 541건의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후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1994년 ‘병아리’ 편 1995년 ‘금붕어’ 편, 1996년 ‘얼룩말’ 편을 제작했다. 이 중 ‘병아리’ 편은 1994년 대한민국광고대상 공익 광고(TV) 부문 장려상을, ‘얼룩말’ 편은 1997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7) 언론중재위원회(1992), 199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광고효과 조사, 『언론중재』 제12권 1호 62~70면.

7.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증대 필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언론중재신청이 급증하는 등 언론중재제도가 크게 발전되고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의 평균 중재합의율은 25.8%로 총 2,802건의 중재신청 중 722건만이 합의로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중재신청의 절반 정도인 50.1%에 불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성립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분쟁해결 방법이 없었다. 이에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언론중재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직권중재결정권 도입의 필요성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8.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1987년 11월 28일 새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기본법」 폐지에 주요 목적이 있었을 뿐, 발전적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정간물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989년 8월부터 12월까지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과 한국언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중재제도운용에 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여 중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 서정우 교수)에 의해 행해졌다.

연구결과 중재신청인의 75.6%가 일방적 편파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2.0%가 중재신청 전에 언론사에 항의하였으나 언론사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를 회피하였고, 중재과정에 임하는 언론사의 태도 또한 소극적이라는 응답은 64.2%에 달했다. 또한 중재과정에서 언론사측이 신청인에게 회유를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이 84.5%로 나타나 언론의 보도행태와 피해구제에 대한 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언론중재위원의 중재태도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68.7%에 달하였지만, 56%가 중재위원의 중재권한이 미약하다고 평가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신청인 100%, 전문가집단도 81.1%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문제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신청인이 95.1%, 전문가집단이 60%의 찬성을 보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⁸⁾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1989년 12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주제발표자 :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이어 1991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주제발표자 : 박용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소 : 설악파크호텔), 1992년 8월 26일에는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주제발표자 :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93년에는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박용상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에게 의뢰, 연구자들로부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

8) 언론중재위원회(1998),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보고서

를 개정안' 과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단일 법안' 을 제출받았다. 연구자들은 위원회 관계자들과 3회에 걸쳐 축조심의회의를 열어 법률 조문을 검토 확정했다.

단일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에 흩어져 있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을 망라하여 규율하는 통일적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단일법의 명칭은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 로 정하고,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권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1993년 11월 9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언론학 교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개선안의 핵심적 내용은 언론중재의 대상을 '반론권' 외에 '정정보도청구권' 으로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되어 있던 반론보도청구권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직권중재결정권을 도입하고, 중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청기간 경과로 인해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재신청 기간을 보도가 있는 후 1월 이내에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그 공표가 행해진 후 3월이 지나면 위 권리는 소멸된다)로 연장하도록 했다.

Ⅳ. 언론중재제도의 강화와 발전(1996년~2004년)

1. 직권중재결정권의 도입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중재대상화

반론권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명칭의 개정 및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위상 및 기능 강화에 대한 지속적 요청과 이에 대한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995년 12월 30일 직권중재결정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개정법은 1996년 7월 1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반론 보도청구권’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불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본래의 정정보도청구와의 혼동을 시정했다.

둘째, 중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직권중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권 결정 도입 전에는 중재결과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직권중재결정권의 도입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부는 직권으로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직권중재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만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셋째, ‘반론보도청구’ 외에 ‘정정보도청구’도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치절차로서 중재

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중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하더라도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넷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범위를 확대했다.

다섯째, 중재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분쟁이 된 공표가 있는 후 1월 이내로 되어 있던 중재신청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로 개정했다. 이로써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중재신청을 아예 할 수 없어 권익구제의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도가 있는 후 6월이 지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언론이 지나친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중재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중재위원 숫자를 40인 이상 7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1996년 7월 1일에는 서울 제5중재부가 신설됐다.

2. 언론중재신청의 급증과 조정성공률의 증가

1989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하던 중재신청 건수가 1994년도와 1995년도에는 500건을 넘어 541건과 528건을 기록하였고, 개정 정간물법이 시행된 첫해인 1996년도에는 556건이었으며, 1998년도에는 602건을 기록하여 600건을 돌파했다. 중재신청 사건수는 1997년도와 2000년도, 월드컵과 대선이 치러진 2002년도에만 전년 대비 약간의 감소를 기록하였을 뿐, 2003년도 724건, 2004년도 759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재건수	556	490	602	641	607	659	511	724	759

중재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요건 완화와 종합유선방송(CATV)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한 매체의 급증 ② 매체 간 경쟁 격화로 인한 선정적 기사의 증가 ③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 ④ 민주화 이후 고양된 국민들의 권리의식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론중재를 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한 사건의 비율로 표시한 조정성공률은 1981년도 42.9%로 시작하여 직권중재결정이 도입되어 시행된 첫해인 1996년도까지 주로 40% 내지 50%대를 기록했다. 직권중재결정권이 본격 시행된 이후 조정성공률은 1997년도에는 67.1%를 기록하였고, 1998년도에는 69.2%, 1999년도에는 68.0%를 나타낸 후 2003년도에는 72.2%를 기록하는 등 조정성공률은 대폭 상승했다.

1997년 이후 조정성공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199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정간물법에 도입된 중재결정 제도의 영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의 사건에 대해,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정간물법 제 18조 제6항). 시행 첫 해인 1996년 하반기 6개월 동안 9건의 중재결정이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재결정 건수는 많아지고 동의율도 점차 높아져 중재결정권 제도가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중재결정 건수는 1997년도 이후 2003년도까지 20~30건 정도였으나 2004년도에는 68건으로 늘어났고 동의 건수도 46건으로 동의율이 67.6%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들이 종전에 합의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으로 마무리되었던 유형의 사건들도 중재결정으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정성공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개선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적극화되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의 1차적 해결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언론사의 참여와 대응이 눈에 띄게 적극적이 됐다.

그리고 그 동안 제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권위 또는 체면을 의식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외면하던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무원, 나아가 정당 대표, 현직 대통령, 심지어는 언론사까지 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누구나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민 곁에 다가간 노력의 결과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의하여 강화된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중재신청 건수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 제기되는 반론보도청구 소송 등 언론 관련 소송도 대폭 증가하게 됐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면서 법원이 명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기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게 됐고, 보도 전에 대립되는 당사자의 반대 의견이나 반론을 최대한 반영하거나 당사자의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스스로 취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언론에서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할 만했다.⁹⁾

9) 양경승(2001).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제21권 1호 12면.

3.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도의 도입

이 같은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1997년 11월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동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1999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저해요인들을 근절시키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000년 2월 8일 가결, 2월 15일 공포됐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판식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해서는 선거방송에 대해 시행되어 오던 것을 정기간행물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내용

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2000년 2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경고 58건, 주의 35건, 기각 1건 등 총 94건을 심의결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4. 언론중재위원회, 성년으로 성장



2001년 창립 20주년 기념식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01년 3월 31일 중재위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위원회는 1981년 창립 당시 ‘언론중재’라는 용어는 물론 언론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여서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언론규제기구가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년 동안 위원회가 철저

히 공정성을 지키면서 언론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언론중재제도가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굳게 뿌리내리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출범 초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재기능을 더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올 만큼 신뢰성도 인정받게 되는 인식의 변화도 겪게 됐다.

20년 동안 위원회에 신청된 중재 사건수는 총 5,698건으로, 신청된 사건 중 평균 57% 정도 조정이 성공하는 등 질과 양에서 모두 큰 성과를 내었으며, 언론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총 3,625건의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2001년 3월 30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성년으로 성장한 위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언론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5. 언론피해구제 관련 종합적 법률상담과 교육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의 정기간행물이나 방송과 같은 전형적 언론매체 외에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신문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언론이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발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언론의 등장으로 피해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과 법적 절차 안내 등에 대해 이전보다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언론수용자의 요구가 점차 생겨나게 됐다. 무엇보다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부터 언론중재 신청, 피해구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됐다.

이에 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출범시켜 언론보도 관련 종합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언론인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2004년 4월 1일, 위원회는 프레스센터 15층에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상담센터는 변호사 2명을 포함 모두 8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전화, 방문, 이메일, 인터넷 실시간 상담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면서 위원회의 업무뿐만 아니라, 피해유형에 따라 적절한 타 기관을 안내하거나 위원회의 피해구제 절차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분쟁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기관,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

론피해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강연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상담센터 출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법원·검찰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언론사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언론보도 피해 이렇게 해결하세요」라는 홍보책자는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의 상담에서부터 중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리플릿에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소개 및 상담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2004년 4월 1일에 출범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¹⁰⁾는 9개월 동안 총 1,816건을 상담하여, 중재신청 및 언론피해 구제 관련 법적 절차를 안내하였고, 이후 2005년도 2,353건 등 매년 2,000~3,000건 이상의 무료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고등학생 인터넷실 수료 후 기념촬영

한편, 2004년 9개월 동안 44회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 교육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연간 100회를 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도 127회, 2010년도 134회, 2011년도 163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론인에게는 언론피해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위원회 홍보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여름방학부터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와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와 법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2009년 사무처 조직개편으로 명칭은 없어졌으나, 법무상담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업무는 계속 실시중임

6.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법제화 노력

반론권제도인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사회에 훌륭하게 정착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간 언론 내외의 환경변화와 장래에 예상되는 변화에 비추어 보건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다. 무엇보다 그동안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언론보도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게 됐고, 언론보도 역시 상품인 이상 하자가 없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한 시각에서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로 대변되는 언론 책임법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¹¹⁾

첫째, 관련 법령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구제수단 별로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별로 다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절차의 확실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둘째, 언론분쟁을 일회적·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재절차는 전심절차의 한계 상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 내에서 종국적·일회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정정·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재절차는 궁극적으로 소송의 전심절차 기능을 가지므로 소송절차와 유기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직권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기만 하면 효력을 잃고 피해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므로 절차의 번잡과 제소기간의 도과로 피해구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재절차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함이 있다.

11) 양경승(2001).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제21권 1호 13면.

따라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정정·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언론분쟁을 종합적·일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위원회의 중립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1992년에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을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였고, 1993년에는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1998년 4월에는 양경승 제주지법 판사에게 의뢰하여 전문 45개조로 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마련하였고,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피해구제」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경승 판사가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취지를 발표했다.

또한 2000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송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는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를, 양삼승 변호사가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내용은 첫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의 도입과 손해배상청구의 조정대상화, 직권조정에 이의신청 시 자동소제기 간주 등을 통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고양, 둘째, 「민법」, 「정간물법」, 「방송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을 단일화하는 등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통합을 통한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 확보, 셋째,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매체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율 등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일련의 학술적 논의와 언론계, 법조계,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조심의위원회의 축조심의를 거쳐 2002년 10월 국회와 각 정당에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배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2002년 2월 8일 국회의원 27인(대표발의 심재권 의원)의 발의로 정간물법 개정 법률안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3년 5월 29일에는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주최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배기선, 장소 : 문화관광위 대회의실)가 개최됐다.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① 온라인신문을 정간물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 대상으로 하였고, ② 위법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③ 정정보도청구사건도 반론보도청구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단일법제화 노력과는 별도로 정간물법을 개정하여 언론중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게 됐다.

2003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한 2003년도 정기세미나에서는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대주제하에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가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전국 언론사 소속 현업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써 지지부진한 정간물법 개정 또는 언론피해구제 단일법 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간물법 개정은 언론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다른 언론 관련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제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무산되고 말았다.

V. 대표적 ADR 기관으로서 위상 정립(2005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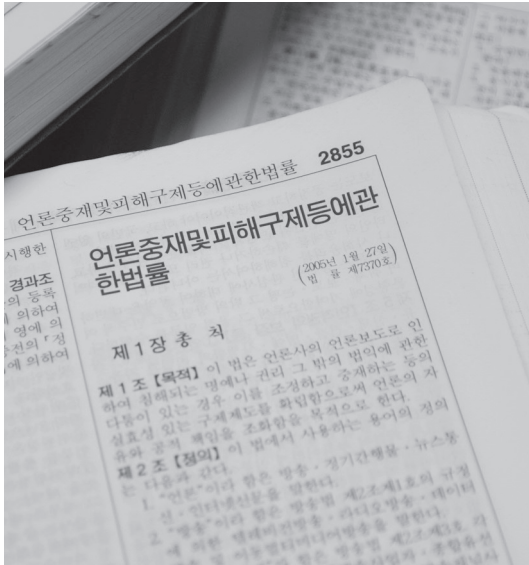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4년 제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위원회가 마련하여 배포한 ‘언론피해구제법(가칭)’안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법률안이 발의됐고,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각종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을 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국회에서는 정간물법 개정안과 언론피해구제 관련 단일법안이 동시에 여러건 발의되어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열린우리당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발의)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문병호 의원 발의) 및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김재홍 의원 발의)을, 한나라당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고흥길 의원 발의)과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발의)을, 민주노동당이 ‘언론피해구제법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하였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단체와 각 정당의 안을 조금씩 가미하여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5년 1월 1일 의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돼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법적으로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법률 제7370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했다. ▲신청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외에 인터넷신문으로까지 조정(중재)대상매체를 확대했으며,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함으로써 종전보다 2개월 연장했다. ▲반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시정권고는 그 대상을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서 방송, 인터넷신문까지 포함시켰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정권고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중재위원 정원을 종전의 최대 8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늘렸으며, 위원회의 운영재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명문화했다.

이로써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조정·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신문까지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언론피해를 종합적 일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일찍이 1992년부터 언론중재 관련 단일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13년간에 걸친 준비와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2005년 1월 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5년 7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됐다. 그러나 이 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인 2005년 2월 16일 정○○·강○○(2005헌마165)이, 3월 14일에는 동아일보사·조○○·유○○(2005헌마314)이, 6월 9일에는 조선일보사·방○○·이○○(2005헌마555) 등이, 법률이 시행된 후인 8월 26일에는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사(2005헌마807)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총 4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2005년 7월 26일 조선일보 A1면에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라는 제목하에 도청테이프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라는 조정신청(05서울조정3)을 했다. 이 조정신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 국가정보원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신청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05카기8341). 조선일보사는 위 사건의 계속 중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05카기11309),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1월 19일 신청대상조항 중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등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06헌가3)했다.

언론이 언론중재법의 위헌을 주장한 주된 이유는 보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자신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2006. 6. 29.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소원 심리에 대비하여 양재규 변호사(당시 법무상담팀장), 이주관 변호사(당시 조정2팀장)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변론을 준비했다. 4월 6일 열린 첫 공개변론은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의 위헌 찬반 공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듯 많은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시정권고와 관련한 청구인 측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¹²⁾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즉,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이상 정정보도청구 시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①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이 필요하고,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를 구제하

결국, 이 사건 재판은 4건의 헌법소원사건과 1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됐고, 2006년 2월 위원회는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4월 6일과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으로 진행된

12)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는 데 충분하지 못한 점, ②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③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하고 있고, 제소기간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의 방법도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로 보도문을 내도록 하여 원래의 보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다(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제6항)는 점 등에 비추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제31조 후문은 제1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사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 전의 언론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 이를 소급하여 언론사에게 정정보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에 대한 위헌 논의는 종지부를 찍게 됐고, 다만 그 운영 절차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언론중재법을 부분적으로 개

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됐다.

한편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관한 규정(언론중재법 제 32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현재는 이에 대해 “시정권고제도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며, 시정권고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고 그 각하 이유를 밝혔다.

3. 포털·언론사닷컴·IPTV의 언론조정·중재 대상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종결되었으나 이후,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즉,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언론보도를 매개함으로써 영향력과 비중이 급격히 커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의 전파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새로운 언론피해의 양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포털 등의 매체 또한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 이래 위원회는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들 매체도 조정·중재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개정 논의에 참여,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정 법률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끊임없이 협의했다.

제18대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 2월 6일 공포하여, 2009년 8월 7일 시행되기 이르렀다.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국회 본회의장)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는 기존의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를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로 수정함으로써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을 전통적인 ‘언론사’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중개 또는 매개하는 매체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포털 등이 매개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게재하도록 하였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한 조항은 삭제했다. 한편, 위헌결정이 내려진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재판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 게시물에 대해서도 언론조

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4. 조정신청의 급증과 조정성공률의 상승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되어 법 적용 첫 해인 2005년도는 실제 법 적용 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하였음에도 조정·중재 신청이 전년인 2004년도보다 16.3% 늘어난 883건을 기록하여 위원회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사건수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2006년도에 1,087건을 접수·처리하여 1,000건을 돌파하면서 새로이 경신되었고,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9년도에는 1,573건, 2010년도에는 2,205건, 2011년도에는 2,124건을 접수·처리했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정건수	883	1,087	1,043	954	1,573	2,205	2,124

이는 언론중재법 시행과 더불어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것과, 인터넷신문이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이 외에 조정 신청 기간이 늘어나고, 인터넷 및 구술 접수 등 신청절차가 간편해진 점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국민 일반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요인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언론인과 대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피해예방 교육, 기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이점을 꾸준히 알려온 점도 신청건수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작한 인터넷 접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체 건수 중 인터넷신청(전자민원시스템 언론중재Eye-Net과 이메일 신

청 포함)이 29.8%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37.5%, 2009년도 57.5%, 2010년도 54.6% 2011년도 71.8%로 인터넷 신청이 가장 보편적인 신청방법이 됐다.

조정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건수와 조정성공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건수는 2005년도 141건(언론중재법 시행 후 총 건수의 29.6%)을 시작으로, 2006년도 318건(29.3%), 2007년도 349건(33.5%), 2008년도 324건(34.0%), 2009년도 699건(44.4%), 2010년도 773건(35.1%), 2011년도 804건(37.9%)으로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청구건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조정성공률¹³⁾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도 64.5%, 2006년도 60.3%, 2007년도 62.8%, 2008년도 75.5%, 2009년도에는 역대 최고치인 82.6%, 2010년도에는 79.0%, 2011년에는 70.9%를 기록했다.

언론중재법 시행과 더불어 조정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음은 물론, 조정성공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업무가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2009년에 작성한 포털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포털 관계자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출석의무 간소화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11년 5월 주요 포털 5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정사건을 중재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포털을 대상으로 접수된 언론분쟁 사건의 빠른 진행과 종결을 위해 2011년 2월 1일부로 서울 7개 중재부 중 2개 중재부(서울제3, 4중재부)를 포털사건 전담 중재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접수 후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일반사건에 비해 포털사건은 8

13) 조정성공률은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를 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 결정)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한 수치이다.

일이 소요됨으로써 포털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5. 중재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위원회는 1981년 창립 이후부터 그 명칭 및 절차에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실제 기능은 ‘조정’이었다. 이에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중재신청이 전혀 없었고, 사전에 양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해 2006년도 7건, 2007년도 14건, 2008년도 10건 등 2005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09년도에는 중재처리건수가 1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도 77건, 2011년도 113건을 처리했다.

중재제도는 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이나 시간적 손실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피신청인에게는 조속한 분쟁해결로 보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분쟁해결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중재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향후 중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중재제도를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6. 강화된 시정권고제도

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성폭력 피해자,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목격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사생활침해 내용 ▲마약의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의 상세보도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시정권고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언론중재법은 개인의 법익 침해 사항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언론계 일부에서 시정권고에 대해 위헌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시정권고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에 대한 감시·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임을 확인했다.

언론중재법에서 당사자 및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하여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이익집단의 시정권고 신청 남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제3자 시정권고 신청사건은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시민단체 등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시정권고 신청제도는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해 폐지됐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시정권고 대상 언론매체를 기존의 정기간행물에서 방송과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한 바 있다. 2009년 8월 7일부터는 개정 신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맞는 언론사닷컴도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2011년도까지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¹⁴⁾를 통해 총 6,440건에 달하는 시정권고를 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 대부분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유사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도가 대부분으로 위원회는 심각한 법익침해가 분명한 언론보도에 한해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언론보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해 오고 있다.

연도별로 시정권고 건수를 살펴볼 때, 위원회는 1997년도 469건을 시정권고하여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매년 통상 200~300건의 시정권고를 해오고 있다. 2011년도의 경우 총 746개 매체를 자체 심의하여 426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징적인 것은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009년도 93건에서 2010년도 199건, 2011년도 18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자살관련 보도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며,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자살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망자와 유가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4) 2005년 7월 28일부터 2009년 8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정권고 신청된 총 건수는 180건이며 이 중 49건이 시정권고 의결됨.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한
2010 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자살보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라는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자살보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언론인 대상 교육과 지속적인 시정권고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인터넷신문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고, 2009년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갖춘 언론사닷컴도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된 이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6년도 16건, 2007년도 43건, 2008년도 112건, 2009년도 132건, 2010년도 149건, 2011년도 253건).

2010년 말 기준 인터넷신문 등록 매체수가 2,3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원회는 2011년 3월부터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심의와 시정권고를 하고자 인터넷신문 전담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심의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8월 22일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 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등에도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언론보도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홍보의 다각화

위원회는 언론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대폭 넓힌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달라진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2005년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TV, 신문 등 기존의 주류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날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포털, 인터넷언론, 전광판, 지하철 등 광고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장애인 대상 언론매체에 광고를 집행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홍보책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홍보책자를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해외 한인회, 외국 언론사 등에 배포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2007년에는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관리 업무가 일원화·체계화됨으로써 미디어 퍼블리시티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05년과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작하여 전국 교사에게 배포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완자료에 위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수록되었고, 2007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2011년도에는 초등 6-2 사회교과서, 중3 사회,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 교과서 등 총 4종의 교과서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 자료가 게재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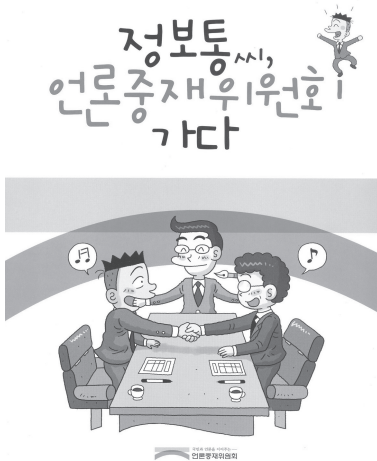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관련 기관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힘쓴다.

헌법재판소: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아 주거나 어떠한 법률 조항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를 재판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생기는 갈등을 해결한다. 그리고 언론 피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 관련 내용이 게재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2011년 9월 발간)



만화 홍보책자


2008년에는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위원회 업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화 홍보책자 「정보통 씨, 언론중재위원회 가다」를 45,000부 발간하여, 서울시 내 초·중·고교 및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 배포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e-book 형태로 게재했다.

유명 만화가 홍승우 화백이 원고를 제작한 만화 홍보책자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피해를 입은 평범한 시민 ‘정보통’ 씨가 위원회의 도움으로 피해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또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 홍보책자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500부를 새롭게 발간하여 해외유관기관 시찰 및 직원 해외실무연수 때 사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을 알리기 위해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잘못된 보도로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을 의심할 뻔 했으나 위원회의 도움으로 신뢰를 회복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제작하여 개정법 시행과 위원회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했다.

또한, 위원회 소식지인 「PAC뉴스」가 일반 국민들에게 위원회를 쉽게 연상시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1월호부터는 제호를 「언론  사람」으로 바꾸고 2010년 3월부터 발행부수를 10,000부로 늘려 본격적인 대외 홍보매체로 거듭나게 됐다.

8.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온라인신청 프로그램과 사건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는 조정신청 당사자가 사건검색창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건번호, 담당중재부, 사건접수일, 당사자명, 심리일정, 처리결과 등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사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실시간상담실을 보완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2009년 8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신문 외 포털,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확대된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련의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이 필요해졌다.

위원회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업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등 4개 부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외부 전용 IDC에 구축하였고, 2011년 1월 1일 정식 오픈했다.

전자민원시스템인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상담과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조정·중재 상담 및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외 사건 처리 진행현황,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오프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 경감, 심리비용 절감, 사건정보 공유 등의 유용한 기능을 통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편리하고 손쉽게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는 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였고 키보드 해킹 방지 솔루션 및 외부 IDC 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웹 방화벽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 사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내부 업무 시스템인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들에게 전자심리 환경 등을 제공하는 중재위원업무시스템 PAC Tribunal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들이 전자문서시스템 PAC광장(그룹웨어시스템)의 전자결재와 연동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과 협업 환경이 마련되어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9. 연구활동 강화

위원회의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를 비롯한 언론법제와 관련한 조사연구사업은 다양한 언론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원회 사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를 축적

하며, 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법령,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이다.

위원회는 조정·중재사례와 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국내외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언론법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언론법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성과가 미미했던 척박한 풍토에서 지금까지 위원회는 반론권제도를 비롯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며, 언론법제 연구의 산실로서 역할해 왔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법익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상응하여 언론학과 법학의 가교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가 1981년 겨울에 창간호를 낸 회지 「언론중재」는 국내 언론법제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저널로 자리매김하며, 2006년 가을호로 통권 100호를 맞았고, 2011년 위원회 창립 3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면서 총 118호가 발간됐다. 「언론중재」는 언론법제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언론조정사례 및 판결을 비롯한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계와 법조계, 언론학과 법학 전공자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언론학자와 법학자, 언론인과 법조계 인사 등 각계에서 「언론중재」에 소개된 많은 논문과 기사를 찾아보며 인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관련 판결문이나 외국의 관련 제도 등 언론법제 분야의 자료를 입수,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연구문헌을 꾸준히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언론법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언론관련 판례 분석 전담팀(조사분석팀)을 신설하였고, 판례분석 자료를 조정·중재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제도 운용을 모색하였으며, 조정·중재사건의 증거조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원회는 1982년, 1987년 각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1, 2집을 발간하였고, 1990년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이후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제15집까지 발간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국내언론관련 판결문이 수록된 판결집과 함께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정·중재 심리절차에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언론인들에게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고 있다.

위원회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언론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법원 언론법연구회와 언론학회, 한국조정학회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다.

한편 위원회는 1996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부터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원회의 장·단기적 정책 수립,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매년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담창구 이용자, 그리고 교육수강자(일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이 조사는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 각계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활동으로서, 반론권제도를 비롯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언론법제 연구의 산실이 되어 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10. 대표적 ADR 기구로서의 위상 공고화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중재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이 주를 이루던 언론매체는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의 분화과정을 이미 경험하였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등의 새로운 유형의 매체가 등장하여 그 지평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급격히 다변화함에 따라 당연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더욱 빈발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같은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언론조정·중재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각국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소송 형태의 분쟁해결 수단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류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상담 및 알선, 조정, 화해, 중재 등의 도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언론분쟁 분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선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선구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써 법원 소송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론조정·중재 제도가 언론분쟁과 관련된 ADR제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¹⁵⁾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

15) 정남철(2010).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 중재제도. 『언론중재』, 제30권 제4호, 9면.

고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DR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계간 「언론중재」 2009년 봄호에 특집논문을 기획 수록하였으며,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국내 ADR 기관 간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조정학회와 공동 개최한 「언론조정 · 중재제도와 ADR기본법 제정방향」세미나

2010년에는 ADR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ADR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를 용역사업으로 선정하고,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 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ADR통일절차법 제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사법사상 최초로 ‘조기조정(Early Mediation) 제도’와 ‘법원연계형 조정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 ADR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자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ADR기본법의 제정방향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연구와 여론 수렴을 통해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ADR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분쟁증가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년간 쌓아온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와 위치의 상향, 중재제도의 활성화, 사건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적 ADR 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증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피해구제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위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언론환경 변화 속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1. 피해구제보도문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개선

1) 법규자문위원회

2009년 6월 29일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발전과 조정·중재 실무의 개선을 위해 서울중재부 중재부장들로 구성된 법규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 1] 법규자문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법규자문위원
2009년 (제1기)	여상원(서울제1중재부장), 이병로(서울제2중재부장), 이민영(서울제3중재부장), 송평근(서울제4중재부장), 변현철(서울제5중재부장), 조원철(서울제6중재부장)
2010년 (제2기)	여상원(서울제1중재부장), 이병로(서울제2중재부장), 강영수(서울제3중재부장), 정준영(서울제4중재부장), 양현주(서울제5중재부장), 조원철(서울제6중재부장), 이림(서울제7중재부장)
2011년 (제3기)	장재윤(서울제1중재부장), 장진훈(서울제2중재부장), 강영수(서울제3중재부장), 임병렬(서울제4중재부장), 최복규(서울제5중재부장), 노정희(서울제6중재부장), 이림(서울제7중재부장)

2009년 처음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3년간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조정·중재 실무 발전방향과 중재제도 활성화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제도 마련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2] 법규자문위원회 활동현황

회의 일시	활동 내용
2009. 6. 29.	- 1기 위원 위촉장 수여 - 법규자문위원회 출범 취지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
2009. 9. 14.	-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조정·중재 실무 발전방향 모색 - 포털사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방식 제고
2010. 4. 5.	- 2기 위원 위촉장 수여 - 중재제도 활성화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제도 마련을 위한 방법 모색
2010. 7. 6.	- 조정·중재기법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2010. 11. 5.	- 정정보도청구 등 표시의 실효성 강구를 위한 방안 제고 -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모색
2011. 1. 5.	- 효율적인 포털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 포털사건 중재전환 활성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털 전담부 지정
2011. 6. 13.	- 효율적인 조정·중재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 논의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운용 - 증거조사 강화의 필요성 논의 - 정정 등 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2011. 9. 15.	- 조정절차에 적합한 증거조사 활성화 방안 모색 - 중재제도, 직권조정결정의 활성화 방법 강구

2)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

위원회는 2009년과 2010년에 중앙종합일간지를 피신청인으로 한 조정사건에서 이행된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와 위치를 조사·분석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원 기사 대비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비율은 2009년 15.4%, 2010년 20.1%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서 “언론사 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법 규정과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이 피해구제

보도문을 1단이나 2단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또, 피해구제보도문이 원 기사가 실린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실린 경우는 2009년도 26.3%, 2010년도 40.5%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은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피해구제 보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언론조정·중재 과정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보도문 작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7월 5일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발족했다.

[표 3]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중재부	비 고
위원장	정학철	서울제7중재부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위 원	이영덕	서울제1중재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권 일	서울제2중재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인협	서울제3중재부	전 파이낸셜뉴스 상무이사 겸 편집인
	한천수	서울제4중재부	전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 대표이사
	어경택	서울제5중재부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임경록	서울제6중재부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소위원회는 먼저 인쇄매체의 피해구제보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언론관련 판결 및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개선시안을 마련했다. 이후 방송, 인터넷신문, 포털의 피해구제보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소위원회는 우선 모든 매체에 대해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은 독자들이 알기 쉽게 본문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작성하되, 단순 오기의 수정이나 간단한 정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고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구제보도문의 본문은 2단락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되, 첫 단락에는 조정대상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두 번째 단락에는 정정 또는 반론할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당사자간 조정성립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피해구제보도가 위

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임을 보도문 말미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간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매체, 포털 등 각각의 매체 특성에 맞는 제목의 형식과 본문 내용의 게재 전달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언론조정·중재 실무에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보고서 내용을 모든 중재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재결정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 보고서에서 정한 원칙이 조정합의서 등에 활발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에 한하여 「정정보도문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3)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위원회에 접수되는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청구액수도 고액화되고 있으나, 실제 언론 조정·중재 과정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배상액 또한 소액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위원회에 청구된 손해배상 조정건수는 2008년도 324건, 2009년도 699건, 2010년도 773건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된 경우는 2008년도 32건, 2009년도 40건, 2010년도 41건에 불과하고, 손해배상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2008년도 185,920,574원, 2009년도 221,393,861원, 2010년도 65,993,749원이었던 데 반해 실제 인용된 평균금액은 2008년도 3,331,250원, 2009년도 3,594,103원, 2010년도 2,739,744원으로 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액수도 법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도	구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2008	조정액	3,331,250	2,750,000	1,000,000
	중재액	2,322,222	2,000,000	2,000,000
	법원 인용액	23,400,000	11,000,000	10,000,000
2009	조정액	3,594,103	2,000,000	3,000,000
	중재액	1,630,000	1,750,000	1,000,000
	법원 인용액	23,484,499	8,000,000	5,000,000
2010	조정액	2,739,744	1,000,000	1,000,000
	법원 인용액	24,242,424	10,000,000	10,000,000

※ 최빈액이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조정2팀에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자료 및 관련 논문을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채점표는 조정·중재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를 검토·분석하여 개선안을 찾고 손해배상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채점표 방식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이상적이지만, 항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중재부의 판단재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여 침해법의 및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산정기준을 제안했다. 가감표에 의하면 대상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손해배상금 기준액을 서로 다르게 책정하도록 했다. 매체영향력 분류는 해당 언론사의 자산규모, 기사수, 발행부수 내지는 시청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

[표 5]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중재부	비 고
위원장	장진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위 원	장현우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권 일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박성식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
	홍숙영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또한 ① 언론사의 통상적인 수준의 과실을 넘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② 피해지속성, 회복곤란성 ③ 수치심, 모욕, 당혹감 ④ 표현방법의 부적절성 ⑤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산정표를 구성했다. 이에 반해 ① 언론보도 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내지는 조치를 얼마나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감액구성요소로 했다. 이와 아울러 ② 공공성, 공익성 ③ 보충성, 긴급성 ④ 진실성, 상당성 ⑤ 신청인의 진정성 등을 감액의 요소로 고려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가감표는 기존의 채점표와 병행하여 서울의 7개 중재부에서 시범 실시한 다음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 증거조사 활성화

언론중재법 제20조에 의해 각 중재부는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정·중재 과정에서 증거조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동안 실시된 증거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조회 20건, 참고인 진술청취 37건, 석명준비명령 10건, 신청된 사건과 유사한 판례 및 조정사례 조사 59건, 관련 보도내용 조사 24건, 손해배상예상액 산정 25건 등 평균 175건으로 같은 기간 총 청구건수가 5,540건으로 연평균 1,108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법과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조사는 사실조회와 참고인 진술청취라고 할 수 있으나, 참고인 진술청취도 참고인이 심리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한 것은 아니며 조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건 관계인에게 유선 상으로 사실관계를 질의한 내용이어서 엄격한 의미의 증거조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증거조사가 이처럼 미진했던 것은 사건처리기간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직권조정결정 시 21일)로 규정되어 있어, 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는 곧 피해구제의 성공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피해구제보도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불가피하게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중재부가 사건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분쟁해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중재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재부장은 조사관에게 현장

조사 등을 지시하고, 조사관이 조사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신속히 제출하게 되면 중재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는 2011년 12월 「참고인 심문에 관한 세칙」을 만들어 참고인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위원회 업무에 적합한 증거조사 절차를 규정한 「증거조사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실무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현황

I.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1. 조정·중재신청 처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를 하고 있다.



언론조정신청 심리 장면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사이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의 잘못된 보도나 매개¹⁶⁾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전자문서(언론중재Eye-Net 이용) 등의 방법으로 조정·중재신청

16) '매개'라 함은 언론사처럼 기사를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포털(네이버, 다음 등)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IPTV(Olleh TV, LGU+ TV, SK브로드밴드 등)를 통해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할 수 있다.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한 보도, 인명 또는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음성·사생활·성명을 내보낸 경우 등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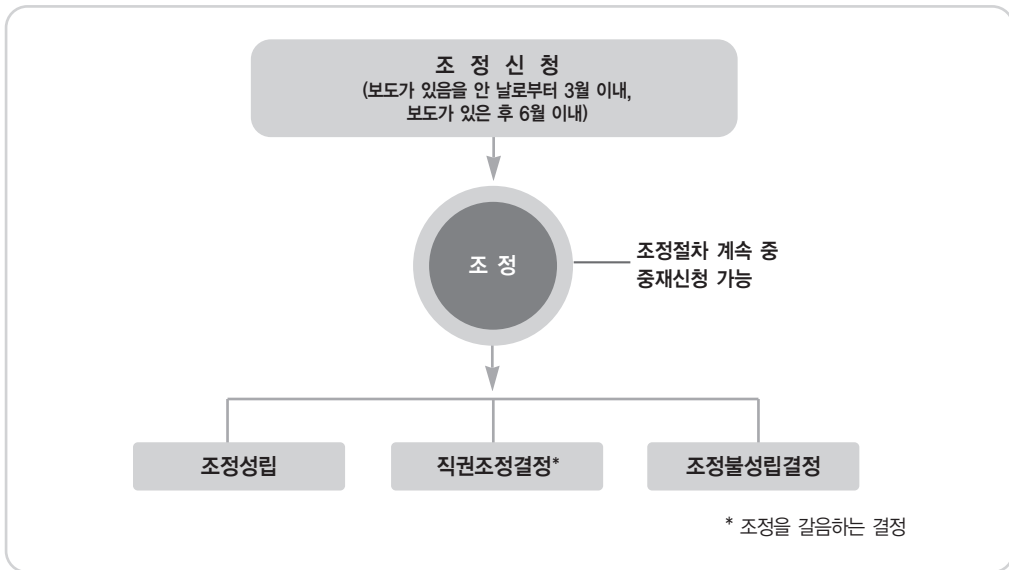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거짓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 스스로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정정기사를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이나, 일방적인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구속 등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언론분쟁은 조정·중재를 통해 처리되며, ‘조정’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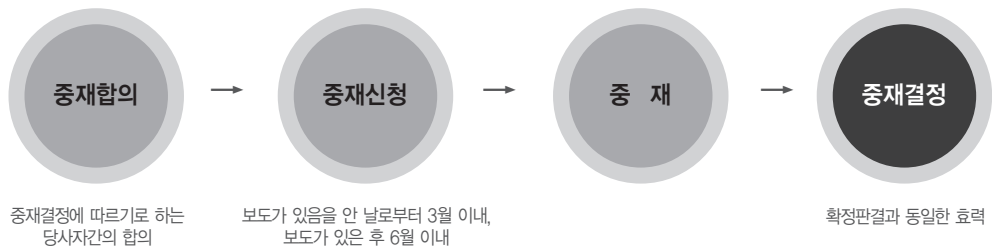
조정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되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된다.

‘중재’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정처리과정



■ 중재처리과정



언론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단기간의 사건 처리기간 내에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증거조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언론보도를 심의하여 기사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또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침해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그러한 보도에 유의할 것을 알려주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1981년 11월 30일 언론침해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1년 8월 22일에는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 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등에도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기준안을 개정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사생활보호·명예훼손 금지·범죄사건보도·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9개항, 제2장 보도윤리·재난보도·범죄묘사·성관련보도·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자살보도 등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10개항, 제3장 국가안전보장·국가기밀누설금지 등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2개항 등 총 21개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 시정권고심의기준을 근거로 하여 성폭력 피해자,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목격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사생활침해가 되는 내용, 마약의 복용 방법·환각적 효능·구입방법을 상세 보도한 경우, 자살 관련 상세묘사, 혐오감을 주는 재난보도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3. 선거기사심의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실시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경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여 해당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과문, 경고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하거나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4.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언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와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문상담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언론사, 공공기관, 학교, 기업, 각종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교육 목적에 맞게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기타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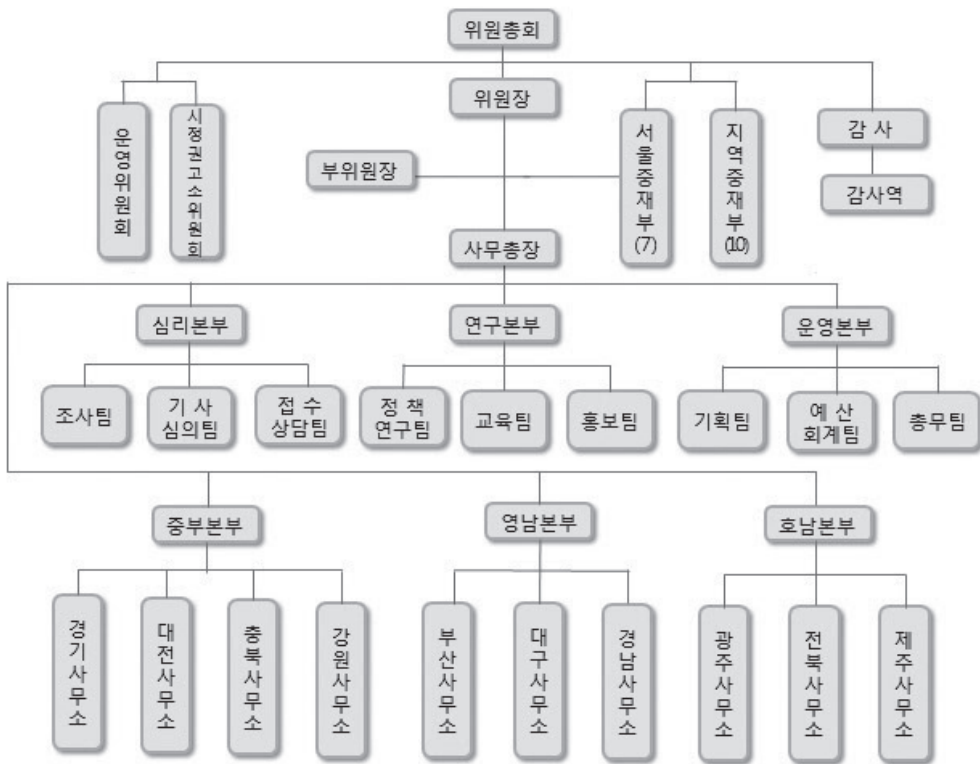
위원회는 법정사업 이외에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 1)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간
- 2) 세미나, 토론회 등 회의·행사의 개최
- 3) 위원회 및 제도의 홍보
-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 5) 기타 위원회 및 제도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I.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

1.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언론중재위원회 조직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의 임원을 포함하여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임원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1981년 출범 당시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3개 중재부(서울 4, 지역 9개), 총 3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4개 중재부의 증설(경남, 서울 3개)과 중재부별 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011년 현재 17개 중재부(서울 7, 지역 10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85명의 위원으로 늘어났다.

[표 6] 중재위원수 및 중재부 현황 변화

연월일	1981. 3. 31.	1984. 3. 2.	1988. 9. 1.	1996. 7. 1.	2005. 9. 2.	2009. 9. 1.
위원수	39명	42명	70명	75명	80명	85명
중재부	13개	14개	14개	15개	16개	17개
	서울4 지방9	서울4 지방10	서울4 지방10	서울5 지방10	서울6 지방10	서울7 지방10
비고	각 중재부 3명으로 구성	경남 중재부 신설	각 중재부 5명으로 증원	서울제5 중재부 증설	서울제6 중재부 증설	서울제7 중재부 증설

2. 위원총회

위원회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총회를 두고 다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시정권고위원회 위원의 선출
- ②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 ③ 사업실적, 결산 및 사업계획,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 ⑤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2011년도 위원총회

3.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9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①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 ③ 기본규칙을 제외한 제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④ 선거기사심의위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4. 시정권고소위원회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7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정권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사회·타인의 법익 침해사항
- ② 시정권고심의기준의 제·개정
- ③ 기타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중재부

위원회는 2011년 현재 서울에 7개, 지방에 10개(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17개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85명의 중재위원이 언론분쟁 당사자의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년에 걸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민사분쟁 사건을 처리하여 온 현직 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중재부장을 비롯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직 언론인,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부의 장은 법관이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Ⅲ. 사무처 조직과 업무

1. 사무처 조직

언론중재법은 제11조 제1항에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중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처를 두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중재부에 지역사무소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무처를 통솔하는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언론중재법 제11조 제2항).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 제한은 없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밑에 심리본부·연구본부·운영본부 및 지역본부를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처에 3본부 9팀, 지역에 3본부 10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의 정원은 사무처직제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1년 현재 정원은 70명으로 되어 있다.

[표 7] 사무처 직급별 정원표

2011. 12. 현재

구 분	직 급	정 원	현 원
별 정 직	사무총장	1	1
일 반 직	1급	3	3
	2급	10	9
	3급	15	16
	4급	22	22
	5급		
	6급	19	19
합 계		70	70

2. 사무처 부서별 업무

1) 심리본부

심리본부에 조사팀·기사심의팀·접수상담팀을 두며, 조사팀은 조정·중재 심리에 관한 사항을, 기사심의팀은 시정권고소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접수상담팀은 조정·중재신청 및 언론관련 피해에 관한 제반 상담, 조정·중재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주로 관장한다.

2) 연구본부

연구본부에 정책연구팀·교육팀·홍보팀을 두며, 정책연구팀은 언론분쟁해결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국내외의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연구, 회지·연차보고서 등의 발간, 세미나, 지방토론회 등의 학술 행사 개최, 위원회 자료실의 운영·관리, 해외시찰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등을 관장한다. 교육팀은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대내외 교육, 교육 교재 연구개발, 언론관계판결집·언

론관계판결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홍보팀은 위원회 정책홍보업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광고 제작 집행, 위원회 소식지 발간, 위원회 홍보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운영본부

운영본부에 기획팀·예산회계팀·총무팀을 두며, 기획팀은 위원회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 사무처 조직·정원 관리 및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 국정감사 수감과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협조, 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및 위원 업무회의 운영, 중재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 및 위원워크숍, 연간보고서 발간, 정책심포지엄 개최, 직원업무워크숍 개최, 제안제도 운영 등을, 예산회계팀은 예산의 편성, 관리 및 조정 업무, 회계 및 예산의 집행·결산, 회계 감사 수감,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무팀은 직원의 임용·복무 등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및 직원해외 실무연수, 노무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지역본부

지역본부로는 수원에 중부본부, 부산에 영남본부, 광주에 호남본부를 두며, 중부본부는 경기사무소·대전사무소·충북사무소·강원사무소를, 영남본부는 부산사무소·대구사무소·경남사무소를, 호남본부는 광주사무소·전북사무소·제주사무소의 업무를 관할한다.

각 지역사무소는 중재부의 지원 등 조정·중재업무, 언론보도내용의 심의 업무 지원,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지역 내 외부기관과의 협조 업무, 기타 지역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일반 서무 등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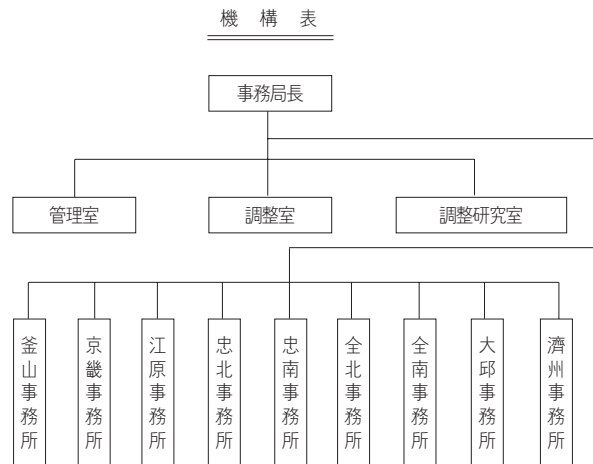
3. 사무처 조직과 예산의 변천

위원회 사무처는 1981년 출범시 사무국에 관리실·조정실·조사연구실의 3실과 9개 지역사무소 총 20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 시기의 정원표 상에는 총원 36명(서울 18, 지역 18)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울 사무국은 정원 18명 중 11명이 업무를 시작했고, 지역사무소 9곳에 현재의 지역사무소 간사직을 맡고 있는 기능직 직원 외에 중재업무 지원을 위한 과장 또는 조사관 9명은 실제로 보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전체 근무인원은 총 20명에 불과하여 그야말로 최소한의 소규모 인원으로 위원회의 시작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定 員 表

職級別 部署別	事務局長 (室長)	事務職					機 能 職	歷 備 職	計
		二級 課長 (室長)	三級 課長 主任 書記	四級	五級				
事務局長	1							1	
管理室		1	2			2	1	6	
調整室		1	4	1	1			7	
調査研究室		1	2	1				4	
地域事務所			9			9		18	
計	1	3	17	2	1	11	1	36	

사무처 정원표(1981)



사무처 기구표(1981)

사무국은 지역 중재부에 중재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중재심리를 개최할 경우 서울 사무국의 조사관을 출장시켜 중재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 지역사무소의 정원은 경남사무소의 증설로 인해 고용직(기능직) 직원 1명이 증원되고 조사관직 정원은

1986년 전원 감축되었으며, 감축인원은 서울 사무국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1987년 정기간행물법 제정과 함께 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었으나 1988년도 정원은 3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가, 1990년도 33명, 1994년도에는 42명으로 증원됐다. 이 시기는 언론중재제도 시행 이후 1988년도까지 연 평균 53.6건으로 저조하던 중재신청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도 500건을 돌파하여 541건을 기록하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매체급증으로 인해 매체간 과당경쟁과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선정주의적인 보도가 빈발함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이 강화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와 시정권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여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이와 함께 전문위원 직제가 신설되어 2명이 증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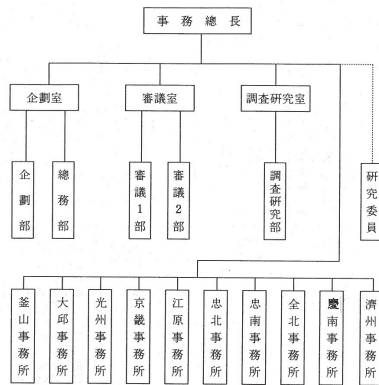
연도별 정원변화

연도	1981	1988	1990	1994	1996	1997	1998	2004	2005	2011
정원(명)	36	32	33	42	55	57	52	60	7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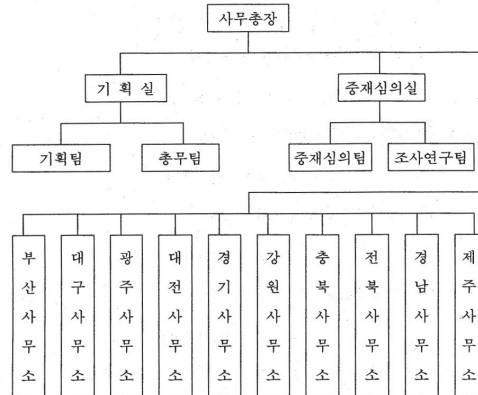
1996년 지역중재부 사건의 증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언론피해 상담 및 지역 밀착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요청하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에 지역사무소장을 파견하고, 전문위원 직제를 연구위원으로 변경하여 3명을 증원함으로써 사무처는 55명으로 증원됐다. 이와 함께 사무처 직제를 3실 10지역사무소에서, 3실 5부 10지역사무소로 개편했다. 즉, 관리실의 명칭을 기획실로 변경하여 기획부와 총무부를 두고, 심의실에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1부와 시정권고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2부를, 조사연구실 내에 조사연구부를 두었다.

위원회 정원은 1997년도에 2명이 증가하여 57명이 됐다가, 1998년 경제위기에 따른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5명이 감축되어 52명이 됐다. 직제는 조사연구실을 폐지하

고 심의실을 중재심의실로 변경하였으며, 부서를 팀제로 개편하여 조사연구팀과 심의1부와 심의2부를 통합한 중재심의팀을 중재심의실 소관으로 두도록 했다. 이로써 사무처는 2실 4팀 10지역사무소 체제가 됐다.



사무처 직제표(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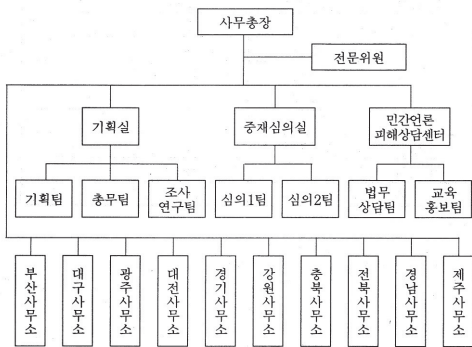
사무처 직제표(1998)

직권중재결정권을 도입한 강화된 개정 정간물법이 1996년 시행되면서 중재신청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 724건을 기록하였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신문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보도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피해 양상도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과 법적 절차 안내 등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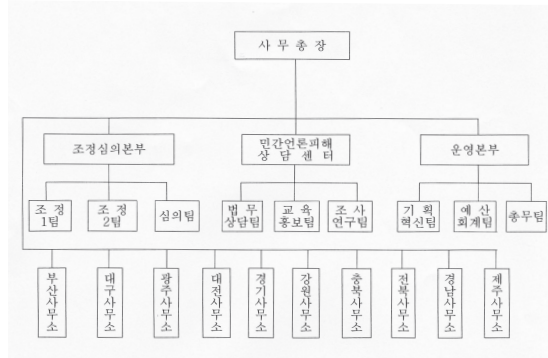
2004년 위원회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보도 관련 종합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언론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대언론 및 수용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2명을 포함한 8명의 인력이 증원되어 사무처 정원은 60명이 되었고, 직제를 2실 1센터 7팀으로 개편하여 법무상담팀과 교육홍보팀을 신설했다.

2005년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법적으로 단일화하고, 인터넷신문을 언론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언론조정 외에 중재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 언론중재법이 시행됐다.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대상의 확대와 기능 강화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변호사 2명을 증원하는 것을 포함한 총 10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무처 직제표(2004)



사무처 직제표(2005)

이로써 사무처 정원은 70명이 되었으며, 사무처를 2본부 1센터 9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즉, 중재심의실을 조정심의본부로, 심의1팀을 조정1팀으로, 심의2팀을 심의팀으로 변경하고, 손해배상 및 증거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정2팀을 신설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기존 기획실 소속의 조사연구팀을 이관하고, 기획실을 운영본부로, 기획팀을 기획혁신팀으로 변경하고, 기획팀의 예산업무와 총무팀의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를 맡을 예산회계팀을 신설했다.

이후 위원회의 정원은 2011년 현재까지 7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서명칭과 담당 업무 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직제 개편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8년 6월 27일에는 기능직을 폐지하여 모든 직원의 직렬구분을 일반직으로 통일하였고, 2009년 6월 29일에는 조정심의본부를 ‘심리본부’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연구본부’로, 조정중재팀을 ‘조사팀’으로, 심의팀을 ‘기사심의팀’으로, 제도연구팀을 ‘정책연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상담팀과 교육팀을 신설했다.

2010년 12월 7일에는 법무상담팀의 팀명을 접수상담팀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7월 11일에는 지역사무소 업무의 활성화 및 인력 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광역 단위로 묶어 지역본부제로 개편했다.

1981년 위원회 설립 첫해의 연간 예산은 3억8천1백만원이었다. 실제 운영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 연간 예산 93억원에 비하면 약 1/25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위원회가 30년간 외형적으로도 큰 성장을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소폭으로 증가되어오던 예산이 1991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때로서 홍보예산 급증으로 인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위원회 예산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위원회가 종합적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 중재신청에 따른 심리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상담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하였고,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이 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의 확장이 이루어져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2009년에는 위원회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연도	1981	1991	2001	2004	2005	2009	2010	2011
예산 (단위 : 백만원)	381	2,188	4,566	5,820	7,781	9,387	9,083	8,420

4. 직원의 복무 규율

사무처에 종사하는 직원은 ① 공정, 성실 및 품위유지 ② 청렴결백 ③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④ 정치활동의 금지 ⑤ 기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언론분쟁을 처리하여 언론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덕목이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복무원칙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위원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대표적인 ADR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왔다. 다만, 이런 복무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한 차례 있어 직원들의 반면교사가 된 적이 있다.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정 절차에 관여하는 사무처 직원인 조사관이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일보는 2010년 12월 6일 “유학알선업체인 ○○회사가 학생의 입퇴학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을 처리했다”고 보도하였고, 이 보도에 대해 ○○회사가 보도가 잘못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중재부는 2011년 1월 11일 심리를 열어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확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이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자고 하면 동의하지 말고 이의신청하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내용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피신청인에게도 전달됐다. 피신청인측은 조사관이 편파적으로 조정을 하고 월권을 했다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해당 조사관은 사실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가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함에 있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의 주재자라고 할 수 있는 중재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조사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조정·중

재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처리가 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한 이행률이 높아져 언론분쟁의 조정성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직원, 특히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조정·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위원회는 2009년 8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신문 외 포털,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확대된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련의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2009년 10월부터 2개월간 정보화 컨설팅을 통하여 위원회의 정보화 추진 방안과 중장기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였고, (주)한국EDS에 위탁하여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업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등 4개 부문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외부 전용 IDC에 구축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2011년 1월 1일 정식 오픈하였는데, 시스템 중 전자민원시스템(언론중재Eye-Net)은 상담, 조정·중재 신청, 사건 검색 등을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키보드보안, 외부 IDC내 보안솔루션도 구축했다.

또한 조정·중재 사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내부 업무 시스템인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들에게 전자심리 환경 등을 제공하는 중재위원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들은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시스템)의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협업 환경을 마련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했다. 그 외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갖추게 됐다.

1) 언론중재Eye-Net(전자민원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인 ‘언론중재Eye-Net’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상담과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조정·중재 상담 및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그 외 사건 처리 진행현황,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오프라인 제출 문서에 대한 부담 경감, 심리비용 절감, 사건정보 공유 등의 유용한 기능을 통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편리하고 손쉽게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키보드 해킹 방지 솔루션 및 외부 IDC 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웹방화벽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 전자조정중재시스템(위원회 내부 사건 처리 시스템)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은 조정·중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는 조정중재 사건을 배당하고 일련의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즉 조정·중재 사건의 담당 조사관 및 직원은 사건 접수, 심리, 사건 완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민원시스템(언론중재Eye-Net)을 연동하여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위원업무시스템(PAC Tribunal)과의 연계를 통한 전자심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조정·중재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를 PDF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하여 출력 문서 유통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사건정보 관리 환경과 편리한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3) PAC Tribunal(중재위원업무시스템)

중재위원업무시스템인 ‘PAC Tribunal’은 중재위원에게 배당된 사건의 개요와 사건기록철 열람 기능을 제공하고 전자조정중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심리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결재 업무를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 간 정보 교류와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

4) PAC 광장(전자문서시스템 :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PAC 광장’은 전자결재 및 그룹웨어시스템으로 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 업무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기능 등을 통하여 정보의 공유와 업무 협업 체계 등을 편리하게 지원한다. 또한,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전자결재 기능을 지원한다.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구축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서버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데이터 저장장치 등)와 소프트웨어(업무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했다. 또한, 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로 전산센터를 외부 전문 IDC센터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무소 및 서울 사무처 간 정보보안성을 강화한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및 전용선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다.

위원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조정·중재 업무처리(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중재 신청,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진행, 민원인의 심리상황 실시간 확인 등)가 이루어지게 됐으며, 전자결재 및 정보교류 환경도 마련됐다. 중재위원은 심리 전 해당 사

건정보를 원격지에서 열람하고 심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충실하고 치밀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위원회의 현 상황에서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안정화 및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다.

6. 언론중재위원회 서비스 현장 제정·선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6년 1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 서비스 현장>을 제정·선포했다.

서비스현장제도는 본래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 Charter)에서 유래한 이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발전시켜 온 제도로서, 행정기관이 고객인 시민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의 서비스 현장은 위원회의 업무 영역 및 기본 자세를 담은 <전문>과 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 기준을 제시한 <우리의 다짐>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비스 질 향상, 고객만족 및 성과향상 등이 서비스 현장제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서비스 현장제도가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먼저 서비스 현장 제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내부 검토와 열람 과정을 거쳤으며, 현장의 선포 이후 위원회는 서비스 현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실시, 친절교육 실시, 친절전화응대 매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실천했다. 문자메시지서비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접수와 기일지정 및 결과 등을 통보할 때, 전화 및 우편 안내 외에 추가로

무선 통신상의 문자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언론중재위원회 서비스 헌장’ 제정·선포를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7. 사회공헌활동

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전 직원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로 연말연시나 재해 발생시에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우 이웃 돕기에 참여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9월 노사협의를 통해 매월 직원급여의 일정액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특히 기금 지원액과 동일한 액수를 위원회 예산에서 지원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06년 사무처 직원들은 봉사동호회를 결성하고, 정신지체장애인 주거시설 및 치매노인 요양시설, 태안 기름유출사고현장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의류, 도서, 잡화 등 ‘물품기증운동’을 벌여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6년 9월 26일에는 농촌사랑의 일환으로 버섯과 쌀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 울면 총곡1리(포기실 마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은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개최한 민속놀이 행사에 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고, 이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농촌사랑을 실천하고자 맺게 됐다. 2007년 2월에

는 이 마을에서 개최한 민속행사에 직원들이 참여, 국악인 초청공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2009. 1. 성북동 연탄배달



2011. 5. 연평도 복구봉사

위원회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쌀과 연탄을 구입하여 성북구 북정마을을 직접 찾아 배달하고 영세민들을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노원구 공릉동 새터민 정착지원센터를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탈북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위원회는 북한의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권성 위원장과 정학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재위원 및 사무처직원 등 13명의 봉사단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독거노인 6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주택수리, 도배, 장판교체 등 생활환경 정비작업을 벌였다.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에서 주택수리 봉사 중인 권성 위원장

앞으로도 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진정한 사회공헌의 의미를 실현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조직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

위원회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언론피해구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배가하여 언론분쟁조정기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조정 및 중재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중재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조정·중재사례 등 위원회 실무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재위원들은 그 동안 각자 맡았던 조정·중재 사건의 처리 방법 등을 돌아보고 운용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강원중재부 주관 2008 중재위원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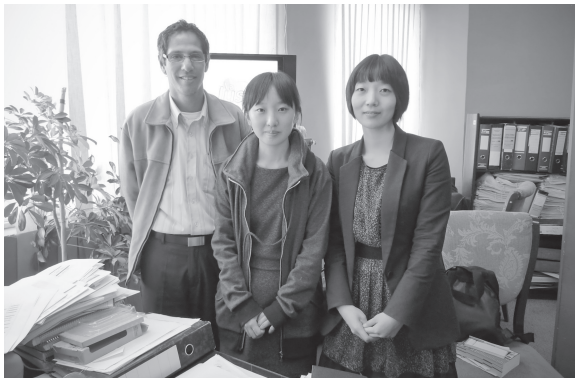
2008년도부터는 중재위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관 중재부를 정해 중재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고 강원중재부 주관으로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표 8]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현황

개최일자	개 최 장 소	주 제
2004. 12. 6. ~ 7.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충남 아산시)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2005. 6. 20. ~ 21.	수안보 파크호텔 (충북 충주시)	새 언론중재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 모색
2006. 3. 30. ~ 31.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 (충북 보은군)	조정사례로 본 새 제도 운용진단
2007. 4. 27. ~ 28.	칠갑산 호텔 살레 (충남 청양군)	중재제도 활성화 및 조정 만족도 제고 방안
2008. 6. 2. ~ 3.	한솔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및 조정기법 사례연구
2009. 5. 22. ~ 23.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산시 해운대구)	개정 언론중재법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ADR 기법 연구
2010. 6. 10. ~ 11.	제주 서귀포 KAL호텔 (제주도 서귀포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용상의 몇 가지 쟁점
2011. 6. 24. ~ 25.	롯데부여리조트 (충남 부여군)	언론피해구제 및 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원회는 또한 중재위원과 각 지역 언론인과의 교류를 통해 언론피해 예방 및 언론중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언론관련 현안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자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 위원장 주최로 연간 3~5차례 간담회를 개최, 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지역 언론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06년도부터 위원장 주최 언론사 대표 간담회와 지역중재부 주최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위원회는 조정·중재 실무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성과 역량 계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관심도를 반영한 ADR, 어학, 전산, 취미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발적인 학습동호회 구성을 유도하는 등 학습을 조직화하는 한편,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정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볼리비아 국영방송국을 방문한 위원회 직원들, 2011 해외실무연수

참가자들은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처 직원들이 외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부터 직원해외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방문기관을 선정하여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해외에 위원회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연수 후

위원회는 2005년 12월 직원들이 조직의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워크숍을 처음 실시한 이후, 이 워크숍을 정례화했다. 직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위원회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위원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서별 사업 개선안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통해 위원회 발전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각 중재부에 소속된 조사관들은 조정실무 등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들이 토론하는 조정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조정·중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실무적인 방안 연구, 성공적인 당사자 설득과 조정안 제시를 위한 협상 기법 등 실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만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실제 업무에도 적용되어 실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위원회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조직 혁신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2006년 2월 22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안제도 운영 이후 언론관련 판결 분석에 관한 제안(제안명: ‘언론관련 판결분석을 통한 조사연구 영역의 블루오션 창출’)이 최초로 채택된 바 있고 2008년도에 「2005~2007년 언론소송 판결분석」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첫 결실을 맺었다. 이 보고서는 언론소송 양태와 판결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소송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현업에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준거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이후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신호등 운영’, 웹하드에 위원회 주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위원회 사료(史料) 유지 관리 시스템 도입’, 조정심리 참석자를 위해 조정·중재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는 ‘당사자를 위한 안내문 제작’, ‘직무분석 틀을 응용한 업무기술서 양식 도입’, ‘초·중·고 교사를 위한 온라인 수업지도안 제공서비스안’ 등이 채택되어 위원회 업무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2007년도에 ‘업무기술서’를 도입, 각 부서별 업무 프로세스를 통일된 양식에 맞춰 기재하여 부서별 단위 업무의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기술서’는 단순히 업무 진행 과정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 부서장이 업무 개선 의견을 기술함으로써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조직 발전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9.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1996년 말부터였다. 정간물법의 개정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많은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위원회는 1997년 7월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위원회 사무처 노사는 1997년 7월 첫 노사협의회의를 가졌다. 이병훈 당시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측 인사 3인과 노측 인사 3인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노사는 발전적 관계를 모색했다.

직원들은 노사협의회 운영과는 별개로 노조설립을 추진하면서 1997년 7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노조설립 초기에는 공익노련의 전국언론노조 산하조직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성격상 위원회 노조가 전국언론노조의 하부기관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1998년 7월 공익노련의 전국언론노조에서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위원회 노조는 설립된 이후 사측과 별다른 갈등 없이 비교적 순탄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05년에는 사측과 크게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사무총장의 제반 업무행정에 대해 노조는 “직원 출세우기와 인사전형을 일삼는 등 독선적인 일처리로 사무처 조

직이 크게 동요하며 갈등에 휩싸이게 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 즈음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의 연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노조는 리더십 부재 및 조직 내 혼란야기를 이유로 들며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듯하자 사무총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결국 당시 조준희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무총장에게 사임을 권유하였고, 이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총회(2005. 7. 28.)의 동의를 받아 해임을 통보함으로써 노사갈등이 일 단락됐다.

노조는 위원회 발전을 위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기적으로 위원회가 나아갈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2006년 9월에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발전을 위한 노조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였다. 이 때 세부과제로 ‘위원장 상임화’, ‘중재위원 위촉권 상향’, ‘독립적 예산편성권’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 노조는 때에 따라 위원회를 공격하는 외부세력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2006년 9월 모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위원회가 상담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할 경우 공정한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상담부서를 폐지하고 해당 시민단체와 그 산하지부에서 언론피해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위원회 상담업무와 조정·중재업무는 철저히 독립돼 있어 공정성 등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부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것일 뿐임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및 전 언론사에 배포했다.

2010년 6월에는 노조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성명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제주에서 진행된 중재위원 워크숍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신청서의 양식을 보완·개정하도록 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규칙개정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워크숍에 참석한 운영위원

들로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며 유사 사태 방지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과 노조카페에 게시한 후 모든 중재위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 워크숍에서 다수 중재위원이 참여한 기회에 운영위원들의 양해와 동의하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규칙개정을 의결한 것임을 설명하고, 향후에는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약속하여 원만히 수습됐다.

위원회는 1년 또는 2년마다 단체협상을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요구하여 수용된 대표적인 사안에는 성과상여금 적정배분, 육아기 단축근무제 실시, 기능직군 일반직화, 지역직원 대외명칭 부여, 다면평가제 시행, 노조사무실 설치, 근로조건 관련 규칙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의무화 등이 있다.

위원회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04년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설치 이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였던 토요일당직 및 점심·저녁당직 제도가 실제 이용 빈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노조와 협의하여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 11월 1일부로 토요일당직을, 2011년 3월 1일부로 점심·저녁당직을 폐지했다. 대신 위원회 상담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일과 후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업무시간을 안내하는 ARS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2011년 12월 6일에는 직원들의 오랜 숙원 사항이던 여직원 휴게실이 설치됐다. 위원회는 여직원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존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휴게실 공간을 확보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를 받아 유축기, 모음병, 저장팩, 모유수유관련책자 등을 구비하여 모유 수유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침대와 소파, 탁자, 냉장고, 옷장 등을 구비함으로써 여직원들이 건강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노조 창립 이래 2011년까지 총 11명이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를 이끌었다.

[표 9] 역대 노조 위원장 명단

구 분	성 명	임 기	비 고
1 대	여 종 국	1997. 7. 9. ~ 1998. 7. 8.	1년
2 대	권 오 근	1998. 7. 9. ~ 1999. 7. 8.	1년
3 대	조 남 태	1999. 7. 9. ~ 2000. 7. 8.	1년
4 대	조 준 원	2000. 7. 9. ~ 2001. 7. 8.	1년
5 대	이 수 중	2001. 7. 9. ~ 2002. 7. 8.	1년
6 대	권 오 근	2002. 7. 9. ~ 2003. 7. 8.	1년, 중임
7 대	손 정 배	2003. 7. 9. ~ 2004. 7. 8.	1년
8 대	강 현 석	2004. 7. 9. ~ 2005. 7. 8.	1년
9 대	최 영 훈	2005. 7. 9. ~ 2006. 7. 8.	1년
10 대	안 백 수	2006. 7. 9. ~ 2007. 7. 8.	1년
11 대	안 백 수	2007. 7. 9. ~ 2009. 7. 8.	2년, 중임
12 대	최 승 민	2009. 7. 9. ~ 2011. 7. 8.	2년
13 대	여 운 규	2011. 7. 9. ~ 2012. 7. 8.	1년

IV. 언론중재위원회의 상징

위원회는 2007년도에 위원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CI(Corporate Identity)를 새롭게 제작하여 위원회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 CI-슬로건 조합

위원회의 CI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다리 모양과 공정한 중재자 이미지의 천칭 모양, 그리고 조정과 중재의 머릿글자 ‘ㄷ’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위원회 역할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공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위원회 CI는 또한 대민 서비스 기관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즉, 노랑, 오렌지, 빨강 등의 따뜻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기관명은 균청색을 사용함으로써 공평하고 신뢰를 주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007년 CI 선포식

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중재위원 워크숍에서 CI선포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새 CI를 위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1988년 언론중재위원회 휘장(마크) 도안을 공모하여, 위원회 휘장이 위원회가 언론유관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를 회복시켜 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신청인·피신청인·중재위원의 3자가 합의하는 기관을 상징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의미의 위원회 마크를 선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다.

다만, 구 CI는 19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디자인과 이미지의 느낌이 ‘차갑고 딱딱하다’,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로고 자체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 변화상에 맞게 따뜻하고 친근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위원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자 새로 CI를 제작한 것이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된 위원회 구 휘장

심벌마크



로그타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言論仲裁委員會

국문, 영문, 국영문,
가로조합



국문, 영문, 국영문,
세로조합



슬로건 조합



엠블렘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0th Anniversary

02

언론중재제도의 법률적 변천

제1장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탄생

제2장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정착

제3장 「정간물법」의 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강화

제4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실질화

제5장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언론조정제도의 확대

제1장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탄생

I.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1980년 10월 27일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뒤, 동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언론의 책임과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규정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26일, 기존 언론 관련 법률인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을 흡수 통합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31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을 다수 도입하였으며, 제6장에서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49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제50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51조에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대해 각각 규정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의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를 마련했다.

「언론기본법」이 시행되면서 1981년 3월 31일,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됐다. 종래 우리나라의 법제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에 보도된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론권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반론권 제도의 도입은 분명 혁신적인 조치였으나, 반면에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반론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17) 양삼승(1992).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언론중재』, 제12권 3호, 7면.

II.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¹⁸⁾

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기본법」은 제49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침해에 대한 신속·적절한 구제책을 강구하기 위해 언론의 공표 내용에 의해 개인의 법익에 공격이 가해진 경우, 피해자에게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고자 신속한 반대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정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기 입장에서 해명을 하기 위해 자신이 작성한 문안의 보도를 언론에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따라서,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나 반론의 진실성 여부는 원칙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진실성 여부를 행사 요건으로 삼는다면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피해 구제가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진실 여부가 필수적인 심리대상으로 되고, 언론의 고의·과실 유무가 전제되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이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언론기본법」이 채택한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는 법률 시행 초기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정보도청구라는 용어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는 정정 기사를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정정권’을 말하는 것인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이

18) 박용상(1981).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1권 1호, 18~25면, 양삼승(1982). 정정보도청구권 -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제2권 4호, 10~29면 참조.

나 입장을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반론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반론권을 받아들여 입법화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86년 1월 28일 선고한 대법원 85다카1973 판결에서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1991년 9월 16일 89헌마165 결정을 통해, “법조문에서 정정이란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의 사실 보도에 대한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반론권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 보도의 정정청구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은 정정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졌다.

2.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1) 주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중증 등)도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 주체로 인정된다고 보

았다. 관청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제도 도입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법규정에 명시하고 있던 것을 보아 관청도 신청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유력했다.

2) 사실적 주장

「언론기본법」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비평·논평 등 의견이나 가치판단사항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치판단이란 윤리적·종교적·경제적·사회적·예술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며, 그 표현에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판단의 표현이 확정된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일반적인 기사 형식의 보도, 논설, 르포, 독자투고, 외부인의 기고 등 보도의 형식에 관계없이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3) 개별적 연관성

「언론기본법」은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위해서는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요구됨을 명백히 했다. 언론보도에 동감하지 않는 모든 독자에게 반론권을 인정한다면 언론활동은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반론권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단, 개별적 연관성은 성명이 특정되거나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가 별 어려움 없이 보도의 대상자를 알 수 있어 보도와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그 보도로 인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됐다.

4) 상대방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신문 등의 기사내용을 편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도 이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5) 신청기간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있는 후 신문·통신·방송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둘로 나누었는데, 언론사를 거친 경우에는 언론사에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6) 전치주의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절차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전치주의를 도입했다. 이로써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게 됐다.

7) 정정보도청구의 거부 사유

정정보도청구권은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다.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남용으로부터 언론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외사유를 두어 언론사측이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

언론이 스스로 속보에 의해 원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나 사소하고 지엽적인 오보의 경우에는 청구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②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 :

정정 요구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면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고 권리가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예외사유가 규정되게 됐다.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란 언론사 자신이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정정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정정보도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위법한 내용이란 공표시에 범죄가 되어 처벌받게 될 내용(예컨대 명예훼손)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편집인이 형사책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게재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⑤ 정정보도의 내용이 적절한 범위를 초과할 때 :

정정보도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됐다. 다만, 보도 내용에 의해 전해진 불충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은 허용됐다.

⑥ 공공기관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보도의 경우 :

충실한 사실 보도라 함은 회의나 심리경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올바른 취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왜곡, 과장보도된 경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8)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함

「언론기본법」은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항소만이 허용되고, 정정보도명령 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이 허용됐다.

Ⅲ.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이 규정함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동법 제50조 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동법 제51조 제1항)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치절차인 언론중재제도를 관할할 언론중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¹⁹⁾

2.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언론기본법」 제50조 제2항은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이 중 3분의 1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토록 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중재위원회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마다 1개 이상의 중재부를 두고 중재사건은 당해 언론사(피신청인)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된 중재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중재부는 3인의 언론중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되도록 했다.

19) 박용상(1981).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1권 1호, 24면.

IV. 개선점²⁰⁾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비용 없이 번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일반시민 모두에게 유용한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가 갖는 몇 가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도입 초기 이용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언론기본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 조정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강제조정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에 대처할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못했다. 동법 제50조 제7항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14일이 경과하면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써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비협조적인 경우 중재절차는 피해자의 구제를 지연시키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언론기본법」은 중재위원회에 오로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분쟁의 조정권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문제된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타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청구에 관해 합의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재절차에 선뜻 응하려 하지 않게 됨으로써 중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셋째, 또 다른 문제점은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이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법적 성격이 반론보도청구권임에도 마치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내용의 권리인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이와 더불어 중재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점이 있었다. 언론사에 정정보도

20) 양건(1982). 반론권 행사의 실제. 『언론중재』, 제2권 2호, 58면. 및 박용상(1987).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7권 4호, 71~72면. 참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된 공표 후 14일 이내에 언론사에 청구를 하고 언론사에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문제가 된 보도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재결정권을 도입하는 한편 정정보도청구권의 용어를 그 실질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장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정착

I.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한 「언론기본법」에 대해 언론계는 언론자유에 비해 언론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1987년 민주화 선언을 전후로 하여 「언론기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11월 28일 인쇄매체의 경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제정하여 대체하고 「언론기본법」은 폐지되게 됐다.

「언론기본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필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오히려 발전적인 조문 수정을 거쳐 유지되게 됐다.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정간물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송법」은 정간물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1991년 12월 31일에는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어 케이블TV 방송이 도입되고, 이 법률도 정간물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케이블TV의 보도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됐다.

Ⅱ. 「정간물법」에 의한 언론중재제도의 변화

1. 언론중재절차의 강화

1) 증거조사권 도입

언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있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간물법은 제18조 제3항에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 가능한 증거조사의 종류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 검증, 감정, 관계공시 단체에의 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방법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관계인이나 기관이 중재위원회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임의적인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의 이 권한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2) 합의간주제도 도입

「언론기본법」 체제하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해 다수의 중재사건이 불성립처리되는 등 중재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정간물법은 제18조 제4항에서 “중재부의 장은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출석의무를 부과했다. 동법 제18조 제5항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출석의무를 소홀히 한 당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

입했다. 이 조항에 의해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동법 제18조 제6항). 이렇게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합의간주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중재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2. 추후보도청구권의 도입²¹⁾

1) 의의 및 법적 성격

정간물법 제20조는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청구, 중재 및 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동조 제3항). 「방송법」은 방송에 관하여도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간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했다(「방송법」 제42조).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그 대상자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범죄에 관한 사실보도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 청구권만으로는 피의자가 무고함이 밝혀진 후 충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었다. 즉, 수사상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범죄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의 수사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한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고, 무죄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무죄판결 후에는

21) 박용상(1987).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7권 4호, 67~71면. 참조

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정정보도청구권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간 물법이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한 것은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에 있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반론보도청구권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권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었다.

2) 요건

(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을 것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특정인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을 것이 요구됐다. 형법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의 혐의에 관한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형사상 조치라는 것은 검찰, 경찰 기타 사법 경찰관에 의해 입건되었다거나 특정한 혐의로 내사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 또는 발부되었다거나 피의자로 소환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일정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거나 진정 또는 언론의 자체취재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지목 보도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단지 사건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사실과 함께 범죄용의자임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주장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돼 있을 것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란 내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기소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거나 처벌 가치가 없어 행해지는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무죄판결의 경우가 유죄판

결 이외의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대표적인 경우인데, 보도의 대상으로 된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 종결사실의 증명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발급한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검사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나 피의자 본인이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증명에는 처분결과만 기재되기 때문에 결정이유까지 기재된 결정문 자체의 등본을 발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추후보도청구권의 인정범위 및 그 행사의 정당한 이익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라) 추후보도청구권의 주체

추후보도청구권의 주체는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도된 특정인이다. 따라서 성명이 반드시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독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경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도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됐다.

3) 추후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

추후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이 준용됐다. 추후보도청구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로는 해당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범죄혐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다고 이미 보도한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충실히 보도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보

도문의 내용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의 공문서에 의해 입증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란 없다고 보았다.

4) 행사기간

정간물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²²⁾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고,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어야만 피의자가 그 처분을 알게 되므로 피의자에게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1월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

3. 언론보도 심의 및 시정권고

정간물법은 「언론기본법」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중재위원회에 부여했다(동법 제18조 제8항). 보도에 의한 침해사항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권한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이 이루어져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극적 기관에 머물지 않고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정간물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8항).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추후보도청구의 청구 기간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로 하고 있다.

Ⅲ.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변화

정간물법은 제17조 제2항에서 위원의 수를 기존 30인 이상 60인 이내에서 40인 이상 70인 이내로 증원하고, 각 중재부를 기존 3인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언론기본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재위원의 임기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했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했으며, 동조 제6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조했다. 중재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하여 위원 중 법관자격이 있는 자의 비율을 종전의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늘렸으며, 그 밖의 위원에 관하여는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중재부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여 신중한 절차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IV. 개선점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정간물법은 「언론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체입법에 목적이 있었을 뿐 언론중재 실무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반론권제도 및 언론중재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존속시키면서도 소극적 조정기능 이상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은 불완전한 개선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1987년 11월 28일 정간물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보다 근원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위원회는 1989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 서정우 교수)에 의뢰, 중재신청인과 한국언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중재제도운용에 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여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상근 중재위원의 구성, 명백한 오보나 허위보도로 인정될 경우의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 인정, 손해배상중재(명령)권 인정, 중재위원의 구성방식의 공공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1991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는 박용상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위원회의 강제중재권 인정,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신청시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청구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992년 8월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는,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반론권 제도의 규정은 그 자체로서 통일된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서 매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론권 제도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형식 등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독립 법률의 명칭을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

한 법률」이라고 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991년에 발표된 박용상 부장판사의 안을 참조했다.

1993년 11월 9일에는 「언론중재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후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는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날 제시된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를 반론권으로 수정하고, 반론권 이외에도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그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조정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그 권한이 확대된 만큼 보다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권리의 주체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청·기관, 기타 단체에도 청구권을 당연히 인정하고, 추후보도청구권에 있어서도 ‘형사 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를 보다 반론권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로 하도록 했다.

이때까지 제시된 정간물법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은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의 강제중재권 인정,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일회적 종합적인 언론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반론보도청구 외에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중재대상화, 정정보도청구권 용어의 반론권으로의 개칭, 중재신청 기간의 연장 등이었다. 또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이 규율 대상매체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단일 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신속한 중재신청 처리를 위한 상근중재부의 설치, 중재위원 구성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규정의 도입 등도 제시됐다.

제3장 「정간물법」의 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강화

I.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87년 정간물법 제정 이후 언론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1987년 말 1,436개이던 인쇄매체가 1995년 말에는 6,704개로 수적으로 엄청나게 급증하였고, 방송의 경우 1990년 새로운 민영방송이 허가되고 1992년 종합유선방송(CATV)이 도입되어 방송매체도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한 매체 간 경쟁 격화로 선정적 기사가 증가하고, 민주화 이후 고양된 국민들의 권리의식에 영향을 받아 언론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언론분쟁이 크게 증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청 처리한 사건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1987년 47건 → 1995년 528건), 위원회가 강제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당사자간 조정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한 정간물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국회는 직권중재결정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을 의결하였고, 공포 과정을 거쳐 개정법은 1996년 7월 1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언론매체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단일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정간물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미완의 개정이 됐다.

Ⅱ. 개정 「정간물법」의 주요내용²³⁾

1. 반론보도청구권의 명확화

개정 정간물법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에서,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용어의 본래 의미를 찾아서 규정됐다. 즉 개정전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되어 있던 제목 부분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현실화하고, 청구 주체와 기간, 상대방 및 내용에 대한 상당 정도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 각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정정보도 용어를 반론보도로, 제3항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언론사로 수정했다.

이로써 정간물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이 해소됐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법적 성격이 반론보도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내용의 권리인 듯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비로소 명실상부한 법 체제를 갖추게 됐다.

2. 반론청구의 주체·상대방의 명확화와 권리 행사기간 변화

「언론기본법」 및 개정전 정간물법에서는 관청, 기관 기타 단체가 피해자인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명문상의 규정이 없어, 정정보도청구가 그 실질은 반론보도청구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반론권을 행사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것을 개정 정간물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기관·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청 등도 청구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의 상대방 역시 개정 전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대해 사실상의 확인이 어려워 그 행사에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언론사’로 변

23) 강경근(1996). 개정 정간물법 해설. 『언론중재』, 제16권 1호, 24~37면. 참조

경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반론청구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에는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로 너무 기간이 짧아 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로 개정하고, 불확정한 법적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언론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언론사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실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했다.

3.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개정 정간물법은 반론보도청구권 외에 정정보도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간물법과 관계없이 민법 제764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언론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서 이행하도록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개정 정간물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했다.

4. 직권 중재결정권 도입²⁴⁾

언론중재제도는 중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야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재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조정(medi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언론중재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로서는 더 이상 손을 써볼 여지가 없이 중재불성립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

한편,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이 직권 중재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언론중재에 있어서도 강제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즉 개정된 정간물법 제18조 제6항은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중재부의 직권 중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직권 중재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었다.

1) 직권 중재결정의 법적 의의

언론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조

24) 권오곤(1996). 직권 중재결정의 법적 의의. 『언론중재』, 제16권 3호, 16~29면. 참조

정안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권 중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가 실질적인 중재(arbitration)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직권 중재결정에 대하여도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더라도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중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정안의 강력한 권고’의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칠 뿐이었다.

2) 직권 중재결정의 요건·절차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가 성립되지 않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내용은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중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3) 이의신청

당사자가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7일의 기간 내에 해당 중재부에 도달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라도 이의신청이 있기만 하면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즉, 중재불성립 결정과 마찬가지로 된다. 당사자의 이의신

청에 의하여 중재결정이 실효된 이후,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직권 중재결정의 효력

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확정되고, 이와 같이 확정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언론사가 확정된 중재결정상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밖에 없다. 중재신청인이 간접강제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중재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추후보도청구권의 변화

개정전 정간물법의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법은 기존의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라는 부분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라는 문구로 개정했다. 이는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한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에 속하는 것은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이라든지 면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보도된 내용의 사실이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의 형식적 사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추후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6. 위원회 구성의 변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까지 주어질 권한이 강화된 만큼 중재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정 정간물법은 중재위원 숫자를 40인 이상 7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증원했다. 이와 함께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되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중재결정권 도입에 따라 중재결정제도가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인 언론사에게도 보다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언론계 출신 인사를 중재위원으로 일정 부분 이상 위촉되도록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법원에의 소제기 절차의 변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며,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했다.

이에 더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법원 절차의 불복절차를 판결에 대한 항소의 방식임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반론보도 인용 재판에 가처분절차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경우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어서 반론문 게재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때문에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를 막고, 나아가 이미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 등 적정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언론사가 판결내용대로 반론보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개정 정간물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의 인용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강제 제도라 함은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제도인데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소에도 적용하였던 것이다.

Ⅲ. 개선점

1995년의 정간물법 개정이 있을 후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사회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제도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그러나 개정 정간물법은 사실상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개정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존의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약간의 기능 강화를 꾀한 것으로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이후 언론중재제도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뿐만 아니라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도 깊은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졌다.

정간물법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법이 구제수단별,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손해배상은 「민법」, 반론보도청구는 「정간물법」과 「방송법」,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등으로 구제수단에 따라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고, 신문, 통신, 방송 등 매체별로 다시 분산되어 있는 데에다 공직선거법에도 특별규정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법 기술적으로도 법령의 분산다기화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하여 산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단일법제화하고, 정정·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중재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언론분쟁을 종합적·일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위원회의 중구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1998년 양경승 판사에게 의뢰하여 전문 45개조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제출받았고, 2000년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 여론 형성의 과정이 크게 변화되어, 종래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오프라인 매체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그 대신 온라인 매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한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제4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실질화

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5년 1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으로 삼아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유한 의미의 중재를 도입하는 등 언론중재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Ⅱ. 「언론중재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²⁵⁾

1. 단일법 제정

이 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 피해구제제도를 법적으로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반론권제도 및 언론중재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정간물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규정된 형식이 적절치 못하여 언론피해 구제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아울러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2.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인터넷신문

종래 언론중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또는 방송에서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하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한정돼 있었다. 여기서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하며(「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하며(「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3호).

25) 양삼승(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제25권 1호, 4~18면.

한위수(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제26권 4호, 5~11면. 참조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으로서의 언론에 정기간행물, 뉴스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일반적으로 인터넷신문이란 정보의 제1차적 뉴스제공자가 인터넷상에서 하루 1회 이상의 정보내용을 갱신하여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 매체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인터넷신문은 정간물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인터넷신문이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신문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피해발생시 피해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이 유통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기존 오프라인 신문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 언론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간편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기존 법률상의 문제점 내지 법적 공백을 메워주게 됐다.²⁶⁾ 아쉬운 것은 독립형 인터넷신문만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언론사닷컴과 포털뉴스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추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26) 황성기(2005).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25권 2호, 16면. 참조

3.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 창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으나, 종래 정간물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명시했던 것에 반하여 언론중재법에서는 위 문구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 즉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를 창설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6년 6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 결정에서 이를 명백히 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제14조 제1항)에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

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즉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허위보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법성이나 고의·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켜 권력비리에 대한 추적보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강한 정의(正義)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다. 즉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사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당해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제3항, 제26조 제1항·제3항).

4. 조정·중재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까지 확대

언론중재법은 제18조 제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했다.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범위는 최초에는 반론보도청구권만이 필요적 중재의 대상이었다가, 1995년 12월 30일 법의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임의적 중재대상으로 추가됐다. 다시 2005년 1월 1일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어 꾸준히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종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만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비용 없이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5. 고유 의미의 중재 기능 도입

「언론기본법」 및 「정간물법」과 「방송법」 등에 의한 언론중재는 ‘중재’ 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중재’ 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1호 참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중재법 제35조). 그러나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또한 중재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중재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 를 ‘조정’ 이란 용어로 바꾸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 중재의 제24조(중재) 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여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언론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졌음은 물론 언론중재제도의 명칭이 실질과도 부합하게 됐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종래의 조정 및 심의 기능 이외에 중재 기능도 가지게 됐다.

6. 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정간물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사전에 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했다.

이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당사자 사이의 견해차이가 커서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까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정단계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구제가 지연되는 단점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직권조정결정의 효력 강화(이의신청시 소제기 간주)

종전에는 일정한 경우, 즉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부는 직권중재(조정)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새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언론중재법에서는 비록 직권결정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고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법 제22조 제4항).

8. 신청기한의 연장

정간물법은 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을 후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언론사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협의불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런데 ‘언론중재법’에서는 그 기한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을 후 6월 이내”로 연장하여 규정했다(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언론사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추후보도청구도 그 기간이 1월에서 3월로 연장되었으며(법 제17조 제1항),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신청기한을 연장한 것은 가능한 한 언론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피해자로서는 가능한 빨리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이롭지만, 권리구제 과정이 쉽지 않고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권리보호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지위 불안정의 상태가 그만큼 오래 계속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9. 취하간주 조건의 변화 등 조정절차의 변화

언론중재법은 신청인의 불출석 시 자동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였다. 법 제19조 제3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즉 피해자의 권리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했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은 제18조 제6항에서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정·반론·손해배상의 청구가 동일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과 심리과정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침해받은 사항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한꺼번에 언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제18조 제3항).

10. 제3자 시정권고 도입 및 시정권고 대상 확대

정간물법은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정간물법 제18조 제8항). 반면 언론중재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

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을 정기간행물·뉴스통신에서 방송·인터넷신문까지로 확대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3자 시정권고 조항과 시정권고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언론계는 특정목적 가진 단체들이 특정신문의 논조나 보도를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제도의 악용을 우려했다. 언론계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제1항)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시정권고제도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며, 시정권고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Ⅲ.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

1. 중재위원 수의 증가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재위원의 수를 40인 이상 80인 이내에서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증원했다(법 제7조 제3항). 이것은 인터넷신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으로 추가되고 손해배상청구가 조정·중재의 범위로 포함되게 됨에 따라 언론조정·중재 신청사건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

2. 중재위원의 구성

종전에는 중재부의 5인의 중재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은 5분의 1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법원행정처장이 추천), 5분의 1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대한변협회장이 추천), 5분의 1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과거의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고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3. 중재위원의 임기 및 연임의 제한

종전에는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제7조 제5항).

4.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

종전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정간물법 시행령 제32조),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법 제7조 제11항)고 규정하여, 중재위원회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훨씬 높여 주었다.

5. 중재부장의 자격

종래에는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누가 중재부장이 되는지, 중재부장의 불출석 시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간혹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법 제9조 제1항) 했다.

6. 중재부의 의결정족수

종전에는 중재부장을 포함하여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부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되었다(법 제9조 제2항).

7. 중재위원회의 운영 자원 및 사무처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회의 운영 자원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기타 자원에 관한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어 운영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2조)고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재원조달의 출처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언론공익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했다.

종래에는 사무처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직원의 보수·정원 등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법 제11조 제4항),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종래 아무런 규정이 없던 사무총장의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연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개선점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선고한 2005헌마165 등 결정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 그 자체는 정정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증거가 아닌 간이한 소명만으로 정정보도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위축효과를 초래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또 언론중재법 제32조 시정권고 조항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다만 “시정권고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제32조 제5항은 내용 공표 시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외부공표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공표라는 집행행위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 시정권고 조항과 시정권고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언론계 일각에서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들의 악용을 우려하면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어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제기됐다.

즉, 대부분의 시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의 보도로 인한 것보다 포털의 매개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렇지만 포털뉴스는 스스로 기사를 생산한다기보다 단순히 매개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인터넷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간편·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포털뉴스도 독자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게재할 것인지 선택권을 행사하고 기사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뉴스전달자의 지위에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포털뉴스 사업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²⁷⁾

27) 한위수(2006). 전제 논문. 『언론중재』, 제26권 4호, 19면. 참조

제5장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언론조정제도의 확대

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헌법재판소의 2006년 6월 29일 2005헌마165 결정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종결됐으나 이후,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즉, 2005년 제정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의 기사로 인한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구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매체라 할 수 있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수의 언론매체가 포털사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포털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이 일었으며,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게 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 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제 18대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 2월 6일 공포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II. 개정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²⁸⁾

1. 포털·언론사닷컴·IPTV의 언론조정·중재 대상화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포털사 등에도 뉴스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무한대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언론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추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 이들 새로운 매체가 조정·중재대상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은 아니다. 개정법은 언론의 범위를 여전히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다(법 제2조 1호). 따라서 이 조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그 수행하는 기능 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다.

28) 정남철(200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의미. 『언론중재』, 제29권 1호, 56~58면.

양재규(2009).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언론중재』, 제29권 1호, 166~167면. 참조

2. 인터넷뉴스서비스 표시의무 등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 동안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가 다른 피해구제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기는 하였으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표시의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포털사들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해당기사에 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고, 포털의 통보가 있기만 하면 해당 언론사 역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법 제17조의2 제2항). 또 기사생산자인 언론사에 피해자가 먼저 정정보도청구를 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털사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법 제17조의2 제3항).

3. 보도의 배열 등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 의무

종전 언론중재법에도 기사 보관의무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정도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매체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역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8항). 그러나 전자기록 보관의무가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보관의 범위와 방법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4. 인터넷에 서비스 중인 기사본문에 대한 정정청구 가능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 기사 자체에 대한 정정도 가능하도록 했다(개정법 제15조 제1항). 정정청구가 가능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또는 매개 중에 있는 기사이며, 이미 삭제되었거나 내려진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22조 제3항).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아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6. 중재결정의 취소

개정 언론중재법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하여만 가능하나,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7.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본안소송에 의해 진행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간이한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여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8. 제3자 시정권고 조항 폐지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언론의 논조나 보도를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도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언론계의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Ⅲ. 개선점

개정 언론중재법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만 특칙을 적용하고 있어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매체들이 제외되어 있다. 인터넷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은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에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표시의무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기사는 언론중재법상 규율대상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피해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팟캐스팅이나 웹캐스팅, 미니홈피와 1인 블로그, SNS를 통한 언론보도의 유통 등 새로운 양상의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차원의 언론보도 양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을 통일적으로 규율한 단일법이기는 하지만, 선거보도와 관련한 피해구제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방송과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 매체별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보도 관련 반론권 창구를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표 10】 언론중재제도의 전개과정²⁹⁾

구분	언론기본법 시기	정간법·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 시기		언론중재법 시기	
	1981년	1987년	1996년	2005년	2009년
특징	· 언론중재위 출범 (1981.3.31.)	· 정간법·방송법 시행 (1987.11.28.)	· 정간법 개정 시행 (1996.7.1.)	· 언론중재법 시행 (2005.7.28.)	· 언론중재법 개정시행 (2009.8.7.)
주요 내용	· 반론권제도 도입	· 반론권제도 존치 · 추후보도청구권 신설	· '반론보도청구' 로 개정 · 직권조정결정 도입 ·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존재인정, 중재위에 임의적 중재 인정 · 국가·지자체, 기관단체 반론권 인정 · 불복절차 도입	· 정정보도청구권 도입 · 조정 외 중재 도입 · 손해배상 조정중재 · 인터넷신문 조정중재 · 필요적전치주의 폐지	· 포탈·언론닷컴·IPTV 조정중재 대상 · 정정보도청구소송-민사소송법 절차적응
중재 위원	· 30인-60인 이내	· 40인-70인 이내	· 40인-80인 이내	· 40인-90인 이내	· 좌동
근거 법률	· 언론기본법 제정 1980.12.31.	· 정간법 제정 1987.11.28.	· 정간법 개정 1995.12.30.	· 언론중재법 제정 2005.1.27.	· 언론중재법 개정 2009.2.6.
주요 규정	48조 (소송우선처리) 49조 (정정보도청구권) 50조 (언론중재위) 51조 (정정보도심판)	16조 (정정보도청구권) 17조 (언론중재위) 18조 (중재절차등) 19조 (정정보도심판) 20조 (추후보도청구권) 21조 (보조금)	16조 (반론보도청구권) 17조 (언론중재위) 18조 (중재절차등) 19조 (반론보도심판) 19조2 (불복절차) 20조 (추후보도청구권) 21조 (보조금)	5조 (인격권의보장등) 6조 (고충처리인) 14조 (정정보도청구요건) 16조 (반론보도청구권) 17조 (추후보도청구권) 18조 (조정신청) 19조 (조정) 22조 (직권조정결정) 24조 (중재) 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소) 27조 (재판) 30조 (손해의 배상) 31조 (명예훼손특칙) 32조 (시정권고) 34조 (과태료)	5조 (언론등피해구제원칙) 5조의2 (사망자인격) 6조 (고충처리인) 14조 (정정보도청구요건) 16조 (반론보도청구권) 17조 (추후보도청구권) 17조의2 (인터넷뉴스특칙) 19조 (조정) 22조 (직권조정결정) 24조 (중재) 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소) 27조 (재판) 30조 (손해의 배상) 31조 (명예훼손특칙) 32조 (시정권고) 34조 (과태료)
비고	· 대법원 1986.1.28. 85다카1973판결. '정정보도청구권' 을 '반론권' 제도로 파악, 제시함	· 「종합유선방송법」 중재제도 도입 (1991.12.31.제정) · 헌법재판소 1991.9.16. 89헌마165결정. 반론권제도 합헌결정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보도관련 반론보도청구권 도입함 (1997.11.14.개정시행)	· 일부조항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2006.6.29.선고 2005헌마65등 결정	· 위헌성제거

29) 이승선(2011).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 제31권 제1호, 11~12면.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0th Anniversary

03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사업 실적

제1장 언론조정 · 중재 사건 처리현황

제2장 시정권고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4장 조사연구사업

제5장 언론피해상담과 교육

제6장 홍보

제1장 언론조정·중재 사건 처리현황

I. 30년간 언론조정·중재 처리현황 개괄

1981년에 도입된 이후로 언론조정·중재제도는 1987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개선·발전되었고, 2005년 언론중재법에 안착했다. 그 과정에서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법률적 용어로 채택되고, 피해구제방법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까지 확대되었으며, 매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중재대상 매체들도 확대되어 왔다. 지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총 18,552건(조정 18,220건, 중재 332건)의 사건이 신청됐다.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조정과 중재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다. 신청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조정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법률가와 언론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가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입장에서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신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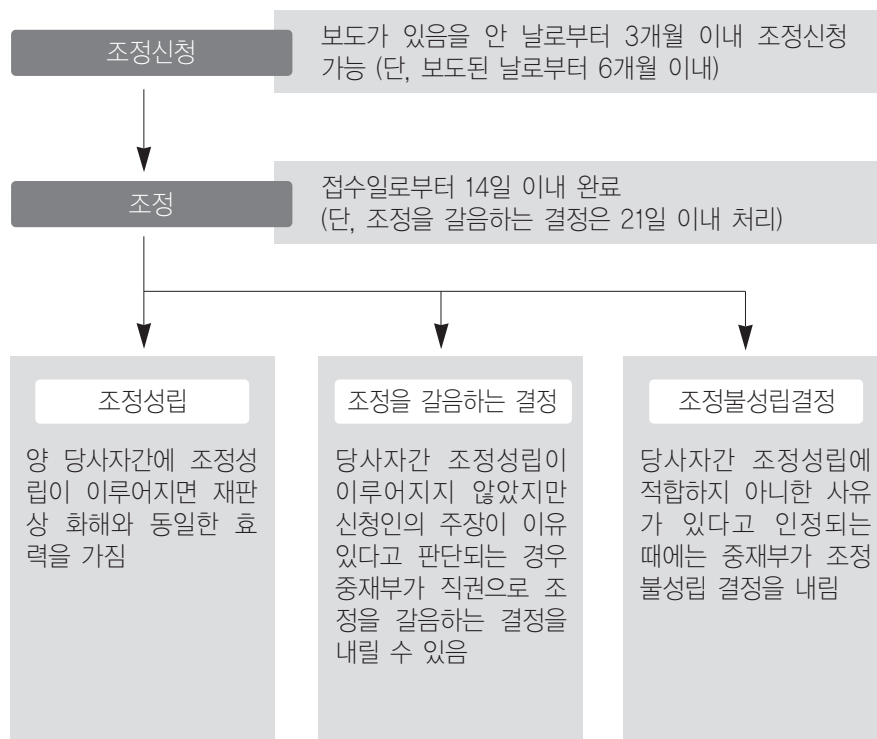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매체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이다. 특히 2009년 언론조정·중재대상이 된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이라 보기 어렵지만, 그 영향력이 언론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신청기간은 보도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기 앞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라면 언론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추후보도 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의 처리절차를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된다.

조정 후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언론사는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조정성립이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 처리절차〉

한편,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 언론사를 피고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 도입 때부터 ‘중재’ 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조정’ 기능에 해당했다. 실질적인 의미의 ‘중재’ 기능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중재’ 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 유형, 신청가능 매체, 신청가능 기간 등에서는 조정과 차이가 없다. 신청인은 중재를 처음부터 신청하거나 조정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처리절차〉

중재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언론사가 중재부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중재절차는 조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결정에 따라 언론사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을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그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조정·중재신청 현황

1)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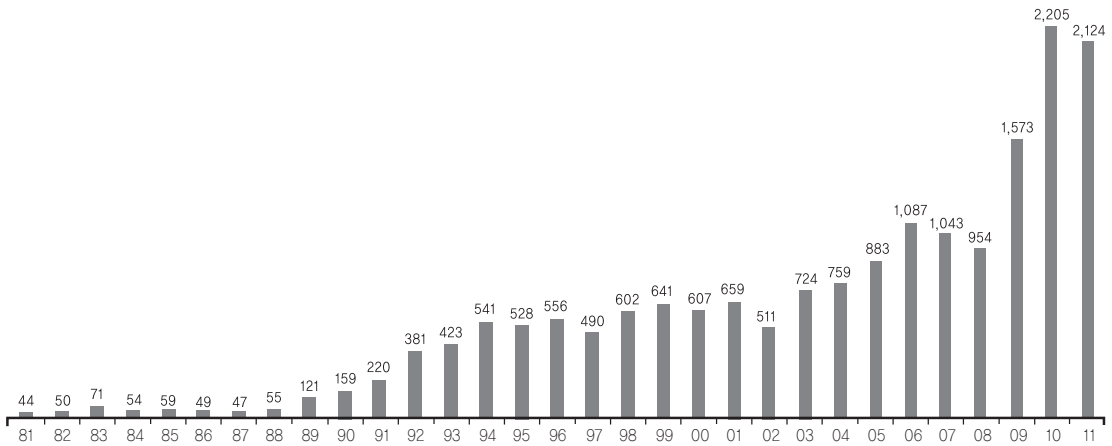
2005년 이전에는 ‘중재’가 사실상 ‘조정’ 기능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를 ‘조정’으로 분류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지 않아 사건 수가 많지 않았다. 1981년 44건으로 시작된 조정은 1988년까지 한 해 100건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1989년도에 121건의 사건을 접수 처리한 후 사건 수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7년 6·29선언 이후 신문과 잡지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언론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가 늘어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이후에는 몇 년만 제외하고는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도에 600건, 2003년도에 700건을 넘어섰다. 2005년에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신청 수가 더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1,000건을 넘어서게 됐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정간물법 제19조 제1항인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5년 단일법 제정으로 인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안

정화,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인터넷신문 등 조정대상 매체의 확대 등의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언론조정·중재 신청수가 200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조정·중재 대상이 되면서 포털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추이

그동안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30년간 신청된 총건수 18,220건 중에 6,005건(33.0%)이 ‘조정성립’ 됐다. 1996년까지 20%대에 머물렀던 조정성립률이 1997년 이후 대부분 30%대를 기록하였고, 2008년도에는 42.1%를 기록했다. 2009년도에 조정성립이 500건을 넘은 이후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조정성립이 각각 630건과 725건으로 빈도수는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한편, 1995년 12월 30일 정간물법 등의 개정으로 직권 중재결정³⁰⁾제도가 도입된 후

30) 2011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837건의 직권 중재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중에 489건(58.4%)에 대해 동의되었으며, 348건(41.6%)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이의를 신청한 건수 중에는 조정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하기로 한 것이 32건이 포함됐다.

[표 11] 연도별 조정신청 처리현황

연도	구분 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 [5]	1	2	20 [2]
1982	50	19			19 [5]		2	10 [4]
1983	71	21			22 [7]	1	1	26 [8]
1984	54	12			29 [8]	3		10 [5]
1985	59	12			28 [5]	4		15 [7]
1986	49	14			10 [2]	1		24 [11]
1987	47	10			9 [4]	1		27 [2]
1988	55	16			12 [5]		1	26 [13]
1989	121	29			35 [10]		6	51 [21]
1990	159	42			43 [10]	1	2	71 [4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계	18,220	6,005	489	348 [32]	2,923 [277]	743	101	7,611 [4,574]
(%)	(100.0)	(33.0)	(2.7)	(1.9)	(16.0)	(4.1)	(0.6)	(41.8)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도 초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984년도와 1985년도 가 각각 53.7%와 47.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에는 대부분 20~30%에 머물렀으며, 1997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대부분 20%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5.6%와 7.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언론사들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것인데 평균 41.8%로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하 건수 총 7,611건 중에 4,574건(60.1%)이 취하 전후에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언론사들이 언론조정·중재신청 후에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약속하여 취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취하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평균 16.7%에 불과했다.

2) 중재

‘중재’는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적인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2005년도에는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6년도~2008년도까지 연평균 10.3건이 접수될 정도로 중재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에 중재제도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중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었다. 그 결과 중재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중재신청 건수는 각각 111건과 77건이었다. 특히, 위원회는 2011년 6월 5대 포털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 기사제공언론사와의 조정결과에 귀속될 포털 관련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 2011년도의 중재건수는 113건에 이르게 됐다.

[표 12] 연도별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계 (%)	332 (100.0)	279 (84.0)	46 (13.9)	1 (0.3)		6 (1.8)

II. 신청인 유형별 처리현황

1. 조정

신청인 유형별로 30년간의 처리현황을 보면, 개인의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220건 중 53.5%(9,747건)가 개인으로 나타났으며, 회사가 15.9%(2,901건), 일반단체가 15.6%(2,850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언론조정제도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회사 혹은 일반단체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국가기관은 초창기에는 거의 신청이 없었으나, 1996년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당해 업무에 대하여 기관·단체를 대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씩 신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도~2007년도에는 한 해 100건이 넘을 만큼 신청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언론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도부터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3년도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51건이 신청되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지자체 및 공공단체도 전체 5.5%(998건)를 차지하였는데, 2003년도를 기점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나 한 해 60건 정도가 신청되고 있으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각 124건, 126건이 신청됐다. 반면,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의 신청률은 각각 1.7%(310건), 1.4%(263건)로 신청이 많지 않은 편이다.

[표 13] 신청인 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연도\구분	사건수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가 기관	지자체 및 공공단체
1981	44	25	11		1			7
1982	50	32	6	8	1	2		1
1983	71	42	11	9	1	7		1
1984	54	36	3	5	1	7		2
1985	59	33	9	13	3	1		
1986	49	22	5	22				
1987	47	30	4	11				2
1988	55	23	4	22		2	1	3
1989	121	57	28	28	3	1		4
1990	159	98	13	25	5	6	2	10
1991	220	128	17	47	7	6	2	13
1992	381	209	52	78	18	3	2	19
1993	423	281	35	79	6	3	2	17
1994	541	362	74	73	4	18	2	8
1995	528	338	93	67	6	6	3	15
1996	556	290	76	117	13	10	13	37
1997	490	284	63	95	10	12	4	22
1998	602	357	86	89	9	9	18	34
1999	641	350	116	91	6	37	12	29
2000	607	340	100	82	11	13	17	44
2001	659	307	162	88	10	7	48	37
2002	511	216	98	113	7	12	22	43
2003	724	247	141	82	14	16	164	60
2004	759	265	108	114	8	11	190	63
2005	883	385	152	116	12	19	146	53
2006	1,087	529	172	145	35	9	151	46
2007	1,043	525	145	176	24	10	101	62
2008	954	523	180	142	14	11	32	52
2009	1,573	847	341	212	31	4	74	64
2010	2,205	1,284	293	416	20	2	66	124
2011	2,124	1,282	252	336	30	19	79	126
계 (%)	18,220 (100.0)	9,747 (53.5)	2,850 (15.6)	2,901 (15.9)	310 (1.7)	263 (1.4)	1,151 (6.3)	998 (5.5)

2. 중재

조정과 동일하게 중재에서도 대부분 개인(54.2%), 회사(18.1%), 일반단체(11.7%)의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사건 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9년도부터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청인 유형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이 7.2%,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4.5%, 교육기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중재신청은 2011년도에만 8건 있었다.

[표 14] 신청인 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가 기관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06	7	5			2			
2007	14	14						
2008	10	7		3				
2009	111	56	17	21	4		9	4
2010	77	27	15	26			9	
2011	113	71	7	10		8	6	11
계 (%)	332 (100.0)	180 (54.2)	39 (11.7)	60 (18.1)	6 (1.8)	8 (2.4)	24 (7.2)	15 (4.5)

III. 중재부별 처리현황

1. 조정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총 13개의 중재부(서울 4개, 지역 9개)로 시작했다. 현재는 총 17개 중재부(서울 7개, 지역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표 15] 중재부별 조정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2002	511	307	15	14	39	16	45	7	16	25	20	7
2003	724	496	18	20	40	20	64	10	6	25	16	9
2004	759	558	27	17	32	15	41	13	4	27	20	5
2005	883	592	35	14	44	19	87	15	10	29	25	13
2006	1,087	709	42	31	55	29	113	14	13	50	20	11
2007	1,043	644	25	32	63	41	84	14	23	65	37	15
2008	954	607	24	30	46	32	108	15	19	39	27	7
2009	1,573	1,173	15	35	72	42	103	26	36	33	26	12
2010	2,205	1,627	59	31	77	42	120	28	35	49	89	48
2011	2,124	1,465	36	26	49	33	118	18	47	28	174	130
계	18,220	12,154	622	451	846	487	1,444	275	396	587	653	305
(%)	(100.0)	(66.7)	(3.4)	(2.5)	(4.6)	(2.7)	(7.9)	(1.5)	(2.2)	(3.2)	(3.6)	(1.7)

중재부별로 조정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18,220건의 66.7%에 해당하는 12,154건을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했다. 서울중재부에 신청된 사건수는 1990년도 110건, 1992년도 233건, 1994년도 348건, 1999년도 402건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의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가능해지자 2008년도 607건이던 조정건수가 2009년도 1,173건, 2010년도 1,627건, 2011년도 1,465건으로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포털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재부 다음으로 신청 수가 많은 중재부는 경기 7.9%(1,444건), 광주 4.6%(846건), 경남 3.6%(653건), 부산 3.4%(622건), 전북 3.2%(5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와 강원은 각각 1.7%(305건)와 1.5%(275건)로 전체 처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2. 중재

중재부별 중재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332건의 96.4%(320건)를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2008년도까지는 중재신청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한 해 10여 건 정도의 모든 사건을 서울중재부가 처리했다. 2009년도 이후 그 전에 비해 중재신청이 급증하였으나 이 또한 거의 대부분을 서울중재부가 처리한 사건이었다.

지역중재부의 경우 2008년도까지는 단 1건의 중재신청도 없었다. 그러나 2009년도 111의 중재신청 가운데 대전 6건, 경남 2건, 경기와 충북이 각 1건을 처리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경기와 경남에 각 1건이 신청됐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전체 113건이 모두 서울중재부에 신청됐다.

[표 16] 중재부별 중재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101				6	1		1		2	
2010	77	75					1				1	
2011	113	113										
계 (%)	332 (100.0)	320 (96.4)				6 (1.8)	2 (0.6)		1 (0.3)		3 (0.9)	

IV. 청구유형별 처리현황

1. 조정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정정보도청구라는 이름하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1995년 개정 정간물법과 「방송법」에서 반론보도가 정식 법률적 용어로 채택되면서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이 개념상 분리됐다. 또한, 1987년 정간물법 제정 시 추후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고,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점차 다양화되어 왔다.

청구별 조정신청 처리현황은 1995년도까지 별도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다가 1996년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분리되면서 집계하기 시작했다. 청구유형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54.9%, 손해배상청구 22.1%, 반론보도청구 20.0%, 추후보도청구 3.1%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청구는 연도 간에 사건 수 증감폭이 크기는 하지만,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에는 대체로 300건대 후반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5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도에 1,211건, 2011년도 1,004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론보도청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체적으로 2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반론보도의 빈도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비 반론보도청구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표 17] 청구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연도\구분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1996	556	430	109	17	
1997	490	270	203	17	
1998	602	369	228	5	
1999	641	363	261	17	
2000	607	368	211	28	
2001	659	418	221	20	
2002	511	307	201	3	
2003	724	503	216	5	
2004	759	414	301	44	
2005	883	531	194	17	141
2006	1,087	546	211	12	318
2007	1,043	551	115	28	349
2008	954	481	127	22	324
2009	1,573	691	142	41	699
2010	2,205	1,211	171	50	773
2011	2,124	1,004	168	148	804
계 (%)	15,418 (100.0)	8,457 (54.9)	3,079 (20.0)	474 (3.1)	3,408 (22.1)

손해배상은 2005년에 도입되었음에도 전체의 22.1%를 차지할 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경우를 보면, 전체 804건 중에 명예훼손 89.6%(720건), 초상권 침해 4.5%(36건), 프라이버시 침해 2.7%(2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최고 손해배상 조정금액은 3천만원이었다.

[표 18]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재산상 손해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2005	141	119	5		8	2	7		
2006	318	260	3		42	7	1	4	1
2007	349	276	1		47	10	3	10	2
2008	324	287	2		24	6	2	2	1
2009	699	617	1		51	4	1	12	13
2010	773	627	8		97	3	4	20	14
2011	804	720		2	36	3	21	22	

[표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 현황

(단위:원)

구분 연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05	1,000,000	10,000,000	3,452,381	3,500,000
2006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2008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2009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2010	150,000	20,000,000	2,739,744	1,000,000
2011	100,000	20,000,000	2,147,826	1,350,000

2. 중재

청구유형별 중재 처리현황을 보면, 정정보도청구가 49.1%(163건)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1~2건에 머물렀던 정정보도청구가 2009년도 61건, 2010년도 35건, 2011년도 63건으로 증가했다. 반론보도청구 역시 2006년도에는 1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도 이후 매년 20건 이상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24.4%(81건)를 차지했다.

한편, 손해배상은 중재신청이 많지 않지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신청이 이어져 오면서 전체의 17.2%(57건)를 나타냈다. 추후보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 12건이 접수되어 전체 9.3%(31건)를 차지했다. 중재 최고액은 750만원이었다.

[표 20] 청구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연도 \ 구분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6	7	1	1		5
2007	14	2			12
2008	10	1			9
2009	111	61	25	7	18
2010	77	35	28	12	2
2011	113	63	27	12	11
계 (%)	332 (100.0)	163 (49.1)	81 (24.4)	31 (9.3)	57 (17.2)

[표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재액 현황

(단위: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06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2008	900,000	4,000,000	2,322,222	2,000,000
2009	1,000,000	2,500,000	1,630,000	1,750,000
2010	2,000,000	3,000,000	2,500,000	2,500,000
2011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V. 접수유형별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언론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접수 유형을 보면 인터넷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31.7%, 우편 14.8%, 구술 4.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2007년까지는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함께 위원회가 2011년 언론 조정·중재의 통괄적인 처리 시스템인 언론중재Eye-Net(<http://people.pac.or.kr>)을 개통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사건처리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도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편을 통한 신청 건수는 2006년 이후 변동폭이 거의 없다가 2011년도에 143건으로 하락했다. 구술로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4.5%(428건)이었으나 과반수 이상이 2010년도에 신청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다.

[표 22] 접수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연도 \ 구분	사건수	방문	우편	인터넷	구술
2005	476	295	74	74	33
2006	1,087	580	245	249	13
2007	1,043	454	251	311	27
2008	954	354	233	358	9
2009	1,573	429	225	904	15
2010	2,205	483	233	1,205	284
2011	2,124	409	143	1,525	47
계 (%)	9,462 (100.0)	3,004 (31.7)	1,404 (14.8)	4,626 (48.9)	428 (4.5)

Ⅵ.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1. 조 정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변화는 언론매체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언론보도의 형식 및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보도의 양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왔다.

매체유형별 신청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간신문(45.8%)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신문이 매년 가장 신청빈도가 높은 매체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841건)에 대한 신청 건수가 일간신문(356건)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방송은 1990년대 들어 신청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케이블TV는 1995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는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도입으로 케이블TV의 보도기능이 강화되고 채널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뉴스통신은 전체의 1.9%로서 높은 비율은 아니나 2000년대 들어 이전보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인터넷신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이 된 것은 조정·중재제도를 뉴미디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0년 초 PC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등장했다. 기존의 일방향적인 매스미디어와 다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등장은 뉴스의 생산, 유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뉴스의 생산과 확산에서 주요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라서 뉴스를 생산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시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표 23]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시사 주간지	방송	케이블 TV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1981	44	34	2	2	2			4			
1982	50	19	3	9	13		4	2			
1983	71	47	6	6	4		3	5			
1984	54	27	5	5	10		6	1			
1985	59	41	5	4	1		2	6			
1986	49	21	4	9	5		10				
1987	47	20	4	7	5		7	3			1
1988	55	38	5	1	4		6	1			
1989	121	81	11	1	18		6	4			
1990	159	107	23	1	13		13	2			
1991	220	152	23	11	15		17	1			1
1992	381	287	37	8	31		16	2			
1993	423	276	57	6	58		23	1			2
1994	541	342	74	7	89		23	6			
1995	528	341	76	6	74		28	2			1
1996	556	364	90	10	72		13	6			1
1997	490	280	85	13	86	2	22	2			
1998	602	300	122	7	142	4	21	5			1
1999	641	335	93	13	166	5	16	10			3
2000	607	329	113	7	124	1	16	17			
2001	659	416	85	18	105	9	16	8			2
2002	511	303	89	10	89	1	14	4			1
2003	724	485	60	10	121	12	22	13			1
2004	759	449	89	14	161	15	18	10			3
2005	883	495	110	4	151	23	33	18	48		1
2006	1,087	598	125	29	192	24	25	17	77		
2007	1,043	504	113	17	226	24	10	30	113		6
2008	954	424	117	13	162	27	12	33	157		9
2009	1,573	485	128	19	441	18	27	38	233	181	3
2010	2,205	356	176	8	175	14	24	42	567	841	2
2011	2,124	389	181	16	216	34	9	62	705	510	2
계 (%)	18,220 (100.0)	8,345 (45.8)	2,111 (11.6)	291 (1.6)	2,971 (16.3)	213 (1.2)	462 (2.5)	355 (1.9)	1,900 (10.4)	1,532 (8.4)	40 (0.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2005년도 48건으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도 113건, 2010년도 567건, 2011년도 705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2009년도는 전년대비 1.5배, 2010년도는 전년대비 2.4배나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으로 조정·중재대상이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지만,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법 시행 2년차인 2010년도에는 전체 조정신청 건의 38.1%(841건)를 차지하게 됐다. 2011년도에는 24.0%로 떨어지긴 했으나 높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성공률은 인터넷신문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정성공률보다 언제나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6년도 전체 조정성공률은 60.3%인 반면 인터넷신문은 69.4%였고, 2008년도에는 전체가 75.5%인 반면 인터넷은 78.7%를 나타냈다. 이런 경향은 2011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평균 조정성공률은 76.0%로 나타났다.

처리현황을 보면, 조정성립은 693건(36.5%)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89건(4.7%)으로 그 중 양 당사자 간 동의를 얻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45건(50.6%)이었다.

[표 24] 인터넷신문 조정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5	48	15		2	13		6	12	50.0
2006	77	34		2	13	5		23	69.4
2007	113	44			22	5	5	37	66.7
2008	157	62	8	2	17	5	4	59	78.7
2009	233	118	3	5	14	6		87	86.4
2010	567	190	12	14	29	43		279	82.4
2011	705	230	22	19	81	10	4	339	71.6
계 (%)	1,900 (100.0)	693 (36.5)	45 (2.4)	44 (2.3)	189 (9.9)	74 (3.9)	19 (1.0)	836 (44.0)	76.0

※ 조정성공률 =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중 동의) / 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포털 역시 높은 조정성공률을 보이는데, 2009년도에 이미 96.1%, 2010년도 91.0%, 2011년도 86.5%를 나타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대부분 기사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신청의 71.3%(982건)가 취하되었는데, 그중에 90.3%에 해당하는 887건이 피해구제됐다. 이는 사전에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한 것으로 보여진다.

취하를 제외하면, 조정성립 16.1%,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6.6%, 기각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전체 91건 중에 동의가 87건(95.6%), 이의가 4건(4.4%)을 차지했다.

[표 25] 포털 조정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136	37	12		2	5	2	78	96.1
2010	803	66	66	4	9	43		615	91.0
2011	438	119	9		20		1	289	86.5
계 (%)	1,377 (100.0)	222 (16.1)	87 (6.3)	4 (0.3)	31 (2.3)	48 (3.5)	3 (0.2)	982 (71.3)	89.8

※ 조정성공률 =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중 동의) / 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2. 중재

전체적으로 매체유형별 중재신청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2007년도에는 전통적인 4대 매체를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부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중재신청이 확대되고 있다.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3년만에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전체 중재사건의 50.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신청수를 기록했고, 신문(17.8%)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 매체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시사 주간지	방송	케이블 TV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2006	7	1	2	2	2					
2007	14	1	2		6	3		2		
2008	10	2			4	1			3	
2009	111	47	9	1	5	5	6	7	15	16
2010	77	5	2		1			3	12	54
2011	113	3				1		2	8	99
계 (%)	332 (100.0)	59 (17.8)	15 (4.5)	3 (0.9)	18 (5.4)	10 (3.0)	6 (1.8)	14 (4.2)	38 (11.4)	169 (50.9)

포털에 대한 중재신청은 2009년도 16건, 2010년도 54건, 2011년도 99건으로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95.9%에 해당하는 162건이 중재결정 되었으며, 2010년도에 기각이 1건, 2011년도에 취하가 6건 있었다.

[표 27] 포털 중재 처리현황

연도	구분 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9	16	16				
2010	54	53		1		
2011	99	93				6
계 (%)	169 (100.0)	162 (95.9)		1 (0.6)		6 (3.6)

VII. 침해유형별 처리현황

1. 조 정

침해유형별로 처리현황을 보면, 명예훼손이 전체의 91.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명예훼손 신청건수는 1981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1년도에는 2,030건을 기록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신용훼손(4.8%)으로 나타났다. 신용훼손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신청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후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5년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중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 2005년도 15건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0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는 영상매체가 발전하면서 사진이나 보도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혹은 허락받지 않고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프라이버시 침해(0.4%), 성명권 침해(0.3%) 등에 대한 신청은 아직 적은 편이다.

[표 28] 침해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재산상 손해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1981	44	23	15						6
1982	50	41	9						
1983	71	58	13						
1984	54	39	12						3
1985	59	44	15						
1986	49	25	24						
1987	47	39	8						
1988	55	36	19						
1989	121	87	34						
1990	159	136	23						
1991	220	192	28						
1992	381	313	68						
1993	423	307	114						2
1994	541	421	118						2
1995	528	443	73						12
1996	556	428	105						23
1997	490	466	17						7
1998	602	577	19						6
1999	641	619	9						13
2000	607	581	12						14
2001	659	643	9						7
2002	511	493	10						8
2003	724	698	10						16
2004	759	718	39						2
2005	883	827	23		15	2	14		2
2006	1,087	1,004	17		48	7	1	4	6
2007	1,043	953	2		53	12	3	11	9
2008	954	899	6		29	10	4	3	3
2009	1,573	1,457	6		56	5	1	18	30
2010	2,205	1,995	20		109	3	4	20	54
2011	2,124	2,030		5	39	3	22	24	1
계 (%)	18,220 (100.0)	16,592 (91.1)	877 (4.8)	5 (0.0)	349 (1.9)	42 (0.2)	49 (0.3)	80 (0.4)	226 (1.2)

2. 중재

중재신청도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신청이 전체의 88.6%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초상권 침해 9.3%, 음성권 침해 0.9%, 프라이버시 침해 0.6%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표 29] 침해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연도	구분 사건수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2008	10	4	5	1			
2009	111	99	10	2			
2010	77	76					1
2011	113	112	1				
계 (%)	332 (100.0)	294 (88.6)	31 (9.3)	3 (0.9)	1 (0.3)	2 (0.6)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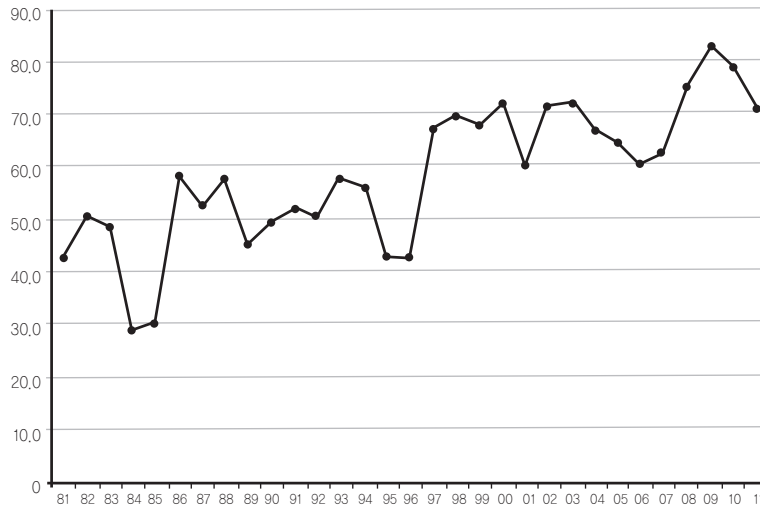
VIII. 조정성공률 변동 추이

조정성공률이란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를 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한 수치이다.

조정성공률은 1981년도에 42.9%를 기록한 이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1981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조정성공률이 29.3%(1984년)부터 57.9%(1993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연도 간의 증감폭이 커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1997년도 이후 조정성공률은 60%를 넘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2000년도에는 70%를 넘어섰고, 2009년도에 8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후로 2010년도에는 79.0%, 2011년도에 70.9%로 조금 주춤했다.

조정성공률이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절한 합의점을 제시하는 노련한 중재자가 되었다는 점, 그동안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를 통해 신청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점, 언론사들이 언론조정·중재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과의 합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조정성공률 변동 추이 (%)

[표 30] 연도별 조정성공률 (%)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조정 성공률	42.9	50.0	48.8	29.3	30.0	58.3	52.6	57.1	45.3	49.4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조정 성공률	52.0	50.6	57.9	56.1	42.5	42.7	67.1	69.2	68.0	72.0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정 성공률	60.3	71.7	72.2	67.0	64.5	60.3	62.8	75.5	82.6	79.0	70.9

※ 조정성공률 =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중 동의) / 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한편, 2008년도부터 조정성공률 외에 본안성공률을 산정하여 병기하고 있다. 본안성공률은 2008년도 84.5%, 2009년도 91.4%, 2010년도 88.0%, 2011년도 81.7%로 조정성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 2008년 이후 구제율 현황 (%)

연도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성공률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 성공률	본안 성공률
				동의	이의	계속				심리전	심리중		
2008	954	809	402	35	17		125	21	4	120	230	75.5	84.5
2009	1,573	1,019	538	66	39		88	257	10	287	288	82.6	91.4
2010	2,205	1,313	630	109	40		157	137	1	754	377	79.0	88.0
2011	2,124	1,560	725	65	40		285	44	14	506	445	70.9	81.7

※ 조정성공률 =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 / 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 본안성공률 = 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 / 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IX.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언론조정·중재신청 사건들은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언론보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소개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되는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참고하면 된다.

1. 조정 사례

〈정정보도청구〉

- 사례1.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사건번호 : 94서울중재177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임○○
 피신청인 : 경향신문
 접수일 : 1994. 7.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정정보도

경향신문은 1994년 7월 10일자 22면 『통일촉매 작용할 수도』 제목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일부에서는 김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주석 자체가 그동안 분단체제의 일부라는 상징적 존재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김 주석의 사망은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된 내용도 무단 작성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경향신문은 1994년 7월 29일자 2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 사례2.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재료를 만들어 납품해 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조정31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외 6인
피신청인 : KBS-1TV
접 수 일 : 2004. 7.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 PR보도

KBS-1TV는 2004년 6월 6일자 21:15 「9시뉴스」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 재료를 만들어 온 식품업체들이 붙잡혔다는 보도를 하면서 만두소 제조공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만두소 제조공장이라고 보여준 보도화면이 실제로는 단무지 제조공장의 모습이었으며, 신청인 공장이 오염된 물로 단무지를 씻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수질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물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KBS-1TV에서 『단무지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제목의 PR보도를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 사례3. KBS가 송례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KBS (사장 정○○)
피신청인 : 경향신문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정정보도

경향신문은 2008년 2월 12일자 25면 『KBS ‘승례문 화재 녹장 보도’ 항의 빗발』 제목의 기사에서 MBC, SBS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낸 것에 반하여 KBS는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방송한 이후에야 현장 중계차를 연결하여 뉴스속보 방송을 내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KBS가 9시 메인 뉴스 말미에 속보를 내보낸 이후 22:31, 23:33, 24:35에 각 현장 중계차를 연결하여 뉴스속보를 방송하고 MBC, SBS와 마찬가지로 24:57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경향신문은 2008년 3월 10일자 2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 사례4. 태안 기름유출피해지역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의 휘발성분에 노출되어 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3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이○○)
 피신청인 : MBC-TV
 접수일 : 2008. 3.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정정보도

MBC-TV는 2008년 2월 19일 21:00 「뉴스데스크」에서 태안 기름유출지역에서 장시간 방제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 휘발성분에 노출되어 실명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주민은 이미 2005년 4월에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으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방제작업과는 상관이 없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MBC-TV는 「뉴스투데이」 2008년 3월 27일 07:34에 정정보도를 방영했다.

■ 사례5. 신청인이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9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YTN
 접수일 : 2009. 3.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정정보도

YTN은 2009년 3월 21일 11:00 「11시 뉴스」의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 살해』 제목의 기사에서 현직 경찰이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으므로 자신이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YTN은 2009년 4월 9일 8:00, 12:00, 15:00, 18:00, 21:00에 정정보도를 방영했다.

■ 사례6.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886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해군본부
 피신청인 : 동아일보
 접수일 : 2010. 5. 11.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반론보도

동아일보는 2010년 3월 31일자 6면 『해경구조 보트 4조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제목의 기사에서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에 4척의 구조보트가 있음에도 2척만 보내라고 하는 등 해경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는 해경 구조보트 2척이 있었고, 해경과

긴밀한 협조로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아일보는 2010년 6월 3일자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 사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3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피신청인 : MBC-TV
 접수일 : 2008. 5. 6.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MBC-TV는 2008년 4월 29일 23:10 「PD수첩」에서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고 미국 여성도 인간 광우병에 걸려 죽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에서 보여진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방송에서 다룬 여성도 미국 농업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조사되었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MBC-TV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동 소제기됐다. 1심, 2심, 3심 모두 “피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론보도청구〉

- 사례1.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해 전체 정신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조정55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신청인 : KBS-1TV
접 수 일 : 2003. 2. 21
처리결과 : 기각

KBS-1TV는 2003년 2월 18일 「뉴스 속보」에서 대구지하철방화사건의 방화용의자 김 모 씨를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정신과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지체장애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용의자 김 씨가 정신지체나 정신질환과는 다른 ‘뇌병변장애(중풍) 2급 판정’을 받았을 뿐인데 이를 정신질환자라고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화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보도내용에서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조정대상 보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사례2.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 정부가 10억원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32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문화체육관광부
피신청인 : 경향신문
접 수 일 : 2010. 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경향신문은 2010년 1월 22일자 1면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절차도 없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덕스토리 해외공연 사업’에 지원예산을 배당하였고, 이 때문에 세금으로 ‘코드지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에 의해 요덕스토리를 비롯한 40여 개의 국내외 대표적 작품 및 행사가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예산절차로서 코드지원이 아니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경향신문은 2010년 3월 2일자 2면에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손해배상청구〉

- 사례1. 프로그램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4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유○○ 외
 피신청인 : KBS-2TV
 접수일 : 2009. 11. 11
 처리결과 : 기각

KBS-2TV는 2009년 11월 9일 23:15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제목의 방영분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를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80cm 이하의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언론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 즉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의 보도는 방송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의견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

여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남성들 중 180cm 이하인 남성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례2. 대학가에 국제커플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커플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41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박○○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접수일 : 2007. 11. 22.
 처리결과 : 합의 - 손해배상

헤럴드경제는 2007년 8월 24일자 1면 『대학가 ‘국제커플’ 신풍속도』 제목의 기사에서 대학가의 신풍속도로 국제커플이 급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외국인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 이에 신청인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헤럴드경제가 신청인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사례3.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 포털에 게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421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백○○
 피신청인 :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접수일 : 2010. 10. 29.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손해배상

SK커뮤니케이션즈(주)는 (주)헤럴드미디어로부터 조정대상 기사를 전송받아 2010년 10월 27일자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목의 사진 기사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다수의 인터넷 포털에 추위로 잔뜩 움츠린 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SK커뮤니케이션즈(주)만이 요청일로부터 만 하루가 경과되도록 삭제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작성하여 전송한 (주)헤럴드미디어와는 별도로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대상으로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타 포털사에 비해 피신청인 포털이 장기간 조정대상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 사례1. 동료 여직원과 벚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연인 사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29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더데일리포커스
 접수일 : 2006. 4.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정정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손해배상

더데일리포커스는 2006년 4월 7일자 6면 『벚꽃길 따라 사랑이』 제목의 기사에서 윤중로를 걷고 있는 남녀의 사진을 게재하며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한 6일 시민들이 벚꽃 나무 아래를 거닐며 완전한 봄을 즐기고 있다’는 사진설명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속의 남녀는 단순한 직장동료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아니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조정성립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더데일리포커스는

2006년 4월 21일자 6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4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사례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일요서울
접 수 일 : 2009. 2.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 정정보도

일요신문은 2009년 1월 4일자 3면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2009년 1월 25일자 2면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제목의 기사에서 김○○ 의원이 ○○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박○○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양 당사자 간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일요신문은 2009년 2월 22일자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추후보도청구〉

- 사례. 신청인이 고급주택을 털어 호화생활을 해 온 절도범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238
 청구명 : 추후보도청구
 신청인 : 최○○
 피신청인 : KBS-1TV
 접수일 : 2007. 7. 4.
 처리결과 : 합의 - 추후보도

KBS-1TV는 2007년 7월 7일 21:00 「뉴스9」에서 ○○경찰서가 상습절도 혐의로 신청인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법원 재판 결과, 무죄를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신청했다. 심리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KBS-1TV는 2007년 7월 15일 21:35 「뉴스9」에서 추후보도를 방영했다.

2. 중재 사례

〈정정보도청구〉

- 사례1. 강남구가 양재천 산책로에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심어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383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권○○)
 피신청인 : SBS-TV
 접수일 : 2004. 8. 7.
 처리결과 : 중재결정 - 정정보도

SBS-TV는 2004년 7월 8일 20:15 「8시뉴스」에서 강남구청이 주민들이 오가는 양재천 산책로에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심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립과학연구소와 대검찰청의 성분 분석 결과 양재천 산책로에 심어 놓은 것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가 아니라 마약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관상용 개양귀비로 밝혀졌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고, SBS-TV는 2004년 8월 30일 20:00에 정정보도를 방영했다.

■ 사례2. K씨를 ‘미네르바’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짜 미네르바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박○○
 피신청인 : 신동아
 접수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 유감보도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217~238면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아고라에 경제 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K모 씨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미네르바이며 2008년 3월부터 211.178.로 시작되는 IP주소를 사용하여 280편의 글을 토론방에 올렸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중재화해결정을 내렸고, 신동아는 2009년 5월호에 재판 중인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유감을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반론보도청구〉

- 사례. 경찰이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깔아뭉개고 탄압했다고 보도했으나 불법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절차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6
 청구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남대문경찰서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접수일 : 2009. 9. 9.
 처리결과 : 중재결정 - 반론보도

오마이뉴스는 2009년 8월 29일 뉴스면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개다”』제목의 기사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추모예배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깔아뭉개고 탄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산이 되지 않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의무이행이었을 뿐,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반론보도를 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고, 오마이뉴스는 2009년 9월 11일 뉴스면에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손해배상청구〉

- 사례1.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술장면을 촬영 · 방송했다.

사건번호 : 2006서울중재5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SBS-TV
 접수일 : 2006. 9. 28.
 처리결과 : 중재결정 - 손해배상

SBS-TV는 2006년 9월 10일 23:00 「SBS스페셜」에서 환경호르몬의 문제를 다루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술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해를 입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SBS가 신청인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했다.

- 사례2.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협박성 전화를 받는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7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유○○ 외 2인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접수일 : 2008. 8.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 손해배상

데일리서프라이즈는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촛불시위 유모차부대 ‘아이 납치’ 협박받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협박성 전화가 왔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신청인들의 얼굴 사진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게재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보도를 하기 전에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친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지 않은 등 피신청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중재결정을 했다.

〈추후보도청구〉

- 사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3
 청구명 : 추후보도청구
 신청인 : 강○○
 피신청인 : 대전일보
 접수일 : 2009. 6. 2.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 추후보도

대전일보는 2009년 7월 10일자 사회면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목의 기사에서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대학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들이 일부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표절을 전제로 한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추후보도를 신청했다. 중재부는 추후보도를 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렸고, 대전일보는 2009년 6월 4일자 6면에 추후보도를 게재했다.

X. 평가와 전망

지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총 18,552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언론분쟁 해결의 중재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 회사, 일반단체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다는 것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중재는 신속하고 비용 없이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언론분쟁이 빠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와 언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도활동의 위축을 방지하여 언론자유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1980년대에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도 낮아 중재 신청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보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과 언론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언론조정·중재의 유용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건 수와 높아지는 조정성공률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언론분쟁해결제도로써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언론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피해구제방법을 연구하고 신청대상매체를 확대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뉴미디어 상에서 발

생하는 언론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3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원 보도에 비해 효과가 미흡했던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와 크기의 조정 등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포털사건의 경우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고 출석의무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힘쓰므로써 포털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또한 2011년 2월부터는 서울제3, 제4중재부를 포털사건 전담 중재부로 지정·운영하여 포털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률 제고 및 손해배상액수의 합리적 조정 등 손해배상사건의 조정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펼쳐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과 성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고, 보편적인 언론피해구제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제2장 시정권고

I. 시정권고 제도의 의의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 시, 조정·중재 제도와 함께 도입된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각종 법익 침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론기본법」에는 ‘위원회가 언론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침해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정권고의 대상, 절차적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정권고소위원회의 구성과 권고 방법 등 절차적 규정이 마련됐다.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9조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선출한 7인의 위원으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언론의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언론사는 시

정권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와 같은 시정권고소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 규정은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정권고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됐다. 언론중재법 제32조는 시정권고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에 대한 권고적 조치’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시정권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정권고 대상 매체도 기존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인터넷신문 등이 추가됐다.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시정권고의 기능이 확대, 강화된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시정권고가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언론중재법에서 새로 신설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가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시민단체 등의 무분별한 시정권고 신청으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면서 이 제도에 대해 강한 견제와 의심의 시선을 보였다.

조선일보 등은 2005년에 제기한 언론중재법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에서 시정권고 제도가 언론에 대한 일방적 감시·통제 조치로서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 제도가 언론보도에 대한 사후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언론사로서는 권고를 불이행했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시정권고 조항 자체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별로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표행위가 있는 후에야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해당 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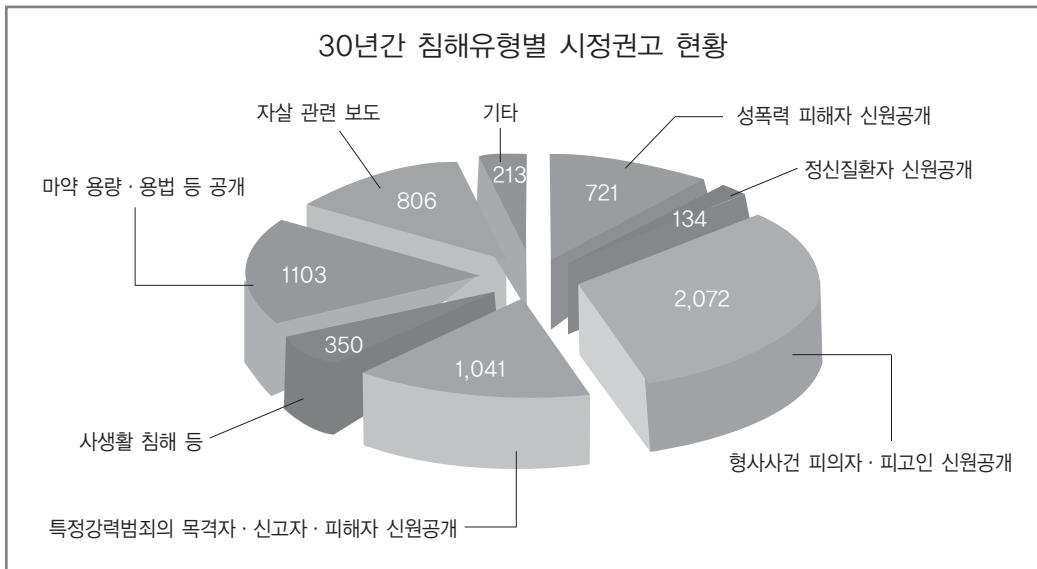
2009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만 4년 남짓 운용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를 분석해보니 언론계에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시민단체 등의 시정권고 신청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 언론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는 사라졌지만, 언론의 법익 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하는 본연의 기능은 계속되고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 및 사회적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법익 침해 사례가 감소하는 등 보도관행 개선과 바람직한 언론보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II. 시정권고 처리현황 개괄

위원회는 1983년도 3건의 보도에 대해 최초로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첫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었던 보도는 극약으로 살해당한 여인이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의 사진 보도였다. 위원회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일간지 1개, 주간지 2개 매체에 대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1988년 정간물법 제정 이전까지 시정권고 건수는 1986년도 3건, 1987년도 6건에 불과했다. 이는 「언론기본법」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침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시정권고 사항의 의결 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언론기본법」 제50조 제8항의 「중재위원회」를 「위원총회」로 보고 매우 중대한 침해내용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두 차례 시정권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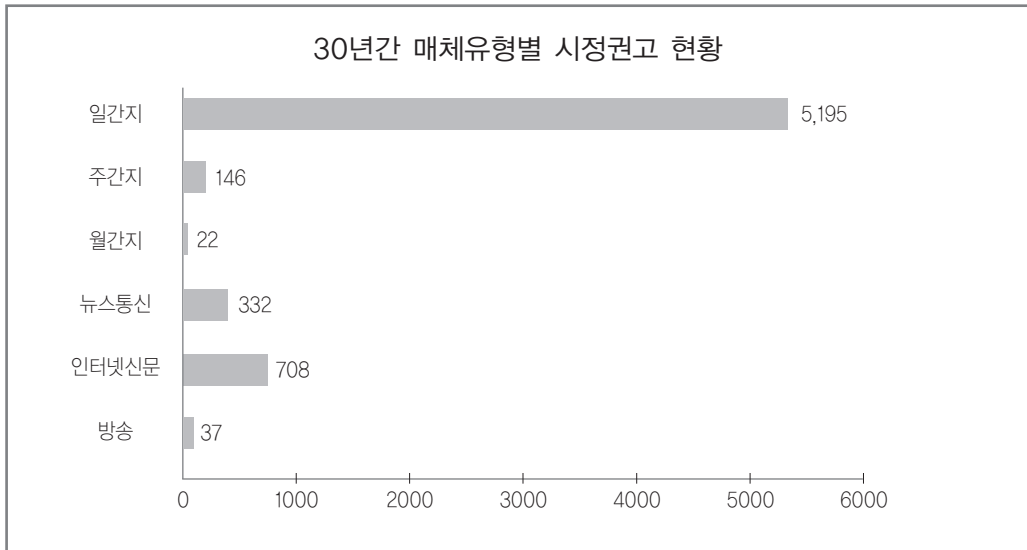


위원회는 정간물법 시행과 함께 시정권고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했다. 정간물법 시행령에 시정권고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정기적으로 언론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도 기존 5개 조항에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침해», 「사회질서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 등 22개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시정권고 건수는 1988년도 37건, 1989년도 180건, 1990년도 31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997년도에는 46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998년도 348건, 1999년도 240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다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250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0년간 위원회는 총 6,440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법익침해유형별로는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2,0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용량·용법·효능 등 상세 공개 1,103건,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1,041건, 자살 관련 보도 806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721건 등으로 나타났다.

30년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간지가 5,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708건, 뉴스통신 332건, 주간지 146건, 방송 37건, 월간지 22건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시정권고의 대상에 포함된 인터넷신문이 일간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신생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취재, 편집 인력이 부족한 군소 인터넷신문사가 늘어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 도입되었던 제3자 시정권고 신청제도는 2009년 개정 법률 시행 이전까지 약 4년여 간 운용됐다. 신청심의회는 법 시행 첫해인 2005년도 17건, 2006년도 50건, 2007년도 39건, 2008년도 26건, 2009년도 48건 등 총 180건이 접수되어 심의절차가 진행됐다. 심의결과 이 중 49건에 대해서만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05년도 3건, 2006년도 2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 7건, 2009년도 35건이었다. 그 외 안건은 시정권고 신청 제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건이 불비하여 기각이나 각하 처리되거나,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 관련 등의 민원에 해당하는 신청 건은 해당기관에 이첩처리하고, 시정권고 신청 후 조정·중재절차를 별도로 재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취하함으로써 종결됐다.

[표 32] 신청심의 의결 현황

(2005. 7. 28. ~ 2009. 8. 6.)

연도별	구 분 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타	시정 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2005년	17	15	1		1	3	9		4	1
2006년	50	33	17			2	11	1	36	
2007년	39	27	12			2	18		12	7
2008년	26	19	7			7	9		9	1
2009년	48	1	47			35	8	5		
계 (%)	180 (100.0)	95 (52.8)	84 (46.7)		1 (0.5)	49 (27.2)	55 (30.6)	6 (3.3)	61 (33.9)	9 (5.0)

Ⅲ.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제도변화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198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최초의 심의기준은 총 5개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였을 때
2.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3.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을 때
4.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경시하였을 때
5.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 찬양하였을 때

1989년 10월 5일 개정된 심의기준은 기존 5개의 선언적 규정을 크게 「타인의 명예와 권리침해」, 「사회질서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의 범주로 나누고 총 22개항의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심의기준은 헌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윤리 강령, 윤리실천요강, 보도기준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침해」의 세부기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이 유죄로 확정판결 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진범으로 추정되게 보도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 미성년 피의자, 정신질환자 등의 신원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질서 침해」는 특정 종교를 비방, 공격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을 공표한 경우,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보도에 관한 내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한 경우, 자살 또는 타살 방법 및 마약의 환

각적 효능을 공표한 경우 등이다. 1996년 12월 13일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당한 피해자의 신원보호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2004년 8월 23일에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형식을 조문형태로 재정비하고 ‘귀순자, 귀순간첩 또는 이에 대한 신고자 공표’ 및 ‘국가원수에 관한 명예훼손 공표’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자살사건의 증가에 따라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살 관련 보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2005년 언론중재법의 시행과 함께 시정권고 심의기준도 전면 개정됐다.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심의기준을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로 분류하고 각종 법률을 기초로 한 법익침해 관련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종교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조항은 삭제했다.

2005년 7월 28일 개정된 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자(死者)의 명예 보호 규정 신설
- 형사사건 피의자 신원공개 금지 규정 강화
-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신원보호 강화
- 성폭력피해자 보호 규정 보강
- 범죄수법 묘사 관련 규정 강화
- 성(性) 관련 보도 규정 강화
- 자살미수자의 경우에도 신원공개를 금지
- 「폭력 묘사 등, 충격·혐오감, 사회통합」 등 사회적 법익 침해 규정 신설
- 「국가안전보장, 국가기밀 누설금지」 등 국가적 법익 침해 규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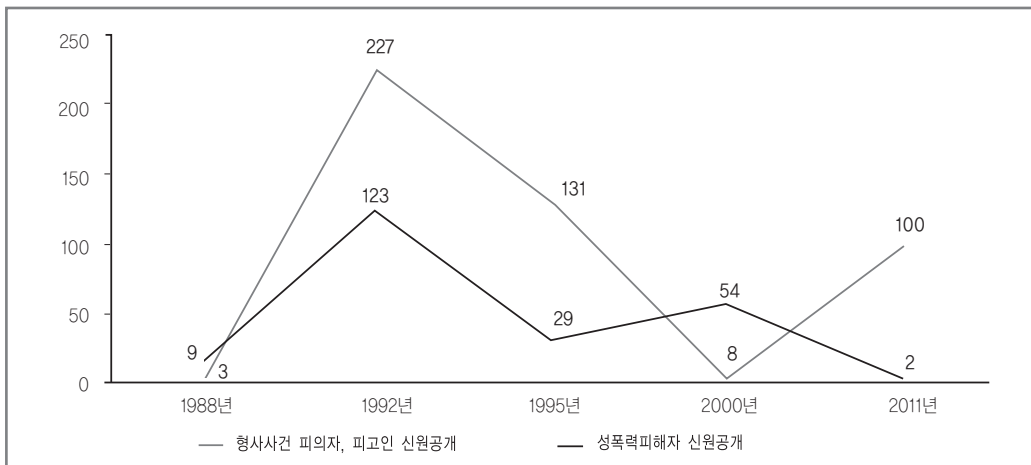
이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는 각종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인적, 사회적 법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내용이 추가됐다. 2008년 3월 18일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보도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2011년 8월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격권 보호 및 재난보도 시 유가족의 인격권 침해 금지 기준 등이 마련됐다.

IV.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

시정권고의 침해유형은 크게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로 구분된다. 개인적 법익 침해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이다. 사회적 법익 침해에는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보도, 범죄수법 상세모사 등 기타 법익침해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30년간 위원회는 4,318건의 개인적 법익 침해 보도, 2,122건의 사회적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 법익침해와 관련한 시정권고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시정권고 시행 초기에는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및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가 주를 이루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는 1988년도 3건, 1989년도 92건, 1990년도 169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1993년도에는 228건에 이르렀으나 1994년 이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역시 1987년도 2건, 1992년도에는 1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1994년에는 58건으로 약 3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다.



1994년 이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시정권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사례가 급증했다. 마약 용량·용법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1994년도 7건, 1995년도 121건으로 1년간 약 1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정권고의 결과로 2002년도 44건, 2003년도 2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2010년도에는 4건에 그쳤다가 인터넷신문사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도에 다시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4년 자살보도에 관한 심의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97건, 2009년도 93건, 2010년도 199건, 2011년도 189건으로 최근 몇 년간 자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2008년 유명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방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사건 보도 역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자살자 및 유족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자살 방법을 상세 묘사하는 등 자살관련 보도에서 자제해야 할 내용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발송하고 자살예방과 자살보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자살사건 예방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3]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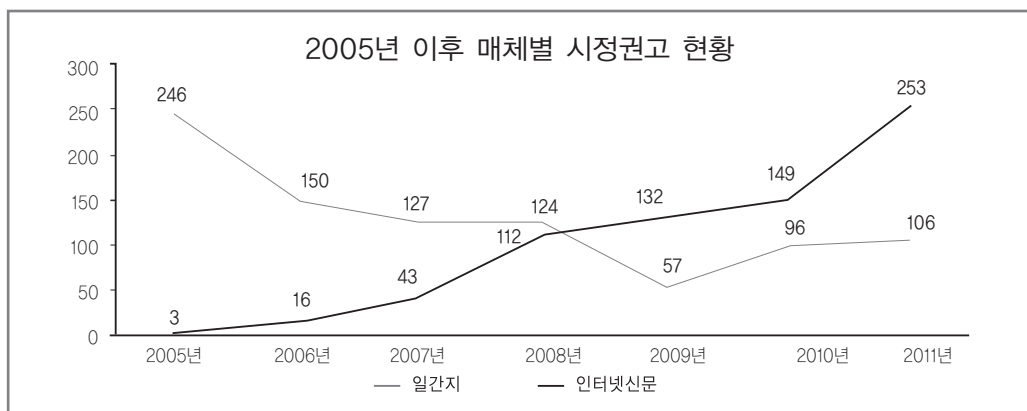
연도	건수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기타	
1983	3								3	
1986	3					3				
1987	6	2				4				
1988	37	9		3		16			9	
1989	180	52		92		36				
1990	311	63		169	12	67				
1991	264	70		140	16	34	1		3	
1992	390	123		227	3	34			3	
1993	344	106		228		10				
1994	204	58		132		7	7			
1995	282	29		131			121		1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1998	348	16	14	29	151		137	1		
1999	240	17	11	20	126		66			
2000	234	54	6	8	67	2	97			
2001	231	22	10	9	70	1	119			
2002	142	9			88	1	44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2008	289	4		48	8	30	27	97	75	
2009	253		1	97	6	15		93	41	
2010	284	2		49	2	10	4	199	18	
2011	426	2		100		36	95	189	4	
계 (%)	6,440 (100.0)	721 (11.2)	134 (2.1)	2,072 (32.2)	1,041 (16.2)	350 (5.4)	1,103 (17.1)	806 (12.5)	213 (3.3)	

V.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

현행 시정권고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 및 인터넷신문이다.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을 시정권고 심의대상매체로 규정했다. 이후 1988년 정간물법에서 방송이 제외되었으나,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방송이 다시 추가되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도 가능해졌다.

지난 30년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간신문이 5,195건(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일간신문에 관한 시정권고는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간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05년도 246건에서 2009년도 57건으로 약 77% 감소하였고 반대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건수는 2005년도 3건, 2006년도 16건, 2007년도 43건, 2008년도 112건으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2009년도 132건, 2010년도 149건, 2011년도 25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34]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연도	권고건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1983	3	1	2				
1986	3			3			
1987	6	3	2	1			
1988	37	29	2	2	4		
1989	180	173	1		6		
1990	311	301	1		9		
1991	264	247	8	3	6		
1992	390	379			11		
1993	344	336	1		7		
1994	204	195	1		8		
1995	282	271	1		10		
1996	310	304		1	5		
1997	469	461	1		7		
1998	348	336	2	2	8		
1999	240	234			6		
2000	234	213	4		17		
2001	231	211	7		13		
2002	142	129	1		12		
2003	237	219	2		16		
2004	283	247	14	1	21		
2005	278	246	8	1	19	3	1
2006	190	150	9		15	16	
2007	202	127	11	1	20	43	
2008	289	124	19	1	31	112	2
2009	253	57	15		20	132	29
2010	284	96	14	5	20	149	
2011	426	106	20	1	41	253	5
계 (%)	6,440 (100.0)	5,195 (80.7)	146 (2.3)	22 (0.3)	332 (5.2)	708 (11.0)	37 (0.6)

신생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인해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인터넷신문 전담 모니터요원을 선발, 운용하고 있다.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00년 이전까지 연평균 약 7건이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20건 안팎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및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있어 현재 별도의 자체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 접수된 신청심의 중 32건의 방송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Ⅵ. 주요 사례

1.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확정판결 이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도록 공표한 경우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원회의 시정권고 역시 미성년 피의자 신원공개에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999년 대법원이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명과 초상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³¹⁾

또, 2004년 이후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사건 피의자의 얼굴공개금지를 국가기관에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반영하여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³²⁾

31) 이인호(1999).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언론중재』, 제19권 3호, 57면.

32) 김상겸(2009). 공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언론중재』, 제29권 3호, 6면.

이에 위원회는 2003년부터 미성년, 성년 구분 없이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토대로 신원을 추정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이 저지른 범죄 또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예외 사유로 보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모씨(22)를 구속하고 공범 ○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 ○월부터 ○○읍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이들은 지난 5월 29일 낮 12시경 자신들이 근무했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모씨(39)의 지갑에서 현금 10여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낸 혐의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이나 나이, 근무처 등을 익명 처리함

2009년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7명의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초상공개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흉악범의 초상공개는 공익과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인의 초상 사진을 공개하였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인(私人)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피의자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한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초상권은 범죄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의자의 실명과 초상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초상공개를 허용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견되지 않는 한 피의자 신원공개는 자체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009년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관한 사회적 논의 끝에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은 흉악범 및 성폭력범에 한하여, 얼굴 등 신상정보를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도 개정됐다. 이와 같이 흉악범, 성폭력범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역시, 관련 법률 및 수사기관의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³³⁾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권고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동 주공아파트 뒷산에서 ○○○씨(56. 여. ○구 ○○아파트 ○○동 ○○○호)가 하의가 벗겨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동네에 사는 ○○○ 씨(70. 여)가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중태다. 경찰은 인근 불량배 및 변태성욕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3.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문 또는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 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33) 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음

부천시 원미구 중동 ○○○○ 번지내 편의점인 ○마트점에 20대 중·후반대 신원불상의 강도가 침입해 종업원 ○모씨(19, 남)에게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4. 사생활 침해

헌법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지닌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의 알권리를 넘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초상 등을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부인과 아들이 멀쩡한 남편을 알콜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편 김○○(58, 남)씨의 형제자매들이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단독 권기만 판사)에 인천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김○○씨가 가스회사에서 10여년을 근무하며 마련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의 단독주택(시가 5억원)과 관련한 재산관계와 올바르지 못한 부인의 행실을 두고 부인과의 마찰을 자주 빚으면서 정신병원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주변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 박씨는 외간 남자와 술을 마시며 다니고 스크린경마와 경륜장 등을 다니며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는 등 이러한 문제로 남편과의 극한 부부싸움을 자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용량·용법 등 공개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명칭·사용량·구입가

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사범 검거 시 수사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마, 필로폰 등의 사용량· 용법 등을 상세히 공표하여 시정권고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마약이 늘면서 이 약물의 명칭과 효능· 복용방법 등을 자세히 묘사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을 판매한다'는 브로커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이 브로커는 "○○은 2cc로 패킹(포장)되어 있습니다. 2cc를 한 번에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면 됩니다. 술에 타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10분이면 약효가 나타나며 ○○○는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배출되므로 약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의 가격은 1회분 5만원으로 6회분(30만원) 이상만 판매하고 있었다.

6. 자살 관련 보도

위원회는 2004년부터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살자 신원공개 및 자살방법 상세 묘사 등을 금지하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정을 권고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자살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살보도의 '베르테르 효과'를 예방하고 자살자와 유족들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살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그뿐 아니라 2010년 12월에는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관계 기관 및 언론계와 협력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공의 관심이 높은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보도,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8일 밤 10시 15분쯤 경남 통영시 도남동의 한 모텔에서 ○모(3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장씨는 개그맨 ○○○ 등이 소속된 ○○○○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하며 ○○○을 비롯, ○○○, ○○○ 등 연예인들의 매니저먼트를 맡았었다. ○씨는 아역스타 출신인 탤런트 ○○○와 2007년 결혼했다.

“추한 모습 싫다” 위암말기 ○○면장 자살

“추한 모습은 남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추하게 살고 싶지 않다.” 故 ○○○(59) 진안 ○○ 면장이 살아생전 평소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병색이 짙어 물조차 넘기지 못하고, 야월대로 야윈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어서였을까. 지난 4일 저녁 8시5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이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고 ○ 면장의 최후에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한 지인은 “○ 면장은 위암말기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추한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을 줄곧 해 왔다”면서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고 울먹였다. (후략)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황성군 갑천면 중금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조모(여·23·전북군산시) 김모(24·홍천군)씨 등 2명이 승용차 배기구에 ○○○○를 연결, 차량 안에 배기가스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본보 17일자 5면 보도)했다. … 중략 … 당시 조씨는 강릉시 사천면 공동묘지 인근 야산에 렌터카를 세워 놓고 서모(27·부산시)씨 등 2명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량안에 배기가스가 들어오도록 ○○○○를 연결했다가 주민신고로 발견돼 구조됐으며 서씨 등 2명은 숨졌다.

7.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

사회적 법익 침해사례로는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모방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충격·혐오감을 주는 보도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등을 밝히지 않은 보도 등이다.

지문 위조 전문가 한모(47)씨가 개발했다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다. 위조여권 주인의 손가락 끝에 ○○를 발라 마른 뒤에 살짝 떼어낸 뒤 그 ○○○을 밀입국자 손가락 끝에 붙이는 방식이었다. 두께가 1mm도 되지 않는 얇은 ○○○에는 지문이 선명히 새겨지게 된다. 밀입국자는 자기 검지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실리콘을 살짝 바르고, ○○○을 붙이는 것으로 남의 지문을 갖게 된다. 지문을 떼낼 때 사용하는 ○○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평범한 제품이었지만, 이들은 지문의 융선(隆線)까지 가장 잘 재현하는 ○○○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다고 했다. 배씨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1시간 전 위조 지문을 검지 끝에 붙였다. 미리 붙이면 ○○○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조 일당은 “땀과 손의 열기로 (○○○이) 녹을 수 있으니 차가운 음료병을 살짝 쥐고 있으라”고 조언했다.

8. 기타(제3자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

제3자가 신청한 시정권고 사건은 대부분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으로 분류된다.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전체 신청 건의 27.2%로,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칼럼 등의 취지를 심대하게 왜곡한 경우, 특정기관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보도한 경우, 언론으로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음료의 효능을 과장하여 보도한 경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법원 판결문을 기사화하면서 판결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담아 다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가수 서태지측과 공연기획사 KM스타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공연기획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KM스타가 공연할 의사가 없는 서태지측과 공연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서태지측을 상대로 낸 출연료반환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에게 3억5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KM스타와 서씨는 작년 4월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라는 공연을 개최키로 작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태지가 KT&G와 작년 5월 블라디보스톡 공연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었기에 공연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KM스타가 이중공연 계약을 이유로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같은 내용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특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공익추구를 위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 선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社告 --- 국가청렴위 발표

안산시 청렴도(부패지수) 전국 꼴찌, 불명예 퇴치운동에 지방의회와 함께 반월신문사에서 앞장서겠습니다.

(3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한 개 지면을 모두 할애하여 보도)

VII. 평가와 전망

지난 30년간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보도의 법익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범죄사건 보도 시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익명보도가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언론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1990년대까지는 성폭행 피해자, 미성년 피의자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시정권고가 집중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자살 관련 보도, 신종마약에 관한 상세보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정권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정권고가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바람직한 언론보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시정권고의 법적 효력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에 대한 부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는 한정된 심의인력으로 수천 종이나 되는 매체를 관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출발했다. 법 제정 당시 시민단체 등에 의한 무분별한 시정권고 신청으로 자유로운 언론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약 4년간의 제도운용 결과 시민단체의 시정요구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아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무분별한 시정권고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이미 공표된 ‘시정권고심의기준’에 따라 시정권고하기에 적합한지

를 따져 부적합한 경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한 언론위축효과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폐지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는 다시 부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매체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신문 전담 모니터요원 제도를 운용, 인터넷매체 심의를 강화하여 2005년도 3건에 불과하던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011년도에는 253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살·마약·범죄 등의 예방에 언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관련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저해요인을 근절하고 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1999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現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위가 마련한 선거기사심의 관련 개정안의



2000년 제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판식

주요 골자는 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벌칙 조항 신설이었다. 그 중 벌칙조항으로 언론인에 대한 1년 업무정지 규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0년 2월 16일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2000년 2월 25일에 설치하여 2000년 5월 13일까지 운영했다. 심의위원회는 2000년 2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이창구 위원장과 윤석홍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2000년 2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제정했다.

참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방송위원회(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II. 구성 및 운영

1. 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2) 운영기간

운영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이며,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

일까지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2010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2010년부터 재·보궐 선거에도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은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이다.

심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8회, 재·보궐선거에 4회 등 총 12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구성됐다. 역대 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과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0. 4. 13)

운영기간 : 2000. 2. 25. ~ 2000. 5. 13.

위원명단 : 이창구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윤석홍 (부위원장, 단국대 언론학 교수)

송효빈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남시욱 (前 문화일보 사장)

이시현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영호 (언개련 신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고혜련 (한국여성언론인연합 이사)

유선영 (변호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2. 6. 13)

운영기간 : 2002. 2. 14. ~ 2002. 7. 13.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박기순 (부위원장,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해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춘웅 (前 서울신문 논설주간)

이경일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동화 (경기대 교수)

정동익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

전민기 (변호사)

권동순 (前 일요서울 편집국장)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2. 12. 19)

운영기간 : 2002. 8. 21. ~ 2003. 1. 18.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박기순 (부위원장,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해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박용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성한표 (前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이성준 (관훈클럽 이사)

전민기 (변호사)

임상택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4. 4. 15)

운영기간 : 2003. 12. 17. ~ 2004. 5. 15.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유원석 (부위원장, 변호사)
김재곤 (공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이동화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광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주언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최현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6. 5. 31)

운영기간 : 2006. 1. 31. ~ 2006. 6. 30.

위원명단 : 유효봉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이명순 (부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경일 (한국외대 교수)
노향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안병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박구진 (변호사)
하창우 (변호사)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장호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7. 12. 19)

운영기간 : 2007. 8. 21. ~ 2008. 1. 18.

위원명단 : 유효봉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박영상 (부위원장,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수언 (前 국민일보 논설위원)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남찬순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김성근 (변호사)
 채근직 (변호사)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경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08. 4. 9)

운영기간 : 2007. 12. 11 ~ 2008. 5. 9.

위원명단 : 변화석 (위원장, 변호사)

김병국 (부위원장,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노향기 (전 월간 말 발행인)
 서옥식 (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박영규 (前 연합통신 논설위원)
 조중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성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대의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10. 6. 2)

운영기간 : 2010. 2. 1 ~ 2010. 7. 2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기동 (부위원장, 변호사)
 조병철 (前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필)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병설 (배재대 초빙교수)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연 (前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10. 7. 28)

운영기간 : 2010. 5. 29 ~ 2010. 8. 27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기동 (부위원장, 변호사)

조병철 (前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필)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병설 (배재대 초빙교수)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한국연 (前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10. 10. 27)

운영기간 : 2010. 8. 28 ~ 2010. 11. 26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기동 (부위원장, 변호사)

조병철 (前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필)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병설 (배재대 초빙교수)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한국연 (前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11. 4. 27)

운영기간 : 2011. 2. 26 ~ 2011. 5. 27

위원명단 : 양삼승 (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기동 (부위원장,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상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병욱 (백석대 어문학부 교수)

원병설 (배제대 초빙교수)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전진우 (경원대 초빙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한국연 (전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일 2011. 10. 26)

운영기간 : 2011. 8. 27 ~ 2011. 11. 25

위원명단 :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회와 동일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2. 심의·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전문 심의요원과 실무팀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모니터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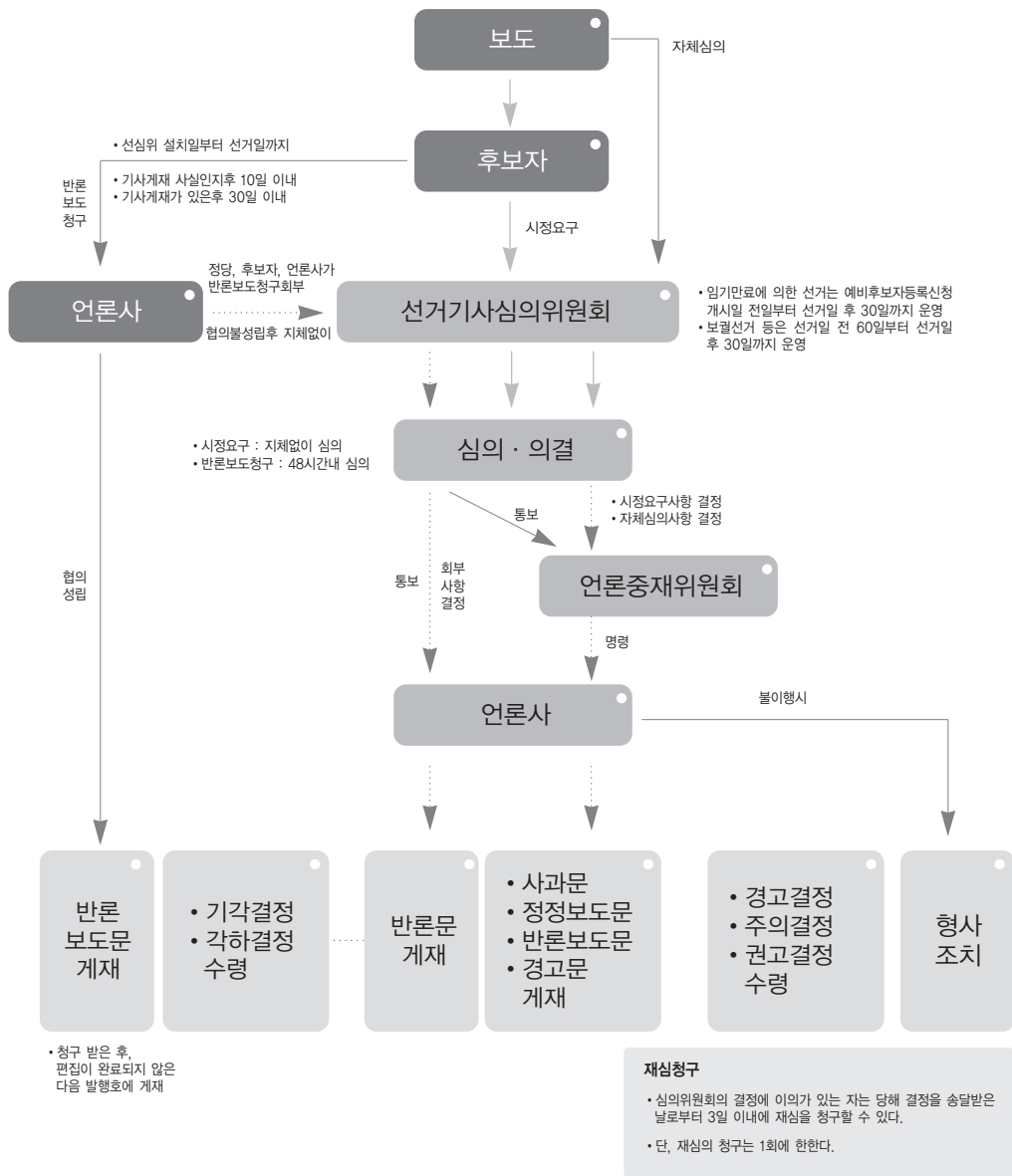
후보자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를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이나 시정요구 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 심의·의결 절차도



3. 관련 법규의 개정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 (심의위원회 관련)

2002년 3월 7일 시행

- 반론보도청구회부 주체에 정당 포함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주체로서 피해를 받은 후보자 외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을 추가했다. 이는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주체로서 선거운동에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서 정당도 그 주체가 되게 한 것이다.

-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화

일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는 그 정기간행물의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게 했다. 이는 고의적으로 심의위원회 자체심의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8월 4일 시행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변경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축소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시행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변경

재·보궐 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변경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추가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됐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후 국회 교섭정당이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도록 했다.

■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기간 변경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했던 반론보도청구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2)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02년 4월 24일 개정

■ 반론보도청구회부 주체에 정당 포함

반론보도청구회부 주체가 후보자나 언론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선거법이 개정되어 정당(중앙당에 한한다)도 그 주체가 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했다.

-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화

선거법의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규정을 규칙에 반영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그 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절차 보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후에 마땅한 재심절차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횟수는 1회에 한하게 했다.

-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언론사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재위원회가 확인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2004년 10월 26일 개정

- 경고문 게재, 권고 결정 명문화

자체심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경고문 게재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임을 명시했다. 주의 결정보다 한 단계 낮은 권고 결정도 신설했다.

2010년 1월 26일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관련 규정 변경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 추천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

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도록 했다.

- 시정요구 관련 규정 정비

시정요구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시정요구가 부적합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심청구 관련 서식 신설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04년 5월 12일 개정

- 후보자의 칼럼 게재 제한

칼럼을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한 형태로 보고 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해 오다가 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심의기준에 명문화했다.

2006년 1월 31일 개정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변경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심의기준에 반영했다.

2006년 6월 26일 개정

- 외부기고 제한범위 확대

선거일 전 90일부터 게재를 제한하는 후보자에 의한 기고문의 범위를 ‘칼럼이나 저술’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목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판단하

기 어려운 기고문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게재를 허용하기로 개정했다.

2010년 3월 2일 개정

-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공직선거법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 보도에 관한 조항인 제1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심의기준에 포함했다.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신설하여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보도할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서는 안 되도록 했으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 보도시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도록 했다.

2010년 8월 30일 개정

- 심의위원회 제재결정 명문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 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 주의, 권고, 기각, 각하 등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명시했다.

Ⅲ.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1. 심의개요

역대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정한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사과문 게재 결정은 선거법상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 결정 유형 중 하나이지만,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 결정하도록 했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으나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하기로 했다.

경고문 게재 결정은 동일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불공정성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기로 했다.

경고 결정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보도하거나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광고 게재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의, 권고 결정은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의도성이 거의 없거나 위반 수위가 미약한 경우 경중을 따져서 내리도록 했다.

2. 자체심의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대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다.

참고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매체는 중앙일간지 31종, 지역일간지 100종,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등 446종이었다.

역대 심의위원회 자체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건수는 9건,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심의건수는 3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8개이고,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6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선거 심의건수가 낮았는데, 제16대 대통령선거 심의건수가 12건, 제17대 대통령선거 심의건수는 35건이었다. 대통령선거 심의건수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것은 1명을 선출하는 선거이고 선거가 양강 구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및 형평성에 위반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가 많고 지역지에서도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비해 심의건수가 많았다. 국회의원선거 심의건수를 보면, 제16대 93건, 제17대 69건, 제18대 89건으로 나타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건수를 보면, 제3회 46건, 제4회 53건, 제5회 160건으로 나타났다.

1) 위반유형별 분석

[표 35]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구분	계	위 반 유 형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	광고 제한	외부 기고
제16대 총선	93	71	14	7	1	
제3회 지방선거	46	33	11	2		
제16대 대선	12	6	5	1		
제17대 총선	69	41	4		3	21
제4회 지방선거	53	31	10	1	1	10
제17대 대선	35	28	4		3	
제18대 총선	89	51	5		8	25
제5회 지방선거	160	100	24		4	32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9	7	2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3	3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5	5	20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4	9	15			
계 (%)	618 (100.0)	385 (62.3)	114 (18.5)	11 (1.8)	20 (3.2)	88 (14.2)

역대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하여 제재조치를 한 618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85건(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114건(18.5%), 후보자 칼럼 등 외부기고가 88건(14.2%), 광고제한 위반이 20건(3.2%),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 위반이 11건(1.8%)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유형에는 ‘인물 부각’, ‘판세 분석’, ‘비방 기사’ 등이 있다. 선거기사심의에서 가장 많은 제재결정을 받은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것들, 즉 ‘인물 부각’이다. 이들 기사는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대상자들을 부각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물부각기사는 기사 제목이나 사진 게재, 인터뷰 등이 불공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인물 부각 관련 사례

경향신문은 2008년 1월 17일자 W1~W2면에서 “노무현 원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로, 특정 지역 출마 후보예정자의 정치적 역경과 현안에 대한 입장, 향후 포부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지인 부안저널은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정당 예비후보를 4차례에 걸쳐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2008년 1월 23일자 5면에서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로 유례가 드문 편집인 명의의 기명기고문을 전면에 게재해 이 후보를 부각시켰다. 이 기사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신문은 2008년 2월 6일자, 2월 20일자, 3월 5일자 등 3회에 걸쳐 이 후보의 의정활동과 동정을 알리는 기사를 실어 각 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데일리스포츠월드는 2010년 2월 4일자 20면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비법”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모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면서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하고 구정활동의 성과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전남지역 지역주간지인 강진고을은 2010년 4월 21일자, 4월 28일자, 5월 5일자 등 3주에 걸쳐 군수로 출마한 현 군수의 동향 및 실적을 다룬 기사와 인터뷰를 인물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으며, 같은 지역주간지인 나주투데이도 2010년 3월 1일자, 3월 8일자, 3월 15일자, 3월 22일자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이력과 활동사항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의 출마 관련 기사와 칼럼을 수차례 호의적으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호남매일은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최초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공약과 경력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광주 5명, 전남 6명임에도 여성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선거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부동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선택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대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 보도 형태는 주로 경마식 보도로 나타나는데,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거나 특정 정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여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있었다.

■ 판세분석 관련 사례

경기도 수원에서 발간되는 수도권일보는 2008년 4월 1일자 13면에서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로 총선 판세를 각 정당의 당명과 유력후보들의 성명풀이를 근거로 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사와 관련,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근거로 선거 판세와 선거결과를 예단한 기사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 및 선거결과에 나쁜 영

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투데이는 2010년 2월 2일자 5면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유력후보라고 부각 보도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충청일보는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5일자 1면과 5면에 각각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에서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외로 큰 격차가 없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5면에 충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올해 25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정우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4번 1위를 차지했음을 근거로 ‘압도적 1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우택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두 건의 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그 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폄훼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비방기사’ 등이 있다.

■ 비방기사 관련 사례

종합주간지인 주간현대는 2008년 3월 23일자 10~11면에서 “북한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제하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정몽

준 후보를 과도하게 비방하는 외부기고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정 후보가 정상적인 자존심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좌파적 성향이 있으므로 민노당이나 통합민주당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특정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여과 없이 보도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강남내일신문은 2010년 4월 8일자 1면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는 여성후보야”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예정자에 대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도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아시아일보는 2010년 4월 14일자 7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현직 시장을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를 비방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외부기고 금지는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우선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외부기고 관련 사례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는 2008년 1월 21일자 5면에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의 기명칼럼을 실어 경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월 25일과 30일자 각 5면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기명칼럼 2개와 1월 31일자 5면에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의 기명칼럼을 각각 게재해 2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이들 의원들의 칼럼을 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스크랩해 게재하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끝었다.

영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13면 “인사발령” 제하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인천신문은 2010년 4월 20일자 15면 “두 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제하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인천시장 후보예정자 두 명의 환경정책 및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도덕성이 뒤떨어진다고 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보도요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은 「공직선거법」(시행 : 2004년 10월 26일) 개정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축소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은 비교적 적었으며,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보도요건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언론사가 보도요건을 전부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을 최소한의 필수요건으로 정하여 이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타 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인용 매체의 보도일자 및 매체명을 밝혀 독자들이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 여론조사 보도요건 관련 사례

내일신문은 2008년 3월 20일자 3면에 “천정배 41.5% - 허승 22.2%” 제하로, 경기 안산 단원갑지역구의 후보 및 정당별 지지율 등과 관련,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 결정을 받았다.

중부신문은 2008년 3월 26일자 1면에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제하로, 경북지역 후보별 지지도에 대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한겨레는 2010년 5월 11일자 15면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제하의 기사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경고 결정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13면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 4곳은 혼전” 제하의 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명과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아 경고 결정을 받았다.

■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관련 사례

중앙일보는 2006년 5월 30일자 6면에 “충남 ‘박 대표 테러’ 에 가장 영향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부산·충남·광주 등 4개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되며,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 광고제한 관련 주요 사례

아시아일보는 2008년 3월 19일자 1면에 경기 안산 단원을구에 출마하는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의견 광고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대구일보는 2010년 5월 10일자 2면 광고란 '부고' 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모친상을 알리는 부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후보자의 성명, 경력을 부각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2) 결정내용별 분석

역대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보면 경고 결정이 305건(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의 결정이 215건(34.8%), 경고문 게재 결정이 71건(11.5%), 권고 결정이 21건(3.4%), 주의사실 게재 6건(0.9%)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유형으로 공직선거법은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1991년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표 36] 자체심의 결정내용별 현황

구분	계	결정내용				
		경고문 계재	경고	주의사실 계재	주의	권고
제16대 총선	93		58		35	
제3회 지방선거	46		12		34	
제16대 대선	12		3		9	
제17대 총선	69	5	53		11	
제4회 지방선거	53	6	30		17	
제17대 대선	35	2	13		19	1
제18대 총선	89	44	38		7	
제5회 지방선거	160	8	91		45	16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9	1	7		1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3				1	2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5	1		3	21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4	4		3	15	2
계 (%)	618 (100.0)	71 (11.5)	305 (49.4)	6 (0.9)	215 (34.8)	21 (3.4)

심의위원회는 설립 초기에 선거법상의 결정유형 외에도 주의 결정, 경고 결정을 두었다. 그러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 심의위원회는 현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사과문 게재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자며 한 단계 낮은 제재 수위로 경고문 게재를 신설하고, 사과문 게재를 대체할만한 수단으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으며, 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권고를 제재 결정으로 추가했다. 이러한 경고문 게재 결정과 권고 결정은 2004년 10월 26일 심의위원회 규칙에 명문화됐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기준위반 선거기사가 양산될 수도 있고, 월간지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발행이 될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위원회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고문 게재’ 유형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을 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원 보도의 게재지면과 관계없이 1면 우측 상단에 굵은 글씨체로 게재하도록 했으며, 수위에 따라 그 게재문 형식과 지면을 다르게 했다.

3) 매체유형별 분석

역대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매체유형을 분석해보면 지역일간지가 349건(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역주간지 95건(15.4%), 중앙일간지 74건(11.9%), 종합주간지 72건(11.7%), 월간지 20건(3.2%), 뉴스통신 8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을 살펴보면 제18대 총선에는 지역일간지(41.5%)와 종합주간지(36.4%)가, 제5회 지방선거에는 지역일간지(46%)와 중앙일간지(45.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7]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현황

구분	계	결 정 내 용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종합 주간지	지역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제16대 총선	93	12	64	7	9		1
제3회 지방선거	46	9	27	1	7	2	
제16대 대선	12	2	1	6	2		
제17대 총선	69	6	41	11	11		
제4회 지방선거	53	7	33		12	1	
제17대 대선	35	4	19	8	2	2	
제18대 총선	89	3	39	16	25	6	
제5회 지방선거	160	20	92	16	24	7	1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9	1	4	3		1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3		3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5	6	13		1	1	4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4	4	13	4	2		1
계 (%)	618 (100.0)	74 (11.9)	349 (56.5)	72 (11.7)	95 (15.4)	20 (3.2)	8 (1.3)

3. 시정요구심의

후보자가 역대 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한 건수는 총 82건이다. 시정요구 사항은 통상 정정보도문, 사과문, 경고문 게재 등이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30건(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각 결정이 15건(18.3%),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8건(9.8%), 경고문 게재 결정이 6건(7.3%), 정

정보도문 게재·경고·주의 결정이 각각 5건(6.1%) 순으로 나타났다. 취하는 통상 시정 요구 접수 후 언론사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외 각하 결정이 3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와 권고 결정이 각 2건, 사과문 게재 결정이 1건 있었다.

[표 38]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구분	계	결정내용										
		사과	정정	정정 및 반론	반론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기각	각하	취하
제16대 총선	4											4
제3회 지방선거	10		1		1			2		2		4
제16대 대선	1						1					
제17대 총선	9						1			3		5
제4회 지방선거	25		1		1		2	2		4		15
제17대 대선	2				2							
제18대 총선	11	1	1			1	2		1	2	2	1
제5회 지방선거	18		2	2	4	4			1	4	1	
2011하반기 재·보궐선거	2					1						1
계 (%)	82 (100)	1 (1.2)	5 (6.1)	2 (2.4)	8 (9.8)	6 (7.3)	5 (6.1)	5 (6.1)	2 (2.4)	15 (18.3)	3 (3.7)	30 (36.6)

1) 사과문 게재

사과문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을 내려, 심의위원회의 운영원칙상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건에 대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1건 내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은 민법 제764조의 ‘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과문을 게재함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로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현재의 위헌판결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과문 게재명령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사과문 게재 사례

세계일보가 2008년 3월 3일자 6면에서 “낙천명단 윤곽… 호남의원 ‘발각’” 제하로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과 관련해 당의 ‘호남지역의원 평가자료’를 근거로 김태홍 후보예정자의 낙천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김 후보예정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및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호남의원 공천과 관련한 공식 평가자료를 발표한 적이 없음은 물론, 그 자료작성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의 낙천’을 시사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의 공천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2) 정정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5건이 있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2건이 있었다.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안에서 내려졌다.

■ 정정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보령시장에 출마한 임세빈 후보는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와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주간보령은 임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잘못 기재했으며, 보령시민신문은 후보자의 출마기호를 잘못 기재했다. 해당 언론사는 편집 실수가 원인이라고 의견진술을 했으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이후 바로 정정보도문을 게

재했다.

한국일보는 2008년 4월 2일자 5면 “열전지 이곳-인천 남동읍/조전혁·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제하의 기사에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를 배제한 채 다른 여타 후보예정자들의 경쟁상황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는 이 보도가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가 다른 후보예정자들과의 경합에서 접전 내지 우세로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왜곡함으로써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구로오늘신문은 2010년 4월 10일자 1면과 3면에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양 구청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골프클럽에 대해 세금징수유예를 해 주고 골프클럽 주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구청장은 시정요구서를 통해 징수유예를 해준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가 변경된 바가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양 구청장의 친동생 소유 골프클럽부지가 용도변경이 된 바 없음에도 부제목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적시한 것은 바로 잡아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3) 반론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총 8건으로,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외에 시정요구심의에도 반론보도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활용됐다.

■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경향신문은 2007년 10월 30일자 5면에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될까”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중앙선관위 주최 합동토론회 외에는 어떤 합동 TV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후보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대전일보는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충주부시장 재임시 시가보다 싸게 고급빌라를 매입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과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해명이 미흡한 점을 고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4) 기각

기각 결정은 총 15건으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려졌다.

■ 기각 사례

한겨레 2010년 3월 11일자 4면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기사 중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구청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는 내용에 대해 정송학 광진구청

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 대상 보도가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매일신문은 2010년 3월 23일자 3면에서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부기 후보의 직책을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 특보라고 보도했으나,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경선 직능특보 경력을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된 후 매일신문 4월 13일자 4면에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가 게재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5) 각하

각하 결정은 총 3건으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거나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경우 등에 내려졌다.

4.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를 언론사에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건은 제18대 총선에 1건(취하), 제4회 지방선거에 2건(인용 1건, 기각 1건), 제16대 총선에 1건(기각) 등 총 4건에 불과했다. 이는 후보자가 반론보다는 정정이나 사과문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고, 반론보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경유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론보도청구회부 인용 사례

장성군민신문이 2006년 4월 25일자 3면에서 “고일갑 장성군수 예비후보자가 거액의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축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

은 국가정책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남도당은 고 후보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장성군수 예비후보자는 해당 기사가 언론사의 일방적 주장만 신고 있다며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했다.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분을 받아들여 “연이은 구제역파동으로 가공육 판로가 막혀 공장가동이 불가능했으며, 특히 2004년의 구제역청정지역은 제주도뿐으로 여타 지역에서는 육가공을 수출할 수가 없었고, 전남도당은 이와 무관하게 고씨를 장성군수 후보공천자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IV. 평가와 전망

우리나라 언론은 선거와 관련해 각 당의 세력 다툼과 지도부의 동정을 다루는데 치중하며 이벤트성 보도와 흥미위주식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보다는 누가 얼마나 앞서느냐 하는 경마식 보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적 편향성도 가지고 있었다. 국회는 이러한 선거보도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까지 총 12회의 선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됐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설립 초기에는 심의결정에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 사과문 게재 명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언론사는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 제도를 마련하였고, 사과문 게재 명령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 보완하고 심의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심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었고 그 위상이 과거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선거법이 개정되어 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 때에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체심의 를 통해 언론사에 주의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후보자의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고 있다. 각종 선거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대사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편파보도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언론이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날까지 선거기사심의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조사연구사업

I. 개요

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한 주된 목적은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언론중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거, 현재 위원회 사무처 내에는 연구본부 산하 정책연구팀을 두어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설립 이래 지난 30년간 언론중재제도와 법정사업의 정책적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적·실무적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학술행사와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토론회,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를 통해서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이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위원회 각종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 구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청취하여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의

유형과 위원회 주요 업무를 소개함으로써, 언론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수단인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그리고 특집논문, 연구논문과 같은 각종 논문과 국·내외 언론계의 주요 이슈 및 관련 판결 등을 수록한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중재신청사건과 시정권고 사례 및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록한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등 각종 발간 사업을 펼쳐왔다. 언론중재나 언론조정중재사례집 등의 발간물은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등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많은 연구논문과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언론법제 발전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법제연구용역 등과 같은 각종 외부 용역 사업을 통해 언론중재제도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위원회의 장·단기적 정책 및 업무 추진 방향 등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와 학술행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 사항, 결과물을 적극 수렴하여 법률 개정이나 조정중재 실무상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고 미래지향적 모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요컨대, 위원회는 세계 유일의 언론분쟁해결 전문기구일 뿐만 아니라 언론법제 연구에 관한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것이다.

Ⅱ. 학술행사 개최

1. 세미나

위원회는 언론분쟁의 한 당사자인 언론사 데스크와 중재위원,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거나 언론법제, 언론윤리 등 언론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자 매년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위원회가 개최하는 여러 학술행사 중 최대 규모의 행사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정기세미나에는 많은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언론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국의 중재위원 및 언론계 인사의 참석을 촉구해 왔으며, 주요 참석자들의 접근성이 쉬운 지역을 개최지로 선정했다. 초창기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1박 2일로 일정이 단축됐다.

한편, 위원회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위해 법원 내 전문영역 연구단체, 한국언론학회 및 한국조정학회 등과 같은 학회와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매년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2008년 법원의 ‘언론법 분야 연구회’와의 공동 세미나는 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를 통해 중재위원,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서로의 시각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2009년에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각계의 참석자들로부터 언론피해구제 논의의 장을 넓혔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2010년에는 ADR과 관계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조정학회’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위원회가 선도적인 ADR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에는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과 같은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및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를 주제로 선정, 조정중재 신청인을 초청하여 언론인과의 의견 차

이를 확인하고 그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표 39] 연도별 세미나 개최현황

개최일자	장 소	주 제	발제자
1982. 3. 30. ³⁴⁾	서울 세종문화회관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 1. 텔레비전보도와 시민의 권익 2. 잡지보도와 시민의 권익 3. 신문보도와 시민의 권익	이상희 이경자 김동철
1983. 10. 20. ~ 22.	속초 설악파크호텔	언론보도와 윤리 1. 사건보도와 언론인의 법적 책임 2. 중재사례를 통해 본 보도윤리	팽원순 서정우
1984. 10. 25. ~ 27.	속초 설악파크호텔	보도윤리와 언론중재제도 1. 뉴스보도와 평가기준(이론적 측면) 2. 뉴스보도와 평가기준(실제적 측면) 3. 언론중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안광식 이상우 오진환
1985. 10. 31. ~ 11. 2.	아산 도고호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	안광식
1986. 10. 30. ~ 11. 1.	속초 설악파크호텔	폭로 저널리즘과 보도윤리 1. 폭로 저널리즘의 정기능과 역기능 2. 한국의 폭로 저널리즘 현황과 문제점	차배근 원우현
1987. 10. 23. ~ 25.	경주 코오롱 호텔	언론자율화와 중재제도 1. 언론자유와 중재기능의 활성화 2. 중재사례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	서정우 이혜복
1988. 10. 27. ~ 29.	수안보 파크호텔	언론침해와 효율적 구제방안 1. 언론침해와 중재제도 2. 오보의 문제점과 외국의 심의제도	이혜복 안광식
1989. 8. 24. ~ 26.	양양 낙산비치호텔	언론중재제도의 위상정립 1.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고찰 2.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김성남 유재천
1990. 8. 23. ~ 25.	속초 설악파크호텔	사건보도와 권익침해 1. 사건보도의 법·윤리상의 과제 2. 사건보도의 권익침해 사례분석	양삼승 이혜복
1991. 8. 22. ~ 24.	속초 설악파크호텔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정방안	박용상
1991. 11. 29.	서울 한국언론회관	언론보도와 수용자의 권익보호 1. 언론피해구제 현실과 수용자운동 2. 중재사례로 본 언론피해 실태	정진석 양삼승
1992. 8. 26.	서울 한국언론회관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양삼승
1993. 11. 9. ³⁵⁾	서울 국회의원회관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양삼승

개최일자	장 소	주 제	발제자
1994. 11. 29. ~ 30.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보도와 반론권 1. 언론과 반론권 2.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정진석 강경근
1995. 8. 24. ~ 26.	속초 설악파크호텔	법과 언론피해구제 1. 현행법과 언론수용자의 권익 2. 언론피해구제의 실제(언론중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양삼승 성낙인
1996. 5. 9. ~ 11.	대전 유성관광호텔	개정된 언론중재제도(반론권의 변화와 해설을 중심으로)	양삼승
1997. 9. 25. ~ 27.	속초 켄싱턴호텔	언론중재제도의 운용방향 1. 언론피해구제와 중재위원회의 역할 2.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 과제	최창섭 양경승
1998. 11. 12. ~ 14.	양양 낙산비치호텔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피해구제 1. 언론환경변화와 취재보도의 문제점 2.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정방향과 전망	김학수 양경승
1999. 9. 2. ~ 4.	속초 설악파크호텔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1.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2.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3.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최영훈 한위수 배금자
2000. 11. 23. ~ 25.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1.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2.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강경근 양삼승
2001. 8. 30. ~ 9. 1.	강릉 현대호텔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2.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윤재윤 김진원
2002. 9. 5. ~ 7.	양양 낙산비치호텔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2. 선거보도심의 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3.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권혁남 김영호 이용식
2003. 8. 23. ~ 30.	속초 켄싱턴호텔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1.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2.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장호순 양삼승
2004. 8. 26. ~ 27.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피해구제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양경승 류지태
2005. 11. 30. ~ 12. 2.	부여 문화관광호텔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1.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 중재제도	황용석 양삼승

개최일자	장 소	주 제	발제자
2006. 11. 23. ~ 25.	완주 대둔산관광호텔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1.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2.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위수 양재규
2007. 9. 6. ~ 7.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1.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2.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김동하 이승선
2008. 11. 21. ~ 22.	충남 온양팔래스호텔	언론 환경의 변화와 언론분쟁 1.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2.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이재진 성낙승
2009. 8. 20. ~ 21.	대전 유성관광호텔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1.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 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적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여상원 장호순
2010. 11. 5.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 기본법 제정 방향 1.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중재제도 2. (가칭)ADR기본법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정남철 정준영
2011. 8. 25.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방안 1. 현행 피해구제제도문의 크기·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2. 손해배상 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김정탁 박중순

2. 토론회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연 평균 3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위원회의 세미나는 전국의 언론인 및 중재위원 등 전문가를 중

34) 1982년 최초로 개최된 세미나는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란 명칭으로 진행됐다.

35) 1993년 세미나는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으로 대체

심으로 참석자를 구성하여 언론중재제도와 언론계 현안 등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로 논의함으로써 법제도적 운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토론회는 해당 지역의 조정중재사례 분석을 통한 언론의 보도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거나,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해 왔다.

[표 40] 연도별 토론회 개최현황

개최일자	개최장소	주 제	발제자
1983. 5. 12	대전 중앙관광호텔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박용상
6. 13	대구 한일호텔	매스컴과 정보소비자 운동	정광모
11. 15	전북 전주관광호텔	언론중재의 정신	오진환
1984. 3. 23	부산 서라벌호텔	언론중재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	이상희
4. 24	광주관광호텔	언론중재와 인권	강주진
6. 8	청주 제일관광호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	한상복
1985. 5. 17	제주 그랜드호텔	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이상희
6. 5	마산크리스탈호텔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중재	안광식
8. 27	춘천세종호텔	언론의 역기능과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차배근
1986. 4. 25	대구 금호호텔	언론중재제도와 보도의 자유	이상희
6. 17	전주코아호텔	오보의 문제점과 언론중재	안광식
11. 25	대전 중앙관광호텔	오보와 정정보도청구권	이상희
1987. 6. 23	청주은성관광호텔	선진사회와 언론중재	서정우
7. 24	부산 코모도호텔	정정보도의 의무와 국민의 권익	이상희
8. 18	제주 그랜드호텔	언론침해와 국민의 권익	안광식
1988. 3. 28	대구 금호호텔	매체환경변화와 언론윤리	서정우
5. 11	춘천세종호텔	자유경쟁시대 언론의 책임	이혜복
5. 19	대전 중앙관광호텔	자유언론의 역할과 책임	안광식
11. 4	마산 롯데크리스탈호텔	중재사례에 나타난 언론침해의 문제점	이혜복
1989. 3. 24	청주관광호텔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이혜복
4. 28	전주코아호텔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언론과 언론중재	이택희
9. 19	부산 코모도호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제도	유재천
11. 3	제주 그랜드호텔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	이혜복
1990. 4. 24	춘천 세종호텔	달라진 위상, 높아진 책임	이우세
5. 18	대구 금호호텔	언론자유와 언론윤리	한병구
11. 9	광주 신양파크호텔	언론의 자유경쟁과 윤리적 책임	안광식
1991. 4. 11	마산 롯데크리스탈호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정진석
6. 28	청주관광호텔	전환기 언론의 윤리적 책임	안광식
7. 12	제주 그랜드호텔	언론의 직업윤리와 언론중재제도	유재천
9. 13	대전 유성관광호텔	공정보도와 언론윤리	이혜복

개최일자	개최장소	주 제	발제자
10. 25	부산 코모도호텔	언론자유와 한계와 윤리성 제고	한병구
1992. 5. 1	전주코아호텔	언론보도와 수용자주권	서정우
6. 26	춘천 세종호텔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한계	이택수
10. 30	대구 금호호텔	정보화사회의 언론과 언론중재	성낙인
1993. 5. 14	청주 국제관광호텔	언론의 윤리적 책임과 언론중재제도	오세탁
7. 6	광주 신양파크호텔	문민시대와 언론의 책임	이혜복
11. 5	제주 오리엔탈호텔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제도	한동원
1994. 5. 4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환경의 변화와 구제제도	정진석
6. 24	창원국제관광호텔	현행 언론중재제도와 앞으로의 방향	권오곤
9. 13	부산 코모도호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천병태
1995. 4. 28	전주코아호텔	언론의 자주권과 언론중재제도와와의 관계	박영상
5. 26	동수원관광호텔	언론과 사회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	임상원
11. 3	대구 그랜드호텔	보도관계분쟁과 언론중재제도	이혜복
1996. 5. 28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사회변화와 언론중재제도의 발전	서정우
8. 27	제주 그랜드호텔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전망	김대휘
11. 8	광주 신양파크호텔	보도의 법적·윤리적 한계와 피해구제	한동원
1997. 4. 23	부산 코모도호텔	화해와 조정의 제도적 장, 언론중재제도의 현재와 미래	최창섭
6. 13	청주리호관광호텔	언론자유, 책무 그리고 중재제도	박영상
7. 11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언론의 환경변화와 언론중재	안광식
1998. 6. 12	대구 그랜드호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언론중재	성낙인
9. 8	전주 리베라호텔	취재보도 관행과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기능	김학수
1999. 5. 4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 판례	오영권
6. 18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수용자주권의 법제론적 고찰	박용수
11. 5	광주 신양파크호텔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서정우
12. 2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반론보도청구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김형태
2000. 4. 28	제주 그랜드호텔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	양경승
6. 16	청주 리호관광호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최선열
9. 26	부산 코모도호텔	오보의 발생과 대책	서정우
11. 7	전주 리베라호텔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권혁남
2001. 5. 11	대구 그랜드호텔	한국 언론관과 윤리규제제도의 운용	박기성
6. 15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이현섭
11. 23	광주 신양파크호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동황
2002. 5. 1	창원인터내셔널호텔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이병섭
10. 18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차재영
11. 29	제주 그랜드호텔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강정홍
2003. 5. 1	청주 리호관광호텔	시민생활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오두범
9. 19	전주코아리베라호텔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	권혁남
11. 14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윤 경
2004. 5. 21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김창룡
9. 17	대구 인터볼고호텔	인터넷 시대의 언론 영역과 언론중재	박기성
11. 5	광주 프라도호텔	언론중재사례로 본 지역 언론	이연수
2005. 3. 4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장호순
5. 27	제주 그랜드호텔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김종배
10. 21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황용경
2006. 4. 21	수원 호텔캐슬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석희태
7. 5	전주 코아호텔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 제도의 변화와 과제	권혁남
9. 28	청주 리호관광호텔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박종호

개최일자	개최장소	주 제	발제자
2007. 4. 1	부산 코모도호텔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김민남
7. 1	춘천 세종호텔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한진만
10. 16	광주 프라도호텔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김 성
2008. 5. 23	제주 KAL호텔	언론조정신청 대상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최낙진
7. 1	대구 그랜드호텔	대구조정 · 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정걸진
9. 23	대전 유성관광호텔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남재일
2009. 5. 21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 중재방향	이효성
6. 24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 구제 내용과 과제	권혁남
11. 6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	김창룡
2010. 4. 9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매체	이동근
6. 25	춘천세종호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박홍래
12. 1	수원 라마다플라자호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절차의 개선방향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성동진 양재규
2011. 5. 13	제주 KAL호텔제주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최낙진
9. 5	부산 동의대학교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방안검토	신용도
11. 3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장재윤 김충일

3. 정책 심포지엄

위원회는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개선점을 찾고 위원회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2008년 11월 처음 개최한 심포지엄은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2008년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포털 등 인터넷 매체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포털과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통일된 의견을 보였다.

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위원회의 견해를 적극 개진했고,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이 되게 하는 결실로 연결됐다.

2009년에는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ADR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법원이 상설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등 ADR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그간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ADR기구들의 성과와 향후 공동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국내 ADR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을 위해 조정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ADR과 법원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언론분쟁의 영역에서 쌓아온 ADR 역량을 국내 ADR기구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ADR제도 관련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정책심포지엄은 위원회 주요 법정사업인 시정권고에 중점을 두고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개최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7년 이후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청장년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발표될 만큼 ‘자살’이 우리 사회의 공동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의 협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 심포지엄에는 자살예방관련 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언론사, 언론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하고, 자살보도에 대한 언론의 인식전환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베르테르효과’에 따른 연예인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흥미 위주의 속보성 보도를 지양하고 생명사랑을 위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또한 자살자 신원공개 및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기준을 재정비하여 언론의 자살보도 개선을 유도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자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1년의 심포지엄은 ‘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개최했다.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은 SNS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서 SNS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언론계, 언론학계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청 등 입법, 사법, 행정계에서 고루 참가하여 토론과 발제에 참여, 자유로운 커뮤니케

이선 환경이라는 SNS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각 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용자 스스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표 41]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 개최현황

개최일자	주 제	발제자
2008. 11. 7.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 구제 방안	양경승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2009. 11. 30.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김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 12. 1.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 국내 자살 현황과 문제점 자살보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하규섭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1. 12. 7.	SNS의 인격권 침해 SNS와 언론보도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	황용석(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조원철(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Ⅲ. 조사연구 및 발간

1. 계간지 「언론중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와 언론법제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논문과 자료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집논문, 연구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과 국·내외 언론계의 주요 이슈 및 관련 판결, 언론조정중재 사례 등을 수록한 회지 「언론중재」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981년 겨울호(통권 1호)를 시작으로, 2011년말까지 통권 121호를 발행했다.

「언론중재」는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계 현안에 대한 연구논문인 ‘특집논문’,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로 판결이 내려졌거나 침해 우려가 있었던 언론보도를 진단하는 ‘언론보도와 인격권’, 위원회가 구입·구독하고 있는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 자료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 언론법제 동향이나 언론윤리 관련 내용 등을 소개하는 ‘언론과 법(국내동향, 해외동향)’, 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조정·중재사례의 사실개요 및 양 당사자 주장, 처리결과 등을 수록한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언론보도와 관련된 소송의 주요 국내 판결을 수록한 ‘국내언론관계판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언론관계 판결을 수록한 ‘외국언론관계판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비교적 신문평의회 활동이 활발한 외국의 언론분쟁 사례를 소개한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법제분야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한 ‘언론법제 관련 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매 호 특집주제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통해 학계 및 언론계의 동향을 파악,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기획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필자로 섭외하여 원고를 청탁하고 있다. 발행 이후에는 ‘내부 평가단 제도’를 통해 회지의 기획방향 뿐만 아니라 편집체제, 게재논문의 수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리뷰를 받아, 다음 호 발간에 반영하고 있다.

[표 42] 연도별 계간지 「언론중재」의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81 겨울호 (1호)	언론침해와 구제제도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외국의 언론자유규제기구(기능과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한병구 서정우 박용상
1982 봄호 (2호)	언론과 인권 인권의 개념과 언론의 의의 한국인의 인권의식(언론의 침해와 관련하여)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 인권보호와 언론의 책임	김철수 양승두 유재천 오소백
1982 여름호 (3호)	(특집 I) 사진보도와 초상권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사진보도와 초상권 초상권과 법정 내 촬영	안용교 한상범 임두빈
	(특집 II) 언론에 있어서의 반론권 반론권제도의 역사적 전개 반론권행사의 실제(한국,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반론권법제현황	팽원순 양 건 한병구
1982 가을호 (4호)	(특집 I) 언론보도와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문제 피의사실공표와 사건보도 사건보도와 자성점	김운룡 이광재 신동호
	(특집 II)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침해유형 언론침해의 원인별 유형 언론침해의 시대별 유형	오인환 정진석
1982 겨울호 (5호)	(특집 I) 보도와 헤드라인 신문기사 표제의 문제점 헤드라인의 기능과 실제(한국 신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신문제목, 이대로 좋은가(한·미·일 6개지의 비교분석) 헤드라인의 부정확성	최진우 이상우 최종수 F.T. 마르타애츠
	(특집 II) 소년범죄와 언론보도 소년비행 : 사회학적 이해와 보호대책 소년범죄 보도의 문제점	이장현 오택섭
1983 봄호 (6호)	(특집 I) 언론보도와 법적책임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귀속 언론에 의한 피해 보상 형태 - 언론침해에 의한 구제제도 언론과 면책특권 - 미국의 제한적 특권을 중심으로	김동철 김오수 팽원순
	(특집 II) 주간지와 인격권 주간지의 사회적 기능 주간지와 센세이셔널리즘 주간지와 인격권 침해	이중한 이상희 오소백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83 여름호 (7호)	언론과 사생활권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보도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생활권의 침해유형과 구제방법 - 영미법을 중심으로 -	권영성 서정우 윤명선
1983 가을호 (8호)	(특집 I) 언론과 명예훼손 명예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모습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침해유형과 구제방법	권오승 김운용 한병구
	(특집 II) 언론보도의 전문화 사회조사보도의 허실 과학기사의 정확성 경제관계보도의 공정성	유창하 현원복 최낙동
1983 겨울호 (9호)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 액세스권의 현대적 의의와 그 행사 액세스권과 의견광고 액세스권과 독자투고	원우현 김동길 박기순
1984 봄호 (10호)	언론과 센세이셔널리즘 센세이셔널리즘 생성과 변천 센세이셔널리즘의 과정과 기능 및 현대적 상황 한국신문과 센세이셔널리즘	이광재 안광식 유재천
1984 여름호 (11호)	방송의 법적 규제 방송규제의 이론적 근거 심층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드라마와 등장인물의 인격권	이상철 최창섭 손 룡
1984 가을호 (12호)	언론과 공익 사상사에서 본 공익언론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 언론의 공익성과 기업성 (의식의 산업화와 공익제도를 중심으로)	방정배 권영설 이정춘
1984 겨울호 (13호)	(세미나) 보도윤리와 언론중재제도 뉴스보도와 평가기준(Ⅰ) - 이론적 측면 뉴스보도와 평가기준(Ⅱ) - 실제적 측면 언론중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안광식 이양우 오진환
1985 봄호 (14호)	판결전 보도와 공정판결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재판 전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 구제방안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팽원순 이상돈 신 평
1985 여름호 (15호)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의 입법현황	김동철 박재욱 이강혁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85 가을호 (16호)	경제보도와 공정성 경제보도와 신용권 보호 기업의 신용훼손과 그 구제	박동희 김동환
1985 겨울호 (17호)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대중문화와 외설 한국 대중매체의 음란실태와 그 규제현황	김동철 유경환 팽원순
1986 봄호 (18호)	〈창립5주년 특집〉 언론중재사례분석 (좌담) 언론중재제도 시행5년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조사연구실 안광식 외
1986 여름호 (19호)	대중지와 공인·유명인에 관한 보도 대중지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 보도와 공인, 유명인 대중지의 공인, 유명인의 보도현실	서정우 한상범 이중한
1986 가을호 (20호)	기사취재와 그 법적, 윤리적 한계 한국에서의 기사 취재현실과 그 문제점 외국의 판례를 통해 본 취재상의 인권침해	이혜복 김일수
1986 겨울호 (21호)	(세미나) 폭로저널리즘과 보도윤리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과 역기능 한국의 폭로저널리즘 현황과 문제점	차배근 원우현
1987 봄호 (22호)	보도사진저널리즘과 시민의 권익 보도사진저널리즘의 특성과 기능 보도사진저널리즘의 윤리성과 법적 문제 한국신문의 보도사진 현황과 개선방향	이규임 김동철 신우식
1987 여름호 (23호)	사건보도와 개인의 권리 국내사례연구 일본사례연구(인권과 보도) 미국사례연구	이혜복 - 36) 김동진
1987 가을호 (24호)	선거와 보도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윤리성 외국언론의 선거보도(미국편) 외국언론의 선거보도(일본편) 외국언론의 선거보도(영국편) 외국의 판례를 통해 본 문제점	이동신 안영모 김용술 김태선 김일수
1987 겨울호 (25호)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국가기밀과 보도 국가기밀의 보도와 그 법적 기준 한국의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김흥규 권영철 김동철
1988 봄호 (26호)	유괴보도와 인권 한국의 유괴보도 사례와 문제점 외국의 유괴보도 사례와 특수성 내일의 유괴보도를 생각한다	오소백 원우현 松本雅彦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88 여름호 (27호)	자유경쟁시대의 언론의 책임 언론사에 비친 규제와 자유 언론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주제문제(기자·국가·공중) 자유경쟁시대에 접어든 한국언론의 책임	박정규 강명우 서정우
1988 가을호 (28호)	(특집 I) 〈연합 심포지엄〉 언론과 정보소비자 정보소비자의 권리 정보소비자의 피해구제	김동환 이혜복
	(특집 II) 1988년도 지방토론회 〈대구지방토론회〉 매체환경 변화와 언론윤리 〈강원지방토론회〉 자유경쟁시대 언론의 책임 〈충북지방토론회〉 자유언론의 역할과 책임	서정우 이혜복 안광식
	(특집 III)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 언론피해와 구제	김성남
1988 겨울호 (29호)	잡지보도와 권익침해 잡지의 변천과 사회적 역할(한국적 상황) 잡지의 폭로기사에 대한 진단 심의청구에 비친 대중지 실태 잡지언론의 법리와 헌법판례 중재신청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	이중한 유재천 심상곤 권영설 정진석
1989 봄호 (30호)	한국언론의 재진단 언론의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기자 파문 「알권리」와 타인의 권익 침해-최근 중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경영권과 편집권의 갈등 언론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수용자가 본 언론상	전석호 유일상 김동진 한균태 조용중 오경자
1989 여름호 (31호)	정보공개와 알권리 정보공개와 알권리 정보원의 비익과 그 법적보호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과 명예훼손 각국의 정보원 보호현황	김광옥 이강혁 유재천 김병국 패트리셔 빌헬름
1989 가을호 (32호)	(세미나) 언론중재제도의 위상 정립 언론중재의 법적 고찰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김성남 유재천
1989 겨울호 (33호)	〈연합 심포지엄〉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시민의 권리의식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	양승두 서정우
1990 봄호 (34호)	한국언론의 법·윤리적 환경에 대한 회고와 과제 한국언론의 법·윤리환경의 변천 윤리적 측면에서 본 한국언론 언론중재제도의 기능적 결함과 개선방안 언론관계판례에 비추어 본 동향 분석	정진석 조사연구실 안광식 양삼승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90 여름호 (35호)	르뽀기사와 인권 르뽀기사의 변천과 기능 르뽀기사의 윤리·법제적 책임 외국판례에 나타난 르뽀기사의 법적 책임과 한계 한국에서의 르뽀기사의 현황과 전망	김동주 유일상 김정기 김병국
1990 가을호 (36호)	(세미나) 사건보도와 권익침해 사건보도와 법·윤리상의 과제 -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사건보도와 권익침해사례분석	양삼승 이혜복
1990 겨울호 (37호)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에 대한 고찰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비교와 제언 한겨레신문의 강령과 심의실 방송강령 제정과 MBC 심의실태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회의 현황	유재천 한병구 김명걸 육창웅 중앙일보
1991 봄호 (38호)	언론중재제도 운용 10년의 평가와 모색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제도 운용 10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정진석 이혜복 박용상
1991 여름호 (39호)	국가이익과 언론보도 언론의 자유와 국익 공표주의와 기밀주의 국익관련보도의 사법적 한계 국가이익과 언론보도의 실제	팽원순 서정우 강경근 한태열
1991 가을호 (40호)	(세미나)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박용상
1991 겨울호 (41호)	(세미나) 언론보도와 수용자의 권익보호 언론침해구제 현실과 수용자운동 중재사례로 본 언론침해 실태	정진석 양삼승
1992 봄호 (42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형법적 고찰 - 특히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판결공시제도와 추후보도청구권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광고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손동권 최우찬 이석연 성낙인 이상경
1992 여름호 (43호)	한국언론의 취재·보도관행상의 문제 언론취재체계 및 기자단에 관한 문제점 취재원접촉현실과 인권 기사작성의 문제점	송정민 김병국 권혁남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92 가을호 (44호)	(세미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양삼승
1992 겨울호 (45호)	언론과 법적 환경 - 최근의 쟁점과 과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와 적용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법원의 영장 열람금지 파문과 알권리 선거와 여론조사보도 -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하여 언론·출판자유에의 이론과 판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석연 김동철 유일상 신봉기
1993 봄호 (46호)	선거와 언론보도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후보자 지지 제보자의 사생활보도와 법·논리적 문제 선거여론조사와 그 보증에 대한 일고찰 선거보도의 기준과 실제	윤영찬 팽원순 장익진 김기태
1993 여름호 (47호)	진단 - 언론자율규제 한국 언론의 윤리성과 자율규제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전망 -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옴부즈맨제도의 실태 -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신문의 기사불만처리기구 고찰 - 그 운용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박종수 원우현 박영조 김동규
1993 가을호 (48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책임정부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법과 소송절차에 관하여 - 한국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최근의 언론관련 판례 개관	양삼승 고승덕 장영수
1993 겨울호 (49호)	(세미나)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양삼승
1994 봄호 (50호)	진단-언론법제와 그 연구 한국 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연구의 변천 언론법제연구의 성격과 방법	성낙인 정진석 류일상
1994 여름호 (51호)	언론보도의 점검 TV의 고발프로그램과 인권 연예기사의 실태와 문제	최창섭 신우식
1994 가을호 (52호)	사법관련보도 사법관련보도의 취재환경과 정보접근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이상현 한위수
1994 겨울호 (53호)	(세미나) 언론보도와 반론권 언론과 반론권 - 언론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정진석 강경근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95 봄호 (54호)	언론과 법적 환경 - 최근의 쟁점과 과제 정정보도청구권의 쟁점별 검토 취재관행과 법윤리상의 일고제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법제의 정립과 언론	김중서 김창룡 성낙인
1995 여름호 (55호)	케이블 TV와 인권 CATV 시행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쌍방향 케이블TV와 개인정보의 법적보호 - 선진명국의 동향 및 입법례 CATV수신자 피해구제에 관한 고찰	전석호 이상식 김기태
1995 가을호 (56호)	(세미나) 법과 언론피해구제 현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 언론중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양삼승 성낙인
1995 겨울호 (57호)	공적 보도자료의 한계와 책임 공적 보도자료와 오보 :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의 법적 책임	박영상 안상운
1996 봄호 (58호)	정간물법 개정과 언론중재제도 중재제도운영 15년, 회고와 과제 정간물법 개정과 중재제도의 발전 개정 정간물법 해설	한동원 서정우 강경근
1996 여름호 (59호)	(세미나)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 정간물법 개정에 따른 반론권의 해설을 중심으로	양삼승
1996 가을호 (60호)	개정된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고찰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직권 중재결정의 법적 의의 및 효력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차원에서 언론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강현중 권오곤 심의실
1996 겨울호 (61호)	분석: 언론관계 판결의 동향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판례와 쟁점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한위수 양경승
1997 봄호 (62호)	뉴미디어시대의 언론법제 전망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개념의 재정립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뉴미디어 시대의 반론권과 액세스권	황상재 정윤식 방석호
1997 여름호 (63호)	취재·보도관행과 인권 언론의 경쟁적 취재·보도와 권익 침해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	이민웅 이재경
1997 가을호 (64호)	(세미나) 언론중재제도의 운용방향 언론피해구제와 중재위원회의 역할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 과제 - 직권중재결정제도를 중심으로	최창섭 양경승
1997 겨울호 (65호)	전자통신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	윤영철 김유정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1998 봄호 (66호)	지역언론의 역할과 책임 지자체 선거와 지역언론의 과제 :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지역언론의 취재보도와 언론윤리	정상윤 정호순
1998 여름호 (67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타매체 기사 인용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황도수 김종서 엄종섭 김재협 한위수
1998 가을호 (68호)	언론법 교육의 실태 언론법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미국대학의 언론법 교육현황	장호순 염규호
1998 겨울호 (69호)	(세미나)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피해구제 언론환경의 변화와 취재보도의 문제점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김학수 양경승
1999 봄호 (70호)	언론피해구제와 옴부즈맨 제도 옴부즈맨제도의 기능과 역할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 제도 운용 실태와 전망	안광식 김재홍
1999 여름호 (71호)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김영철 성낙인 강경근 한위수
1999 가을호 (72호)	(세미나)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최영훈 한위수 배금자
1999 겨울호 (73호)	<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언론관계판결 경향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평가와 과제 언론법제연구 동향	황도수 최선열 한동원 정진석
2000 봄호 (74호)	전망/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미디어융합과 규제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인터넷신문 · 방송과 반론보도	김대호 황성기 박선영
2000 여름호 (75호)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가지 쟁점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이은영 김민중 표성수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2000 가을호 (76호)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	정결진 오상석 채수영
2000 겨울호 (77호)	(세미나)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피해 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강경근 양삼승
2001 봄호 (78호)	(특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양경승 김창룡 한동원
	(특집 II)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분석 반론보도청구주요판결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판결에 나타난 반론문에 관한 연구	박형상 성낙인 조준원
2001 여름호 (79호)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한국 언론의 정정기사 보도현황 분석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신뢰도 전문기자제 도입 현황과 평가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문종대 이동근 김덕모 이광범
2001 가을호 (80호)	(세미나)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 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윤재윤 김진원
2001 겨울호 (81호)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언론사건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배병일 이규진 한상희 황성기
2002 봄호 (82호)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의 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규명 판결에 나타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공정성 확보 방안	김서중 김동규 김기중 이준웅
2002 여름호 (83호)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 연구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성낙인 배금자 이재진 윤철홍
2002 가을호 (84호)	(세미나)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선거보도심의 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권혁남 김영호 이용식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2002 겨울호 (85호)	연예저널리즘과 인격권 보호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연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연예부 기자가 바라본 연예저널리즘	김택수 차용범 이유현
2003 봄호 (86호)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의견보호의 범리와 의견의 범위 국내판결에 나타난 의견표명의 면책 한계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장영수 전태구 이승선
2003 여름호 (87호)	인터넷언론의 법적문제와 과제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해외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소송 절차	강경근 이재진 이송희
2003 가을호 (88호)	(세미나)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장호순 양삼승
2003 겨울호 (89호)	언론사건 비판과 명예훼손 미디어비평의 이상과 현실 언론사건 명예훼손 소송의 면책기준	박영삼 김재협
2004 봄호 (90호)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문재완 한위수 박인수
2004 여름호 (91호)	인터넷상의 선거보도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선거보도, 현황과 전망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법적책임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용석 도두형 성선제
2004 가을호 (92호)	(세미나) '언론피해구제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방향	양경승 류지태
2004 겨울호 (93호)	발표저널리즘과 언론의 책임 발표저널리즘의 현황과 개선방향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면책범위 정치적 폭로에 대한 중계보도와 언론의 법적 책임	김동규 장영수 이재진
2005 봄호 (94호)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양삼승 김재협 함석천
2005 여름호 (95호)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II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황성기 김서중 윤 경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2005 가을호 (96호)	언론관계법과 언론자유 현장에서 바라본 언론의 법적 환경 변화 언론관계법과 언론 자유침해 논란 고찰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이희용 김병국 강경근
2005 겨울호 (97호)	(세미나)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황용석 양삼승
2006 봄호 (98호)	취재윤리와 진실보도 언론자유 관점에서 본 취재윤리 비윤리적 취재·보도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단상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Ⅰ)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Ⅱ)	이승선 엄기열 윤길용 류순열
2006 여름호 (99호)	시민 저널리즘, 과제와 전망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시민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제언(Ⅰ)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제언(Ⅱ)	최 영 반 현 최진순 이봉렬
2006 가을호 (100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관련 현재결정(2005헌마165 등)에 대한 소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양재규 김윤정
2006 겨울호 (101호)	(세미나)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포털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위수 양재규
2007 봄호 (102호)	'헤드라인 저널리즘' 과 언론윤리 저널리즘 측면에서 바라 본 '헤드라인 저널리즘' '헤드라인 저널리즘' 의 역기능과 해결방안 '헤드라인 저널리즘' 의 이상과 현실	이준호 김서중 이상국
2007 여름호 (103호)	2007 대통령 선거보도 주요 이슈 점검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언론의 편향성 UCC 선거와 언론의 역할 선거보도심의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백선기 반 현 김창룡
2007 가을호 (104호)	(세미나)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김동하 이승선
2007 겨울호 (105호)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과제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쟁점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현황	이재진 김민정
2008 봄호 (106호)	다매체시대의 사진·영상보도와 인격권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미국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프랑스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	장호순 박아란 박진우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2008 여름호 (107호)	(17대 대선·18대 총선) 선거보도 이슈 진단 선거보도 심의 사례 분석 지역신문에 나타난 18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논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 관련 의사 표현의 자유와 한계	권오근 이효성 이화형
2008 가을호 (108호)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 책임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김성곤 권현영 강경근
2008 겨울호 (109호)	(세미나) 언론 환경의 변화와 언론분쟁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이재진 성낙송
2009 봄호 (110호)	대체적 분쟁해결(ADR)과 언론중재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ADR)의 발전과 그 의미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대체적 분쟁해결제(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류승훈 함형주 정남철
2009 여름호 (111호)	사회적 이슈로 바라본 언론보도의 공익적 역할과 명예훼손 알 권리와 명예훼손 면책 논쟁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책임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과 언론의 자유	이승선 조재현 김종서
2009 가을호 (112호)	(세미나)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 범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대한 연구	여상원 장호순
2009 겨울호 (113호)	'09 미디어환경 변화와 인격권 침해 쟁점 공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대중스타의 사생활 정보 공개의 한계와 법적 쟁점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검토	김상겸 이재진 양재규
2010 봄호 (114호)	우리나라 분쟁해결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과제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법원연계형 ADR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이상돈, 양천수 김민중 조원철
2010 여름호 (115호)	모바일시대의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상 표현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향 선거콘텐츠로서 동영상 UCC의 미래	김래영 조희경 최민재
2010 가을호 (116호)	언론 속의 판결, 판결 속의 언론 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현황과 특성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 자유의 한계 언론규범 설정 등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과 법적 의의	김창숙 신 평 김재협

연도 (통권)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필자
2010 겨울호 (117호)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 기본법 제정방향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중재제도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정남철 정준영
2011 봄호 (118호)	(특집 I) 창립 30주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고와 전망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주요 국가의 언론피해 구제방식 비교 고찰 전문가들이 바라본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	이승선 이재진 김창숙
	(특집 II) 소셜미디어 시대의 자유와 윤리의 문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의 필요성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및 피해구제 방안 고찰	박근서 이상은
2011 여름호 (119호)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잊혀질 권리'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동향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구본권 홍명신 지성우
2011 가을호 (120호)	(세미나)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방안 현행 피해구제제도문의 크기·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김정탁 박종순
2011 겨울호 (121호)	언론보도 인격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노만경 이창현 장현우

2.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언론계와 학계 등에 언론중재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사건 및 시정권고 사례와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록한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³⁷⁾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언론 현업에

36) 일본 '인권과 보도·연락회'라는 모임에서 마련한 '익명보도주의하(匿名報道主義下)에서의 현명기준시론(顯名基準試論)'을 근거로 이 연락회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전국의 현역기자 11명이 공동토의를 통해 분담집필한 것임.

37) 2007년도 사례까지는 '연차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으로 발간, 2010년도 사례는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이란 명칭으로 발간됐다.

종사하는 기자와 데스크들은 이러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한 해의 사건을 전수 게재하는 관계로 해당 연도의 사례집은 이듬해 발간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도의 경우, 처리한 사건수가 44건에 불과해 1982년 처리한 사건 50건과 함께 1982년 12월에 한권으로 최초 발간했다. 1987년도 사례집까지는 신청사건과 이에 대한 통계분석만을 수록하다가, 1988년도 사례집부터 시정권고 사례를 함께 수록하기 시작했다.

한편, 2005년에는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인터넷신문이 새로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사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사례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2005년 사례집부터는 책자와 함께 CD-ROM을 제작해 왔다. 또한 2009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사닷컴, 포털 등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피해구제가 가능해 졌고, 보도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매체별로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종전과 같이 전수 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사례집의 분량 비대화 및 동일 사건의 중복게재라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2010년도 사례집에는 목록으로 전수 사례(조정 2,205건, 중재 77건)를 게재하고 청구권별, 신청인 유형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별, 침해유형별 주요 조정·중재사례 103건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3.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언론보도 관련 법원 판결문을 수집하여 매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여 왔다(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집 발간). 또한 언론분쟁에 관한 판결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언론분쟁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주요 쟁점별 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2008년에 발간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2009년부터는 전년도 언론분쟁 관련 판결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분석보고서는 언론분쟁사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에게는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언론소송을 연구하는 언론학자들에게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처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를 분석과제로 삼았다.

소송 제기현황과 관련해서는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매체별 피고구성 등에 대해 분석했다.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 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에 대해 분석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했다.

4.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서비스에 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989년과 1996년에 각 한 번씩 이뤄졌고, 2003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연간 1회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내용은 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이나 법제도 개선 사항,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시의성 있는 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청절차와 처리결과, 전반적 만족도, 상담창구에 대한 의견 등 일반적인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담이용자와 교육수강자의 종합 만족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항목별 세부 만족도와 종합만족도를 전년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원회의 장·단기적 정책 및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1) 1989년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위원회 최초의 이용만족도조사는 1989년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를 통해 시행한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신청인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조사를 중심으로)’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근간이 된 「언론기본법」이 1987년 폐지되면서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일부 보완되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수용되었고,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발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 진단과 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신청인과 전문가 집단(한국언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운용에 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분석하여 중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중재신청 전에 신청인의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61.8%에 불과했고, 중재위원회를 이용하게 된 동기는 ‘소송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되기 때문’,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5%, ‘피해구

제가 신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0.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신청인은 100%가 찬성했고, 전문가 집단은 81.1%가 찬성했다. '위원회가 손해배상문제도 처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신청인의 95.1%, 전문가 집단은 60%가 찬성했다.

2) 1996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제도는 1995년 12월 30일 정간물법 개정으로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었고, 직권중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실효성이 제고됐다. 이에 위원회는 새롭게 변화된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된 정간물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1993년부터 1996년 9월까지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이용만족도를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 결과, 중재신청 전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역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45.6%, 피신청인 90.2%였고,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다'는 비율은 신청인 42.3%, 피신청인 8.8%로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1989년 조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재처리 기간에 대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57.0%, 피신청인 69.6%로 가장 높았으나, 신청인의 경우 '처리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28.9%였던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 '처리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5%였다. 또한 정간물법 개정에 따라 중재신청 기간이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 것에 대해, 신청인의 71.1%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피신청인의 58.8%가 지나치게 신청인의 편익에 맞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여 변경된 중재신청기간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이 크게 다를 수 있었다. 한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원회

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69.1%, 피신청인 59.2%였다.

3) 2003년 이후

2003년도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조정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계로 조사 대상자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많았다. 2004년부터는 조사 직전 1년 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했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전문리서치 회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주로 우편으로, 상담이용자는 전화로, 교육수강자는 현장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했다.

[표 43] 연도별 이용만족도조사 현황

연도	조사 대행기관	조사 대상자수 ³⁸⁾		주요 조사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2003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1,355	976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1996년 정간물법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중재심리 만족도 분석 등
2004	코리아 리서치센터	517	444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인지도, 상담 및 교육 이용 여부와 충실도 등
2005	코리아 리서치센터	554	445	위원회 광고와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조정중재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 등
2006	한국신용정보	470	450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및 차원별 만족도,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조정대상 포함에 대한 인식 등
2007	한국신용정보	506	378	위원회 이미지 및 선호도 변화, 피해구제보도에 대한 평가 및 사후 안내 만족도,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등
2008	나이스 R&C	524	385	중재절차에 관한 인지도 및 향후 이용 의향, 포털사이트, IPTV 등의 조정대상 포함 견해 및 필요성 등

연도	조사 대행기관	조사 대상자수		주요 조사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2009	코리아 리서치센터	441	377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인식, 인터넷매체의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한 인식 및 알림 문구 게재에 대한 인식 등
2010	나이스 R&C	396	382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및 조치사항 만족도, 위원회 교육 이용시 교육량과 시간의 적절성,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 및 중요도 등
2011	나이스 R&C	429	350	심리진행 시간 만족도, 인터넷 매체에 대한 기사삭제 청구 권 도입에 대한 인식, 피해구제보도문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등

5.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및 국제교류

위원회는 해외 선진국의 여러 언론사와 언론피해구제 기관을 방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국가의 언론법제나 언론윤리규정, 오보대응시스템 등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언론중재제도와 위원회 업무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세계에서 유일한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언론중재제도가 언론분쟁해결을 위한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문평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그 결정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 결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수밖에 없다는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시찰기관으로 방문한 언론사 및 언론피해구제 관련 기관에서는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막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38) 신청인 및 피신청인 중 중복된 대상자와 주소, 연락처 불명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했다.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9년 9월 1일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갈등 조정 및 협상 사례로서 중재위 피해구제시스템과 조정·중재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언론중재제도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0년 5월 31일 스리랑카 최대 영문 일간지인 데일리 뉴스(Daily News) 자야텔레케 드 실바 편집장이 위원회를 방문했다. 스리랑카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드 실바 편집장은 권성 위원장을 예방하여 스리랑카의 언론불만처리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 언론 관련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성 위원장은 2011년 10월 19일 중국 베이징대 법학원 및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해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관계자들은 CIETAC에도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할 의향이 있으며, 나아가 중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대 법학원에서 권 위원장은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 문화상품으로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성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임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해외시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언론중재」에 게재하여 관련 법제도 연구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해외의 신문평의회, 언론피해구제제도 등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했던 1980년대에는 시찰보고서를 「언론중재」에 게재하는 한편, ‘언론침해구제제도 시찰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로 별도 제작하여 학계 등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배포했다.

6. 영문 언론조정중재사례집

위원회는 해외시찰 및 해외실무연수 등을 통해 해외 유사기관들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언론분쟁 해결제도인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여, 관련 제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위원회가 그간 처리한 조정중재사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영문 언론조정중재사례집(Casebook on Pres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을 처음으로 발간, 해외 각국의 신문평의회와 주요 외국 언론사 국내 지사, 서울 주요 대학 도서관 및 국립도서관에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위원회의 조직 구성, 연혁 등을 비롯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소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과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대표적 사례 100건을 수록했다.

지난 30년 동안 내실을 다져온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외국에 하나의 ADR 모델로 소개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언론평의회와 같은 유사기관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이를 해외에 소개할 영문책자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또한, 위원회가 유사기관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간단한 위원회 영문홍보책자에 불과했다. 영문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ADR 모델이자 언론피해구제제도인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시찰 및 직원해외실무연수 등 국제 교류 시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홍보자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7. 언론법제연구용역

위원회는 선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오보대응시스템 관련 연구를 통한 언론중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언론법제연구용역 사업을 2010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2010년은 법원이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외부 조정기관과 법원 연계조정을 실시하는 등 ADR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기였다. 이에 위원회는 해외 주요국의 언론법제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 방안과 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ADR 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를 2010년 언론법제연구용역 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부에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한 후,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했다.

2010년 12월 발행된 연구보고서는 ADR의 의의와 유형, 역사 및 ADR의 유용성과 한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ADR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ADR의 발전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기초로 ADR 관련 기본법안으로 ‘재판외 분쟁해결 촉진법(안)’을 제시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제도 선진화 및 미래지향적 모델 개발과 국내 ADR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

[표 44] 2010년도 해외언론법제 연구용역 현황

연구기간	연구보고서 명칭	연구책임자
2010. 9. 1. ~ 2010. 11. 30.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 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해외 주요국의 言論法制 및 代替的 紛爭解決制度(ADR)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8. 기타 연구 활동

위원회는 앞서 기술한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와 계간지 「언론중재」를 비롯한 각종 발간사업 등의 정기적인 조사연구 활동과 함께 언론중재제도의 발전 및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 왔다. 법률 개정과 같은 주요 사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탄력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병행했다.

대표적으로는 계간지 「언론중재」에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수록된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신문평의회 사례 중 230여건을 선별·수록한 외국신문평의회 사례집 등의 발간 사업과 1993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언론중재제도개선방안(법률안)’ 연구, 위원회 사무처 연구위원실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1996년도 연구보고서 ‘각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전망 I’, 1997년도 연구보고서 ‘각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전망 II’, ‘우리나라 언론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1998년도 연구보고서 ‘선거보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의 익명·실명보도와 알 권리’) 등이 있고, 최근 창립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비롯해 국내 ADR 기구 간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가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내부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박사급 연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최근 언론법제 분야에 대한 학계의 연구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했고,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분야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선진 국가들의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동향을 파악, 이를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 개선연구에 활용하고자 해외통신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시행 첫해에는 명예훼손 관련 판결이 많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분쟁이 빈번한 영국에 통신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인접 유럽 국가들의 연구동향이나 흐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위원회 초대 통신원으로는 영국 런던 정경대학(LSE) 언론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주재원 씨가 활동했고, 2011년에는 프랑스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에 있는 최지선 씨를 통신원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해외통신원이 보내오는 거주국 및 인접 국가의 언론관련 동향보고서와 단신을 선별하여 국내 언론법제 연구자들이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유럽 법조계와 학계 등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언론중재」에 수록하여 배포하고 있다.

IV.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2005년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을 개설한 이후 언론중재제도의 정책적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와 실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 서적, 간행물 등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06년 3월에는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자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자료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자료검색, 대출정보 확인, 자료예약 및 구입신청 등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접근에 필요한 인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10년 12월에는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두 기관과 저작권법에 따라 전자도서관사업으로 구축한 전자정보의 이용(원문 DB의 복제·전송·출력) 및 저작물 이용허락의 협조,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소장 자료의 업무 관련성 심의를 강화하고,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11월 ‘자료선정위원회’를 발족했다. 2011년 12월까지 총 16회의 회의를 통해 자료선정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자료수집의 내용 및 범위도 확대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으로 자료실의 정보역량이 강화되고 정보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 내부 직원과 중재위원 및 전·현직 언론인과 대학(원)생들 역시 필요에 따라 소장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전자도서관 구축 후 점진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45] 자료실 도서 보유 현황

(2011. 12. 31. 현재 / 단위 : 권)

구분	언론	법학	홍보	ADR	인문·사회	기타	계
총계	2,581	464	78	59	881	632	4,695

V.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의 언론중재제도 운영은 비교적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운영성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평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지금 언론계는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 스마트TV 등 종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조만간 이들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제도의 발전방향 내지는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발전과 성숙은 단기적인 노력이나 즉흥적인 발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 개선 연구에 긴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다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것처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조사연구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조사연구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장 위원회 내부 연구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의 조사연구사업은 대체로 외부 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제도의 발전과 강화에 법조계의 도움은 가히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 즉 각종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의 발제자라든가, 계간지 원고 집필자들은 많은 경우 외부 인사였다.

최근 들어 사무처 내에 박사급 연구 인력을 충원하기는 했지만 보다 많은 연구 인력을

선발하여 조사연구사업 부서 내에서의 자체적인 조사연구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30년 간 지속되어온 많은 행사들의 개최 목적과 형식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각각의 행사 목적이 무엇인지 새롭게 재정비하고 그에 부합하는 형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도 크다.

제5장 언론피해상담과 교육

I.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출범과 의미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는 2004년 4월 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개시했다.



2004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개소식

상담센터의 출범은 언론피해상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원회가 단순히 조정·중재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여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상담센터에는 상담부서뿐만 아니라 홍보팀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관련 소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생산되어 위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일반 단체 등 언론 노출 빈도가 높은 단체, 각 대학 언론학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출장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상담센터의 설치에 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면서 위원회의 문턱을 낮춰 친밀감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현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라는 명칭은 2009년 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지만, 그 기능은 심리본부 접수상담팀, 연구본부 교육팀·홍보팀으로 이관, 유지되고 있다.

Ⅱ. 언론피해상담

1. 개요

언론피해상담은 2004년 4월 1일 상담센터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전에도 대략적인 조정절차 또는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독립적인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무상담팀을 상담센터의 소속 부서의 하나로 신설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상담원이 위원회 조정절차를 비롯하여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상담센터 출범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언론보도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중재부와 상담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어 오히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그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들이 보도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후 피해구제에서 나아가 사전 피해예방의 간접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 ‘책임상담제’를 도입, 상담신청인의 상담에 최초로 대응한 상담원이 책임자가 되어 재상담 및 신청서 검토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상담을 처리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상담신청인은 한 번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수차례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다른 상담원과 재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상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책임상담제’는 상담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담업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유형별 상담실적 분석

1) 상담신청 유형

위원회는 상담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화, 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 실시간채팅,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총 19,64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이 15,777건(80.3%)으로 매년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방문 상담 1,915건(9.7%), 인터넷 실시간 상담 910건(4.6%), 위원회 사이버 신문고 등 인터넷 게시판 상담 573건(2.9%), 이메일 상담 185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되는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한 민원 및 상담이 속하는 ‘기타’ 유형은 총 284건(1.4%)으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언론보도피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표 46] 상담신청 유형

연도	구분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기타
	상담건수							
2004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	2,304		1,836	178	132	140	7	11
2007	2,343		1,916	190	113	91	14	19
2008	2,553		2,191	214	75	51	9	13
2009	3,014		2,547	299	90	49	5	24
2010	2,723		2,142	322	94	54	47	64
2011	2,538		1,984	269	82	17	72	114
계	19,644		15,777	1,915	910	573	185	284
(%)	(100.0)		(80.3)	(9.7)	(4.6)	(2.9)	(0.9)	(1.4)

위원회의 다양한 형태의 상담 유형 중, 지난 8년 동안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상담신청이 전체 상담건수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한 간접적인 상담보다 직접적인 대인(對人) 상담신청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1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지고, 조정·중재사건의 전자심리에 동의할 경우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시간으로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어 전자적인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가능해졌다. 현재까지는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편의성이 널리 알려지고 상담신청인이 사용하는 데 보다 익숙해지면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상담 처리결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출범 이후 위원회는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언론보도피해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해왔다.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14,953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적절차 안내 2,128건(9.9%), 타기관 안내 1,862건(8.7%), 재상담 예정 824건(3.8%), 자체종결 295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법적절차 안내’로 종결된 상담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법원 소송절차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47] 상담 처리결과

연도	구분							
	상담건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	1,816	1,168	540	91	191	46	32	2,068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2007	2,343	1,776	291	81	221	23	218	2,610
2008	2,553	1,987	171	95	136	44	305	2,738
2009	3,014	2,327	139	48	267	56	275	3,112
2010	2,723	2,093	92	135	260	43	255	2,878
2011	2,538	2,220	55	252	244	5	82	2,858
계	19,644	14,953	2,128	824	1,862	295	1,375	21,438
(%)		(69.7)	(9.9)	(3.8)	(8.7)	(1.4)	(6.4)	(100.0)

* 상담 처리결과는 복수의 처리결과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한편, 위원회는 조정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상담의 경우 적절한 타기관을 안내하기도 한다. 이 같은 ‘타기관 안내’로 처리된 건수는 2004년도와 200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2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자체종결’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거나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상담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적절한 구제방법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경우이다. ‘재상담 예정’은 위원회 조정절차에 대해 일차적인 안내가 이뤄졌으나,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후속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 상담이 이에 해당한다.

그밖에 ‘기타’로 분류된 상담은 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면서 적절한 타기관을 안내하기가 어려운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데,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인터넷상의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절차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과거 ‘묵은 기사’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인이 해당 포털사이트 또는 기사제공 언론사와의 직접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어, 포털사이트의 과거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상담피해 유형

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접수되는 피해유형은 크게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침해,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지난 8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명예훼손 12,895건(64.4%), 기타 4,679건(23.4%),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1,648건(8.2%), 신용훼손 378건(1.9%), 사생활 침해 365건(1.8%), 재산상 손해 46건(0.2%) 등으로 나타났다.

[표 48] 상담피해 유형

연도	구분 상담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재산상 손해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기타	총계
2004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2006	2,304	1,384	118		224	65	594	2,385
2007	2,343	1,459	43		247	63	582	2,394
2008	2,553	1,551	4		246	49	753	2,603
2009	3,014	2,039	3		250	33	748	3,073
2010	2,723	1,794	6		177	43	722	2,742
2011	2,538	1,924		46	195	55	318	2,538
계	19,644	12,895	378	46	1,648	365	4,679	20,011
(%)		(64.4)	(1.9)	(0.2)	(8.2)	(1.8)	(23.4)	(100.0)

‘명예훼손’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게재되거나 일방적인 보도로 사회적 지위가 실추된 데 따른 피해유형으로, 해마다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훼손’은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자연인 및 법인 포함)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법인의 인수합병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게재된 데 따른 피해를 일컫는다. 신용훼손에 관한 상담건수는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접수된 이후 2008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보도를 접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재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회사에 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제품판매 실적의 부진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사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2011년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기 시작했다.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명예’ 뿐만 아니라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등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면서 그에 따른 침해사항도 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담건수의 대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 공개 또는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공표되거나 음성변조 없이 육성 방송되는 등 신원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표된 경우이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상담건수는 초상권·음성권·성명권 등의 침해에 비해 그 빈도가 낮은 편이다. 사생활에 관한 보도 대상이 주로 공인인데, 공적 인물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관련 상담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 일반인의 방송 출연 기회가 확대되면서 언론의 ‘신상 털기’ 식 보도가 게재되어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접수되는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초상권·음성권·성명권 및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상담건수는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타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제고된 것을 반영하고,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 간편한 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피해유형은 자신의 글이 언론에 무단으로 게시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언론보도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같은 저작권 관련 상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담은 언론보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위원회를 찾는 창구로서 언론보도피해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의 경향을 분석하고 피해유형을 세분화해 이에 따른 적절한 피해구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4) 상담매체 유형

2004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만이 언론중재의 대상이었다. 2000년대 들어 포털과 언론사닷컴에 게재되는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포털과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신문은 법상 중재대상 매체가 아닌 탓에 피해구제절차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언론중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닷컴 등 종속형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신청도 가능해졌다.

상담의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총 23,264건 중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건수가 6,222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5,311건(22.8%), 인터넷신문 3,314건(14.2%), 주간신문 2,057건(8.8%), 인터넷뉴스서비스 1,599건(6.9%), 뉴스통신 618건(2.7%), 잡지 339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상담매체 유형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총계
2004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1,924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528
2006	2,304	750	247	575	58	64	280		15	408	2,397
2007	2,343	699	215	709	31	63	325		24	330	2,396
2008	2,553	755	187	702	42	89	353		34	470	2,632
2009	3,014	820	284	888	61	72	488	519	57	551	3,740
2010	2,723	914	403	541	41	98	855	752	5	466	4,075
2011	2,538	863	286	736	14	123	695	328	6	521	3,572
계	19,644	6,222	2,057	5,311	339	618	3,314	1,599	164	3,640	23,264
(%)		(26.7)	(8.8)	(22.8)	(1.5)	(2.7)	(14.2)	(6.9)	(0.7)	(15.6)	(100.0)

* 매체유형은 복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2009. 8. 7.부터 개시

일반적으로 신문(일간·주간)에 비해 방송은 그 매체수가 적어, 방송 매체에 대한 상담 건수가 신문에 대한 건수보다 적었다. 그러나 2009년 방송에 대한 상담건수가 무려 888건을 기록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화제가 된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출연자의 일명 ‘루저’ 발언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상담건수가 대거 접수(291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간·주간신문과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대한 상담건수가 전체 건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뒤늦게 조정대상매체로 포함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이 2010년도에 855건으로 2009년도 488건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2010년도에 752건으로 2009년도 51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상담 시 포털사이트에 매개된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에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했

으나, 이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상담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매체유형별 상담현황을 보면 ‘불명’으로 집계된 건수가 3,640건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피해에 관한 상담내용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상담신청인이 해당 매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타’ 매체유형으로 분류된 상담건수가 164건(0.7%)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건수에 비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언론보도 또는 기자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대한 상담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아직 SNS에 대한 상담이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점차 미디어 생산자와 미디어 이용자간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5) 상담 신청인 유형

언론조정외 당사자가 되려면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자연인, 법인 그리고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재단 등의 경우 모든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능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찰서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각종 연합회, 각종 시민단체 등도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상담을 신청해오고 있

으며 조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조정신청에 대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 상담신청인 가운데, ‘개인’이 절반 이상인 11,877건(6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의 경우 단체에 비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심리적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도모하는 조정절차를 보다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체의 경우 총 19,644건 중 5,165건으로 26.3%를 차지했다. 단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회사 등 일반기업체의 상담이 2,232건(11.4%)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 및 협회 등 일반단체 1,545건(7.9%),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831건(4.2%), 국가기관 252건(1.3%), 학교 등 교육기관 226건(1.2%), 종교단체 71건(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50] 상담 신청인 유형

연도	구분 상담 건수	구분								
		개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 단체	기타	불명
2004	1,816	829		141	229	28	7	47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2006	2,304	1,084		135	267	25	9	48		736
2007	2,343	1,368		178	260	26	4	72	2	433
2008	2,553	1,735		276	241	10	16	85	2	188
2009	3,014	2,137	46	269	337	34	7	170		14
2010	2,723	1,849	82	190	333	44	3	222		
2011	2,538	1,634	124	236	337	40	17	148	2	
계	19,644	11,877	252	1,545	2,232	226	71	831	8	2,602
(%)	(100.0)	(60.5)	(1.3)	(7.9)	(11.4)	(1.2)	(0.4)	(4.2)	(0.0)	(13.2)

언론보도피해 관련 상담이 주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상담신청인이 익명을 원하거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언론보도 피해자가 개인인지 또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도 어려워진다. 이 때 신청인 유형을 ‘불명’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상담건수가 2009년까지 2,602건으로 전체의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 불명의 상담신청인에 의한 상담건수는 상담 서비스 개시 초반에 집중적으로 집계된 이후 차츰 그 건수가 감소해 2010년도에는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유형의 상담신청인을 세분화해보면 직업군을 밝히지 않아 ‘불명’ 처리된 신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언론피해상담의 보안성에 대한 상담신청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담신청인의 우려를 불식하고 상담내용의 보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상담 부서의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상담내용 유형

상담신청인들이 위원회 상담을 통해 요구하는 피해구제의 유형은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 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을 비롯해, 금지청구, 강제집행절차, 형사고소 등 타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중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이 13,010건(55.0%)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 6,138건(26.0%), 기타 3,209건(13.6%), 추후보도 484건(2.0%), 금지청구 375건(1.6%), 형사고소 344건(1.5%), 강제집행 절차 87건(0.4%) 등의 순서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51] 상담내용 유형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강제 집행 절차	형사 고소	기타	총계
2004	1,816	1,243	44	364	32	16	77	290	2,066
2005	2,353	1,643	24	570	13	7	23	375	2,655
2006	2,304	1,464	59	704	11	22	60	474	2,794
2007	2,343	1,477	70	752	76	12	40	413	2,840
2008	2,553	1,597	77	748	58	15	66	504	3,065
2009	3,014	1,864	54	1,246	32	1	23	426	3,646
2010	2,723	1,810	77	828	56	14	25	492	3,302
2011	2,538	1,912	79	926	97		30	235	3,279
계	19,644	13,010	484	6,138	375	87	344	3,209	23,647
(%)		(55.0)	(2.0)	(26.0)	(1.6)	(0.4)	(1.5)	(13.6)	(100.0)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추후보도’ 관련 상담이 19,632건으로 전체의 80%를 웃돌고 있어,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중 대다수는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정정 및 반론보도’에 관한 상담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거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박 내지 주장 등의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문의가 해당한다.

손해배상청구는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위원회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법 제정 이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절차에 관한 안내가 주를 이루던 것이 법 제정을 기점으로 위원회 손해배상청구절차에 관한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상담영역이 확대됐다.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은 주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동의 없는 사진촬영 및 게재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생활 비밀 공표에 따른 침해, 동

의 없는 육성 공개로 인한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상담건수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출연자의 '루저' 발언에 대해 상담신청인들의 손해배상 관련 절차 문의가 대거 접수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추후보도청구는 범죄보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도청구'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 관한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8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타 청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측면도 있으나,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또는 용의자)의 신원 보호에 대한 사법기관과 언론의 인식이 제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지청구'에 관한 상담건수 또한 2007년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담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방송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가 '자료'로써 게시하고 있는 과거 기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도윤리기준이 달리 적용되어, 당시에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없던 기사라 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일명 '묵은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제공언론사가 보도한 시점을 법상 '보도일'로 간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원회 조정절차뿐만 아니라 법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때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디

어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중 ‘기타’로 분류된 상담건수가 총 3,209건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다. 주로 위원회의 조정절차로 구제되기 힘든 상담내용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뉴스 저작권에 관한 상담이거나 트위터상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 또는 기자의 취재방식에 관한 불만제기 등 타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방송의 편파성이나 신문기사의 선정성 등에 관한 상담도 이에 포함된다.

3. 평가와 전망

위원회는 2004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 이후 2011년까지 총 19,644건(상담신청 유형별 상담현황 기준)을 상담했다. 상담건수는 해마다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4년도(1,816건)와 2011년도(2,538건)를 비교해보면 지난 8년간 상담이 양적인 성장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상담부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창구이다. 이 때문에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상담서비스는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좌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기법 연구를 위한 독서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언론 관련법 및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지난 8년간 네 차례에 걸쳐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상담사례집은 자주 발생하는 언론피해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언론보도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담 실무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피해자에게는 피해구제의 올바른 구제방향을 제시하고, 언론관계자에게는 인격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간 양자의 조화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매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신청인, 교육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상담 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꾸준히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 중 ‘상담원의 경청자세’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91.1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원의 전문적인 업무지식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비해 88.7점으로 다소 낮았다. 이 항목 역시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향상되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상담신청인의 피해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데 비해 법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상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원회는 2011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업무 처리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는데,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관계로 상담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스템 이용 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스템을 통한 상담 및 조정·중재신청이 활성화될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담부터 신청서 제출·접수는 물론,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

회하고 심리 종결 이후에도 사건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어 원스톱(one stop) 민원 처리 방식이 확실히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는 2011년 각급 법원의 민원 처리시스템을 응용하여 위원회 상담실 환경을 정비했다. 이로써 상담신청인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방문 상담신청인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민원 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민원 처리 시스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상담신청인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한 접수상담팀 모습

또한 위원회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을 통해 상담기법을 향상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담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상담신청인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피해상담은 위원회 대민(對民)업무의 시작점이다. 그만큼 언론보도 피해자들의 피해사항을 최일선에서 접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유형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언론보도피해상담이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Ⅲ. 언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1. 교육 실시 개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격권에 대한 의식 향상 및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2004년 4월 이후,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분쟁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 및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언론사로 하여금 보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수습기자 교육 현장

위원회는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공·사기업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바르게 알리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범한 일반인도 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파급 효과가 매우 막대하고 신속하다는 점을 들어 권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일반인이 보도의 피해자가 된 조정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소개하는 교육 못지않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위원회 교육을 적극 홍보하여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의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격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취재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민의 인격권과 알권리를 보다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기사 작성에 대해 실제의 조정사례 및 판례를 들어 설명한다. 아울러 위원회 조정 및 중재제도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비해 분쟁해결 만족도가 높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PT 자료에는 동영상,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언론계 종사자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취재·보도행위의 유형이나 언론관련 판결의 추이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교재를 발간하는 등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힘쓰고 있다. 2004년 교육업무 개시와 함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방법 등을 안내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사가 알아야 할 언론보도분쟁 대처방안 및 방지책 등을 안내하는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등 두 가지 교재를 발간했다. 이 교육책자는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 관련 법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조정사례와 법원의 판결내용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교육 수강생은 물론 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후 2009년까지 매년 교육 수강생들의 이해도와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분쟁과 관련된 새로운 사례를 보강한 개정 교재를 발간했다. 2010년에는 언론사와 수용자 편으로 나뉘어져 있던 교재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언론분쟁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를 발간하여 각종 교육에 사용해 오고 있다. 교육책자는 실제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언론 현장에서 실제 분쟁 발생시에도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단체에 배포하여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자살 관련 보도에 의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 교육시 자살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유의점에 대해 시정권고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 대해 꾸준히 시정권고를 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와 관련한 정책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언론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거나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모방 자살 사례를 낳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예방뿐만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용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바람직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 추진실적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발족 후 위원회는 언론사, 대학, 공·사기업을 위주로 하여 2004년도에 4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언론계를 비롯한 수용자 집단의 교육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교육 실시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가 교육을 시작한 이후 언론사의 요청으로 기자·PD 등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언론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행한 비율이 전체 교육 중 33.3%에 이르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는 교육건수의 과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연도별 교육 현황

구분	언론사	대학	공·사 기업	지자체	교육 연수 기관	인터십 프로 그램	법무 수습 교육	기타	계
2004	13	20	8					3	44
(%)	29.5	45.5	18.2					6.8	100.0
2005	44	14	3	1	3			3	68
(%)	64.7	20.6	4.4	1.5	4.4			4.4	100.0
2006	40	5	4	8	6			7	70
(%)	57.1	7.1	5.7	11.4	8.6			10.0	100.0
2007	35	10	9	4	8			6	72
(%)	48.6	13.9	12.5	5.6	11.1			8.3	100.0
2008	28	17	20	10	15			12	102
(%)	27.5	16.7	19.6	9.8	14.7			11.8	100.0
2009	33	28	17	15	30			4	127
(%)	26.0	22.0	13.4	11.8	23.6			3.1	100.0
2010	26	16	4	15	56	8	2	7	134
(%)	19.4	11.9	3.0	11.2	41.8	6.0	1.5	5.2	100.0
2011	41	17	9	14	54	19	3	6	163
(%)	25.2	10.4	5.5	8.6	33.1	11.7	1.8	3.7	100.0
계	260	127	74	67	172	27	5	47	780
(%)	33.3	16.3	9.5	8.6	22.1	3.5	0.6	6.0	100.0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점점 고취되면서 언론분쟁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사 입장에서 분쟁이 일단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언론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판단 하에 분쟁의 사전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번 교육을 받은 언론사에서 재차 교육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언론사에서 소속 기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이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보호와 향상은 물론 언론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론사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위원회의 주 업무가 언론보도로 인한 사후적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것인 반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언론분쟁의 사후 해결과 더불어 언론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관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위원회는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을 계기로 정정·반론·추후보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가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 이후에는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인터넷뉴스서비스인 포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 IPTV를 대상으로 한 언론조정·중재가 가능해진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롭게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사 및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아 언론조정 신청의 직접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공무원 대상 교육(67회, 8.6%)과, 미래 세대인 초·중·고교 학생들에게까지 교육 효과가 확대될 수 있어 위원회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교원 등 교육연수기관 대상 교육(172회, 22.1%)을 통해 위원회를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알리고자 했다.

127회의 대학교 교육에서는 사회진출을 눈앞에 둔 학생들에게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방송학 전공 학생들에게 언론분쟁의 예방과 구제절차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소양 함양에 기여했다. 그리고 공·사기업 74회, 기타 47회 등의 언론수용자 교육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사법연수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통해 법률전문가 집단의 위원회 업

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등 다양한 교육 대상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2009년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주 여성 및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2010년 처음 시행된 인턴십 프로그램

특히 2010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교사용 학습지도안을 개발하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개시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2010년 여름방학부터 언론과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와 법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했다(2010년 여름방학 총 8회 201명 참가, 겨울방학 총 9회 211명 참가, 2011년 여름방학 총 10회 229명 참가).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해, 언론분쟁 해결방법 및 절차,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조정심리실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료 후에는 참가학생들에게 위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위원회 업무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지도안’과 PPT 자료를 개발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고교 교과서에 위원회 관련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했다.

2007년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위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수록되었으

며, 2011년 위원회 소개내용을 강화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가 발간됐다. 중·고교 교과서에도 위원회 관련 내용이 등재되도록 노력한 결과 2011년 3월에 위원회 관련 내용이 수록된 3종의 교과서가 발간되어 위원회 관련 내용이 정규교과에 편성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3. 평가와 전망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위원회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은 큰 호응 속에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위원회 교육은 일반인과 언론인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언론보도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수행해 왔다. 특히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해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9년에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변화된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일반인과 언론인의 언론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교육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대상별, 주제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이 언론분쟁의 사후 해결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관행을 개선하여 부주의한 보도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보다 바람직한 언론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및 분쟁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 등 교육서비스에 관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교육대상 즉, 언론인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언론인과 일반인의 만족도가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첫 해인 2006년 84.6점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93.6점, 2008년 93.4점, 2009년 91.2점, 2010년 91.3점, 2011년 93.0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이 언론인의 취재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6년 90.6점, 2007년 94.3점, 2008년 96.8점, 2009년, 91.2점, 2010년 93.0점, 2011년 92.4점으로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언론인이 취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 외에도 교육의 필요성, 향후 교육참여 의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의 교육은 언론 관련 법원판결과 위원회의 조정사건 등을 설명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유형, 그리고 분쟁의 해결 방법 등을 안내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현업 언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위원회의 교육은 우리 사회에 인격권에 대한 의식 확산 및 인격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가 급증하고, 팟캐스팅(Pod casting)이나 웹캐스팅(Web casting)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통매체인 신문, 방송도 인터넷을 통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스소비자들은 빠르고 접근이 손쉬운 뉴스를 원하고 있다. 뉴스생산자 역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신속한 기사 생산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사실조사가 부족한 뉴스가 양산되기도 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언론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향상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 매체가 복잡 다양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로 인해 언론보도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언론분쟁 사례나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보다

매체 특성과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각 매체 성격과 교육대상에 따라 다른 교육교재와 사례를 준비하여 한층 밀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좀 더 품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강의 기법 교육을 받음으로써 임직원들의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등 만족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소외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대상의 확대에 힘쓰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사회 공헌도를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확산속도와 규모가 큰 언론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절차보다 ADR의 일종인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 언론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36.1%에 그친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공률은 79.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매체와 SNS의 매개 등으로 인해 언론피해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언론중재 참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와 같은 ADR을 이용한 좀 더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협상, 조정, 중재 등 ADR 기법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언론분쟁 조정·중재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하여 언론인, 변호사, 중재위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AD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상·조정·중재 등에 임하는 자세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조정·중재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언론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조정, 중재 등 ADR에 의한 분쟁해결률을 높임으로써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홍보

I. 위원회 설립 초기의 홍보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한 1980년대는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극소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인지도나 위상이 약했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대국민 홍보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계기별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정도가 홍보활동의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주로 연초에 전년도의 중재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도하거나, 정기세미나, 지역 토론회 등의 행사가 열린 다음 그에 대한 결과를 보도하도록 하는 등이었으며, 그 외에는 중재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당시 위원회가 배포했던 보도자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문 보도를 검색해 보면 당시의 홍보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81년 9월, 위원회 창립 6개월을 맞아 언론들이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9월 28일자 일간지들은 창립 6개월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두 15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8건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임을 보도하고 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창립 6개월과 관련되어 눈에 띄는 기사는 안우만 초대 위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서정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대담 기사이다. 서 교수가 질문하고 안 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 이 대담에서 서 교수는 “아직도 중재위에 대한 일반인과 언론 관계자의 긍정적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발족 6개월의 시점에서 중재위의 존재 가치와 사회 기여도 및 비전은 무엇이며 인식의 제고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서구의 반론권 제도와 외국의 언론피해 구제기구의 실적 등을 자세히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언론피해 구제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6개월간의 중재실적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재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을 묻는 서 교수의 질문에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제도”라며, “언론 쪽에서도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침해를 당해도 이의신청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안 존하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해 시민들의 권리의식을 당부하고 있다.⁴⁰⁾

그 이후에도 안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재위원회의 존재와 의의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창립 1주년을 맞아 게재된 신문 인터뷰에서 “중재위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함께 강조했다. 기자가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언론 중재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묻자 “언론중재위는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1차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그것도 정정보도를 ‘권고’하는 것이 갖고 있는 권한의 전부”라며 중재위원회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기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39) 동아일보 1981. 9. 28. 2면 ‘언론중재위원회 6개월에 15건 처리’

40) 경향신문 1981. 9. 26. 9면 ‘시민 편에 서서 언론 공신력 향상 - 발족 6개월을 맞은 언론중재위를 말한다’

이처럼 창립 첫 해에는 중재위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며, 혹시라도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언론사들의 의심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대언론 홍보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 방침은 중재위원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조금씩 수정됐다. 안 위원장은 1년 뒤인 1983년, 임기 2년의 위원장에 연임되면서 다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는데, 이 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언론중재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언론은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튼튼해지므로, 언론이 오보나 사생활 침해를 솔직히 정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재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며 “중재사건을 일반사건 다루듯이 하면 곤란하겠지만, 중재위는 법관과 전문교수, 전직 언론인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언론의 특수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다.⁴¹⁾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 초기 몇 년간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안우만 초대 위원장의 대언론 인터뷰가 거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같은 행사를 맞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중재위원 위촉, 그리고 매년 발표하는 연말 통계 등을 통해 꾸준히 대언론 홍보활동을 시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안 위원장의 뒤를 이은 임규운 위원장과 정희택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알리는 등 지금까지 역대 위원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언론 접촉을 통한 위원회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초기 안 위원장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 창립 초기 약 10년 동안 행해진 주된

41) 1983. 4. 8. 경향신문 4면 '시민의 권리 쪽에 프리미엄 주고 싶다'

대언론 홍보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던 홍보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시도된 광고집행을 통해서였다. 매체 광고의 집행을 통해 중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II. 광고를 통한 위원회 홍보

1. 최초의 돌출광고



처음 게재된 위원회 광고
(매일경제 1989. 11. 28.자)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리는 매체 광고가 처음 집행된 것은 1989년이였다. 전국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위원회의 돌출광고가 게재됐다. 돌출광고는 일반적인 신문의 광고면이 아닌 기사 중간에 돌출되는 형태로 게재되는 소형 광고인데, 기사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 주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최초 게재된 위원회 광고는 2가지로, 김정색 사각 틀 안에 각각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셨습니까? -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신문,

방송, 잡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 및 각 지역중재부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은 것이었다. 비록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고려 없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투박한 형태의 광고였지만, 중재위원회가 최초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체 광고를 실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돌출광고 형태는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2. 본격적인 광고집행

1991년은 위원회 홍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중재위원회는 1991년 8월, 한국연합광고(현 MBC애드컴)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매체광고를 제작, 집행하

기에 이르렀다. 위원회가 이처럼 광고 집행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 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는 위원장 등 명사들의 언론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계기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 단발성에 그쳤고, 국민의 관심을 한 곳에 모을 만한 이슈를 일으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재위원회가 연합광고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밝힌 이유도 “홍보의 불충분으로 존재 역할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⁴²⁾이었다. 중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둘째, 부족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이다. 1981년 창립 첫 해에 44건으로 출발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건수는 1988년까지 연평균 약 54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89년에 121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하였고, 1990년에는 159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언론통폐합 조치가 철폐되면서 신문사 설립이 자유화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가 생산해내는 기사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된 만큼 그 반작용으로 정확하지 못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목말랐던 언론사들이 일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독과점 체제가 깨어진 언론시장에서는 늘어난 매체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속보 경쟁은 물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통한 판매경쟁이 불붙으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언론중재 신청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1987년부터 중재위원회가 신문에 돌출광고를 게재하며 ‘위원회 알리기’에 나선 것도 중재신청 사건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위

42) 매일경제 1991. 8. 28. 6면 ‘언론중재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원회는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1) 신문 - 5단 광고 게재

연합광고와 대형 계약을 맺고 처음 제작한 신문광고는 5단 광고로서, 신문지면의 하단을 통째로 차지하는 형태였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등장한 최초의 신문 5단 광고는 위원회가 최초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이용해 제작한 광고 문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늘 국민들 옆에 있다’라는 기본 컨셉은 지금까지도 중재위원회 홍보에 있어서 주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5단 광고는 같은 카피에다 시각적 이미지를 달리해 두 개의 시안이 사용되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잡지 광고 외에 이처럼 큰 크기의 신문광고를 집행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해 오던 돌출광고도 유지하였는데, 헤드라인은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였다.



2) 방송광고의 시작

무엇보다도 1991년이 위원회 홍보에서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최초로 TV광고가 제작된 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초기 위원회의 이미지 메이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TV광고는 ‘중재위원’ 편이다.



1992년 위원회 TV 광고 - '중재위원' 편

언론중재위원들이 직접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이 광고는 법정처럼 꾸며진 심리실에 중재위원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메인 모델인 이혜복 당시 부위원장(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나와서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광고 중간에 두 당사자가 화해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광고 전반에 대체로 갈색과 황금색을 사용하여 중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을 구현하는 데에 초점을 둔 컨셉이었다. '중재위원' 편은 중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최초의 광고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비교적 많은 집행 횟수로 인해 캠페인 자체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1992년에는 '중재위원' 편이 두 번째 버전이 제작되었는데, 역시 이혜복 부위원장이 메인 모델이었으며, 배경에 많은 중재위원들이 함께 출연해 강력한 피해구제기관이라는 이미지 심기에 주력했다.

3. 1990년대의 광고집행 - 딱딱한 이미지를 벗다

TV광고 '중재위원' 편이 성공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국민들의 뇌리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나치게 딱딱하고 엄숙한 이미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이었다. 광고의 배경이 재판정의 분위기처럼 엄숙하였으며 권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이는 자칫 언론중재위원회를 국민들이 선뜻 다가서기 힘든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신문광고에서는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처럼 권위적인 분위기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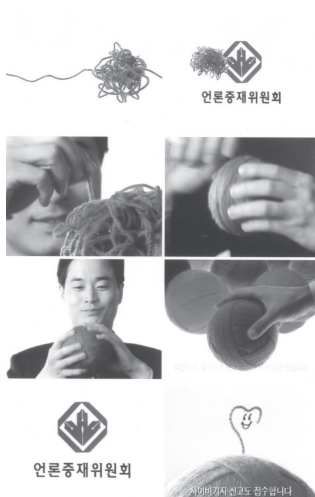
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동물 시리즈’ 광고였다. 중재위원회는 1994년 광고대행사를 오리콤으로 바꾸고, 동물들을 이용한 이미지 광고를 제작, 방영하기 시작했다.

1994년에 제작된 ‘병아리’ 편을 시작으로 ‘금붕어’ 편(1995), ‘얼룩말’ 편(1996)이 차례로 제작됐다. 세 편 모두 자신의 모습이 본래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동물들이 등장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들을 바른 모습으로 되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병아리’ 편에서는 거울 앞에서 있는 병아리가 나온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때로는 사나운 올빼미였다가, 다시 거위로 변하기도 한다. 병아리가 살짝 인상을 찌푸린다. 그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거울이 새롭게 바뀌고, 비로소 병아리는 참모습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금붕어’ 편 역시 생물도감에 나온 금붕어가 앞모습과 달리 꼬리 부분이 자꾸만 다른 물고기로 보이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래 꼬리를 되찾고 어항 속으로 헤엄쳐 들어간다는 컨셉이며, 호주 올 로케이션으로 제작된 ‘얼룩말’ 편은 원래 흰 색이었지만 검은 줄이 그어져 있어 얼룩말처럼 보이던 말이 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원래의 백마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위원회 동물 시리즈 광고 연작

친숙한 동물들을 사용해 재미있는 표현을 시도한 이 세 편의 광고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광고의 전형적인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었고, 언론의 왜곡보도라는 요소를 창의적이고도 재미있게 표현한 수작이었다. 이렇게 참신한 크리에이티브는 광고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병아리’ 편이 1994년 대한민국광고대상 공익광고(TV) 부문 장려상을, ‘얼룩말’ 편은 1997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1997년 위원회 광고 ‘실타래’ 편

1997년에는 제작사를 다시 MBC에드컴으로 바꾸고, ‘실타래’ 편을 제작했다. ‘실타래’ 편은 동물 시리즈에서 보여준 밝고 경쾌한 이미지는 그대로 살리되, 동물이 아닌 사람을 등장시켜 현실감을 높이고자 기획된 광고였다. 엉망으로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언론과의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쉽게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시리즈에서는 일관되게 왜곡된 언론보도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가해자-피해자’의 구도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실타래’ 편은 가해자로서의 언론이라는 요소를 제거한 채 ‘분쟁의 해결’이라는 이미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 2000년대 - 제도의 변경에 따른 광고제작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TV 광고를 제외한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들은 꾸준히 제작되었지만, TV 광고는 ‘실타래’ 편을 마지막으로 제작이 중단됐다. 그리고 광고 집행예산도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중재위원회의 광고 집행은 수 년 전 만들어진 ‘실타래’ 편 광고를 아침과 심야 등 시청률 낮은 시간대에 몇 개월 정도 방송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었다.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됐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 때도 TV광고의 제작과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라디오 및 인쇄광고 등의 제작에만 그치는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2000년대 중 후반에 이루어진 일련의 제도 개정은 침체되었던 위원회 홍보에 전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됐다.

1)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설치 - '중 자' 편(2004)

2004년,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위원회에 신설됐다. 국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언론 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언론보도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상담센터는 변호사가 조정·중재 신청 외에도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최초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위원회는 홍보예산 확보 노력 끝에 7년 만에 새로운 TV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작된 광고가 바로 ‘중 자(字)’ 편이었다.(달팽이 세 마리 제작)



2004년 위원회 광고 '중 자' 편

‘중 자’ 편의 비주얼은 매우 단순했다. 가운데를 뜻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상징하는 한글 ‘중’ 자가 화면 한 가운데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밑에 이음 받침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중’이라는 글자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린다. 그 배경에는 어지러운 텍스트들이 혼란스럽게 난무하고, 잘못된 보도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음성(“아니,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등)이 들린다. 배경 음악(BGM)도 음산하고 혼란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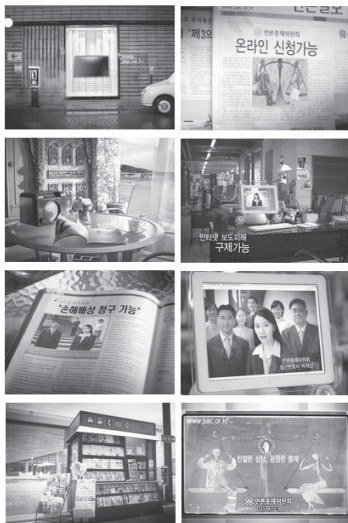
다. 그러다가 이응 받침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면서 환하게 빛나고,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된다. 그에 맞춰 나레이터는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의 출범을 알리고, 경쾌한 음악으로 마무리한다.

‘중 자’ 편은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광고 전체에 세련된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으며, 실사로 촬영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 푸른 색을 사용한 전반적인 색조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었고, 메시지도 알기 쉽게 전달됐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일 우려가 있었으며, 상담센터의 출범이라는 주된 메시지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전반적인 중재위원회 이미지 광고 속에 일부 삽입되는 형태로 지나간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2) 언론중재법 제정 - ‘매체’ 편(2005)

2004년 상담센터의 출범에 이어 2005년에는 중재위원회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던 「언론중재 등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제정, 시행됐다. 이와 함께 중재위원회의 업무 내용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먼저 기존의 조정 외에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외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중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게 됐으며, 구술이나 전자우편에 의한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대폭적인 제도 변화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다.



2005년 위원회 광고 ‘매체’ 편

제작사 공모에 모두 8개 업체가 응모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 결과 (주)JBS 프로덕션이 선정됐다. 새 광고의 컨셉은 모호한 이미지 광고를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쪽으로 정해졌다. 그간 제작되었던 광고들이 이미지를 중시한 나머지 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고 모델이 직접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광고로 제작할 필요가 있었다.

노년의 남성이 모델로 등장하고, 무거운 법정 분위기를 내세운 ‘중재위원’ 편과 차별화하여 주 모델을 여성으로 하고, 최대한 화면 구성을 아름답게 가져간다는 전략이 수립됐다. 2004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에 맞춰 새롭게 중재위원회에 입사한 박재선 변호사(당시 교육홍보팀장)가 메인 모델로 정해졌다. 그리고 중재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1992년 광고와는 달리 신입사원을 위주로 한 사무처 직원들이 배경 모델로 선정됐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TV 광고가 ‘매체’ 편(‘변호사’ 편이라고도 한다)이었다.

파주 출판단지에서 촬영된 ‘매체’ 편에서는 박 변호사가 직접 나레이션을 하며 새롭게 바뀐 언론중재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배경 화면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그리고 인터넷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가 등장하는데, 파스텔 톤의 색조를 바탕으로 매우 세련된 비주얼이 완성됐다. ‘매체’ 편은 역시 부족한 집행예산 때문에 많이 방영되지는 못했지만, 사무처 직원들이 주로 참여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재위원회 홍보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광고였다. ‘매체’ 편은 이듬해에 제도 변경 내용이 아닌 위원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다시 녹음을 하기도 했다. 박재선 변호사는 신문 돌출광고, 잡지광고는 물론 지하철 차내 광고에서도 모델로 활약했다.

3) 중재위원회의 친근한 이미지 제고(2008)

2007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에 대해 친근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하반기에 새롭게 홍보 전담부서로 출발한 홍보팀은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2008년 홍보 전략을 ‘위원회 친근감 제고’로 정하고, 광고를 제작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라디오, 인쇄매체, 인터넷 배너 광고만 제작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지하철 역사 스크린



2008년 위원회 광고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 광고)

도어 광고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홍보방안을 시도했다. 특히 최초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 배너 광고를 집행했다. 그 동안 개별 인터넷신문사 등에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지만, 포털 집행은 처음이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 집행을 실험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 해 제작된 광고물의 주된 카피는 “여기 언론중재위원회 맞아요?”였다. 딱딱하고 권위적으로만 느껴던 언론중재위원회였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친근한 사람들이 시민들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는 내용이였다. 라디오 광고에서는 여성 성우가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으로 녹음에 임했고, 인쇄광고는 역시 편안한 복장의 여성 모델이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사진을 채택했으며, 핑크색, 노란색 등의 가벼운 색깔로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4)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 ‘소중한 사람’ 편(2009)

위원회 홍보사업은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았

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내용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온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털은 비록 언론사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과 유사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했다. 따라서 이미지 광고보다는 설명형 광고가 필요했다.

다만 광고 제작 예산이 9월 이후에 확정되어, 날짜를 명시해서 “2009년 8월 9일,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됩니다”라고 하는 고지형 광고는 어렵게 됐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TV광고 제작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광고영상을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광고 제작사로 선정된 (주)타임엔타이드의 시안은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기능을 알리는 것으로 중심 내용을 잡고, 거기에 한 장면 정도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사례를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하되, 각 사례별로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 스토리를 관통하는 메인 컨셉은 ‘소중한 사람’이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각각 소중한 친구와 사랑하는 애인, 그리고 직장 동료 등을 의심하거나 원망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그러한 의심에서 벗어난다는 스토리였다.

이 광고는 위원회 최초로 40초짜리 TV 캠페인으로 제작됐다. 공익 캠페인은 상업 광고와 달리 40초 분량으로 제작 방영하면서도 단가는 거의 20초짜리 상업광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공익 캠페인은 같은 가격으로 두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캠페인 집행이 없었던 것은 공익 캠페인은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홍보하는 성격이 아니라 교통안전, 환경보호, 마약퇴치 등과 같이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 광고의 경우 비록 공익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2009년 위원회 광고 '소중한 사람' 편

위원회 업무의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캠페인의 형태로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라디오 캠페인을 실험적으로 시도해본 결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므로, 새 광고는 40초 캠페인을 주된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방송사와 협의하여 캠페인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단, 캠페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로고 표시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제약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처리됐다.

이렇게 해서 '소중한 사람' 편은 40초 캠페인으로 탄생하게 됐다. 서울 시내 모처의 사무실과 지하철역, 한강 둔치, 광화문 거리를 하루 안에 옮겨 다니며 촬영이 진행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캠페인은 방송 3사와 케이블 뉴스 채널에 고르게 배분되어 집행됐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광고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은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초로 시도되었던 40초 분량의 TV 캠페인은 향후 위원회 광고 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획기적인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5. 소 결

위원회 매체 광고가 가져온 효과는 실로 드라마틱한 것이었다. 1991년 TV광고가 집행되면서 위원회의 중재처리건수는 1990년 159건에서 1995년 528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도 상승은 제도 변경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업무 영역 확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켜 이제는 연간 2천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 설립 초기에 50건에도 미치지 못하던 연간 신청 처리건수가 이처럼 급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물론 조정사건의 증가는 언론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크겠지만, 대국민 인지도 상승의 기반에는 무엇보다 광고를 통한 위원회 홍보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위원회 광고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고 제작 및 집행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위원회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던 광고 집행을 위해 광고예산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TV 광고 제작이 어렵다면, 제작비는 적게 들더라도 그만큼 절약한 예산을 집행비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광고 집행의 관행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체 배정에 있어서도 모든 매체를 조금씩 나눠 집행하던 관행을 탈피해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인터넷 홍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주된 생활방식으로 떠오르게 되어 현재 우리의 삶은 인터넷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99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조정·중재신청의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소통도 시도하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인터넷 홍보 역사를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1. PC통신 - 인터넷의 준비단계

언론중재위원회가 최초로 가상공간에서의 홍보에 눈을 돌린 것은 1997년의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 내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선이 설치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인터넷 이전 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하던 PC통신 포럼 운영이었다. 전화선 모뎀을 통해 접속해야 하고 텍스트 중심의 구조였지만,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PC통신 사이트를 개설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었다. 때마침 (주)삼성SDS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무료 PC통신 사이트인 ‘유니텔 포럼’을 개설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곧바로 사이트 개설을 준비하여 사이트 ID를 중재라는 뜻의 영어 단어 arbitration에서 따온 ‘arbit’으로 정했다. 유니텔 사용자들은 초기 창에서 ‘go arbit’을 입력하면 중재위원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었다.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주된 현안이었다. 중재위원회 최초로 개설되는 온라인 상의 창구였으므로, 타 기관 사

이트 등을 참고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를 완성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유니텔 포럼(go arbit)

위원회 소개	공지사항	게시판	통계자료실	회보 '언론중재'
중재위원회 업무 소개	새소식	Q&A 상담실	중재신청 처리현황	목차
중재위원 명단		자유게시판	시정권고 현황	기사내용
사무처 소개				

다시 말해 유니텔 전용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각 사이트의 페이지에 메인 메뉴들이 마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유저들은 마우스 클릭을 통해 직관적으로 각 메뉴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각 기관의 로고도 삽입할 수 있어서 초기적인 형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었다. 1997년 7월 21일 개설된 언론중재위원회 최초의 온라인 사이트는 유니텔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한 2000년 1월까지 계속 유지됐다.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경험을 쌓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PC통신 유니텔 사이트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은 다음 위원회는 본격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모색을 계속했다. 때마침 1998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위원회는 1999년 한국인터넷정보관리시스템(www.pagemaker.com)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약 300만원을 들여 위원회 최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다. URL은 중재위원회의 영문 명칭(Press Arbitration Commission)을 따서 www.pac.or.kr로 정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2월 1일자로 개통된 위원회 홈페이지는 대략의 메뉴 구성이나 서비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유니텔 포럼과 유사했다. 다만 기존 메뉴 외에 위원회 소개 내용을 보강하고, 위원회가 생산하는 각종 통계자료들도 업데이트해서 올렸다. 무엇보다 역점을 둔 것은 계간지 ‘언론중재’를 웹진화해서 서비스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언론 법제 전문저널인 위원회 계간지를 온라인으로 관련 연구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3. 제도 개선에 따른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1999년 처음 개설된 위원회 홈페이지는 2000년 일부 메뉴의 수정 보완을 시작으로 꾸준히 디자인을 개선했다. 최초 푸른색과 핑크색을 기본 색조로 한 모노톤을 주로 사용하고, 단순한 그래픽 위주로 꾸며졌던 홈페이지 디자인은 거듭된 개편을 통해 디자인과 메뉴 구성 면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면모를 갖추었다. 이후 2004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개설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을 전후하여 수록 내용과 홈페이지 기능 면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개설로 인해 신설된 법무상담팀은 위원회 최초로 온라인 상담을 도입했다. 이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용 채팅창을 통해 법무상담팀 직원과 실시간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상담 메뉴를 구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유기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소개하기 위한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2005년도의 언론중재법 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통한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위원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조정·중재 관련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중재신청서 및 작성요령 등을 업로드 해 놓은 정도였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메뉴 구성이 필요했다.

조정·중재 신청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으므로, 일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신청 메뉴에 접속하고, 폼 메일 형태로 된 신청서의 공란에 기입한 후 자세한 신청내역과 입증자료 등을 첨부파일로 붙인 다음 접수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자 모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상됐다. 이러한 형태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홈페이지 구축 경험이 있고, 전국 단위의 온라인 심의 신청 메뉴를 구성한 경험이 있는 (주)애드쿠아를 선정했다.

2005년 8월 개설된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는 온라인 조정·중재 신청 외에도 간행물 자료실을 보강하고, 기존의 웹진 형태로 업데이트 되던 계간지 ‘언론중재’를 PDF 파일로 전환하여 내용 전체를 체계적으로 게시하게 됐다. 이는 오프라인 잡지와 동일한 형태로 서비스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자료 인용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디자인 요소를 좀 더 친근하게 바꾸기 위하여 어린이와 가족 등을 주제로 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위원회 전반에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일련의 홍보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개편 때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대거 사용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도 이 때 같이 개발되어 소외계층까지 배려하는 시도를 하였

으며, 2007년도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용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하게 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2009년도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인증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가상 주민번호 아이핀(I-pin)을 통해 하도록 메뉴를 개편했는데, 혹시라도 있을 해킹의 위협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정부의 아이핀 전면사용 조치보다 2년 앞선 것이다.



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엠블럼을 적용한 홈페이지 메인 화면

4. 언론중재Eye-Net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도 제18조 제3항에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다. 이에 약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언론 조정·중재의 통괄적인 처리 시스템인 언론중재Eye-Net(people.pac.or.kr)이 2011년 개통됐다. 이는 접수만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상담에서 접수는 물론 출석요구에서 처리 후 사건기록 열람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이다.



언론중재Eye-Net 메인화면

이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와 Eye-Net은 메뉴 구성을 정리,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됐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위원회 소개, 시정권고 및 선거기사심의 안내, 언론피해구제교육 안내 등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내용과 간행물 자료실,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조정과 중재에 관한 사항은 Eye-Net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는 기능에 따른 인터넷 페이지의 다원화·전문화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기능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포털사이트 전문상담 제공

일반 국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는 경로는 무엇일까? 2009년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57.1%가 포털을 통해 중재위원회를 처음 접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인터넷 포털이 중재위원회 홍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재위원회는 포털 검색기능에 적극 참여해 네티즌에게 언론중재법과 중재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2월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식IN' 과 네이트 'Q&A' 에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언론보도 피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지식IN' 또는 'Q&A' 의 전문상담 코너에 올리면, 이에 대해 중재위원회 소속 변호사 3명이 번갈아가며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털 전문상담은 단순한 상담제공 기능뿐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로고 등을 포털 상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광고 대체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언론보도 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6. SNS 서비스 도입

2010년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중재위원회도 2010년 3월 31일 위원회 공식 트위터(@pac_news)를 개설한 데 이어 2011년 6월 16일에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pacnews)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말 현재 위원회 트위터 팔로워는 약 2,000명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 SNS는 공식적인 위원회 소식과 행사 안내 외에도 소식지 원고 공모 등 각종 이벤트를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소소한 일상의 대화까지 공유하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

7. 소 결

1999년 최초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언론중재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시도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홈페이지의 수록내용과 체제도 그간 발전을 거듭했으며, 언론중재Eye-Net의 개설에 따라 홈페이지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언론중재Eye-Net의 개설은 위원회 소개 및 조정·중재신청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던 기존 홈페이지에서 조정·중재신청과 관련된 기능을 독립시킴으로써 기존 홈페이지가 위원회 소개 및 홍보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면개편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상 재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는 2005년 신규 개편 이후로 전면 개편 없이 유지되고 있다. 조정·중재신청 관련 콘텐츠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함께 개설되어 있는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시각 장애인 홈페이지 등도 전면 재개편이 필요하다.

또 하나 온라인상의 홍보에 있어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심리일정 등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를 발송하는 것이 전부이다.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효율적이고 참신한 모바일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중재위원회 홍보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V. 소식지

1. 내부 구성원을 위한 소식지 창간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지가 처음 창간된 것은 2000년 7월이었다. 별다른 제호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이름을 첫머리에 얹고 나온 소식지의 주된 용도는 중재위원회 내부 구성원 간의 소식 공유였다. A4 크기 8면으로 펴낸 창간호는 약 300부 가량 인쇄되어 전·현직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을 중심으로 배포됐다. 일부는 외부 기관에 배포되기도 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중재위원회 내에 인트라넷 등 주요 뉴스를 공유할 만한 창구가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서울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각 지역에 있는 중재위원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공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 형편이었으므로 한 달에 한 번 발간되는 소식지는 그야말로 내부 구성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요긴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8월호부터는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각각 간단한 칼럼을 한 편씩 신는 전통이 시작되었고, 이따금 국내 유명 시인의 시도 한 편씩 실리는 등 ‘읽을 거리’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했던 소식지가 내용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한 것은 2005년 8월호(제62호)부터였다. 단순한 소식의 나열에 그쳤던 ‘위원회 뉴스’를 취재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재편하고, 뉴스의 분량과 깊이를 더 늘렸으며, 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기사와 탐방 기사 등을 신기도 하는 등 본격적인 뉴스레터로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9월호부터는 일부 면에 컬러를 도입해 시각적 효과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는 이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 1월 소식지 제호가 ‘PAC NEWS’로 바뀌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됐다. 면수도 8면에서 12면으로 증편되었으며, 전면에 컬러 인쇄를 도입했다. 위원 단상과 직원

마당의 기존 읽을거리 외에도 전직 중재위원 인터뷰가 새롭게 선을 보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획기사와 사진기사 등을 게재하는 등 내용의 충실함을 도모했다. 발간 부수도 점점 늘어나서 2009년 10월에는 최초 발간 부수의 2배인 600부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 홍보매체로의 전환

소식지가 본격적인 홍보 매체로 전환하게 된 것은 2009년 말의 일이다. 당시는 홍보 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해 광고의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활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광고를 통한 홍보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단가가 비싸고 일정 정도 이상의 노출을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므로 광고 등 다른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소식지 발간에 돌려서 소식지를 중재위원회의 주 홍보매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진 조치는 소식지 제호의 변경과 발간부수 확대였다. 당시 제호였던 'PAC NEWS'는 중재위원회 영문 약자인 PAC가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보매체의 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모를 통해 2009년 11월호부터 새롭게 정해진 소식지 제호는 **언론**  **사람** 이었다. 언론과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중재위원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였다. 동시에 발간부수는 최대 1만부까지를 목표로 잡았다. 그 준비단계로 2009년 11월호는 시범적으로 3,000부를 발간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했고, 12월호는 5,000부를 발간했다.

그러나 소식지가 대외 홍보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발간 부수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중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읽을거리가 있어야 했고, 편집과 체제도 대폭 개선이 필요했다. 200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소식지를 제작할 업체로 (주)노마드월드와이드를 선정하고, 소식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우선 면수를 기존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고, 지질과 편집디자인을 쇠퇴했다. 이전 내부 소식지는 별다른 표지가 없이 제호 아래 바로 기사가 시작되는 월간신문 형식이었지만, 새로운 소식지에는 별도의 표지를 넣어 잡지 형식을 도입했다. 편집과 글자체도 가독성을 증대시키는 형태로 바뀌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 필자의 영화평과 연재만화 등을 보강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사진 등 시각적 요소도 더 많이 고려해 독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부분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위원회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의 소식지는 2010년 3월호부터 1만부를 발행함으로써 위원회 대표 홍보매체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됐다. 2011년 말 현재까지 소식지의 이러한 틀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언론사나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대학 그리고 전국 주민센터와 은행 지점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위원회 최대 홍보매체인 소식지 언론 사람

3. 소 결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지 **언론**  **사람** 은 중재위원회 대표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발간부수는 1만부에 달하며, 위원회 내부 소식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소식지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타 기관이나 기업 소식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면수가 적다는 점이다. 현재 표지 포함 16면 체제로 발간되고 있으나, 소개 팜플렛이 아닌 월간 소식지로서는 지나치게 얇게 느껴진다. 물론 발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면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증면된 지면에는 좀 더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품격 있으면서도 흥미 있는 읽을거리는 소식지 자체의 구독 열의를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므로 수준 높고 유익한 읽을거리를 더 많이 보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진 촬영의 외주작업 등을 통해 시각적 요소를 더 보강하고, 가독성을 증대하는 노력을 계속하며, 항상 새롭고 참신한 아이টে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소식지가 중재위원회의 홍보매체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기타 홍보활동

1. 홍보책자

1) 국문 홍보책자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책자는 1988년 처음 발간됐다. ‘정정보도청구와 언론중재’라는 제목을 달고 모두 15페이지로 구성된 최초의 홍보책자는 중재위원회 기능과 업무 소개, 중재절차 소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흑백으로 인쇄되었으며, 주요 용어 등 대부분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에 발행된 홍보책자들은 2도 인쇄를 기본으로 하되, 1990년대 이후부터는 표지에 컬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가 들어갔다. 제목 역시 ‘언론보도에 의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등으로 좀 더 쉽고 친근한 문체로 바뀌었다. 크기는 B5가 기본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발간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안내를 위한 홍보책자는 표지와 내지 모두에 컬러를 적용했다. 또한 그 해에는 따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발간되던 홍보책자의 면모가 일신한 것은 2009년에 들어서였다.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을 계기로 크기를 A4 사이즈로 키우고, 삽화는 물론 시각적 효과를 위한 그래픽 등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최초로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조정·중재 장면 등과 관련한 이미지들을 찍은 사진을 대거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제작된 홍보책자는 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는 것은 물론, 관공서나 언론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있다. 또한 매년 영문 홍보책자를 소량 제작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홍보책자를 제작하기도 했다.

2) 만화 홍보책자 제작

위원회 초기부터 제작되어온 홍보책자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은 2008년 제작된 만화 홍보책자였다. 중재위원회는 2007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중재위원회 관련 내

용이 수록됨에 따라 학생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어린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이와 관련된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는 중재위원회 업무와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홍보책자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만화 홍보책자
'정보통씨, 언론중재위원회 가다' 중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재미있고도 알찬 내용의 만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유명작가를 섭외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지명도가 있으며, 홍보만화 등의 제작 경험이 있는 작가를 찾아본 결과, 홍승우 화백이 적임자로 떠올랐다. 홍 화백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세련된 유머로 4인 가족이 겪는 육아 에피소드를 위트 있게 그린 '비빔툰'이란 작품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용 학습만화를 다수 연재했을 뿐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홍보만화 제작 경험도 많아 적임자라 할만 했다.

작가와의 협의에 의해 스토리라인을 정했다. 어떤 평범한 가장이 미술관에서 잠시 아는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잡지사 기자에게 사진이 찍혀, 연인관계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정정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홍승우 작가의 대표 캐릭터인 '정보통'으로 정해졌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조정왕 변호사' 캐릭터가 새롭게 창조됐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만화 홍보책자의 제목은 '정보통씨, 언론중재위원회 가다'였다.

40페이지로 이루어진 홍보만화는 모두 45,000부가 제작되어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모두 배포되었으며,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9년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5,000부를 추가 제작했다.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교육에 참여한 중·고교생들에게 주로 배

포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2. 언론중재위원회 CI

언론중재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특유의 한자체 로고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여초 김응현 선생(1927~2007)의 서예 작품이다. 전국의 중재위원회 심리실에 액자로 걸리기도 했던 그 글씨는 초기 중재위원회의 공식 로고였던 셈이다.



여초 김응현 선생의 글씨를 적용한 위원회 회지 창간호 표지

그 이후 중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지향점을 표현할 수 있는 심벌마크 제작을 시도하여 1988년 펜과 새싹 등을 구현한 심벌마크를 최초로 제작해서 위원회기, 직원용 배지 등으로 제작해 사용했다(119쪽 참조). 그러나 이 심벌마크는 원래 사용하던 한자 로고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로고타입이 제정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한자 로고와 심벌마크는 따로 사용되었고, 한글 로고타입은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만들어 붙이는 식이었다. 한 마디로 중재위원회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독립적 준사법기구로서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언론분쟁조정기관의 이미지를 시

각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형태의 CI 제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전문업체인 (주)CDR Associates에 의뢰하여 2007년 4월 새로운 CI를 제작하게 됐다(120쪽 참조).

새롭게 만들어진 중재위원회의 CI는 조정과 중재를 나타내는 한글 자음 ‘ㄷ’자와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천칭, 그리고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며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또한 주황, 노랑, 빨강 등 따뜻한 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재자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새로운 CI는 중재위원회 각종 홍보물과 공문서, 명함 디자인 등에 적용되어 중재위원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는 별도의 30주년 기념 심벌마크와 로고 등을 제작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30주년 기념 로고 역시 기존 심벌마크의 색상과 느낌을 살리되 ‘30’이라는 숫자를 형상화한 모습을 하고 있다.

3. 홍보동영상

2011년 언론중재위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몇 가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말한 30주년 기념 로고를 제작함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나간 30년을 돌아보고,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보동영상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먼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상영된 3분 분량의 동영상은 주로 위원회의 역사와 출범과정, 앞으로의 비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웅장한 배경음악과 남성 성우의 목소리로 장중한 느낌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제작된 5분 분량의 동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자세히 안내하는 내용이며, “언론중재위원회, 나의 명예를 찾아줘”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어떤 여교사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폭력 교사로 소문이 났으나, 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드라마 출연 경력이 있는 연기자가 주연을 맡았으며, 재미있

는 구성과 실감나는 연기로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보동영상은 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와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홍보동영상 '언론중재위원회, 나의 명예를 찾아줘'

VI. 평가와 전망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창립 초기 50건에도 미치지 못하던 처리 건수는 30년 만에 2천 건을 훌쩍 넘어섰고, 업무의 영역과 위상도 초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역대 중재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위원회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언론보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달라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굳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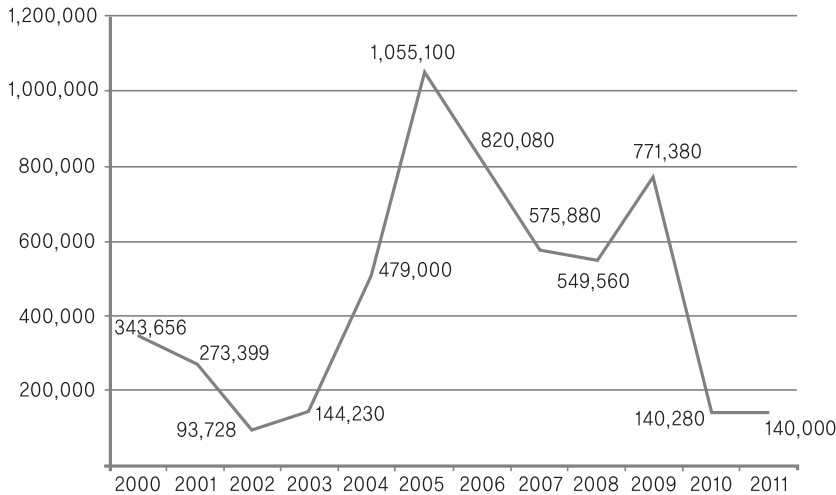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언론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이미지도 확실하게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소수에 머물고 있으며, 대체로 막연하게 ‘언론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신고하는 곳’ 정도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알리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하여야 할 것 같다.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홍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2000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언론중재법 제정 등의 계기를 맞은 2005년도에 10억원을 넘어섰던 홍보예산이 2006년도에는 8억원대를 유지했으나, 2007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9년 추경을 통해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는 약 1억 4천만원으로 급감하였고 2011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홍보예산의 감액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광고 제작 및 집행 부문으로, 그 전까지 400회 가량의 꾸준한 집행을 보이던 광고는 2010년부터 거의 집행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게 됐다. 물론 이것은 소식지로 홍보의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고 집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타당할 것이다.

광고는 중재위원회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최초로 알린 홍보수단으로, 다른 어느 홍보활동보다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TV캠페인의 경우,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15초~20초짜리 상업광고의 형태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40초 분량의 공익 캠페인으로 전환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기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000년 이후 홍보예산 변동 추이. 단위 : 천원

둘째, 온라인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접어들어 매체환경은 급속하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의 퇴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앞으로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홍보 강화는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광고를 집행할 때에도 예산 확보 문제로 TV광고가 어렵다면 포털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으로 구현되는 모바일 웹과 관련된 홍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 활동의 개념 자체가 PC를 통한 웹 서핑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검색과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의 활용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조정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접수하고, 위원회의 각종 간행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좀 더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국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소식지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대외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포되는 수량에 걸맞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증면이 필요하며, 외부 원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읽을거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소식지를 웹진이나 전자책의 형태로 가공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넷째, 근본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면적인 대국민 인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지난 30년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매년 실시중인 이용만족도 조사는 중재위원회를 이용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의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를 홍보활동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중재위원회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재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대상을 선별할 수 있고, 이미지의 약점이나 기존 홍보활동의 약한 고리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만 과학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하므로, 전면적인 대국민 인지도 조사는 창립 30주년을 넘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 사업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30년간 위원회가 이룩한 성장은 모두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위원회의 활동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면 중재위의 업무가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올바르게 중립적인 판단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한편으로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친근한 벗이라는 믿음을 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써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홍보활동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0th Anniversary

04

부 록

-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발자취
- 역대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 연혁
- 언론중재위원회 연표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발자취

언론중재위원회 역대 위원장



제1,2대
안우만 위원장



제3대
임규운 위원장



제4,5,6대
정희택 위원장



제7,8대
김두현 위원장



제9,10대
박영식 위원장



제11대
조준희 위원장



제12,13대
권성 위원장



위원회 창립 현판식
1981. 4. 29. 서대문 백초빌딩



위원총회, 1981. 3. 31. 한국의 집



1991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991. 3. 29.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1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01. 3. 30. 63빌딩 국제회의장



창립 3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전현직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중재위원
2011. 4. 11.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10. 2. 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판식



2011. 9. 26. 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2010년 해외 언론사
위원회 방문
스리랑카 데일리뉴스
자야틸레케 드 실바 편집장

2008년 해외시찰 호주 ACMA
사진 중앙 권성 위원장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Rochelle Zumamer ACMA조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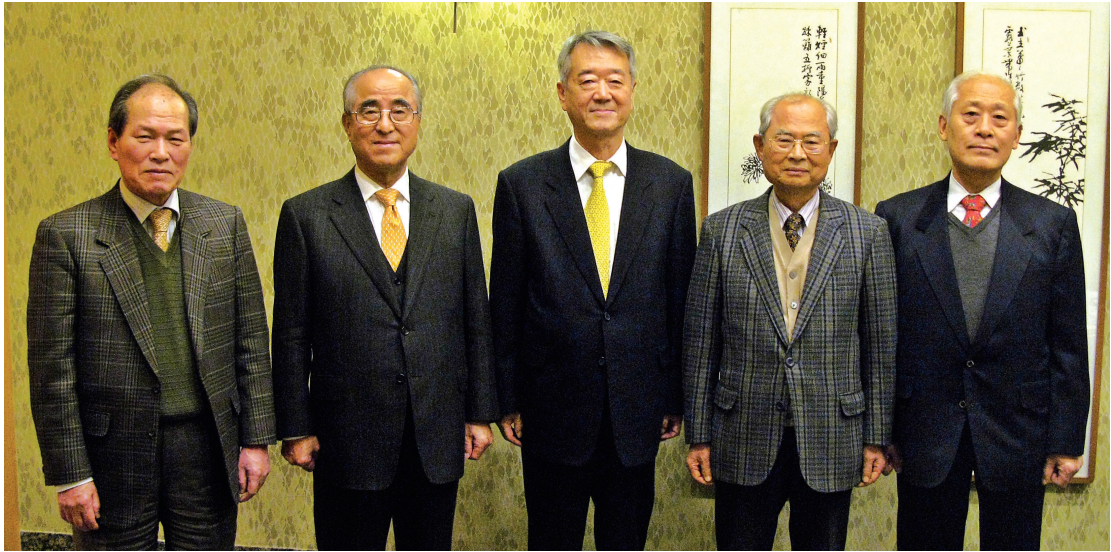


2009년 방글라데시
공무원 방한단 방문



2011년 봉사활동
서울역 주먹밥 나눔봉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권성 위원장

2009년 봉사활동
성북동 북정마을 연탄나르기



2010. 12. 22. 전현직 위원장 간담회
왼쪽부터 조준희 전 위원장, 김두현 전 위원장, 권 성 위원장, 임규운 전 위원장, 박영식 전 위원장



2010. 6. 10. 중재위원 워크숍.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2010. 6. 19. 사무처 직원 집체연수. 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위원회 30년을 함께 한 사람들(위원장, 중재위원, 사무총장, 직원)



역대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언론중재위원회 역대 위원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	주요저서 및 논문
안우만 安又萬	1981. 3. 31. ~ 1983.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장관 • 대법원 대법관 • 법원행정처 처장 	
	1983. 3. 31. ~ 1985. 3.30.		
임규운 林圭雲	1985. 4. 3. ~ 1986.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조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정희택 鄭喜澤	1986. 2.24. ~ 1987.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원장 • 제11대 국회의원 • 방송위원회 위원장 	
	1987. 4. 1. ~ 1990. 3.30.		
	1990. 4. 9. ~ 1993. 3.30.		
김두현 金斗鉉	1993. 3.31. ~ 1996.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제7대 국회의원 • 세계법률가협회 아시아지역협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육법, 민중서관, 1959 • 영문법전, 한국법학원, 1984 • 어린이 상공시대(공저), 김영사, 2000 •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제 • 공립학교법
	1996. 4. 1. ~ 1999. 3.30.		
박영식 朴英植	1999. 4. 9. ~ 2002.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불법행위법, 일조각, 1974 • 민주주해총칙, 박영사, 1992 •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채권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002. 4. 1. ~ 2005. 3.30.		
조준희 趙準熙	2005. 3.31. ~ 2008.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권성 權 誠	2008. 4. 7. ~ 2011.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 및 가등기의 효력, 서울대 석사논문, 1977 •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2002 • 가등기 대물변제, 박영사, 2010 • 물권법 강의보충서, 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2011. 4.11. ~ 2014. 3.30.		

언론중재위원회 역대 부위원장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강주진(姜周鎭)	1981. 3.31. ~ 1983. 3.30.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창현(高昌鉉)	1981. 3.31. ~ 1983. 3.30.	조선대 법과대학 학장, 명예교수
최창봉(崔彰鳳)	1983. 3.31. ~ 1985. 3.30.	공연윤리위원장, 한국방송인회 이사장
김만송(金萬松)	1983. 3.31. ~ 1985. 3.30.	강원대 교수, 이북도민회 춘천시연합회 회장
윤임술(尹壬述)	1985. 4. 3. ~ 1986. 2.15.	언론연구원 원장, 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
배용광(裵龍光)	1985. 4. 3. ~ 1987.10. 9	대구교육대학 대학장
노철용(盧哲容)	1986. 6.19. ~ 1987. 7.16.	언론연구원 원장, 경향신문 사장
이상회(李相回)	1987.10.10. ~ 1990. 3.30.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세계일보 사장
안광식(安光植)	1988. 9. 2. ~ 1990. 3.30.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이혜복(李惠馥)	1990. 4. 9. ~ 1996. 3.30.	KBS 해설위원장, 대한언론인회 회장
김보성(金保成)	1990. 4. 9. ~ 1993. 3.30.	대전시 시장
오근풍(吳根豊)	1993. 3.31. ~ 1996. 3.30.	전북교육원 사무국장
김해도(金海都)	1996. 4. 1. ~ 1999. 3.30.	한국일보 논설위원,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김현구(金顯九)	1997. 9. 1. ~ 1999. 3.30.	청주교육대학 학장
서정우(徐正宇)	1999. 4. 9. ~ 2002. 3.30.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ABC협회장
송정제(宋正濟)	1999. 4. 9. ~ 2005. 3.30.	부산일보 사장, 동서대학교 이사장
박인순(朴仁淳)	2002. 4. 1. ~ 2002. 9. 1.	청와대 공보비서관
이병훈(李柄熏)	2002. 9.16. ~ 2005. 3.30.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이종욱(李宗郁)	2005. 3.31. ~ 2006. 8.31.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허광욱(許光旭)	2005. 3.31. ~ 2006. 8.31.	전남일보 논설주간
노향기(魯香基)	2006. 9. 5. ~ 2009. 8.31.	월간 말 발행인
이도영(李都永)	2006. 9. 5. ~ 2009. 8.31.	청주YMCA 명예사무총장
윤 구(尹 求)	2009. 9. 7. ~ 2011. 3.30.	문화일보 논설주간
이광재(李光宰)	2009. 9. 7. ~ 2011. 3.30.	경희대 부총장,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정학철(鄭鶴澈)	2011. 4.11. ~ 2014. 3.30.	동아일보 편집위원
김종량(金鐘凉)	2011. 4.11. ~ 2014. 3.30.	전라일보 편집국장

언론중재위원회 역대 감사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박영준(朴英俊)	1981. 3.31. ~ 1983. 3.30.	공인회계사
정광모(鄭光謨)	1981. 3.31. ~ 1985. 3.30.	한국소비자보호연맹 회장
황상현(黃相顯)	1983. 3.31. ~ 1985. 3.30.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상회(李相回)	1985. 4. 3. ~ 1987.10. 9.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세계일보 사장
이윤자(李潤子)	1985. 4. 3. ~ 1988. 4.13.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안광식(安光植)	1987.10.10. ~ 1988. 9. 1.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이혜복(李惠馥)	1988. 9. 2. ~ 1990. 3.30.	KBS 해설위원장,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정우(徐正宇)	1988. 9. 2. ~ 1990. 3.30.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김동환(金東煥)	1990. 4. 9. ~ 1993. 3.30.	변호사
이원갑(李元甲)	1990. 4. 9. ~ 1991. 8.31.	예총경남지회 사무국장
오세탁(吳世卓)	1991. 9. 9. ~ 1993. 3.30.	충북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범열(李範烈)	1993. 3.31. ~ 1994. 8.31.	변호사
한점수(韓點洙)	1993. 3.31. ~ 1995.12. 8.	경북대 사범대 교수
홍두승(洪斗承)	1994. 9. 1. ~ 1996. 3.30.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달중(張達重)	1996. 4. 1. ~ 1997. 8.31.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최중현(崔重玆)	1997. 9. 1. ~ 1999. 3.30.	변호사
임상원(林尙源)	1997. 9. 1. ~ 1999. 3.30.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한수(李罕洙)	1999. 4. 9. ~ 2000. 8.31.	서울신문 사장
공병진(孔秉辰)	1999. 4. 9. ~ 2000. 8.31.	강원일보 논설위원
이건웅(李健雄)	2000. 9. 1. ~ 2002. 3.30.	변호사
이영조(李永朝)	2000. 9. 1. ~ 2002. 3.30.	전북 새마을부녀회 회장
신동식(申東植)	2002. 4. 1. ~ 2003. 8.31.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최중현(崔重玆)	2002. 4. 1. ~ 2003. 8.31.	변호사
최광일(崔光一)	2003.10. 1. ~ 2005. 3.30.	대한매일 이사
임경숙(林敬淑)	2003.10. 1. ~ 2005. 3.30.	대한YWCA 동부지역 위원장
전세봉(全世鳳)	2005. 3.31. ~ 2008. 3.30.	변호사
박충선(朴忠善)	2005. 3.31. ~ 2008. 3.30.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변화석(邊和錫)	2008. 4. 7. ~ 2009. 8.31.	변호사
심병연(沈炳聯)	2008. 4. 7. ~ 2011. 3.30.	변호사
정학철(鄭鶴澈)	2009. 9. 7. ~ 2011. 3.30.	동아일보 편집위원
윤 구(尹 求)	2011. 4.11. ~ 2014. 3.30.	문화일보 논설주간
위철환(魏哲煥)	2011. 4.11. ~ 2014. 3.30.	변호사

역대 중재위원 명단¹⁾

■ 서울제1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안우만(安又萬)	1981. 3.31. ~ 1985. 3.30.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임술(尹壬述)	1981. 3.31. ~ 1983. 3.30. 1985. 3.31. ~ 1986. 2.15.	언론연구원 원장
박영준(朴英俊)	1981. 3.31. ~ 1983. 3.30.	공인회계사
황석연(黃石淵)	1981. 3.31. ~ 1985. 3.30.	변호사
이상회(李相回)	1983. 3.31. ~ 1988. 4.13.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임규운(林圭雲)	1985. 3.31. ~ 1986. 1.31.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배(金亨培)	1985. 3.31. ~ 1987. 3.30.	고려대 법학과 교수
김신태(金信澤)	1986. 5.23. ~ 1988. 7.19.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노철용(盧哲容)	1986. 5.23. ~ 1987. 7.16.	언론연구원 원장
이택휘(李澤徽)	1987. 3.31. ~ 1993. 3.30.	서울교육대 교수
조용중(趙庸中)	1987. 9.19. ~ 1989. 7. 1.	언론연구원 원장
임대화(任大和)	1988. 9. 1. ~ 1989. 2.28.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문형식(文炯植)	1988. 9. 1. ~ 1989. 2.28.	서울민사지법 판사
김동환(金東煥)	1988. 9. 1. ~ 1994. 8.31.	변호사
김영일(金榮一)	1989. 4.11. ~ 1989.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광진(丁廣鎭)	1989. 4.11. ~ 1991. 8.31.	변호사
신우식(申禹植)	1989. 8.12. ~ 1990. 5.14.	언론연구원 원장
민수명(閔秀明)	1989. 9.19. ~ 1990.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한동원(韓東元)	1990. 7.30. ~ 1999. 3.30.	언론연구원 원장
강현중(姜玆中)	1990. 9.12. ~ 1991. 2. 4.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상경(李相京)	1991. 3. 5. ~ 1992. 9.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종욱(鄭鍾旭)	1991. 9. 1. ~ 1992.12.30.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황우여(黃祐呂)	1992. 9.21. ~ 1993. 3.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장달중(張達重)	1992.12.30. ~ 1997. 8.31.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양승태(梁承泰)	1993. 3.20. ~ 1993.11.1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원우현(元佑鉉)	1993. 3.31. ~ 1993. 7.19.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창섭(崔昌燮)	1993. 7.19. ~ 1999. 3.30.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영애(李玲愛)	1993.11.10. ~ 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한승헌(韓勝憲)	1994. 9. 1. ~ 1997. 8.31.	변호사
박국수(朴國洙)	1995. 9.25. ~ 1997. 2.2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김두현(金斗鉉)	1993. 3.31. ~ 1999. 3.30.	변호사
이동흡(李東洽)	1997. 3.24. ~ 1998. 4. 3.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창구(李昌求)	1997. 9. 1. ~ 2000. 8.31.	변호사
손용근(孫容根)	1998. 4. 3. ~ 1999.11. 9.	서울지법 부장판사
박영식(朴英植)	1999. 3.31. ~ 2005. 3.30.	변호사
유원규(柳元奎)	1999.11. 9. ~ 2000. 8.31.	서울지법 부장판사

1) 서울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중재부를 변경한 경우 최종 재직한 중재부에 기재, 각 지역간 중재부를 달리하여 재위촉된 경우는 각 중재부에 별도 기재함.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김해도(金海都)	1999. 3.31. ~ 2002. 3.30.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최선열(崔善烈)	1999. 3.31. ~ 2005. 3.30.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길기봉(吉基鳳)	2000. 9. 1. ~ 2002. 2. 8.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용학(金容學)	2000. 9. 1. ~ 2003. 8.31.	변호사
조용구(趙鏞龜)	2002. 3.27. ~ 2005.11.21.	서울지법 부장판사
배기철(裴琪哲)	2002. 3.31. ~ 2002. 5. 3.	전 한국일보 상무이사
이종욱(李宗郁)	2000. 9. 1. ~ 2006. 8.31.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오욱환(吳旭煥)	2003. 9. 1. ~ 2008. 1.22.	변호사
조준희(趙準熙)	2005. 3.31. ~ 2008. 3.30.	변호사
안병준(安秉峻)	2005. 3.31. ~ 2008. 2. 5. 2008. 3.31. ~ 2011. 3.30.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김문석(金紋奭)	2005.12.20. ~ 2006. 2.13.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황정규(黃正奎)	2006. 3.13. ~ 2008. 2.21.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영규(朴榮珪)	2006. 9. 1. ~ 2009. 8.31.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윤상일(尹相日)	2008. 2.12. ~ 2009. 8.31.	변호사
여상원(呂相源)	2008. 3.19. ~ 2011. 2.28.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덕(李永德)	2009. 9. 1. ~ 2012. 8.3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성희(朴晟希)	2009. 9. 1. ~ 2012. 8.31.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현우(張賢愚)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장재윤(張在閔)	2011. 3.31. ~ 2012. 8.3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명(李正明)	2011. 3.31. ~ 2014. 3.30.	전 연합뉴스 이사 대우 논설고문

■ 서울제2중재부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이원배(李元培)	1981. 3.31. ~ 1981. 9.2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광모(鄭光謨)	1981. 3.31. ~ 1985. 3.30.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순우(李淳雨)	1981. 9.22. ~ 1982. 3.1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재화(李在華)	1982. 3.12. ~ 1982. 9.2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문영택(文榮澤)	1982. 9.22. ~ 1983. 9.1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한상복(韓相福)	1983. 3.31. ~ 1985. 3.30.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오상걸(吳相杰)	1983. 9.14. ~ 1985.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김은우(金恩雨)	1985. 3.31. ~ 1987. 3.30.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장
박보무(朴普茂)	1985. 9.16. ~ 1986. 5. 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김규복(金奎福)	1986. 5.23. ~ 1986. 9. 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양인평(梁仁平)	1986. 9.23. ~ 1988. 7.1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강철구(姜哲求)	1988. 9. 1. ~ 1988. 9.3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범열(李範烈)	1988. 9. 1. ~ 1994. 8.31.	변호사
박현서(朴賢緒)	1988. 9. 1. ~ 1990. 4.14.	전 대한일보 편집국장 대우
한병구(韓炳九)	1981. 3.31. ~ 1983. 3.30. 1988. 9. 1. ~ 1994. 8.31.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현(李相賢)	1988.11.14. ~ 1990.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박태영(朴泰永)	1990. 9.12. ~ 1991. 1. 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덕장(鄭德藏)	1991. 1. 4. ~ 1991.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신성철(申聖澈)	1991. 9. 1. ~ 1993. 3.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송용식(宋庸植)	1991. 9. 1. ~ 1997. 8.31.	한국언론회관 이사
강병섭(姜秉燮)	1993. 3.20. ~ 1993.11.1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박장우(朴壯雨)	1993.11.10. ~ 1996. 3.3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임순철(林順哲)	1981. 3.31. ~ 1981. 5.26. 1994. 9. 1. ~ 1997. 8.31.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박영상(朴永祥)	1994. 9. 1. ~ 1997. 8.31.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재돈(沈在暎)	1996. 3.31. ~ 1997. 8.31.	서울지법 부장판사
장용국(張容國)	1997. 9. 1. ~ 1999.11. 9.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건방(李建邦)	1997. 9. 1. ~ 2000. 8.31.	변호사
이한수(李罕洙)	1997. 9. 1. ~ 2000. 8.31.	전 서울신문 사장
김명식(金命植)	1997. 9. 1. ~ 1999. 9. 9.	국제방송교류재단 자문위원
김학수(金學錫)	1997. 9. 1. ~ 2000. 8.31. 2008. 3.31. ~ 2009. 6.25.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성재(黃盛載)	1999.11. 9. ~ 2002. 8.17.	서울지법 부장판사
송선무(宋善武)	1999. 9.16. ~ 2003. 8.31.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김재옥(金在玉)	1999. 9. 2. ~ 2002. 9. 1.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박동섭(朴東涉)	2000. 9. 1. ~ 2003. 8.31.	변호사
박영상(朴永祥)	2002. 5.17. ~ 2005.10.26.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경일(李耕一)	2002. 9. 2. ~ 2005. 9. 1.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손태호(孫台浩)	2002. 9.16. ~ 2003. 8.31.	서울지법 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	2003. 9. 1. ~ 2006. 2.13.	서울지법 부장판사
변화석(邊和錫)	2003. 9. 1. ~ 2009. 8.31.	변호사
주길치(朱吉治)	2003. 9. 1. ~ 2006. 8.31.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고승우(高昇羽)	2005. 9. 2. ~ 2005. 9.21.	한성대 겸임교수
이상현(李相現)	2005.10.20. ~ 2006. 9.30.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김태진(金泰振)	2005.11.25. ~ 2008. 3.30.	다섯수레 대표
임시규(林時圭)	2006. 3.13. ~ 2007. 2.1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연(韓國淵)	2006. 9. 1. ~ 2009. 8.31.	전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김정기(金鼎基)	2006.10.30. ~ 2008. 9. 1.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혜(金榮惠)	2008. 3.19. ~ 2009. 2.23.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영룡(崔永龍)	2007. 3.19. ~ 2008. 2.2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병로(李炳魯)	2009. 3.16. ~ 2011. 2.23.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남찬순(南贊淳)	2008. 9. 2. ~ 2009. 8.31.	전 동아일보 심의실장
정상용(鄭相龍)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김동진(金東鎭)	2009. 8.25. ~ 2011. 3.30.	전 삼척강릉문화방송 사장
권 일(權 鎰)	2009. 9. 1. ~ 2012. 8.31.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미은(姜美恩)	2009.10.19. ~ 2011. 9. 1.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장진훈(張鎭勳)	2011. 3.31. ~ 2012. 8.3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용해(田裕海)	2011. 3.31. ~ 2014. 3.30.	전 광신고등학교 교장
한은경(韓銀慶)	2011.10.13. ~ 2014.10.12.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제3중재부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김성일(金聖一)	1981. 3.31. ~ 1982. 9.21.	서울지법 부장판사
최창봉(崔彰鳳)	1981. 3.31. ~ 1985. 3.30.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임희섭(林熺燮)	1981. 3.31. ~ 1983. 3.30.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철환(李鐵煥)	1982. 9.22. ~ 1984. 9.11.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홍기선(洪起宣)	1983. 3.31. ~ 1985. 3.30.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홍원(池弘源)	1984. 9.12. ~ 1986. 4.16.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양준모(梁俊模)	1985. 3.31. ~ 1986. 2. 1.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정희택(鄭喜澤)	1986. 2.21. ~ 1993. 3.30.	변호사
김완기(金完基)	1986. 5.23. ~ 1988. 7.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조용완(趙容完)	1988. 9. 1. ~ 1989.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최영도(崔永道)	1988. 9. 1. ~ 1994. 8.31.	변호사
유재천(劉載天)	1988. 9. 1. ~ 1993. 7.19.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오섭(金午燮)	1989. 9.19. ~ 1991. 1.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강국(李康國)	1991. 3. 5. ~ 1992. 3.1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심일동(沈日東)	1992. 3.10. ~ 1992. 9.26.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종욱(李鐘郁)	1992.11.10. ~ 1993. 3.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공현(李恭炫)	1993. 3.20. ~ 1994.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정석(李貞錫)	1993. 3.31. ~ 1993. 7.19.	전 KBS 제작단 사장
홍두승(洪斗承)	1993. 7.19. ~ 1997. 8.31.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임상원(林尙源)	1993. 7.19. ~ 1999. 3.30.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혜복(李惠馥)	1987. 3.31. ~ 1996. 3.30.	대한언론인회 회장
윤여헌(尹汝憲)	1994. 9. 1. ~ 1997. 8.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홍성우(洪性宇)	1994. 9. 1. ~ 1995.11.21.	변호사
김학세(金學世)	1995.12.21. ~ 2000. 8.31.	변호사
서정우(徐正宇)	1981. 3.31. ~ 1983. 3.30. 1987. 3.31. ~ 2002. 3.30.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유철균(劉哲均)	1997. 9. 1. ~ 1998. 9.10.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종전(李鍾全)	1997. 9. 1. ~ 1998. 6.30.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춘근(崔春根)	1998. 9.10. ~ 2000. 8.31.	서울지법 부장판사
최광일(崔光一)	1999. 3.31. ~ 2005. 3.30.	전 대한매일 이사
윤재윤(尹載允)	2000. 9. 1. ~ 2004. 2.11.	서울지법 부장판사
양삼승(梁三承)	2000. 9. 1. ~ 2006. 8.31.	변호사
최상현(崔相鎬)	2000. 9. 1. ~ 2002. 3. 1.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윤기(尹基)	2000. 2.14. ~ 2005. 3.30.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박주현(朴珠賢)	2002. 3.27. ~ 2003. 2. 6.	변호사
노향기(魯香基)	2003. 3.10. ~ 2009. 8.31.	전 월간 말 발행인
최민희(崔敏姬)	2003. 9. 1. ~ 2003. 9. 5.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상균(金庠均)	2004. 3.17. ~ 2005. 2.2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기문(成箕汶)	2005. 3.31. ~ 2006. 8.3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수연(李秀彦)	2005. 3.31. ~ 2008. 3.30.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김서중(金瑞中)	2005. 3.31. ~ 2008. 3.30.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범수(韓凡洙)	2006. 9. 1. ~ 2007. 2.20.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백수(李白洙)	2006. 9. 1. ~ 2009. 8.31.	변호사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정원태(鄭源台)	2007. 3.19. ~ 2008. 2.2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민영(李珉榮)	2008. 3.19. ~ 2010. 2.1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성(權 誠)	2008. 3.31. ~ 2014. 3.30.	변호사
김성익(金聲翊)	2009. 9. 1. ~ 2011. 3.29.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종순(朴鐘淳)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강영수(姜永壽)	2010. 3.25. ~ 2012. 2.1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손영준(孫榮峻)	2011. 3.31. ~ 2014. 3.30.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박인협(朴仁協)	2011. 4.29. ~ 2012. 8.31.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인

서울제4중재부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강주진(姜周鎭)	1981. 3.31. ~ 1985. 3.30.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중석(高重錫)	1981. 5.27. ~ 1983. 9.13.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오진환(吳鎭煥)	1983. 3.31. ~ 1985. 3.30.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학송(朴鶴松)	1983. 9.14. ~ 1984. 9.11.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양기준(梁基俊)	1984. 9.12. ~ 1986. 9. 1.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윤재(李潤子)	1985. 3.31. ~ 1988. 4.13.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차배근(車培根)	1985. 3.31. ~ 1987. 3.30.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진성규(陳成奎)	1986. 9.23. ~ 1987. 8.31.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배(金鍾培)	1987. 9.19. ~ 1988. 7.19.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보환(李輔煥)	1988. 9. 1. ~ 1990. 2.28.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승순(任勝淳)	1988. 9. 1. ~ 1989. 4.10.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진석(鄭晉錫)	1988. 9. 1. ~ 1994. 8.31.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우세(李禹世)	1988. 9. 1. ~ 1994. 8.31.	한국언론회관 이사장
한기찬(韓基贊)	1989. 4.11. ~ 1991. 8.31.	변호사
강봉수(康鳳洙)	1990. 3.31. ~ 1991. 1.3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고현철(高鉉哲)	1991. 3. 5. ~ 1992. 3.1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조영일(趙鎭一)	1990. 4.21. ~ 1994. 8.31.	변호사
김재진(金在晉)	1992. 3.10. ~ 1993.11.1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순도(玄舜度)	1993.11.10. ~ 1997. 2.27.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이연숙(李燕淑)	1994. 9. 1. ~ 1997. 8.3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정윤(李正允)	1994. 9. 1. ~ 1997. 8.31.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송기방(宋基方)	1994. 9. 1. ~ 1997. 8.31.	변호사
김능환(金能煥)	1997. 3.24. ~ 1998. 4. 3.	서울지법 부장판사
최종률(崔鐘律)	1997. 9. 1. ~ 2000. 8.31.	전 경향신문 부회장
신진근(辛濬根)	1997. 9. 1. ~ 2000. 8.31.	변호사
박용배(朴涌培)	1997. 9. 1. ~ 2003. 8.31.	전 한국일보 이사
신영철(申暎澈)	1998. 4. 3. ~ 2000. 2.11.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경숙(李景淑)	1999. 3.31. ~ 2000. 2. 8.	여성민우회 대표
이상훈(李尙勳)	2000. 3. 9. ~ 2001. 2.12.	서울지법 부장판사
신동식(申東植)	1998. 7. 6. ~ 2003. 8.31.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이동명(李東明)	2001. 3. 7. ~ 2003. 2.12.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병훈(李柄熏)	2002. 3.31. ~ 2005. 3.30.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신명중(慎明重)	2003. 3.10. ~ 2006. 2.20.	서울지법 부장판사
신찬균(申瓚均)	2003. 9. 1. ~ 2006.12. 2.	전 세계일보 주필, 편집국장
박봉간(朴俸鑿)	2003. 9. 1. ~ 2006. 8.31.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
전세봉(全世鳳)	2003. 9. 1. ~ 2009. 8.31.	변호사
문영희(文永熹)	2005. 3.31. ~ 2006. 1.31.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영석(金永錫)	2006. 3. 2. ~ 2008. 3.30.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하(金東河)	2006. 3.13. ~ 2009. 2.23.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정숙(權貞淑)	2006. 9. 1. ~ 2007. 8.23.	전 한겨레 방송팀장
김지영(金志榮)	2006.12.22. ~ 2009. 8.31.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제정임(諸貞任)	2007. 9.18. ~ 2009. 8.31.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송평근(宋平根)	2009. 3.16. ~ 2010. 2.11.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고학용(高學用)	2008. 3.31. ~ 2008.12. 2.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윤 구(尹 求)	2008.12.19. ~ 2014. 3.30.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이재무(李在武)	2009. 9. 1. ~ 2012. 8.31.	전 뉴시스 편집담당 상무
한천수(韓千洙)	2009. 9. 1. ~ 2012. 8.31.	전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대표이사
이성훈(李聖勳)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정준영(鄭峻永)	2010. 3.25. ~ 2011. 3.1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병렬(林炳烈)	2011. 3.31. ~ 2012. 8.3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전민기(全民基)	1996. 9. 2. ~ 1998. 4. 3.	서울지법 부장판사
안광식(安光植)	1985. 3.31. ~ 1993. 3.30. 1996. 9. 2. ~ 1999. 9. 1.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일영(李一永)	1996. 9. 2. ~ 1999. 9. 1.	변호사
박인순(朴仁淳)	1996. 9. 2. ~ 2002. 9. 1.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방석호(方碩皓)	1996. 9. 2. ~ 1999. 9. 1.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서희석(徐希錫)	1998. 4. 3. ~ 2000. 2.11.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재덕(金在德)	1999. 9. 2. ~ 2005. 9. 1.	국민일보 부사장
강금실(康錦實)	1999. 9. 2. ~ 2002. 9. 1.	변호사
이진성(李鎭盛)	2000. 3. 9. ~ 2001. 2.12.	서울지법 부장판사
주동황(朱東晃)	2000. 9. 1. ~ 2006. 1.18.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상철(沈相哲)	2001. 3. 7. ~ 2002. 2.18.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	2002. 3.27. ~ 2005. 2.14.	서울지법 부장판사
임연택(林蓮澤)	2002. 9. 2. ~ 2007. 4.20.	전 KBS광주방송총국장
조인호(趙仁鎬)	2005. 3.31. ~ 2007. 2.1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효봉(庾孝鳳)	2005. 9. 2. ~ 2008. 9. 1.	변호사
이기중(李琪中)	2005. 9. 2. ~ 2008. 9. 1.	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장윤환(張潤煥)	2006. 2.17. ~ 2009. 8.31.	전 한겨레신문 이사
변현철(邊賢哲)	2008. 3.19. ~ 2010. 2.1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건웅(李健雄)	2000. 9. 1. ~ 2003. 8.31. 2008. 9. 2. ~ 2011. 9. 1.	변호사
한균태(韓均泰)	2008. 9. 2. ~ 2014.10.12.	경희대 정경대학 학장
김영철(金英澈)	2008. 9. 2. ~ 2009. 8.31.	전 진주문화방송 사장
방민준(方旼俊)	2007. 5.17. ~ 2008. 9. 1.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정대홍(鄭大鴻)	2007. 3.19. ~ 2008. 2.2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어경택(魚慶澤)	2009. 9. 1. ~ 2012. 8.31.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박동숙(朴東淑)	2009.10.19. ~ 2011. 9. 1.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양현주(梁鉉周)	2010. 3.25. ~ 2011. 3.1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복규(崔復奎)	2011. 3.31. ~ 2014.10.1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현채(朴鉉采)	2011.10.13. ~ 2014.10.12.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장
이영진(李榮鎭)	2011.10.13. ~ 2014.10.12.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서울제6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박정호(朴正鎬)	2005. 9. 2. ~ 2008. 2.2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호(金東昊)	2005. 9. 2. ~ 2008. 9. 1.	전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한부환(韓富煥)	2005. 9. 2. ~ 2011. 9. 1.	변호사
조수정(曹秀靜)	2002. 9. 2. ~ 2008. 9. 1.	변호사
조원철(曹源徹)	2008. 3.19. ~ 2011. 2.2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경록(任慶祿)	2008. 9. 2. ~ 2011.12. 1.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장하웅(張夏溶)	2008. 9. 2. ~ 2011. 9. 1.	동국대 신방과 교수
김충일(金忠一)	2009. 9. 1. ~ 2012. 8.31.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노정희(盧貞姬)	2011. 3.31. ~ 2014.10.1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정택(金正鐸)	2008. 3.31. ~ 2011. 3.30. 2011.10.13. ~ 2014.10.12.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정호(朴正浩)	2011.10.13. ~ 2014.10.1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서울제7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권택수(權澤秀)	2009. 9. 1. ~ 2010. 2.1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충웅(崔忠雄)	2005. 9. 2. ~ 2010. 9. 1.	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정학철(鄭鶴澈)	2008. 8.31. ~ 2014. 3.30.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박성식(朴省植)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유의선(柳義善)	2009. 9. 1. ~ 2012. 8.31.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교수
이 름(李 琳)	2010. 3.25. ~ 2012. 2.27.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환(李昶煥)	2011.10.13. ~ 2014.10.12.	전 KBS 기자, 논설위원

■ 부산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지홍원(池弘源)	1981. 3.31. ~ 1981. 5.26.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영석(韓永錫)	1981. 3.31. ~ 1982. 4. 2.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지사장
서주실(徐柱實)	1981. 3.31. ~ 1985. 3.30.	부산대 교무처 처장
유태현(柳台鉉)	1981. 5.27. ~ 1982. 9.21.	부산지법 부장판사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송재헌(宋載憲)	1982. 9.22. ~ 1983. 9.13.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백우(李伯雨)	1983. 3.31. ~ 1985. 3.30.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상돈(安相敦)	1983. 9.14. ~ 1986. 4.16.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한규(文翰圭)	1985. 3.31. ~ 1993. 3.30.	부산의대 학장
천대승(千代承)	1985. 3.31. ~ 1987.10.28.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조무제(趙武濟)	1986. 5.23. ~ 1987. 8.31.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영준(李英俊)	1987. 9.19. ~ 1988. 8. 1.	부산지법 부장판사
하양명(河良明)	1988. 9. 1. ~ 1991. 8.31.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세형(李世炯)	1988. 9. 1. ~ 1990. 2.28.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남석(韓南錫)	1988. 9. 1. ~ 1994. 8.31.	부산애리뉴스호스텔 회장
최선호(崔瑄鎬)	1988. 9. 1. ~ 1991. 8.31.	변호사
송문일(宋文一)	1990. 3.31. ~ 1991. 8.31.	변호사
박국홍(朴國弘)	1991. 9. 1. ~ 1994. 3.21.	부산지법 부장판사
신건식(辛建植)	1991. 9. 1. ~ 1993. 5.20.	환경개발(주) 감사
김철기(金喆基)	1991. 9. 1. ~ 1997. 8.31.	변호사
권오현(權五賢)	1993. 3.31. ~ 1999. 3.30.	전 부산일보 사장
천병태(千柄泰)	1993. 5.20. ~ 1997. 8.31.	부산대 법학과 교수
이영석(李楹石)	1994. 3.21. ~ 1995.10.12.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민남(金敏男)	1994. 9. 1. ~ 1997. 1.13. 2005. 3.31. ~ 2008. 3.30.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태기(金兌起)	1995.10.12. ~ 1996. 3.30.	부산지법 부장판사
황 익(黃 翼)	1996. 3.31. ~ 1997. 8.31.	부산지법 부장판사
진병춘(陳炳春)	1997.10.20. ~ 1999.11. 9.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광수(李光秀)	1997. 2.20. ~ 2000. 8.31.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오장희(吳張熙)	1997. 9. 1. ~ 2003. 8.31.	변호사
이성해(李成海)	1997. 9. 1. ~ 2003. 8.31.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대(金鍾大)	1997. 9. 1. ~ 1997.10.20.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종규(金宗圭)	1999.11. 9. ~ 2000. 2.18.	부산지법 부장판사
류수열(柳秀烈)	2000. 9. 1. ~ 2001. 2.19.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의자(李義子)	2000. 9. 1. ~ 2003. 8.31.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갑(崔震甲)	2000. 3. 9. ~ 2000. 8.31.	부산지법 부장판사
황형모(黃亨模)	2001. 3. 7. ~ 2003. 2.19.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정제(宋正濟)	1999. 3.31. ~ 2005. 3.30.	전 부산일보 사장
권오봉(權五鳳)	2003. 3.10. ~ 2003. 8.31.	부산지법 부장판사
신우철(申瑀澈)	2003. 9. 1. ~ 2006. 8.31. 2011. 3.31. ~ 2012. 8.31.	부산지법 부장판사
주대경(朱大京)	2003. 9. 1. ~ 2006. 8.31.	변호사
강은교(姜恩喬)	2003. 9. 1. ~ 2006. 8.31.	동아대 문예창작과 교수
하선규(河善圭)	2003. 9. 1. ~ 2005. 3. 2.	부산YWCA 사무총장
정영현(鄭英鉉)	2005. 3.31. ~ 2009. 8.31.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홍광식(洪光植)	2006. 9. 1. ~ 2007. 2.21.	부산지법 부장판사
유숙명(柳淑明)	2006. 9. 1. ~ 2009. 8.31.	부산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유상순(柳相旬)	2006. 9. 1. ~ 2009. 8.31.	변호사
이진구(李鎭求)	2008. 3.31. ~ 2011. 3.30.	부산지법 부장판사
고종주(高宗柱)	2007. 3.19. ~ 2011. 3. 8.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동선(宋東善)	2009. 9. 1. ~ 2012. 8.31.	전 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신용도(慎鏞道)	2009. 9. 1. ~ 2012. 8.31.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김명혜(金明惠)	2009. 9. 1. ~ 2012. 8.31.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경우(朴慶愚)	2011. 3.31. ~ 2014. 3.30.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대구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박종윤(朴鍾允)	1981. 3.31. ~ 1982. 9.21.	대구지법 부장판사
배용광(裴龍光)	1981. 3.31. ~ 1993. 3.30.	전 대구교육대학 대학장
유병갑(劉秉甲)	1981. 3.31. ~ 1983. 3.30.	변호사
이희태(李熙太)	1982. 9.22. ~ 1983. 3.30.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창우(李昶雨)	1983. 3.31. ~ 1985. 3.30.	영남대 중앙도서관 관장
송진훈(宋鎭勳)	1983. 4.11. ~ 1984. 9.11.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동락(李東洛)	1984. 9.12. ~ 1987. 8.31.	대구지법 부장판사
한점수(韓點洙)	1985. 3.31. ~ 1995.12. 8.	경북대 사범대학 교수
배기원(裴淇源)	1987. 9.19. ~ 1988. 8. 1.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제희(孫濟喜)	1988. 9. 1. ~ 1990. 8.31.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선우(李善雨)	1988. 9. 1. ~ 1990. 2.28.	대구지법 판사
정지철(鄭之喆)	1988. 9. 1. ~ 1991. 8.31.	변호사
남두희(南斗熙)	1990. 3.31. ~ 1994. 8.31.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최덕수(崔德洙)	1990. 9.12. ~ 1991. 2.10.	대구지법 부장판사
박종욱(朴鍾彳)	1991. 3. 5. ~ 1991. 5.24.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한(金成漢)	1991. 5.25. ~ 1993. 3.20.	대구지법 부장판사
성낙인(成樂寅)	1991. 9. 1. ~ 1997. 8.31.	영남대 법과대학 부교수
박태호(朴泰浩)	1993. 3.20. ~ 1996. 4.30.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해두(李海斗)	1993. 3.31. ~ 1999. 3.30.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이인기(李仁基)	1994. 9. 1. ~ 1996. 3.21.	변호사
김훈남(金勳男)	1995.12.29. ~ 1999. 3.30.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회장
장윤기(張潤基)	1996. 5.28. ~ 1997. 2.21.	대구지법 부장판사
진순석(陳順碩)	1996. 4.22. ~ 1997. 8.31.	변호사
정재훈(鄭在勳)	1997. 3.24. ~ 1998. 9.10.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복규(金福圭)	1997. 9. 1. ~ 2003. 8.31.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정한영(鄭漢榮)	1997. 9. 1. ~ 2003. 8.31.	변호사
황영목(黃永穆)	1998. 9.10. ~ 2000. 2.11.	대구지법 부장판사
차석준(車錫俊)	1999. 3.31. ~ 2003. 8.31.	전 대구MBC 사장
박기성(朴基成)	1999. 3.31. ~ 2005. 3.30.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우식(崔羽植)	2000. 3. 9. ~ 2000. 8.31. 2002. 3.27. ~ 2003. 9.15.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수학(金洙學)	2000. 9. 1. ~ 2001. 2.12.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국환(李國煥)	2001. 3. 7. ~ 2002. 2.20.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용근(李龍根)	2002. 3.31. ~ 2005. 3.30.	대구언론발전연구회 회장
박충선(朴忠善)	2003. 9. 1. ~ 2009. 8.31.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김중수(金重銖)	2003. 9. 1. ~ 2009. 8.31.	변호사
김창종(金昌鐘)	2003.10.14. ~ 2006. 2.28.	대구지법 부장판사
여원연(呂源淵)	2005. 3.31. ~ 2008. 3.30.	전 영남일보 논설위원
김준형(金峻亨)	2005. 3.31. ~ 2005. 9.27.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박정순(朴貞淳)	2005.10.20. ~ 2008. 3.30.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세진(金世鎭)	2006. 3.13. ~ 2007. 2.21.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창학(趙昌鶴)	2009. 3.27. ~ 2010. 2.11.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걸진(鄭杰鎭)	2008. 3.31. ~ 2011. 3.30.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태인(權泰仁)	2008. 3.31. ~ 2011. 3.30.	전 대구방송 심의심사실장
김태천(金泰川)	2007. 3.19. ~ 2008. 2.21.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찬우(李贊雨)	2008. 3.19. ~ 2009. 3. 2.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정숙(金貞淑)	2009. 9. 1. ~ 2012. 8.31.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장익현(張益鉉)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정용달(鄭容達)	2010. 3.25. ~ 2011. 2.17.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채해(金塚海)	2011. 3.31. ~ 2012. 2.27.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성호(趙成鎬)	2011. 3.31. ~ 2014. 3.30.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덕우(尹德禹)	2011. 3.31. ~ 2014. 3.30.	구미대 사회복지과 교수

■ 광주중재부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양영태(梁永泰)	1981. 3.31. ~ 1981. 9.21. 1984. 9.12. ~ 1985. 2.20.	광주지법 부장판사
한임수(韓任洙)	1981. 3.31. ~ 1983. 3.30.	전남도지 편찬위원
고창현(高昌鉉)	1981. 3.31. ~ 1985. 3.30.	조선대 법정대학 학장
김응렬(金應烈)	1981. 9.22. ~ 1984. 9.11.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기연(張奇連)	1983. 3.31. ~ 1985. 3.30. 1988. 9. 1. ~ 1994. 8.31.	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
하태은(河泰圻)	1985. 3.31. ~ 1986. 4.30.	광주지법 부장판사
마삼열(馬三烈)	1985. 3.31. ~ 1996. 3.30.	전 광주 MBC 사장
김안환(金眼煥)	1985. 3.31. ~ 1987. 3.30.	전남대 조교수
김용구(金容具)	1986. 5.23. ~ 1987. 2.20.	광주지법 부장판사
맹천호(孟千鎬)	1987. 3.31. ~ 1988. 7.31.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양우(李良宇)	1987. 3.31. ~ 1989.11. 1.	광주 효광여자중학교 교장
이재곤(李載坤)	1988. 9. 1. ~ 1990. 8.31.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갑주(鄭甲柱)	1988. 9. 1. ~ 1989. 2.28. 2000. 9. 1. ~ 2001. 2.12.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순일(鄭淳日)	1989. 4.11. ~ 1994. 8.31.	변호사
주기운(朱機運)	1989.12. 4. ~ 1993. 3.30.	학운여자중학교 교장
전도영(全度泳)	1990. 9.12. ~ 1992. 9.21.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상욱(金相煜)	1992. 9.21. ~ 1993. 3.20.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용희(李鎔會)	1993. 3.20. ~ 1997. 8.31.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호준(李浩竣)	1993. 3.31. ~ 1999. 3.30.	전남대 법학과 교수
오병남(吳炳南)	1994. 9. 1. ~ 1995. 5.22.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김천석(金千石)	1994. 9. 1. ~ 2000. 8.31.	변호사
임종철(林鍾喆)	1995. 6.21. ~ 1997. 8.31.	전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양회선(梁會宣)	1996. 3.31. ~ 1997.12.31.	전 KBS 방송심의위원
박행용(朴幸勇)	1997. 9. 1. ~ 1997.10.20.	광주지법 부장판사
신정식(申鼎植)	1997.10.20. ~ 1998. 4. 3.	광주지법 부장판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나무석(羅武碩)	1997. 9. 1. ~ 2000. 8.31.	전 광주시 부시장
김관재(金琯在)	1998. 4. 3. ~ 1999.11. 9.	광주지법 부장판사
구양술(具良述)	1998.10.13. ~ 1999.12.16.	전 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부장
공이송(孔伊松)	1998. 2. 2. ~ 1998. 9.14.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오세욱(吳世旭)	1999.11. 9. ~ 2000. 2.11.	광주지법 부장판사
조재희(趙在姬)	1999. 3.31. ~ 2005. 3.3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사
김용일(金龍逸)	2000. 3. 9. ~ 2000. 8.31.	광주지법 부장판사
허광욱(許光旭)	2000. 9. 1. ~ 2006. 8.31.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곽준흥(郭準欽)	2000. 9. 1. ~ 2006. 8.31.	변호사
송경자(宋京子)	2000. 1. 6. ~ 2002. 3.30.	광주 YMCA 이사
장광환(張光煥)	2001. 3. 7. ~ 2003. 8.31.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연수(李連洙)	2002. 3.31. ~ 2005. 3.30.	전남과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용출(金龍出)	2003. 9. 1. ~ 2004. 2.18.	광주지법 부장판사
구길선(具吉善)	2004. 3.17. ~ 2005. 2.21.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병우(張秉佑)	2005. 3.31. ~ 2007. 2.12.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수애(李秀愛)	2005. 3.31. ~ 2008. 3.30.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성(金 星)	2005. 3.31. ~ 2008. 3.30.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이 훈(李 勳)	2006. 9. 1. ~ 2009. 8.31.	전 무등일보 주필
안재극(安在克)	2006. 9. 1. ~ 2012. 8.31.	변호사
김용옥(金容玉)	2008. 3.31. ~ 2011. 3.30.	전 전남일보 주필
이동근(李東根)	2008. 3.31. ~ 2011. 3.30.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규장(金奎章)	2007. 3.19. ~ 2008. 2.21.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병하(金丙夏)	2008. 3.19. ~ 2011. 2.17.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덕모(金德模)	2009. 9. 1. ~ 2012. 8.31.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경현(鄭景玄)	2011. 3.31. ~ 2011.11.18.	광주지법 부장판사
조동수(曹東秀)	2011. 3.31. ~ 2014. 3.30.	전 광주일보 주필
박남기(朴南基)	2011. 3.31. ~ 2014. 3.30.	광주교육대 총장
강신중(姜信仲)	2011.12. 9. ~ 2012. 3.12.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대전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남용희(南容熙)	1981. 3.31. ~ 1981. 5.26.	대전지법 부장판사
민경대(閔庚大)	1981. 3.31. ~ 1985. 3.30.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지사장
정종학(鄭鍾學)	1981. 3.31. ~ 1983. 3.30.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
강철구(姜哲求)	1981. 5.27. ~ 1982. 9.21.	대전지법 부장판사
민수명(閔秀明)	1982. 9.22. ~ 1985. 2.28.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일언(柳一彦)	1983. 3.31. ~ 1990. 3.30.	충남대 학생부처장
문정두(文正斗)	1985. 3.31. ~ 1987. 8.31.	대전지법 부장판사
민병구(閔丙九)	1985. 3.31. ~ 1987. 3.30.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지사장
김보성(金保成)	1987. 3.31. ~ 1995. 3.29.	전 대전시 시장
김대진(金大震)	1987. 9.19. ~ 1989. 8.17.	대전지법 부장판사
오영권(吳永權)	1988. 9. 1. ~ 1989. 2.28. 1997. 9. 1. ~ 1999. 9.15.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구용완(丘容完)	1988. 9. 1. ~ 1994. 8.31.	변호사
김인중(金仁中)	1989. 4.11. ~ 1994. 8.31.	변호사
오윤덕(吳允德)	1989. 9.19. ~ 1990. 2.28.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동훈(金東勳)	1990. 3.31. ~ 1993. 3.30.	충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박인호(朴仁鎬)	1990. 3.31. ~ 1990. 8.31.	대전지법 부장판사
손제희(孫齊喜)	1990. 9.12. ~ 1991. 5.24.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술(金正述)	1991. 5.25. ~ 1992. 3.10.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봉진(全峯進)	1992. 3.10. ~ 1992. 9.21.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영훈(金英勳)	1992. 9.21. ~ 1993.11.10.	대전지법 부장판사
송병규(宋炳圭)	1993. 3.31. ~ 1999. 3.30.	전 대전MBC 아나운서
손용근(孫容根)	1993.11.10. ~ 1994. 3.21.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관형(李貫珩)	1994. 3.21. ~ 1997. 8.31.	대전지법 부장판사
최근혁(崔根赫)	1994. 9. 1. ~ 2000. 8.31.	충남대 법학과 교수
오복동(吳福東)	1994. 9. 1. ~ 2000. 8.31.	변호사
김재현(金在賢)	1995. 4.24. ~ 1999. 3.30.	대전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
송영현(宋瑛憲)	1999. 9.16. ~ 2000. 2.18.	대전지법 부장판사
조균상(趙均相)	1999. 3.31. ~ 2005. 3.30.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오세화(吳世和)	1999. 3.31. ~ 2000. 1.20.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상곤(韓相鎰)	2000. 3. 9. ~ 2000. 8.31. 2003. 3.10. ~ 2006. 2.20.	대전지법 부장판사
윤병구(尹炳九)	2000. 9. 1. ~ 2003. 2.19. 2006. 3.13. ~ 2007. 2.20.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문옥(李文玉)	2000. 2.14. ~ 2005. 3.30.	전 대전시 가정복지국 국장
박주봉(朴柱奉)	2000. 9. 1. ~ 2003. 8.31.	변호사
차재영(車載永)	2000. 9. 1. ~ 2002.12.10. 2008. 3.31. ~ 2011. 3.30.	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호순(張浩淳)	2002.12.30. ~ 2006. 7.14.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병무(田炳武)	2003. 9. 1. ~ 2006. 8.31.	변호사
김강덕(金康惠)	2005. 3.31. ~ 2008. 3.30.	전 국도일보 대표이사
이용성(李容成)	2005. 3.31. ~ 2008. 3.30.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인준(宋寅俊)	2006. 8.14. ~ 2009. 8.3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어수용(魚秀龍)	2009. 3.16. ~ 2010. 3. 5.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규호(李圭鎬)	2006. 9. 1. ~ 2009. 8.31.	변호사
남재일(南再一)	2008. 3.31. ~ 2011. 3.30.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손차준(孫且準)	2007. 3.19. ~ 2008. 2.21.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형태(金亨泰)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양은경(梁銀京)	2009. 9. 1. ~ 2012. 8.31.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훈(李承勳)	2010. 3.25. ~ 2012. 8.31.	대전지법 부장판사
한박무(韓博戊)	2011. 3.31. ~ 2014. 3.30.	전 MBC 부국장
김수정(金秀貞)	2011. 3.31. ~ 2014. 3.30.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경기증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고형규(高炯奎)	1981. 3.31. ~ 1981. 5.26.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응태(金應泰)	1981. 3.31. ~ 1985. 3.30.	인하학원 이사
강금식(姜金植)	1981. 3.31. ~ 1983. 3.30.	아주대 경영학과 학과장
이철환(李鐵煥)	1981. 5.27. ~ 1982. 9.21.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완기(金完基)	1982. 9.22. ~ 1983. 9.13.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수근(金洙權)	1983. 3.31. ~ 1990. 3.30.	아주대 인문사회대학 학장
조용완(趙容完)	1983. 9.14. ~ 1984. 9.11.	수원지법 부장판사
송기방(宋基方)	1984. 9.12. ~ 1985. 2.28.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태우(李泰雨)	1985. 3.31. ~ 1985. 8.31.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은웅(李殷雄)	1985. 3.31. ~ 1996. 3.30.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보현(李補獻)	1985. 9.16. ~ 1986. 8.31.	수원지법 부장판사
임헌택(林憲澤)	1986. 9.23. ~ 1987. 8.31.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선봉(金仙奉)	1987. 9.19. ~ 1988. 7.31. 1990. 3.31. ~ 1991. 5.24.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창수(金昌洙)	1988. 9. 1. ~ 1988. 9.30.	수원지법 부장판사
나종태(羅鍾泰)	1988. 9. 1. ~ 1989. 2.28. 1996. 3.31. ~ 1996. 9.23.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재덕(沈載德)	1988. 9. 1. ~ 1991. 8.31. 1993. 3.31. ~ 1995. 7. 1.	수원문화원 원장
유 언(柳 彦)	1988.11.14. ~ 1989. 2.28.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상선(朴相宣)	1989. 4.11. ~ 1989. 8.31.	수원지법 부장판사
원강희(元康喜)	1989. 4.11. ~ 1994. 8.31.	변호사
최 창(崔 稔)	1989. 9.19. ~ 1990. 2.28.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인화(金寅化)	1990. 3.31. ~ 1993. 3.30.	변호사
박효열(朴孝烈)	1991. 5.25. ~ 1992. 3.10.	수원지법 부장판사
윤기영(尹旗永)	1991. 9. 1. ~ 1994. 8.31.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고현철(高鉉哲)	1992. 3.10. ~ 1993. 3.20.	수원지법 부장판사
조중환(趙重翰)	1993. 3.20. ~ 1993. 9.25.	수원지법 부장판사
성문용(成文鏞)	1993. 9.25. ~ 1994. 3.21.	수원지법 부장판사
조건호(曹建鎬)	1994. 3.21. ~ 1994. 8.31.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수(金基洙)	1994. 9. 1. ~ 1995. 3.22.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중현(崔重玆)	1994. 9. 1. ~ 2003. 8.31.	변호사
김기룡(金基龍)	1994. 9. 1. ~ 1997. 8.31.	전 경인일보 편집국장
박유신(朴有信)	1995. 3.22. ~ 1996. 3.30.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영래(金永來)	1995. 7.28. ~ 1997. 2.28.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출선(李 恣善)	1996. 3.31. ~ 1996. 9.23.	서원 문화센터 이사장
윤병각(尹炳角)	1996. 9.23. ~ 1997. 2.27.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형진(金炯鎭)	1997. 3.24. ~ 1997. 9.18.	수원지법 부장판사
송정훈(宋政勳)	1997.10.20. ~ 1998. 4. 3.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천우(李千雨)	1997. 9. 1. ~ 2000. 6.27.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박영규(朴永奎)	1997. 3.24. ~ 2002. 3.30.	경기대 연구교류처장
조용구(趙庸龜)	1998. 4. 3. ~ 1999. 9.15.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동환(金同煥)	1999. 9.16. ~ 2000. 2.18.	수원지법 부장판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김혜숙(金惠淑)	1999. 3.31. ~ 2005. 2.28.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만오(金滿五)	2000. 3. 9. ~ 2000. 8.31.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영갑(金永甲)	2000. 9. 1. ~ 2002. 2.18.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건영(金健永)	2000. 9. 1. ~ 2006. 8.31.	전 경인일보 대표이사
정덕모(鄭德謨)	2002. 3.27. ~ 2003. 2.19.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광옥(金光玉)	2002. 3.31. ~ 2005. 3.30.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해현(曹海鉉)	2003. 3.10. ~ 2003. 9.15.	수원지법 부장판사
조정근(曹禎根)	2003. 9. 1. ~ 2006. 8.31.	변호사
신수길(申秀吉)	2003.10.14. ~ 2004. 2.18.	수원지법 부장판사
한병의(韓炳毅)	2004. 3.17. ~ 2006. 2.20.	수원지법 부장판사
석희태(石熙泰)	2005. 3.31. ~ 2007. 1.30.	경기대 법학과 교수
김정현(金廷炫)	2005. 3.31. ~ 2008. 3.30.	안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우진(尹又進)	2006. 3.13. ~ 2008. 2.11.	수원지법 부장판사
우제찬(禹濟贊)	2006. 9. 1. ~ 2006.10.10.	경기언론인클럽 회장
정홍화(鄭洪和)	2006. 9. 1. ~ 2007.12.31.	변호사
박석태(朴錫泰)	2006.11. 6. ~ 2009. 8.31.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안종배(安鐘陪)	2007. 2.22. ~ 2011. 3.30.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최재정(崔載禎)	2008. 1.18. ~ 2009. 8.31.	변호사
신용성(愼鏞碩)	2009. 3.16. ~ 2010. 2.11.	수원지법 부장판사
문영화(文英和)	2008. 3.10. ~ 2009. 2.23.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광재(李光宰)	2008. 3.31. ~ 2011. 3.30.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정 탁(鄭 堦)	2009. 9. 1. ~ 2012. 8.31.	전 머니투데이 상임고문
위철환(魏哲煥)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정일연(鄭一衍)	2010. 3.25. ~ 2011. 2.28.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재환(金才煥)	2011. 3.31. ~ 2012. 2.27.	수원지법 부장판사
류석호(柳錫虎)	2011. 3.31. ~ 2014. 3.30.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
홍숙영(洪淑英)	2011. 3.31. ~ 2014. 3.30.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강원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박종택(朴鍾澤)	1981. 3.31. ~ 1981. 5.26.	춘천지법 부장판사
권혁춘(權赫春)	1981. 3.31. ~ 1983. 3.30.	춘천고교 교장
김만송(金萬松)	1981. 3.31. ~ 1987. 3.30.	강원대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창구(李昌求)	1981. 5.27. ~ 1983. 9.14.	춘천지법 부장판사
박인식(朴寅湜)	1983. 3.31. ~ 1985. 3.30.	강원대 사범대학 학장
홍석제(洪錫濟)	1983. 9.14. ~ 1985. 8.31.	춘천지법 부장판사
박종열(朴宗烈)	1985. 3.31. ~ 1990. 3.30.	춘천교육대학 교수
이근웅(李根雄)	1985. 9.16. ~ 1987. 8.31.	춘천지법 부장판사
이춘근(李春根)	1987. 3.31. ~ 1988. 9. 1.	강원대 경영과학연구소 소장
이상경(李相京)	1987. 9.19. ~ 1988. 9.30.	춘천지법 부장판사
조한중(趙漢重)	1988. 9. 1. ~ 1989. 2.28.	춘천지법 부장판사
박건주(朴建周)	1988. 9. 1. ~ 1994. 8.31.	강원도 도정 자문위원
김정명(金正明)	1988. 9. 1. ~ 1994. 8.31.	춘천문화원 원장
현순도(玄舜度)	1988.11.14. ~ 1989. 8.31.	춘천지법 부장판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황석명(黃錫明)	1989. 4.11. ~ 1989. 6. 5.	변호사
이택수(李宅洙)	1989. 7.26. ~ 1994. 8.31. 2009. 9. 1. ~ 2012. 8.31.	변호사
김주형(金柱衡)	1989. 9.19. ~ 1991. 2.10.	춘천지법 부장판사
이한교(李漢敎)	1990. 3.31. ~ 1993. 3.30.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박일환(朴一煥)	1991. 3. 5. ~ 1992. 9.21.	춘천지법 부장판사
한상호(韓相鎬)	1992. 9.21. ~ 1993. 3.20.	춘천지법 부장판사
나종태(羅鍾泰)	1993. 3.20. ~ 1995. 3.22.	춘천지법 부장판사
성기방(成耆昉)	1993. 3.31. ~ 1993. 7.19.	전 강원도 부지사
한석용(韓錫龍)	1993. 7.19. ~ 1998. 4. 3.	전 강원도 도지사
조남진(趙南震)	1994. 9. 1. ~ 1995. 4.24.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수(朴龍壽)	1994. 9. 1. ~ 2000. 8.31.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호서(朴虎緒)	1994. 9. 1. ~ 1997. 8.31.	변호사
김선중(金善中)	1995. 3.22. ~ 1997. 2.27.	춘천지법 부장판사
공병진(孔秉辰)	1995. 4.24. ~ 2000. 8.31.	전 강원일보 논설위원
김진수(金眞洙)	1997. 3.24. ~ 1998. 9.10.	춘천지법 부장판사
유성균(柳星均)	1997. 9. 1. ~ 2000. 8.31.	변호사
신형근(辛亨根)	1998. 9.10. ~ 1999.11. 9.	춘천지법 부장판사
지규현(池奎憲)	1998. 4. 3. ~ 2005. 3.30.	전 춘천MBC 상무이사
최병철(崔秉喆)	1999.11. 9. ~ 2000. 2.18.	춘천지법 부장판사
조해섭(趙海燮)	2000. 3. 9. ~ 2001. 2.19.	춘천지법 부장판사
한영달(韓榮達)	2000. 9. 1. ~ 2003. 8.31.	전 강원도민일보 전무
김종식(金鍾植)	2000. 9. 1. ~ 2006. 8.31.	변호사
부경희(夫敬喜)	2000. 9. 1. ~ 2003. 4. 1.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헌섭(李憲燮)	2001. 3. 7. ~ 2002. 2.18.	춘천지법 부장판사
안영길(安英吉)	2002. 3.27. ~ 2003. 2.19.	춘천지법 부장판사
윤 경(尹 瓊)	2003. 3.10. ~ 2004. 2.18.	춘천지법 부장판사
이관열(李寬烈)	2003. 4.30. ~ 2006. 6.26. 2008. 3.31. ~ 2014. 3.30.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구(鄭然球)	2003. 9. 1. ~ 2007. 2.28.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용준(趙庸準)	2004. 3.17. ~ 2005. 2.21.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홍승철(洪承徹)	2005. 3.31. ~ 2006. 2.20.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유현옥(柳賢玉)	2005. 3.31. ~ 2008. 3.30.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이원형(李元炯)	2006. 3.13. ~ 2007. 2.20.	춘천지법 부장판사
유영식(柳英植)	2006. 7.26. ~ 2009. 8.31.	전 강원일보 편집위원
박형일(朴炯日)	2006. 9. 1. ~ 2009. 8.31.	변호사
송경근(宋景根)	2009. 3.16. ~ 2010. 2.22.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상윤(李相潤)	2008. 3.19. ~ 2009. 2.16.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성구(李城求)	2007. 3.19. ~ 2008. 2.21.	춘천지법 부장판사
김길소(金吉昭)	2009. 9. 1. ~ 2012. 8.31.	전 강원일보 상무이사
한진만(韓鎭萬)	2007. 3.29. ~ 2012. 8.31.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홍래(朴洪來)	2010. 3.25. ~ 2011. 2.28.	춘천지법 부장판사
함종식(咸鍾植)	2011. 3.31. ~ 2012. 2.27.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충북중재부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박준서(朴駿緒)	1981. 3.31. ~ 1981. 5.26.	청주지법 부장판사
조성훈(趙誠勳)	1981. 3.31. ~ 1981.12. 3.	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무국장
박정규(朴正圭)	1981. 3.31. ~ 1985. 3.30.	청주대 법정대학 교수
한광세(韓光世)	1981. 5.27. ~ 1983. 9.13.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충원(李忠元)	1983. 3.31. ~ 1987. 3.30.	충북대 사범대학 학장
황상현(黃相顯)	1983. 9.14. ~ 1985. 4.20.	청주지법 부장판사
오세탁(吳世卓)	1985. 3.31. ~ 1996. 3.30.	충북대 법학과 부교수
박영무(朴英武)	1985. 5.28. ~ 1985. 8.31.	청주지법 부장판사
유현(兪炫)	1985. 9.16. ~ 1988. 7.31.	청주지법 부장판사
홍진희(洪慎熹)	1987. 3.31. ~ 1993. 3.30.	청주 사범대학 교수
최창(崔昶)	1988. 9. 1. ~ 1988. 9.30.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관표(李官杓)	1988. 9. 1. ~ 1990. 2.28.	청주지법 판사
김현구(金顯九)	1988. 9. 1. ~ 2000. 8.31.	청주교육대학 학장
백수일(白秀一)	1988.11.14. ~ 1990. 2.28.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국주(李國株)	1990. 3.31. ~ 1991. 2.10.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창현(金昌鉉)	1990. 3.31. ~ 1994. 8.31.	변호사
이우근(李宇根)	1991. 3. 5. ~ 1992. 3.10.	청주지법 부장판사
민형기(閔亨基)	1992. 3.10. ~ 1992. 9.21.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종원(韓宗遠)	1992. 9.21. ~ 1994. 8.31.	청주지법 부장판사
우영(禹潐)	1993. 3.31. ~ 1999. 3.30.	전 청주문화원 원장
신영철(申暎澈)	1994. 9. 1. ~ 1995. 3.22.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영길(金永吉)	1994. 9. 1. ~ 1996. 3.26.	변호사
목영준(睦榮竣)	1995. 3.22. ~ 1997. 2.27.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기수(李基洙)	1996. 3.31. ~ 2002. 3.30.	청주대 수학교육과 교수
김병철(金柄喆)	1996. 4.22. ~ 2000. 8.31.	청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홍엽(金弘燁)	1997. 3.24. ~ 1998. 4. 3.	청주지법 부장판사
부구욱(夫龜旭)	1998. 4. 3. ~ 1998. 9.10.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용덕(金龍德)	1998. 9.10. ~ 1999. 3.12.	청주지법 부장판사
박기동(朴基東)	1999. 3.12. ~ 1999.11. 9.	청주지법 부장판사
주한일(朱한일)	1999.11. 9. ~ 2000. 2.11.	청주지법 부장판사
장공자(張公子)	1999. 3.31. ~ 2005. 3.30.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근녕(許根寧)	2000. 3. 9. ~ 2001. 2.19.	청주지법 부장판사
우종인(禹種仁)	2000. 9. 1. ~ 2003. 8.31.	전 청주MBC 보도국장
김재중(金宰中)	2000. 9. 1. ~ 2003. 8.31.	변호사
김재복(金在馥)	2001. 3. 7. ~ 2002. 2.18.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한주(李漢周)	2002. 3.27. ~ 2003. 2.19.	청주지법 부장판사
오두범(吳斗凡)	2002. 3.31. ~ 2005. 3.30.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양석(韓陽錫)	2003. 3.10. ~ 2004. 2.18.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도영(李都永)	2003. 9. 1. ~ 2009. 8.31.	청주YMCA 명예사무총장
박충규(朴忠圭)	2003. 9. 1. ~ 2006. 8.31. 2009. 9. 1. ~ 2011. 4.22.	변호사
정형식(鄭亨植)	2004. 3.17. ~ 2005. 2.21.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대영(朴大泳)	2005. 3.31. ~ 2006. 2.20.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중호(朴鍾浩)	2005. 3.31. ~ 2008. 3.30.	전 청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허석열(許碩烈)	2005. 3.31. ~ 2008. 3.30.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어수용(魚秀龍)	2006. 3.13. ~ 2009. 2.23.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태영(金泰永)	2006. 9. 1. ~ 2009. 8.31.	변호사
황용석(黃勇碩)	2008. 3.31. ~ 2009. 7. 9.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성주(黃聖周)	2008. 3.19. ~ 2009. 2.23. 2009. 3.16. ~ 2011. 2.28.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효성(李孝性)	2008. 3.31. ~ 2011. 3.30.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승욱(南承旭)	2009. 9. 1. ~ 2012. 8.31.	전 청주KBS 총국장
강형기(姜瑩基)	2009. 8.25. ~ 2011. 3.30.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준(崔炳俊)	2011. 3.31. ~ 2012. 8.31.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덕현(曹德鉉)	2011. 3.31. ~ 2014. 3.30.	전 충북일보 논설주간
권영애(權寧愛)	2011. 3.31. ~ 2014. 3.30.	전 충청일보 문화부 차장
신승현(申崇鉉)	2011. 6.16. ~ 2012. 8.31.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북증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이익우(李益雨)	1981. 3.31. ~ 1981. 9.21.	전주지법 부장판사
오근풍(吳根豊)	1981. 3.31. ~ 1983. 3.30. 1990. 3.31. ~ 1999. 3.30.	전북중앙여고 교장 전 전북교육위원회 사무국장
이호선(李鎬璿)	1981. 3.31. ~ 1984. 8.31.	전주대 교수
김규복(金奎福)	1981. 9.22. ~ 1982. 4.18.	전주지법 부장판사
민인식(閔仁植)	1982. 4.19. ~ 1983. 9.13.	전주지법 부장판사
하재홍(河在洪)	1983. 3.31. ~ 1985. 3.30.	중앙여자중학교 교장
이보환(李輔煥)	1983. 9.14. ~ 1984. 9.11.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중곤(金重坤)	1984. 9.12. ~ 1986. 4.30.	전주지법 부장판사
허영목(許永穆)	1985. 3.31. ~ 1987. 3.30.	전주 동중학교 교장
김운만(金允萬)	1985. 3.31. ~ 1987. 3.30.	군산 동고등학교 교장
김상철(金相轍)	1986. 5.23. ~ 1987. 3.19. 1994. 9. 1. ~ 1997. 8.31.	전주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박재운(朴在允)	1987. 3.31. ~ 1987. 8.31.	전주지법 부장판사
홍태표(洪泰杓)	1987. 3.31. ~ 1988. 8.30.	전북교육원연수원 원장
류창현(柳昌鉉)	1987. 3.31. ~ 1990. 3.30.	변호사
최세영(崔世英)	1987. 9.19. ~ 1989. 4. 5.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창남(丁昌男)	1988. 9. 1. ~ 1990. 2.28. 1999. 3.31. ~ 1999. 9.15. 2002. 3.31. ~ 2005. 3.30.	전주지법 부장판사
윤근섭(尹瑾燮)	1988. 9. 1. ~ 1994. 8.31.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범석규(范錫圭)	1988. 9. 1. ~ 1994. 8.31.	해성학원 상무이사
박준수(朴竣秀)	1989. 5. 1. ~ 1990. 2.28.	전주지법 부장판사
변동걸(卞東杰)	1990. 3.31. ~ 1991. 2.10.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대현(金大鉉)	1990. 3.31. ~ 1994. 8.31.	변호사
한정덕(韓正惠)	1991. 3. 5. ~ 1993. 3.30.	전주지법 군산지원 지원장
이상선(李詳善)	1993. 3.31. ~ 1996. 3.30.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한봉(金漢奉)	1994. 9. 1. ~ 2000. 8.31.	한국사회교육협회 이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주명준(朱明俊)	1994. 9. 1. ~ 2000. 8.31.	전주대 사범대학 교수
심병연(沈炳聯)	1996. 3.31. ~ 1999. 3.30. 2006. 9. 1. ~ 2012. 8.31.	전주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김영신(金泳新)	1997. 9. 1. ~ 2000. 8.31.	변호사
류연만(柳然滿)	1999. 9.16. ~ 2000. 2.18. 2005. 3.31. ~ 2006. 2.20.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영조(李永朝)	1999. 3.31. ~ 2005. 3.30.	전북 새마을부녀회 회장
방극성(房極星)	2000. 3. 9. ~ 2002. 2.18.	전주지법 부장판사
송기태(宋基台)	2000. 9. 1. ~ 2003. 8.31.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장협(許長協)	2000. 9. 1. ~ 2003. 8.31.	변호사
권혁남(權赫南)	2000. 9. 1. ~ 2000.12.30. 2003. 9. 1. ~ 2009. 8.31.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환철(申桓澈)	2001. 1.26. ~ 2006. 8.31.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복(金永福)	2003. 9. 1. ~ 2006. 8.31.	변호사
하명희(河明熙)	2005. 3.31. ~ 2008. 3.30.	전북언론문화연구원 원장
유길종(劉吉種)	2006. 3.13. ~ 2007. 9.29.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미(金恩美)	2006. 9. 1. ~ 2009. 8.31.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정일연(鄭一衍)	2008. 3.19. ~ 2009. 2.23.	전주지법 부장판사
황현찬(黃鉉贊)	2009. 3.16. ~ 2010. 2.22.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범서(崔汎瑞)	2008. 3.31. ~ 2011. 3.30.	전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서경환(徐慶桓)	2007.10.16. ~ 2008. 2.21.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종량(金鐘凉)	2009. 9. 1. ~ 2012. 8.31.	전 전라일보 편집국장
김창희(金昶熙)	2009. 9. 1. ~ 2012. 8.31.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재규(鄭裁圭)	2010. 3.25. ~ 2012. 2.27.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영원(李英媛)	2011. 3.31. ~ 2014. 3.30.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경남중재부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김적승(金勳承)	1984. 3. 2. ~ 1986. 3. 1.	마산지법 부장판사
김익하(金益河)	1984. 3. 2. ~ 1986. 3. 1.	변호사
성태현(成泰鉉)	1984. 3. 2. ~ 1986. 3. 1.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성균(鄭晟均)	1986. 3. 2. ~ 1986. 4.30.	마산지법 부장판사
류승우(柳升佑)	1986. 3. 2. ~ 1988. 3. 1. 1989. 4.11. ~ 1991. 8.31.	변호사
김석훈(金石薰)	1986. 3. 2. ~ 1988. 3. 1. 1991. 9. 1. ~ 1994. 4. 8.	경상대학 법정대학 조교수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안병국(安秉國)	1986. 5.23. ~ 1986. 9.22.	마산지법 부장판사
곽종석(郭宗晳)	1986. 9.23. ~ 1987. 3.19.	마산지법 부장판사
김시승(金時昇)	1987. 3.31. ~ 1987. 8.31.	마산지법 부장판사
최동렬(崔東烈)	1987. 9.19. ~ 1988. 2.28. 1988. 9. 1. ~ 1989. 2.28.	마산지법 부장판사
권오봉(權五鳳)	1988. 9. 1. ~ 1989. 2.28.	마산지법 부장판사
이원갑(李元甲)	1988. 9. 1. ~ 1991. 8.31.	예총경남지회 사무국장
박채규(朴彩奎)	1988. 9. 1. ~ 1994. 8.31.	변호사
윤대성(尹大成)	1988. 9. 1. ~ 1994. 8.31.	창원대 법학과 부교수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김상기(金相基)	1989. 4.11. ~ 1989. 8.31.	마산지법 부장판사
오세립(吳世立)	1989. 9.19. ~ 1990. 2.28.	마산지법 부장판사
정창환(鄭昌煥)	1990. 3.31. ~ 1991. 2.10.	마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기(金兌起)	1991. 3. 5. ~ 1992. 3.10.	마산지법 부장판사
김현태(金炫太)	1991. 9. 1. ~ 2000. 8.31.	창원대 법학과 교수
강문중(康文鍾)	1992. 3.10. ~ 1993. 3.20.	창원지법 부장판사
손평업(孫平業)	1993. 3.20. ~ 1993.11.10.	창원지법 부장판사
권오곤(權五坤)	1993.11.10. ~ 1995. 3.22.	창원지법 부장판사
홍중호(洪鍾皓)	1994. 4. 8. ~ 2000. 8.31.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권치관(權致寬)	1994. 9. 1. ~ 2000. 8.31.	전 경남신문 논설주간 주필
조현중(曹賢鍾)	1994. 9. 1. ~ 2000. 8.31.	변호사
김진권(金鎭權)	1995. 3.22. ~ 1996. 3.30.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상호(金商鎬)	1996. 3.31. ~ 1997. 2.27.	창원지법 부장판사
안영률(安泳律)	1997. 3.24. ~ 1998. 4. 3.	창원지법 부장판사
윤인태(尹寅台)	1998. 4. 3. ~ 1999. 3.12.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홍우(朴洪佑)	1999. 3.12. ~ 1999.11. 9.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기동(朴基東)	1999.11. 9. ~ 2002. 2.18.	창원지법 부장판사
장권현(張權鉉)	2000. 9. 1. ~ 2003. 8.31.	변호사
임경숙(林敬淑)	2000. 9. 1. ~ 2006. 5.12.	전 대한YWCA 동부지역위원장
박춘서(朴椿緒)	2000. 9. 1. ~ 2003. 8.31.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이병섭(李丙燮)	2000. 9. 1. ~ 2003. 8.31.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홍광식(洪光植)	2002. 3.27. ~ 2003. 2.19.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성철(朴性哲)	2003. 3.10. ~ 2005. 2.14.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영주(金永周)	2003. 9. 1. ~ 2006. 8.31.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창룡(金昌龍)	2003. 9. 1. ~ 2009. 8.31.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이재철(李在哲)	2003. 9. 1. ~ 2006. 8.31.	변호사
황용경(黃容瓊)	2005. 3.31. ~ 2007. 2.20.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인숙(金仁淑)	2006. 6. 9. ~ 2009. 8.31.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원희(李元熙)	2006. 9. 1. ~ 2006.11.30.	변호사
김남석(金南石)	2006. 9. 1. ~ 2009. 8.31.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백경석(白京錫)	2006.12.27. ~ 2012. 8.31.	변호사
김종기(金宗紀)	2007. 3.19. ~ 2009. 2.23.	창원지법 부장판사
최인석(崔寅奭)	2009. 3.16. ~ 2010. 2.11.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남부희(南富熙)	2009. 9. 1. ~ 2012. 8.31.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
장성운(張聖運)	2009. 9. 1. ~ 2012. 8.31.	전 한울일보 본부장
김진희(金眞熙)	2009. 9. 1. ~ 2012. 8.31.	경남대 가정교육과 교수
김형천(金榮川)	2010. 3.25. ~ 2012. 2.16.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제주중재부

성명	임기	재직시직위
김준열(金浚烈)	1981. 3.31. ~ 1981. 5.26.	제주지법 부장판사
김태준(金泰俊)	1981. 3.31. ~ 1985. 3.30.	변호사
부만근(夫萬根)	1981. 3.31. ~ 1983. 3.30.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기(金成基)	1981. 5.27. ~ 1982. 9.21.	제주지법 부장판사
임헌택(林憲澤)	1982. 9.22. ~ 1984. 9.11.	제주지법 부장판사
김두희(金斗熙)	1983. 3.31. ~ 1985. 3.30.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강홍주(姜洪周)	1984. 9.12. ~ 1986. 9. 1.	제주지법 부장판사
강창현(康昌炫)	1985. 3.31. ~ 1987. 3.30.	표선종합고 교장
강윤호(康允豪)	1985. 3.31. ~ 1993. 3.30.	변호사
임창원(任昌元)	1986. 9.23. ~ 1987. 4.30. 1997. 9. 1. ~ 2000. 8.31.	제주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김운기(金雲起)	1987. 3.31. ~ 1993. 3.30.	제주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황우여(黃祐呂)	1987. 5.21. ~ 1989. 2.28.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장호(李章活)	1988. 9. 1. ~ 1990. 8.31.	제주지법 판사
신용준(申瑢俊)	1988. 9. 1. ~ 1994. 8.31. 1999. 3.31. ~ 2005. 3.30.	제주한라대 학장 제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승태(梁承泰)	1989. 4.11. ~ 1989. 8.31.	제주지법 부장판사
현순도(玄橐度)	1989. 9.19. ~ 1991.10. 2. 2000. 9. 1. ~ 2006. 8.31.	제주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현영두(玄榮斗)	1990. 9.12. ~ 1994. 8.31.	변호사
박성철(朴聖哲)	1991.10. 2. ~ 1992. 9.21.	제주지법 부장판사
유철균(劉哲均)	1992. 9.21. ~ 1994. 3.21.	제주지법 부장판사
정옥두(鄭玉斗)	1993. 3.31. ~ 1995.12.31.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
고문승(高文昇)	1993. 3.31. ~ 1996. 3.30.	제주전문대 교수
김대휘(金大彙)	1994. 3.21. ~ 1997. 2.27.	제주지법 부장판사
강용삼(姜龍三)	1994. 9. 1. ~ 2000. 8.31.	전 한라일보 편집국장
임흥순(任興淳)	1994. 9. 1. ~ 1997. 8.31.	변호사
이용길(李勇吉)	1996. 3.31. ~ 1999. 3.30.	제주전문대 교수
서성옥(徐成玉)	1996. 1.24. ~ 1999. 3.30.	전 제주농업고등학교 교장
김용호(金容鎬)	1997. 3.24. ~ 1999. 3.30.	제주지법 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	1999. 3.31. ~ 2000. 2.18.	제주지법 부장판사
한림화(韓林花)	1999. 3.31. ~ 2005. 3.30.	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이홍철(李洪喆)	2000. 3. 9. ~ 2000. 7.27.	제주지법 부장판사
김창보(金昶寶)	2000. 8.26. ~ 2002. 3.30.	제주지법 부장판사
강정홍(姜政弘)	2000. 9. 1. ~ 2003. 8.31.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이태섭(李太燮)	2002. 3.31. ~ 2003. 2.19.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중문(朴鍾文)	2003. 3.10. ~ 2004. 2.18.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송묵(徐松默)	2003. 9. 1. ~ 2009. 8.31.	전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김인겸(金仁謙)	2004. 3.17. ~ 2005. 2.21.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한창(趙漢暢)	2005. 3.31. ~ 2006. 2.20.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고창실(高昌實)	2005. 3.31. ~ 2008. 3.30.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김종배(金琮培)	2005. 3.31. ~ 2007. 5.20.	전 CBS 제주방송 보도제작국 국장
고충정(高忠正)	2006. 3.13. ~ 2007. 2.21.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연봉(李聯奉)	2006. 9. 1. ~ 2007.10.23.	변호사

성 명	임 기	재직 시 직위
윤현주(尹賢周)	2008. 3.19. ~ 2009. 2.23.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현룡(金賢龍)	2009. 3.16. ~ 2010. 2.22.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고재민(高在玟)	2008. 3.31. ~ 2011. 3.30.	전 제민일보 편집위원
최낙진(崔洛辰)	2008. 3.31. ~ 2011. 3.30.	제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상환(金尙煥)	2007. 3.19. ~ 2008. 2.21.	제주지법 부장판사
허영선(許榮善)	2007. 6.19. ~ 2008. 3.30.	전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김재원(金載原)	2009. 9. 1. ~ 2012. 8.31.	제주대 통역대학원 부교수
권 범(權 範)	2007.11.15. ~ 2012. 8.31 .	변호사
박재현(朴宰賢)	2010. 3.25. ~ 2011. 2.28.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상준(夫相俊)	2011. 3.31. ~ 2012. 2.27.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맹수(趙孟洙)	2011. 3.31. ~ 2014. 3.30.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박경숙(朴景淑)	2011. 3.31. ~ 2014. 3.30.	제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역대 사무총장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한동원(韓東元)	1981. 3.31. ~ 1999. 3.30.	언론연구원 원장
김해도(金海都)	1990. 8.17. ~ 1996. 3.30.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병훈(李柄熏)	1996. 4. 1. ~ 2002. 3.30.	KBS 정치부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
최 정(崔 正)	2002. 4. 1. ~ 2005. 7.27.	연합뉴스 편집인
김용주(金容柱)	2005. 7.28. ~ 2011. 7.27.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의실장, 기획실장
오광건(吳光鍵)	2011. 7.28. ~ 2014. 7.27.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장, 연구본부장, 운영본부장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 연혁

1. 언론기본법 (1980. 12. 31. 제정)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87. 11. 28. 제정)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95. 12. 30. 개정)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제정)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언론기본법 (1980. 12. 31. 제정)

[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47호, 1980. 12. 3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언론의 자유등) ①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② 신문·통신등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조(언론의 공적책임) ①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③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은 폭력행위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가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나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신문, 통신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말한다.
2.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통신 기타 동일한 제호로 년 2회이상 발행되는 계속적인 간행물을 말한다.
3. “통신”이라 함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 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수부문(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 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 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주 1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수부문(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주 1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언론인”이라 함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사상 및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를 말한다.
10.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11.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2.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14. “방송국”이라 함은 방송을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5.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과 그 배열을 말한다.
16.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7. “광고책임자”라 함은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언론의 권리와 의무

제6조(언론의 정보청구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신문, 통신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
2.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에 위배될 때
3. 더 중한 공익 또는 보호할 사익이 명백히 침해될 때
4. 청구된 정보의 량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

제7조(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① 정기간행물과 방송의 표현물은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현물 압수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압수의 원인이 된 표현물의 부분과 위

반법률을 적시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압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③ 압수의 원인이 된 표현물의 부분은 복제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④ 압수후 6월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⑤ 국가는 압수가 부적법한 경우 신청에 의해 관계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행한다.
- ⑥ 이 조의 규정은 증거수집을 위한 개개의 표현물의 압수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취재원의 보호) ①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 다만, 기자등 언론인이 그 공표를 이유로 처벌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 2.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로 공표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
- 3.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가 공표내용에 비추어 사회안전법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한 때

② 진술거부권이 있는 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를 수사하거나 공표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9조(언론의 주의의무) 언론은 공표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구분표시의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과 광고책임자는 광고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구분하여야 한다.

제3장 언론기업과 언론인

제11조(언론기업의 경영) 법인이 아니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행할 수 없다. 다만, 특수일간신문, 특수주간신문과 신문, 통신이 아닌 정기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언론기업의 겸영금지) ① 누구든지 신문·통신·방송중 2종이상을 겸영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의 기업이 신문·통신·방송중 2종이상 기업의 2분의 1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매년말 당해 언론기업의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언론기업의 업무집행기관) 신문·통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4조(외국자금의 유입금지) 언론기업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찬조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출연을 받지 못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과 상업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언론인의 윤리) ①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한다.

② 언론인은 그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

제16조(언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언론인이 될 수 없다.

1. 사회안전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집행중인 자

제17조(발행인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언론인 연수) ①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소속언론인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공동으로 언론인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언론인의 복지)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소속언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간행물

제20조(등록)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
-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제21조(시설기준)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룰전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은 룰전기 1대이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 ② 특수주간신문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편집인등) 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편집인과 광고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행물의 분야별로 수인의 편집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편집인 또는 광고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공직취임자격이 박탈된 자
 3. 미성년자 다만, 청소년을 위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편집인 또는 광고책임자가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편집인과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기간행물을 편집하거나 광고를 함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을 배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3조(지사등 설치)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그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지사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등)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발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제3조제4항에 의한 공적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때
5.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누구도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제25조(정기간행물의 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년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광고책임자·인쇄인 및 발행소를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납본의무)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휴·폐간의 신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휴간 또는 폐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①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4. 국내언론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때

제5장 방 송

제29조(방송순서 편성의 자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규제 또는 간섭할 수 없다.

제30조(방송운영의 자율성) 방송국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되며 방송국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국한된다.

제31조(방송의 공공성) ①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방송은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방송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방송내용의 보존) 방송국의 장은 공표사항의 녹음 또는 녹화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1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편성책임자등) ① 방송국의 장은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방송순서의 분야별로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조의 편성책임자와 광고책임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4조(방송위원회) ①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식, 경험과 덕망이 있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방송국 또는 방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공보부장관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 위원의 보수, 사무국의 조직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의 운용·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2. 방송종류에 따른 광고방송의 허용여부

3. 방송광고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각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8.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 ② 문화공보부장관과 방송국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정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법에 위배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매년 1회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방송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심의위원이어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심의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1. 한국방송공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기타 방송국을 대표하는 자 1인
 3. 교육·종교·문화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7인 이상 13인 이내
- ⑤ 회원총회와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심의규정) ① 심의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보도·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 7.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제39조(심의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출연정지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심의규정등의 승인) 회원총회가 회칙을 작성, 변경하거나 심의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심의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방송순서의 편성등) ① 방송순서의 편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이익이 균형있게 적정한 비율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은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방송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 또는 교육, 보도 및 오락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종류에 따라 방송순서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방송) 교육방송의 편성 및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유익적절하게 조직적, 계속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방송의 계획과 내용을 사전에 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방송순서가 학교교육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이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대외방송) ① 대외방송의 편성 및 방송 또는 외국의 방송국에 제공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주는 동시에 국제친선 및 이해의 증진과 문화, 경제교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광고방송) ①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광고에 의한 수익은 언론의 공익사업, 언론인의 복지증진, 언론인의 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에 의한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5조(방송자문위원회) ① 방송국은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방송국의 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방송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이 개국하였거나 2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월례보고등) ①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일 정기적으로 방송실 시결과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국에 대하여 제1항의 보고에 관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기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제48조(소송의 우선처리) ①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기한 소는 접수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통신·방송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신문·통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정정보도방송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준용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되 그 3분의 1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은 후 1월(제4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재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그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⑦ 중재는 신청이 접수된 후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국의 구성,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제3항 내지 제6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53조(편집인등의 형사책임) 제2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인,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으로서 제16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언론인으로 종사하게 하거나, 제22조 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편집인, 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로 선임한 자
2. 제1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언론인으로 종사하거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편집인, 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로 종사한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규제 또는 간섭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외방송을 한 자
5. 이 법에 의한 언론인이 아닌 자가 언론인을 사칭하여 그 사무를 행사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의 제한을 위반한 자
4.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으로서 제25조 또는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제4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레보고의 제출을 해태한 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레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기간행물과 신고된 방송국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87. 11. 28. 제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수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신"이라 함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재된 간행물을 말한다.
9.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0.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경영금지 등)** ①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 ② 일간신문, 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⑤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자금 유입금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연수)** ① 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 ② 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기능의 보장)** ① 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운전기와 대통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 일간신문 또는 외국어 일간신문이나 일반 주간신문은 운전기 1대 이상과 대통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주간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등 록

제7조(등록)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산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4. 발행소의 소재지.
 5. 관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년 2회간.
 7. 년간.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날로부터 6월(년 2회간 년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⑤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 ⑥ 문화공보부장관은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년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 년월일을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 ② 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 수 없다.
 -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납본)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휴·폐간의 신고)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휴간 또는 폐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휴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3. 제6조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

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제13조(청문) 문화공보부장관이 제12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사 등의 설치)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지사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 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⑤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 등) ①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제1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그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⑦ 중재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자.
3.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12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처분이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5.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인으로 선임한 발행인.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간 또는 폐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체없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 · 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 · 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 승인 · 허가 · 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년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 발행 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이나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방송법」 중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조항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41조(정정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95. 12. 30. 개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4, 1995·12·30>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등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9.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8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0.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2.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겸영금지등) ①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30>

② 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금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제5조(연수) ① 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 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의 보장) ① 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5·12·30>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운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은 윤전기 1대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시설(출판

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의 시설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제2장 등 록

제7조(등록)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30>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②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 일간(격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2회간
7. 삭제<1995·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날로부터 6월(연2회간의 경우는 1

년)이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⑦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⑧공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특수주간신문과 월 1회이하 발행 간행물중 무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물
2.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3. 제2조제9호의 기타 간행물중 주 2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제8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5·12·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 수 없다.
- ④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납본)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휴·폐간의 신고)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휴간 또는 폐간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 제1항에 의한 휴간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① 공보처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하(격월간이하 또는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30>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등에 해당된 때
3. 제6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삭제<1995·12·30>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 공보처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격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제12조의2(직권등록취소) ① 공보처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1년(연 2회간의 경우는 2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상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월 1회이하 발행의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② 제1항의 취소결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보처장관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13조(청문) 공보처장관이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등록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30>

제14조(지사등의 설치)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의 지사 또는 지국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30>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 공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2·30〉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89·12·30, 1995·12·30〉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4일)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30〉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5·12·30>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30〉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12조제1항,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인으로 선임한 발행인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간 또는 폐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89·12·3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보처장관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

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89·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은 이 법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정정보도청구권)”을“(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와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를 각각 “방송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정정보도청구권)”을“(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와 동조제6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①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㉑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제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 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 ⑤ 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 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 ③ 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 ⑤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 ⑥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 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⑦ 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이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정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⑦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

술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 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계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계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계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계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별 칙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증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2.6>
- ③ 삭제<2009.2.6>
- ④ 삭제<2009.2.6>

⑤ 삭제(2009.2.6)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⑨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 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 ② 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할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2.6>
- ⑤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제4항에서 이동, 중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2.6>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5항에서 이동, 중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09.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제6항에서 이동 2009.2.6>
-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제11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삭제 <2009.2.6>
-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6>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6>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개정 2009.2.6>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9.2.6>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 ⑤ 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 ⑥ 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이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외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

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9.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개정 2009.2.6>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9.2.6>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계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중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09.2.6>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09.2.6>

제27조(재판)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계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계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28조(불복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계제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2.6〉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2.6〉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2.6〉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

으로 이동 2009.2.6)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2.6>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2.6>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2.6>

⑧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09.2.6>

제33조 삭제<2009.2.6>

제4장 벌 칙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09.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2009.2.6>

④ 삭제<2009.2.6>

⑤ 삭제<2009.2.6>

부 칙

-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연표

1980

1980. 12. 31. 「언론기본법」 제정
 -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제도 도입
 -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1981. 3. 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 개최
 - 중재위원 39명(임기 2년) 위촉
 - 안우만 위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주진(방송심의위원장), 고창현(조선대 법대 학장) 부위원장 선출, 한동원(전 서울신문 부국장) 사무국장 임명
 - 서울 4개 중재부, 9개 지역중재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1개 중재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
1981. 4. 1. 3실 9지역사무소, 정원 36명 직제세칙 제정
1981. 4. 8. 서울중재부 위원회의 개최
 - 박영준(공인회계사),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감사 선출
1981. 4. 29. 위원회 현판식(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사무국 설치, 공식 업무 개시
 7. 8. 부산중재부 현판식
 7.10. 전남중재부 현판식
 7.13. 강원중재부 현판식
 7.14. 충남중재부 현판식
 7.15. 충북중재부 현판식
 7.18. 경기중재부 현판식
 7.20. 대구중재부 현판식
 7.21. 전북 중재부 현판식
 8. 1. 제주중재부 현판식
1981. 5. 7.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이후 첫 언론중재 신청 접수
 - ○○역사학회 대표 황○○ 씨 :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1981. 11. 15. 회지 「언론중재」 창간호 발행
1981. 11. 30. 언론침해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제정

1981. 1981. 4. 29. 업무개시 후 44건의 언론중재신청 접수처리
1982. 3. 30.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 주제 :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1982. 12. 30.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발간
1983. 3. 31.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2주년
임시 위원총회 개최
- 안우만 위원장, 최창봉(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김만송(강원대 교수) 부위원장
선출
1983. 5. 12. 대전지방토론회 개최
- 주제 :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 장소 : 대전중앙관광호텔
1983. 12. 30. 언론중재사례집(1988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보고서, 2008년부터 조정중재·시정
권고 사례집으로 개칭) 제1집 발간
1984. 3. 2. 경남중재부 신설(경남 마산시에 사무소 설치)
- 관할구역 : 부산중재부 관할인 부산직할시, 김해시, 김해군,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
을 제외한 경상남도 나머지 지역
1985. 4. 3. 임시 위원총회 개최
- 임규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장, 윤임술(한국언론연구원장), 배용광(대구
교육대학장) 부위원장, 이상희(연세대 교수), 이윤자(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감사 선출
1985. 4. 21. 사무국 이전(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986. 1. 28. 대법원 85다카1973 선고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반박보도청구권에 해당>
1986. 2. 24. 위원총회 - 정희택 방송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
1987. 3. 30.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제2집 발간

1987. 4. 1. 위원총회 - 정희택 위원장, 노철용(한국언론연구원장), 배용광(전 대구교육대 학장) 부위원장, 이상희(연세대 교수), 이윤자(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감사 선출
1987. 10. 10. 위원총회 - 이상희 부위원장 선출
1987. 11. 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추후보도청구권 도입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조정(중재부를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중재위원 임기 3년으로 연장(기존 위원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
 - 신청인 1회 불출석시 신청철회 간주, 피신청인 2회 불출석시 합의 간주
 - 증거조사 기능 도입
 - 시정권고소위원회 구성(시행령)
1988. 4. 30. 언론중재위원회 휘장(마크) 도안 공모
 <공모 기준>
 · 언론유관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를 회복시켜 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
 ·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위원의 3자가 합의하는 기관을 상징하는 내용
1988. 8. 31. 첫 홍보책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50,000부 발간·배포
1988. 9. 1. 중재위원 증원에 의한 신임 중재위원 28명 및 법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결원 위원 등 45명 위원 위촉
 위원총회 - 안광식(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부위원장, 이해복(전 KBS 해설위원장), 서정우(연세대 신방과 교수) 감사 선출, 한동원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
1989. 12. 7.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심포지움
 - 주제발표자 : 양승두 연세대 법학과 교수,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989. 12. 30.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용역보고서 발간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 서정우 교수)
1989. 언론중재신청 연간 100건 돌파, 121건 신청 처리

1990

1990. 4. 9. 위원총회 - 정희택 위원장, 이혜복(대한언론인회 회장), 김보성(대전충남개발위원장)
부위원장, 김동환(변호사), 이원갑(예총경남지회 사무국장) 감사 선출
1990. 8. 17. 김해도 사무총장 임명
1990. 12. 30.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발간
외국신문평의회사례집 제1집 발간
1991. 3. 29. 창립 10주년 기념식(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91. 4. 1. 헌법재판소 자 89헌마160 결정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구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어온 사죄광
고에 대해 위헌 결정〉
1991. 8. 22. ~ 24.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세미나
- 주제발표 : 박용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 장소 : 설악파크호텔
1991. 9. ~ 12. 언론중재위원회 TV 광고 실시(‘중재위원’ 편)
1991. 9. 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을 의미하며,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991. 12. 20. 홍보책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일을 합니다」 15,000부 발간·배포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공포, 언론중재 관련 조항 정간물법 준용
1991. 언론중재신청 연간 200건 돌파, 220건 신청 처리
1992. 2. 12 ~ 18. 199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광고효과 조사
- 대행 : 한국연합광고주식회사

1992. 8. 26.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반박보도청구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세미나
 - 주제발표 : 양삼승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93. 3. 31. 위원총회 - 김두현(변호사) 위원장, 이혜복(대한언론인회 회장), 오근풍(전 전라북도 교육위원) 부위원장, 이범렬(변호사), 한점수(경북대 사범대 교수) 감사 선출
1993. 5. 7. ~ 9. 2.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 연구자 : 박용상(서울고법 부장판사), 양삼승(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단일법안 제출
1993. 10. 16. 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첫 수감
1993. 11. 9.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주최 :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위원장 오세웅)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자 : 양삼승(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94. 언론중재신청 연간 500건 돌파, 541건 신청 처리
1995. 7. 30.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2집 발간(2008년까지 15집 발간)
1995. 12. 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기존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
 - 「직권중재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언론중재제도 강화
 - 「반론보도청구권」과 함께 「정정보도청구권」을 중재신청 대상화
1996. 4. 1. 위원총회 - 김두현(변호사) 위원장, 김해도(전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김현구(전 청주교육대 학장) 부위원장,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최중현(변호사) 감사 선출, 이병훈 사무총장 임명
1996. 4. 30. 3실 5부 10지역사무소로 직제개편(정원 55명),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중재위원을 75인으로 증원하고 서울제5중재부 신설
 지역사무소장 첫 부임(부산-조남태, 대구-정희성, 광주-임득상)

1997. 3. 30. 홍보책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발간 · 배포, 2,000부
1997. 7. 1. 임시총회 - 결원 임원 선출, 김현구(청주교육대학장), 부위원장, 임상원(고려대 신방
과 교수), 최중현(변호사) 감사 선출
1997. 7. 9.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 창립(초대 위원장 여종국)
1997. 8. 25. 정원 57명으로 증원, 충남사무소를 대전사무소로 변경
1997. 12. 30. 홍보책자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발간 배포, 10,000부
1998. 4. 가칭 <언론평해구제법>안 연구용역
- 연구자 : 양경승 제주지법 판사
1998. 7. 2. ~ 7. 3. 직원집체연수 첫 실시(수안보 상록호텔)
1998. 11. 12. ~ 14.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평해구제」 세미나
- 주제발표 :
양경승 제주지법 판사, 「언론평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김학수 서강대 신방과 교수, 「언론환경 변화와 취재보도의 문제점」
- 장소 : 양양 낙산비치호텔
1998. 10. 12. 2실 4팀 10지역사무소로 직제개편(팀제로 개편, 조사연구실 폐지, 정원 3명 감축 -
IMF로 인한 공기관 구조조정)
1998. 언론중재신청 연간 600건 돌파, 602건 신청 처리
1999. 4. 9. 위원총회 - 박영식(전 광주지법원장) 위원장, 서정우(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송정계(전 부산일보 사장) 부위원장, 이한수(전 서울신문 사장), 공병진(전 강원일보
논설위원) 감사 선출
1999. 12. 1.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 개설


2000

- 2000. 2. 15. 2실 5팀 10지역사무소로 직제 개편(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 심의2팀 신설)
- 20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제8조의3 개정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0. 2. 25. ~ 5. 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 4. 1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2000. 7. 20. 위원회 소식지 '언론중재위원회' 창간
- 2000. 9. 26. 언론중재위원 활동 변호사 공익활동에 포함
- 2000. 11. 10 ~ 12. 박영식 위원장 등 중재위원 23명, 백령도 군부대 시찰
- 2000. 11. 23. ~ 25.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 주제발표 : 양삼승 변호사,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강경근 송실대 법학과 교수,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 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 장소 : 대전 유성호텔
- 2001. 3. 30. 창립 20주년 기념식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1. 4. 27. 박영식 위원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언론문화 창달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 2001. 6. 4. 박영식 위원장 등 중재위원 해군 제1함대 및 독도 시찰
- 2002. 2. 14. ~ 7.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2002. 4. 1. 위원총회 - 박영식 위원장, 박인순(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송정제(전 부산일보 사장) 부위원장, 신동식(전 서울신문), 최중현(변호사) 감사 선출, 최정 사무총장 임명
- 2002. 8. 21. ~ 2003. 1. 18 제16대 대통령선거(2002. 12.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02. 9. 16. 이병훈(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부위원장 선출(서면결의)
2003. 8. 28. ~ 30.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세미나
- 주제발표 :
양삼승 변호사,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 장소 : 속초 썬싱턴호텔
2003. 12. 17. ~ 2004. 5.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15.)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03. 언론중재신청 연간 700건 돌파, 724건 신청 처리
2004. 2. 20.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신설, 정원 8명 증원(총원 60명)
2실 1센터 7팀으로 개편, 법무상담팀 · 교육홍보팀 신설
2004. 4. 1.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발족
상담 및 교육 전담부서 신설
2004. 10. 25. ~ 11. 24. 직원 해외실무연수 최초 실시
2004. 12. 6. ~ 7. 중재위원 워크숍 최초 실시
- 주제 :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 장소 :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충남 아산시)
2005. 1.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구술 및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 등
2005. 3. 31. 위원총회 - 조준희(변호사) 위원장, 이종욱(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허광욱(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부위원장, 전세봉(변호사),
박충선(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 선출
2005. 6. 1. 교육인적자원부 발간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지도자료에 위원회 소개내용
수록(교육과정 자료 316)
2005. 6. 29.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2본부 1센터 9팀으로 직제 개편
정원 10명 증원(총 70명), 실을 본부로 명칭 변경

2005. 6. 30. 회지 <언론중재> 데이터베이스화, 홈페이지 통해 공개
2005. 7. 1. 주5일 근무제 시행
2005. 7.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위원총회 - 김용주 사무총장 임명
2005. 8. 1. 사내 인트라넷 구축
2005. 9. 2. 서울제6중재부 신설로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2005. 9. 29. 위원회, 선수기관으로 국정감사 수감
2005. 11. 20. 위원회 간판석 제막(프레스센터 입구)
2006. 1. 2. 언론중재위원회 서비스 현장 제정 · 선포
2006. 1. 10. 신청인, 피신청인 대상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2006. 1. 17. 위원회 소식지 제호 'PAC NEWS' 로 변경
2006. 1. 31. ~ 2006. 6. 30.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5. 3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06. 2. 28. 연간보고서 최초 발간,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
2006. 3. 20. 전자도서관 구축(<http://lib.libp.net/pac/>)
2006. 6.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2006. 12. 조정 · 중재사건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5년까지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총 9,114건 DB화
2006. 언론조정신청 연간 1,000건 돌파, 1,087건 신청 처리

2007. 1. 26. 서울고법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보공개법령상의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07. 4. 27. 위원회 새 CI 선포
2007. 6. 1. 교육인적자원부 발간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지도자료에 위원회 소개내용 수록(교육과정 자료 394)
2007. 7. 1. 홍보팀, 조사분석팀 신설 등 사무처 직제 개편
2007. 8. 21. ~ 2008. 1. 18. 제17대 대통령선거(2007. 12.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07. 9. 1.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위원회 소개내용 수록
2007. 10. 9. 시각장애인용 점자홍보책자 발간
2007. 11. 20.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어린이 중재교실’ 개설
2007. 12. 11. ~ 2008. 5. 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2008. 4. 7. 위원총회 - 권성(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위원장, 노향기(전 월간 말 발행인), 이도영(청주 YMCA 명예사무총장) 부위원장, 변화석(변호사), 심병연(변호사) 감사 선출
2008. 7. 홈페이지 실명인증 I-Pin 서비스 도입
2008. 9. 계간 「언론중재」 ISSN(국제 간행물 표준관리 체계) 고유번호 배정 ISSN 2005-2952
2008. 12. 1. 영문 홍보책자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만화 홍보책자 「정보통씨, 언론중재위원회 가다」 발간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도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2009. 4. 20. 언론조정중재규칙 개정
경기북부지역 9개 시군을 서울중재부 관할구역으로 지정
2009. 5. 21.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상호협력 협정) 체결
2009. 8. 5. 신문법 시행령 개정
-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분류
-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맞는 언론사닷컴이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됨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9. 1. 서울제7중재부 신설로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2009. 11. 20. 위원회 소식지 'PAC NEWS'의 제호를 '언론  사람'으로 변경
2009. 언론조정신청 연간 1,500건 돌파, 1,573건 신청 처리

2010

2010. 1. 25. 「공직선거법」 개정 및 시행
 - 재·보궐 선거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에 포함
2010. 2. 1. ~ 2010. 7.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0. 3. 22. 「방송통신발전기금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 증진 사업”이 규정됨. 위원회의 운영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2010. 3. 25. 소식지 ‘언론  사람’ 발행부수를 월 1만부로 확대
2010. 3. 31. 위원회 공식 트위터 개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한 소통 및 홍보 개시
2010. 4. 창립 30주년 기념영상 제작
 포털 네이버 ‘지식 IN’ 과 네이트 ‘Q&A’ 에 언론피해 관련 전문상담 코너 개설
2010. 5. 29. ~ 2010. 8. 27.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2010. 7. 28.)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0. 7. 16. 중고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개시
2010. 8. 28. ~ 2010. 11. 26.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10. 10. 2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0. 언론조정신청 연간 2,000건 돌파, 2,205건 신청 처리
2011. 1.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전자민원시스템(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업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시스템) 도입
2011. 2. 1. 서울제3,4중재부를 포털전담 중재부로 지정, 운용
2011. 2. 26. ~ 2011. 5.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2010. 4. 2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1. 3. 1. 중학교 3학년 사회(동화사),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고등학교 사회(비상교육) 교과서에 위원회 관련 내용 수록

2011. 3. 2. 인터넷신문 모니터링 요원 선발, 인터넷신문 심의 강화
2011. 3. 31. 위원회 창립 30주년
2011. 4. 11. 위원총회 - 권성(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위원장, 정학철(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김종량(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부위원장, 윤구(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위철환(대한변협 부협회장) 감사 선출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11. 5. 21. ~ 22. 연평도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2011. 5. 홍보동영상 제작
2011. 6. 10. 5대 포털사(네이버,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와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011. 6. 16. 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개설
2011. 6. 29. 법규자문위원회 구성
2011. 7. 5.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 구성
2011. 7. 11. 지역사무소를 지역본부제로 직제 개편 (중부본부, 영남본부, 호남본부)
2011. 7. 28. 오광진 사무총장 임명
2011. 8. 27. ~ 2011. 11. 25.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11. 10.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1. 9. 1. 초등학교 6-2 사회교과서에 강화된 위원회 소개내용 수록
2011. 9. 2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 구성
2011. 9. 30. 영문 언론조정중재사례집 「Casebook on Press Conciliation & Arbitration」 발간
2011. 10. 19. 권성 위원장 중국 베이징대 법학원 및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방문
-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 및 헌법재판제도 소개
2011. 12. 12. ~ 2012. 5.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2012년 3월 31일 발행

발행	행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인	권성	위원장
.....		
편집인	오광건	사무총장
감수	황정근	심리본부장
	정희성	연구본부장
	권오근	운영본부장
편찬TF	팀장 조남태	교육전문위원
	팀원 김문성	총무팀 차장
		최명진 예산회계팀
		김창숙 정책연구팀
윤문	장원상	중부분부장
자료조사 및 구성	이진숙	홍보팀장
	안백수	전문위원
	여운규	교육팀 차장
	이재범	홍보팀 차장
	남승균	예산회계팀 차장
	이흥길	정책연구팀
	이진아	접수상담팀
	김정민	조사팀
	이정희	기획팀
	김성찬	기사심의팀
법률검토	양재규	정책연구팀장(변호사)
	김문중	조사팀(변호사)
교정·인쇄	금성C&P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